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01-01

202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발 간 등 록 번 호

11-1620000-000901-01

2022년도 인권상황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이 보고서는 연구용역수행기관의 결과물로서, 국가인권위원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해외입양인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통한 인권보장 방안 연구

2022년도 국가인권위원회 일반 과제 실태조사 연구용역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22.11.28

연구수행기관 숭실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책임자 노혜련(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공동연구원 김재민(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소라미(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임상부교수)

공동연구원 신필식(여성역사공유공간 서울여담재 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이태인(제주한라대학교 조교수)

공동연구원 한분영(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보조연구원 박현진(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과정)

보조연구원 전세희(숭실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박사수료)

목 차

Ι.,	서론	• 1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3
	1) 연구 필요성	3
	2) 연구 목적	8
2.	선행연구	9
	1) 해외입양 실태와 증감 추이	9
	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10
	3) 해외입양체계와 절차, 제도의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12
	4)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관련 문헌과 연구	15
	5) 유엔과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사연구 보고서	20
3.	연구 방법	23
	1)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대응동향 파악단계	24
	2)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단계	25
Ⅱ	국제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제도	31
1.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33
	1) 유엔아동권리협약	33
	2) 헤이그협약(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	37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41
	4) 국가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	42
2.	Ω 약과 시사적	43

Ш.	ō	H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조사 ·······45
1	L.	해외입양 수령국의 조사47
		1) 네덜란드 국가조사 보고서 47
		2) 덴마크 국가조사 보고서
		3) 스위스 국가조사 보고서 58
2	2.	해외입양 송출국 의 조사61
		1) 칠레 국가조사 보고서61
3	3.	요약과 시사점
IV.	5	국내 해외입양제도의 특징과 변천, 국가의 책임 69
1	١.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71
		1)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71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72
		3)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75
2	2.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천77
		1) 입양특례법의 변천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3	3.	과거 해외입양 절차상 아동 인권침해 관행87
		1) '전쟁고아'의 해외 입양
		2) '고아 호적'관행
		3) '대리입양' 관행 90
		4) 입양의 '산업화' 91
4	1.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 아동인권과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93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93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94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96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97
5).	요약과 시사점99

V.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	101
1. 질적 연구결과	103
1) 해외입양인	103
(1) 연구참여자 특성	103
(2) 주요 질문	105
(3) 조사 결과	106
(4) 요약과 시사점	152
2) 해외입양 친생부모	157
(1) 연구참여자 특성	
(2) 주요 질문	159
(3) 조사 결과	162
(4) 요약과 시사점	195
3)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197
(1) 연구참여자 특성	197
(2) 주요 질문	198
(3) 조사 결과	201
(4) 요약과 시사점	227
2. 양적 연구결과	229
1) 일반적 특성	229
2) 주요 변수 분석 결과	235
3) 요약과 시사점	262
VI. 정책 제언 ······	267
1.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	269
2.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참고문헌	<u>၁</u> <u></u>
부록: 해외입양인 온라인 설문지	292

표 목차

[丑	1] 7	질적 조사 개요	26
[丑	2] (양적 조사 개요	28
[丑	3] ह	해외입양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의 구성	30
[丑	4] ı	네덜란드로 아동을 송출 한 국가	47
[丑	5] ह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	49
[丑	6] (입양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51
[丑	7] เ	네덜란드 해외입양 학대/인권침해 유형	51
[丑	8] /	설문조사 결과: 건강상태와 상담경험	52
[丑	9] (1998년 이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간 해외입양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53
[丑	10]	권고안	53
[丑	11]	스리랑카 아동에게 부여한 입국허가 건수	59
[丑	12]	칠레 국가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63
[丑	13]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104
[丑	14]	입양인과 입양인 자녀 면접조사 주요 질문 항목	105
[丑	15]	해외입양 친생부모와 해외입양 자녀의 특성	159
[丑	16]	친생부모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항목	160
[丑	17]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특성	198
[丑	18]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항목	199
[丑	19]	인구사회학적 특성2	229
[丑	20]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I	231
[丑	21]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Ⅱ	232
[丑	22]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234
[丑	23]	한국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2	236
[丑	24]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	237
[丑	25]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238
[丑	26]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240

[丑	27]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242
[丑	28]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丑	29]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246
[丑	30]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246
[丑	31]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丑	32]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丑	33]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250
[丑	34]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251
[丑	35]	원가족 찾기 경험251
[丑	36]	원가족과의 재회252
[丑	37]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과 도움 정도253
[丑	38]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255
[丑	39]	삶의 만족도256
[丑	40]	삶의 만족도 결절점
[丑	41]	사회적 지지257
[丑	42]	사회적 지지 결절점258
[丑	43]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 관련 문제 수준 259
[丑	44]	우울감260
[丑	45]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260
[丑	46]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261

그림 목차

[그림	1]	연구단계별 내용과 방법	· 24
[그림	2]	설문지 개발과정	· 29
[그림	3]	코드구름 시각화	107
[그림	4]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	108
[그림	5]	제1시기: 해외입양결정 이전 시기의 주제	109
[그림	6]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시점부터 해외입양가정 내 배치 시점 전까지의 주제 \cdot	115
[그림	7]	제3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의 주제	122
[그림	8]	거시적 주제	137

연구요약

I. 서론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조사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행해야 한다.
-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가장 오래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으로 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022년 현재까지 70년 동안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냈다. 세계에서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해외입양을 보낸 국가로서 책임을 다하려면 하루빨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이 어떠한 유형의 인권침해를 얼마나 널리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둘째, 한국에서도 최근 해외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 아동 수령국 (receiving country) 중에는 네덜란드(2021년)와 벨기에(2021년), 스위스(2020)가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고, 벨기에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해외입양을 중단하였다. 한국에서도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려면 먼저 해외입양인의 전반적 인권침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다.

- 셋째,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절차에 관여한 정부와 입양기관 등 관련 조직과 개인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진행하고, 이들 사례의양상을 해외입양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과 지침에 따라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 넷째, 해외입양제도의 입양인 인권보호 의식 변화와 시기별 법 제도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해외입양 관련법과 제도의 변천은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나 침해양상의 변화와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해외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양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다섯째, 해외입양인 인권상황에 대한 한국의 실태조사와 해외 국가 조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마련한 해외입양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 목적

-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목적은 다음과 같다.
- 첫째,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협약·인권 규범을 확인하고, 입양아동 인권 보호에서 국가가 가지는 책임 수준을 파악한다.
- 둘째,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의 국가조사사례의 조사방법과 결과, 추후 대응 방식을 파악한다.

- 셋째, 국내 해외입양제도 변천과 입양아동 인권 보호 의식의 변화, 시기별 해외입양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 넷째, 한국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며,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양상을 유형화한다.
- 다섯째,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해외입양 제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 여섯째, 추후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보장 책임 이행을 위한 정부의 후속적 개입, 피해의 치유, 해외입양인 인권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1) 해외입양 실태와 증감 추이

-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미국 등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
- 혈아동을 법률적 기반 없이 임시구호의 형식으로 해외로 보내는 방편으로 시작 하였다(전홍기혜, 2021). 그런데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던 1980년대로 88올림픽을 앞둔 1985년에는 출생 아동 100명 중 1.3명(총 8,83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수치이다.
-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같은 해 해외입양 아동 수가 266명에 달해 우크라이나(277명)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합계 출산률이 2020년 말 현재 0.84로 감소해 출생 아동 수가 27만 2천 3백 명으로 전년 대비 10% 준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더욱더 놀랍다.
-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시작한 1953년부터 2017년 말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 간 아동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중 약 67%가 미국으로 입양 갔다. 그다음으로 프랑스 (6.6%), 스웨덴(5.8%), 덴마크(5.2%), 노르웨이(3.9%), 네덜란드(2.4%), 벨지움 (2.2%), 호주(2.0%) 등이 뒤를 이었다.

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이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모국방문이나 뿌리찾기, 국내정착에 관한 연구에 집중되었다. 정체성 관련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을 디아스포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외입양인을 초국가적 경계인이라는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필요에 기초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적응과 정체성에서 중요한 요인은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
- 뿌리찾기와 관련해서는 한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거의 모두(96.8%)가 입양인 자신과 입양부모의 인구 사회적 특성, 더 나아가 입양부모와의 관계 수준에 상관없이 뿌리찾기 욕구를 보였다. 한편 유럽에서 해외입양인이 가장 많은 스웨덴의 해외입양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거나 불법 약물남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가장 높다고 보는 연구도 있다. 입양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연구결과가 해외입양인이 스웨덴의 일반 인구보다 삶에서 더 복합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한다.

3) 해외입양체계와 절차, 제도의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 해외입양 관련 제도 연구는 해외입양 감축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과 유엔아동권리 협약과 헤이그협약 등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국 입양제도와 체 계를 검토한 연구가 주를 이룬다.
- 2012년 노충래는 한국 입양 관련 제도와 정책을 헤이그협약에 부합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특히 해외입양의 보충성 원칙을 지키기 위해 국내 아동보호의 상황을 개선해 왔는지 묻고 있고, 민간입양기관이 고수하는 해외입양비용 비공개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 보건사회연구원에서는 2017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입양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입양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입양대상 아동 과 입양부모 적합성 판정, 결연, 입양 허가 등을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해야 함을 제시하였다. 또한 국가에서 구축한 표준화된 입양체계에서 기관의 입양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 2017년 이경은이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는 국제법상 해외입양에서 아동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한국 입양 관련 법제와 국제규범 간 괴리는 입양 법제 뿐 아니라, 출생신고 제도,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와 절차, 후견 인 지정 절차 등 가족법과 아동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법을 역사적으로 고찰해 보면 정부가 서양으로 보낼 고아를 만들어내기 위해 입양기관과 합동으로 혼신을 다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책략은 해외입양 아동 수령국의 법과 상호작용했다. 특히 미국에서는 해외입양을 촉진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해외입양 아동을 법적으로 고아로 범주화하였고, 막상 수많은 입양인의 기원을 알 권리(right to origins)가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음을 비판하였다. 이경은은 최근 몇몇 유럽의 수령국에서 과거 해외입양 관행의 진실을 밝히려는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송출국에서도 같은 형태와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였다.
- 2018년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출간한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는 한국 입양체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는데 처음으로 전체 아동보호체계 안에 입양체계를 포함한 연구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1997년 유니세프의 연구보고서로 출간한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에서 나이젤 켄트웰(Nigel Ketwell)은 아동 최선의 이익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원칙이 아동과 관련된 인권법에서 어떻게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를 검토하였다. 입양이라는 특수성에 관한 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하는 이유와 고려해야 할 쟁점, 실현 방안 등을 살펴보았다. 저자는 한국과 같은 국

가에서 해외입양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이유는 아동 송출국의 관련 법제의 취약성과 그 취약성을 아동 수령국이 외면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송출국과 수령국이 공적 체계를 가동해 해외입양 관련 모든 법제를 아동 최선의 이익원칙에 따라 정비하고 실천에 옮길 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4)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관련 문헌과 연구

- Sarri, Baik & Bombyk은 1998년 발표한 논문에서 해외입양을 민간기관에서 진행할 때는 기관 자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재정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으로 인해 당초의 사업 목표를 달성한 후에도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목표 망각(goal displacement)'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국이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양기관 행정가의 조직 유지 욕구를 충족해 주고, 정부가 국내에서 위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줄 뿐 아니라 미국에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 Oh는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의 제목의 저서에서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이 어떤 연유로 대중화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주요 이유로 '대리입양'과 '아기 수송용 전세기'를 들었다. 입양전문가 집단은 초기부터 이러한 입양 형태에 강력히 반대했지만, 입양기관이나 예비입양부모의 입장에서 편리하고 효율적이었으므로 60년간 지속되었고, 아동 최선의이익을 보장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었다.
-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트렌카)은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을 통해 한국의 해외 입양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뒤로한 채 경제발전을 이유로 해외입양을 주도해온 국가의 역할을 고발했다. 한국는 해외입양의 제도화로 자국 아 동 보호 비용을 절감하고 입양수수료를 받는 물질적 이득뿐 아니라 단일민족과 정상 가족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제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이득을 꾀했다고 비판한다. 또 한 입양의 모든 절차를 입양기관과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성립하게 함으로

써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해외입양을 사적 영역에 머물게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근거로 남게 했다고하였다. 한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인권의 주체가 아니었음은 물론 복지대상도 아니었음을 적시하였다

- 김재민은 2016년 박사학위 논문에서 해외입양을 표준에서 벗어난 '소수자'를 해결하는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 수단으로 바라보고 연구하였다. 해외입양은 아동복지의 추구라는 명목으로 사회의 규범적 시각에서 벗어난 혼혈아동, '비정상' 가족의 자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사회복지 재정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했음을 지적하였다.
- 2020년에 발표한 박사학위 논문에서 신필식은 한국의 해외입양이 가장 많았던 1960 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해외입양 증감을 입양을 보낸 친생모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부가 보관하는 자료나 기록,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친생모 대부분은 가부장적인 가족법 조건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고 싶었지만, 지원제도 가 없었고 입양절차를 통해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많은 친생모와 가족의 기록이 입양과정에서 위조, 삭제, 훼손 또는 교체되어 해외입양인이 친생가족 찾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다. 이는 해외입양 친생모와 가족의 인권침해가 다시 해외입양인의 자기 기록과 정체성 회복, 가족찾기 과정에서 훼손되는 인권상황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접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일부로 뿌리의 집에서 시행한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 10명과 해외입양 관계자 5명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지금껏 의제화하지 못했던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양상과 그로 인한 고통을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었다.
- 이 연구에서는 불명확한 입양과정과 제삼자에 의한 해외입양절차의 개시, 고아호적 창설과 신분변경, 입양 이후 사후관리의 부재, 입양부모의 부적격성, 시민권 취득 관

련 문제, 모국방문과 가족찾기의 어려움, 자기 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였다.

5) 유엔과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사연구 보고서

- 최초 해외입양에 관한 공식 국제보고서 중 하나인 1998년에 유니세프가 발표한 것인데 여기서는 첫째, 해외입양정책과 실천에 변화를 꾀할 때 가해지는 정치적, 경제적 압력; 둘째, 해외입양을 위한 불법적 아동 획득; 셋째, 불법적 입양절차 회피를 중요한 문제로 지적하였다.
- 2010년 후반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양절차와 실천에 관해 조사하는 입양아동 수령국과 송출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입양아동 수령국인 네덜란드, 덴마크, 벨 기에와 입양아동 송출국 칠레에서 국가 차원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들 조사보고서는 수령국의 관계자가 인권침해에 관해 알고 있었고, 때로는 인권침해에 직접 참여하기 도 했고, 대부분은 이러한 실천을 알고도 묵과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 2021년에는 아동정체성보호(Child Identity Protection)이라는 비영리 국제단체가 아동의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이들이 낸 정책보고서에서는 해외입양 아동의 정체성과 관련된 권리와 이슈, 권리 보장 방안 등이 실려 있다. 특히 해외입양의 핵심이 아동 출생 시 부여받은 정체성 즉 이름과 국가, 가족관계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적시하였다.
- 이 정책보고서는 해외입양과 아동 정체성 권리에 관해 크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첫째, 해외입양이 수반하는 가족 관계 관련 아동 정체성의 변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고로 고려한 상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 둘째, 가족관계와 관련된 아동 정체성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완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한다. 셋째, 해외입양을 통해 발생하는 서류 위조와 아동 정체성 매매에 관한 문제를 예방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아동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여

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시해 준다.

•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해외입양이 법과 제도는 물론 절차와 실천 측면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보낸 송출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연구를 시행해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 데 필요한 아동보호와 입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는 2021년 뿌리의 집에서 시행한 연구는 단 하나에 불과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 더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양상과 실태를 좀 더 깊이 파악하고,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1)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대응동향 파악단계

-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규범, 정책, 입양절차 규정, 비공식적 입양절차 관행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 해외 입양아동 수령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해외 입양아동 송출국 인 칠레 정부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2)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단계

• 문헌 연구, 질적 조사, 양적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의 실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1) 윤리적 고려

•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실시 이전에 숭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시된 윤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2) 질적 조사

① 개요

- 질적 자료 수집은 초점집단 면접과 개별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 조사대상: 해외입양인의 경우, 개별면접은 총 26명, 2~3명으로 구성한 초점 집단면 접은 총 13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입양인 자녀 1명은 온라인으로 면접했고, 친생부모 5명과 입양관계자 5명도 대면과 온라인을 병행해 개별면접을 하였다.

② 주요 질문

- 질적 조사 담당연구원이 주요 질문의 초안을 마련하고 연구진 내에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 해외입양인과 그 자녀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주로 입양 시 인권보호의 수준이 어떠한지, 혹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 친생부모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된 상황,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상담 과정과 상담 내용, 입양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입양동의서 작성과 자녀와의 분리 과정, 분리 후 심리적 변화, 입양자녀와의 재회 경험, 입양기록의 적절성과 자녀찾기 과정에서의 경험,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③ 분석방법

- 면접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녹음했고, 녹음 자료를 전사해 질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으며,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핵심 질문이었던 인권침해 양상을 입양의 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 질적자료 분석은 통합방법론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2022를 활용하였다.
-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가 면접에 함께 참여했고, 소감을 나누었으며, 결과분석 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 했다.

(3) 양적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① 개요

- 자료 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초안 작성,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자체 개발하였다.
- 해외입양인 단체를 통해 설문을 홍보·소개하고 응답 링크 배포, 온라인 설문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이었다.

② 설문지 개발과 자료 수집

-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개발했다.
- 입양과 관련된 설문 이외에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Oslo Social Support Scale, 정신건강 영역을 측정하는 SF-36의 Mental Health Subscales도 추가하였다.
- 설문 초안을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 내부의 사전검사를 통해 1차 수정한 후 외부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수정하고, 해외입양인의 사전검사 후 3차 수정하였다.

• 개발한 영어 설문을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로 번역해, 총 8개 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 번역한 설문은 구글 서베이를 활용해 온라인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③ 설문지 구성

•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총 12개 영역, 1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④ 분석방법

•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해 빈도분석과 기술통계 분석을 하였다.

Ⅱ. 국제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제도

1.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 유엔아동권리협약

•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한 있는 관계 당국이 결정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 는 경우 최후의 조치로서만 허용하며, 해외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 고 있다. 또한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과 성명권, 국적취 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동 협약 제6조에서는 생명에 대한 고유한 권리를 선언하며, 협약 제7조에서는 '사회적 생명권'에 관한 내 용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을 위한 입양절차에서 아동 최 선의 이익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최대한 원가정에 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 국내입양을 고려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선택지가 되어야 한다.

2) 헤이그협약(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

• 헤이그협약은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고 그 다음으로 국내입양을 검 토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시도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나아가 입양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무엇 보다 권한 있는 중앙 당국의 개입에 의해 해외입양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제3, 4차 심의와 제5, 6 차 심의를 진행한 후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것을 반복해 권고하였다. 한국의 현행 입 양제도는 법원의 입양허가 이외의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게 일임하고 있어 권 한 있는 공적 당국의 책임 하에 해외입양을 진행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의 규정은 한국의 입양제도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 대안양육지침은 아동은 근본적으로 원가정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원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동을 유기·포기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안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 또한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야 하며, 가능한 한 일시적이고 단기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나아가 물질적 가난이 아동을 부모의 양육에서 분리하거나 재결합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은 그 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자녀를 출산하자마자미혼모와 아동을 분리했던 민간입양기관의 관행과 기아와 미아에 대한 제대로 된 대

책을 마련하지 못해 해외입양을 촉진하고 자율화하였던 과거 정부의 정책을 엄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4) 국가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1)

- 2022. 9. 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성매매, 아동의 매매 및 성적 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특히 여성과 아동 관련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또는 비자발적 실정에 관한 워킹크룹은 국가 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 성명서는 국가 간 불법 입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 최선의 이익은 모든 입양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둘째, 해외입양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외입양에 의존하기 전에 모든 적절한 국가 차원의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아동의 출신 국가에서 고려해야한다. 셋째,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은 금지되어야하며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만 부과되거나 지급되도록 해야한다. 넷째, 해외입양의 허가는관할 당국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하며, 적절한 상담에 기초하여 입양에 대해 사전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한다.
- 네 가지 예방의 주요 원칙 이외에 공동성명서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존중 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또한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서 국가 간 불법입양 을 금지해야 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제재를 제정하고 신속하고 효 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보장해야 한다.
- 공동성명서는 국가 간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의 구제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국가는 필요하다면 국가 간 불법 입양 의혹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조치를 제안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시한다.

^{1) 2022. 9. 29. &}quot;Joint Statement 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s"

Ⅲ.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조사

1. 해외입양 수령국의 조사

1) 네덜란드 국가조사 보고서

- 네덜란드 국가조사는 2017-2018년에 일어난 불법 입양과 관련해 이루어진 학대에 대해 해외입양인 14명의 정보 요청을 계기로 해, 법무부의 무임소 장관이 2019년 4월 18일에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면서 시작하였다. 보고서는 2021년 2월에 발간했다.
- 정부와 다른 입양 중개인의 역할을 조사한 결과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 발생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네덜란드 당국은 수년 동안 이러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아무런 개입을 하지 않음으로써 책임과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
- 조사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와 중개 기관이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히고, 정부에 해외입양 관련 잘못의인정, 해외입양의 중단,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자기 정체성을 알 권리를 지원하는 국립전문센터의 설립을 권고하였다.

2) 덴마크 국가조사 보고서

- 2020년에 덴마크로 입양된 칠레 입양인 중 6명이 자신의 입양 배치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의심해 덴마크의 국립사회심판원에 조사를 의뢰했고, 이를 근거로 2020년 9월 사회부와 내무부 장관이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사회심판원은 칠레와 덴마크 간 해외입양을 고찰한 결과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루어진 해외입양 절차에서 기본적 인권침해가 발생한 것을 발견하였다.
- 핵심 쟁점은 부정확한 출생신고와 취약한 여성, 특히 지지체계가 없는 미혼모에 대

한 착취였다. 사회심판원은 향후 입양 절차를 위한 지침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친생모에 대한 입양동의 강요, 보충성 원칙의 무시, 정해진 입양절차의 무시, 헤이그 협약에 반하는 입양 배치 관련 금전 거래를 불법의 예로 언급하였다.

• 사회심판원은 불법 입양 사례를 확인했을 때 다음과 같은 후속 조처가 가능하다는 것을 명시하였다. 첫째, 해당 송출국의 입양 중단을 포함해 아동송출국과의 관계와 관련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둘째, 책임 부처 장관은 해당 입양기관에 부여한 입양관련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불법 입양절차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 즉 입양인과 입양부모, 친생부모의 지원을 위해 의뢰할 수 있다.

3) 스위스 국가조사 보고서

• 스위스는 1961년부터 45개국에 해외입양 허가를 내주었다. 2018년에 스리랑카 아동의 입양을 조사하기로 결정했고, 연구 목적은 과거와 현대 스리랑카의 입양절차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조사 결과 1987년 스리랑카에 아기 농장이 존재했다는 사실과 입양 서류와 친생모가 제공한 정보가 위조되었는 것을 밝혀내었고, 스리랑카의 부정부패와 수익성 높은 아동 시장이 불법 입양을 조장했다는 결론을 도출했다.

2. 해외입양 송출국의 조사

1) 칠레 국가조사 보고서

- 칠레는 2014년에 한 사제와 산부인과 전문의 그룹이 해외입양을 위한 아동 조달에 관여했다는 뉴스 보도 이후 여러 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팀은 입양절차에서 아동인수, 입양 전 아동보호, 법적 절차, 해외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 입양 수령국에서 입양 법제화, 뿌리 찾기와 같은 범주에서 문제를 발견하였다.
- 특히 아동인수와 관련해서 이루어진 문제는 다양하였다. 그중에는 친생모를 설득해

아동을 양도받는 경우도 있었다. 즉 친생모와 아동 간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거나, 아동이 해외로 입양 가면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면서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은 출생이나 입원 직후 병원에서 없어지기도 하였고,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가족 방문이 뜸하다고 판단되면 아동유기로 신고하기도 하였다. 간호사가 아동이 사산했거나 기형아로 출생했다거나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고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생등록을 막고 아동을 빼돌리는 현상도 있었다.

• 칠레에서는 현재 6만6천개가 넘는 해외입양인 관련 자료를 중앙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해외입양인과 칠레 가족이 서로를 찾고 재회할 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Ⅳ. 국내 해외입양제도의 특징과 변천, 국가의 책임

1.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승만 정권 시절 시작되었다. 정부 수립 이후 반공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에서 '일국일민주의'를 신조로 내세웠던 이승만 대통령은 해방 이후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 태어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했다.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혼혈아동을 민간 구호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이승만 대통령은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을 위한정책을 직접 지시하였고 그 결과 당시 보건사회부 통계를 살펴보면 1950년대 해외입양아동 중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난다.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만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1960년대부터 해외입양 대상아동은 혼혈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기아, 미혼모 자녀,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보호 필요 아동을 포괄하게 되었다. 특히 박정히 정권 시기인 1961년부터 1979년 사이에 미혼모 가정 출신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이 되는 숫자가 4배 가까이증가했다. 해외입양에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사실은 혼혈아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로 옮겨간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례법을 만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입양기관에 국내입양 수에 비례해 해외입양 수를 배당하는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해외입양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단체 출국 금지, 개별 입양의 허용, 국내 여론과 언론의 비난 완화 등의 확인을 조건으로 해외입양 중단조치를 해제하였고,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해외입양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냈다.

3)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에서 급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촉진함에 따라 국내입양활성화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해외입양 아동 수 감축 계획과 인원 제한을 철회했고해외입양은 전면 개방되었다. 전두환 정권은 연간 만 명 이상 발생하는 기아와 미아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해 10년 동안 6만 5천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85년과 1986년에는 한 해 평균 8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1986년 한 해

미국으로만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이 6천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 퍼센트에 달했다. 전두환 정권의 이민 활성화의 일환으로 장려한 해외입양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으로 돌아왔다.

2.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천

1) 입양특례법의 변천

-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 조치를 '간이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외국인이 입양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대리할 수있게 하는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도 명시하였다. 대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들어 아동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1966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으로 한정해 입양알선업무를 하도록 하였고, 입양 알선기관에게는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하였다.
- 1976년 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때는 입양알선기관이 그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입양 업무를 사실상 입양알선기관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고자 할 때는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외에서 입양할 때는 법원의 인가 절차는 필요 없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이주 허가만으로 입양이 가능하게 하였다. 양친이 될외국인은 국내에 와서 양자가 될 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입양 성립 전에 입양을전제로 아동을 자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었고, 아동을 데리러 한국에 올 필요도 없었다.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 보호시설의 장의 입양동의로 입양기관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
- 1995년에는 입양특례법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전면 개정했다.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하지만 여전히 모든 입양절차를 민간 기관에게 일임하고 있었고 외국인 입양부모는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해외입양 할 수 있었다. 국내가정법원의 인가를 밟을 필요도 없었다. 입양정보의 보관 의무를 입양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다.

• 2011년에는 16년 만에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 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하고,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시점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제한하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했다. 또한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는 반드시 양육 지원 정책과 입양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상담받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친생모로부터 친권포기각서와 입양 동의 서류를 받아왔던 입양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또한 법원에서 입양이 아동 복리에 최선인지심사하도록 하여 입양신고 대신 허위 친생자 신고를 하던 기존 입양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나아가 입양인의 알 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을 입양인의 권리로 도입했다.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 1958년 2월 22에 제정한 민법은 민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던 가계 승계를 위한 입양 관행을 법제화하였다.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가계 승계를 위한 요소는 대폭 폐지했으나 입양의 성립을 당사자 간 합의와 신고만으로 가능케 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자질·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심사하는 국가기관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아동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로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2005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입양 제도가 신설되었다.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

족관계등록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될 수 있도록 하였다. 친양자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법상 입양 제도에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민법상 미성년 입양절차에 보편적인 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2011년 입양특례법을 전면 개정함에따라 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인 2012년 2월이다.

3. 과거 해외입양절차상 아동인권침해 관행

1) '전쟁고아'의 해외입양

•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 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전후 전쟁고아를 직접 돌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는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삼았다. 미국은 1950년 난민법 개정을 통해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뿐만 아니라 '기아가 된 아동', '한 부모만 남은 아동으로 그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아동의 출국·입양에 동의하거나 다른 후견인에게 친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고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 1961년 미국 이민법의 개정으로 입양아동은 난민법의 쿼터제한 없이 완화한 요건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미국 이민 자격의 하나로 이민법상 '고아' 자격을 신설한 것이다. 이후 미국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34,568명의 고아에게 입양목적의 입국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한국 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인 19,283명이었다.

2) '고아호적'관행

• 과거 해외입양은 입양아동 수령국의 입양제도를 고려해 입양대상 아동의 고아호적을 발행하여 입양이 성사될 수 있게 하였다.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아동을 기아

로 처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또한 실종 아이나 미아인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보다 입양을 우선 추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입양기관이 아동을 기아로 처리해 해외입양절차를 진행한 이유는 고아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서부터 미국 비자 발급, 미국 내 입양재판에 이르기까지 친생부모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양절차가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3) '대리입양' 관행

• 한-미 간 입양절차에는 다른 나라 해외입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리입양' 관행이 처음부터 자리 잡았다. '대리입양'이란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양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리입양은 1950년대 한-미 간 해외입양을 주도한 홀트 양자회의회장 해리 홀트에 의해 주창되었다. 비용과 시간상 효율적인 입양절차의 수행을 위해 입양알선기관이 입양부모를 대신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리입양'은 입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동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양을할 수 있게 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수가 단기간 급증하였다.

4) 입양의 '산업화'

•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달러), 2009년 1만 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7,074달러), 2018년 기준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된 입양 수수료는 입양 심사비용, 여행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최대 33,600달러에 이른다.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해외로입양 보낼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양육시설, 병원 등 아동이 있는 시설과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이용하기도 했다. 해외 언론 등에서는 한국의 해외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 버렸다고 평가하였다.

4.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 아동인권과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 이승만 정권때 시작한 해외입양은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겠다는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55 년부터 1961년 사이에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 전부가 혼혈아동이었고, 혼혈아동 중대다수 아동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서 미국으로입양 낸 것이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 때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승만 정권 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당시 고아입양특례법은 고아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입양부모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않은 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데만 급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혼혈아동으로 시작한해외입양은 미혼모 아동으로 입양대상 아동을 확대하였다.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 아동이 된 것은 여성의 혼전 임신과 출산, 양육은 물론 아버지가 없는 아동에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며,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

•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는 한국에서 원가정 양육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처럼 해외입양대상 아동의 90% 이상을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게 된 것은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인식과 세금으로 혼외 관계에서 출생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로 자리 잡은 비밀입양 관행 하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 입양을 결정한 순간 친생부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야 한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의 입양체계에서는 입양기관과 연계된 미혼모 시설의 주도하에 미혼모는 아동을 출산하기도 전에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출산하자마자 자녀와 생이별해야 했다. 이후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는 입양알선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 친생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했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의 상태를 알 수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완료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 현행 입양절차에서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의 입양 적격성 결정),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아동 인수와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결연, 입양전제위탁 결정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단독의 결 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사후에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입양을 아동복지체계와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 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 방안으로 검토 해야 한다.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 근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의 가족찾기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입양 기관과 관련 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내세우며 입양 인에게 비협조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 구를 통해 가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해외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마음속 내재하는 근원적인 불안과 불화를 해소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

V.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

1. 질적 연구결과

- 1) 해외입양인
- (1) 조사 개요
- 본 연구의 개별면접과 초점집단 면접에 참여한 총 40명의 해외입양인은 인구사회학적으로는 여성, 70년대와 80년대 출생이 주를 이루었다. 열 명 중 아홉 명 이상이 70년대와 80년대에 입양되었고, 70% 이상이 미국, 덴마크, 벨기에로 입양되었다. 전

체의 60%가 입양인 본인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증언했다 (신체학대 32.5%, 성학대 30%, 정서학대 12.5%).

- 면접조사 질문은 해외입양 전 한국 내 입양절차 중 인권보호의 수준과 침해의 양상, 입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수준, 수령국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의 인권보호 수준과 침해의 양상,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등에 초점을 맞추었다.
- 해외입양인과의 면접을 기초 코딩하였고, 이를 통해 떠오른 모든 주제를 입양과정의 세 시기, 즉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이전인 1시기, 입양이 결정된 이후부터 입양가정 에 실제 배치되기 직전인 2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인 3시기로 나누어 정리했다. 특정 시기에 속하지 않으면서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국가의 역할 등 거시적 관점에 관련된 주제는 별도로 분류해 '거시적 주제'라고 명명하였다.
- 직관적 파악을 돕기 위해 텍스트 시각화 방법 중 언급빈도가 높은 주제를 부각하는 코드구름 시각화 방법으로 코드를 제시하였다. 해외입양인 면접자료에서 가장 핵심으로 나타난 주제는 '해외입양인의 상품화'이고, 그 외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로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 '해외입양인의 회복탄력성', '뿌리찾기의 어려움', '친권포기관련 문제', '거짓말, 조작, 정보 은폐, 가스라이팅, 태만', '해외입양인 돕기', '부정확한 정보/위조', '손상 치유하기', '체계 자체가 문제', '평생 계속되는 영향', '입양사후서비스 관련 문제', '인종차별/편견',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 이었다.
- 코드구름 시각화에서 부각된 주제는 제1, 제2시기보다는 상대적으로 제3시기, 즉 입 양가정에 배치된 이후 해외입양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에 응집되어있다.

(2) 자료 분석 결과

① 제1시기: 해외입양결정 이전 시기

- 이 시기에 해당하는 주제는 '입양 타당성 없음', '시설에서의 신분세탁', '아동의 존 엄무시', '참혹한 양육시설생활', '친생부모의 인권도 침해됨' 등이다.
-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어 고아가 아닌데 고아로 간주되어 해외입양 대상자가 된 경

우, 실제로 기아인지 확인과정을 거친 기록 없이 입양된 경우 등 자신의 해외입양이 타당하지 않았다는 원론적인 지점에서 이야기가 시작된다. 연구참여자는 고아도 아니고 기아인지 확실치 않은데도 해외입양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아동이 시설에서 생활하는 동안, 또는 해외입양을 진행하는 과정 중 '신분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은 이름과 생년월일을 인지하고 말할 수 있을 만한 나이임에도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을 부여받아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친생가족과 연결지점이 끊어진다. 입양기관의 종사자에게 당시 아동을 '바꿔치기'하는 것이 흔하게 일어났다는이야기를 직접 들은 해외입양인도 있었다. 신분세탁이라는 말은 입양인의 표현 그대로이다.

- 아동기에 신분 세탁을 하는 시설로 보내졌던 해외입양인은 시설에서 자신을 한 인간 이 아닌 노동력 또는 '없는 존재' 내지는 물건으로 간주했다고 하였다. 이는 '거시적 주제'에 속하는 '체계의 문제'라는 주제 중에서 '해외입양인의 상품화'와 직결되는 대목이다.
- 한국의 양육시설에서 생활할 때 학대당하고 열악한 환경에서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 방임되거나,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았다는 이유로 다른 아동을 돌보아야 했던 이들의 이야기도 반복해서 등장했다.
- 이렇듯 이 시기 해외입양인이 겪은 인권침해 경험은 당사자뿐 아니라 그 친생가족의 인권도 같이 침해당한 경험이라는 관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친생부모에게 살아있는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허위보고한 후 해외입양 보낸 경우, 입양 보내기로 한 자녀를 되찾으려고 즉시 찾아간 친생부모에게 아동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입양되었다며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 병원에서 '또 딸'을 낳아서 또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을 권유해 동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후회하고 입양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아동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 ②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 시점부터 해외입양가정 내 배치 시점 전까지
- 이 시기의 주요주제는 '친권포기 관련 문제', '서류의 문제', '형제자매의 이산가족

화', '타국 이동시 발생하는 문제', '해외입양기관의 태만' 등이다. 이 중에서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코드구름 시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서류의 문제'는 다시 '부정확한 정보/위조'와 '정보에 접근 못함'이라는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위조' 역시 코드구름 시각화에 나타났듯이 언급 빈도가 높았던 주제 중 하나이다.

- 친생가족과 재회한 경우 친생부모에게 친권포기 또는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음을 발견한 해외입양인들이 있었다. 조부모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아동을 입양대상으로 신청했다거나 입양기관에서 입양의 의미를 축소해 친생부모가 아동을 포기하게 조장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
- 이처럼 무리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하면서 입양서류를 조작했거나 정보가 불충분했다는 점을 자주 언급하였다. 이름, 생년월일 등 기본적인 정보도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았고, 기록이 남아있더라도 해외입양인은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이었다.
- 또한 입양시 친생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고 실제로 분리 배치되었다가 훗날 서로를 찾는 사례들이 있었다.
- 입양을 위해 아동을 해외로 이동할 때 장시간 비행인데 아무런 연고도 없고 아동 돌봄에 대한 기본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동을 이송하다가 아동이 아프든지 각종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야기, 다수의 아동을 한 사람이 이송하다가 아동이 뒤바뀐 정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 이동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
- 공항에 도착한 직후에 원래 배치된 가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된 경우와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가 충분치 않았던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배치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입양가정이 기대했던 것보다 장애가 심하다고 아이를 그냥 공항에 방치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 ③ 제3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 이 시기에는 '부적절한 입양가정', '어려움/고통', '입양사후서비스 관련문제' 등의 주제가 눈에 띄었다. 이 중에서 특히 '부적절한 입양가정'과 '어려움/고통'이라는 주

제는 많은 하위주제로 이어졌다.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의 삶에서 해외입양인이 직면해야 했던 환경과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해외입양의 타당성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

- 먼저 '부적절한 입양가정'은 '입양가정의 금전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 픈 양부모',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 이하의 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등의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코드구름 시각화에서 가장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였고 이는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특성에서 나타난 높은 학대율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입양부모의 신체적, 성적 학대, 영양 불충분, 돌봄의 결여 등의 방임, 교육적 방임, 입양형제의 성적 학대를 방치한입양부모의 무책임, 입양부모가 자신을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형제자매를 학대하는 모습에 늘 노출된 경험에 관한 언급이 있었다. 신체적 학대는 불분명한 상황보다는 주먹으로 치는 등 분명한 학대가 있었고 성적 학대는 주로 남성이 여성 입양인에게 가한 것이었다.
- '어려움/고통'의 경우에는 '법적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이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이들 중 '법적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을 제외한 나머지 중 5개 하위주제는 해외입양인이 집중해서 언급한 주제였다. 주로 미국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한국과 해외의 입양기관이나 입양부모가 확보해야 했던 입양인의 법적 지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입양가정의 학대로부터 뛰쳐나온 후 방황한 이야기가 있었다. 인종차별과 편견은 북미와 유럽 어느 곳으로 입양이 되었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 연구참여자 대부분은 뿌리찾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기록에 대한 접 근 자체가 거부당하거나, 뿌리찾기 노력에 대한 지원 부족,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도 계속 뿌리찾기를 시도하다가 계속되는 실망 등을 겪는 것도 쉽지 않았다. 이는 정체 성 찾기의 어려움과도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그리고 해외입양인 1세대가 겪는 정체

성 찾기의 어려움과 고통은 이제 해외입양인 2세에게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었다.

- 이 시기에 어려움/고통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제가 나타나는 이유 중 하나는 아동을 입양가정에 배치한 후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학대와 방임을 관련기관은 감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거나 아동이학대를 보고했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다고 하였다. 이는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 한편 해외입양인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이들의 일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④ 거시적 주제

- 거시적 주제는 입양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주제, 즉 '체계의 문제,' '국 가의 역할,' '회복탄력성'등을 포함한다. 결국 해외입양인이 입양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지, 이들이 얼마나 회복탄력적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 연구참여자는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권침해 양상은 분절해서 이해할 수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시적 체계가 존재하며,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유기적 관계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즉 입양을 작동시키는 체계 그 자체가문제이며, 이 체계가 아동 이익이 아닌 어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으며, 전체체계의 문제이므로 입양인의 인권은 침해당한 것이 분명한데 책임자는 찾기 어려울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국내에서 해외입양기관은 아동의 구원자라는 매우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있고,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했던 '무력아'로 그려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 틀 안에서 해외입양인은 상품화되어 서구의 '제국'으로 팔려간 것처럼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한 체계에서 국가는 핵심 주체인데, 국가가 해외입양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기관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세우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친생가족이 해외입양을 손쉬운 선택지로 택

하도록 방관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면접에 참여한 입양인은 앞으로 입양에서 국가의 기능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 이러한 제언과 요구의 바탕에는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이 전제를 확장하면, 어떤 방식으로 해외에 입양이 되었든지 간에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권리, 일면 박탈당한 한국 시민의 권리를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 해외입양인의 구체적 요구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손상 치유, 입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입양관련 서류 관리 강화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의 요구의 일 례로, 친권포기 단계에서 친생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것,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입양인이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것, DNA검사를 보편화할 것 등을 들 수 있다.
-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전반적으로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의 서사에는 피해와 분노 중에도 강인함과 회복탄력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모습이 곳곳 에서 발견되었다. 학대의 한복판에서 맞서는 모습, 자신을 구하는 모습, 무력하게 같 히지 않고 적극적으로 탈출하는 모습을 보이는 이들도 있었고, 입양 관련 분야에서 실천가로 활동하거나 연구자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어린 동생을 돌보는 부모의 역 할을 충실히 감당한 입양인도 눈에 띄었다.

2) 해외입양 친생부모

(1) 조사 개요

• 해외입양 친생부모에 대한 개별면접은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와 관련 인권침해 양 상, 인권 개선방안 등을 직접 친생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진행 하였으며, 친생모 2명, 친생부 3명으로 총 5명의 친생부모가 참여하였다.

- 해외입양 과정에서 입양아동의 인권은 잘 보호되었는지,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했는지를 해외입양 당시 아동이었던 해외입양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힘든 당시 상황을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경험을 통해 다각도로 살핌으로써 해외입양 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 친생부모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명, 60대가 2명, 70대가 1명, 80대가 1명이었으며, 입양 보낸 자녀는 총 9명으로 친생부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또는 각각 입양 보냈다. 자녀가 해외로 입양된 시기는 총 9명 입양자녀 가운데 1970년대가 2명(친생부모 5의 쌍둥이 자녀), 1980년대 6명(친생부모 1, 친생부모 2, 친생부모 4의 자녀), 2000년대에 1명(친생부모 3의 딸)이 각각 입양되었다.
-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조사의 질문은 크게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해 구성하였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기본 정보; 둘째, 해외입양을 고려하게된 이유; 셋째, 해외입양 결정 이전까지의 상담 과정과 영향 요인; 넷째, 해외입양결정과 입양동의 과정; 다섯째, 자녀와 헤어진 이후 심리적 상태와 입양결정 철회 의사 여부; 여섯째, 해외입양 자녀와의 재회, 입양기록의 적절성, 자녀 찾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일곱째, 해외입양 친생부모 인권 실태와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을 각각 질문하였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양결정과 동의, 헤어짐과 재회, 입양 기록과 관련하여 전반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2) 자료 분석 결과

① 양육 위기에서 입양결정 이전까지

•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체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먼저 친생모는 경제적 상황 악화,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생계 지원 부족으로 인한 가족부양의한계, 자녀 돌봄과 가족부양 병행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불화와 신뢰 손상, 원가족의지원 부재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친생모 혼자 힘으로는 자녀 양육을 지속

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 친생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했으며, 혼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 상태로 동거하다가 동거녀가 임신 중일 때 관계가 나빠져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기도 하였고,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직접 돌보려 했지만 포기하고 부모에게 부탁 했다가, 그곳에서도 사정이 생겨 아이들이 외가로 보내진 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었다. 기혼 상태에 있던 친생부는 시골에서 소도시로 이사한 후 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큰 수술을 받게 돼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의 권유로 아이들을 포기하게 된 경우였다.
-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아이를 보호해 줄 대안으로 해외입양을 주변 사람이나 병원에서 권유받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권유의 문제점은 해외입양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자녀와의 헤어짐이 일시적이고 해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이해하거나, 당장 자신들이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녀를 포기하는 등 해외입양으로 부적절하게 유인되는 점이었다.

② 입양결정에서 자녀와 헤어지기 이전까지

• 해외입양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전제되어야 할 자녀가 해외입양을 간다는 사실조차 인지하지 못 한 상태에서 결정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친생부모는 대부분 해외입양에 관해 이미 잘 알지 못하였고, 몇몇 친생부모는 자녀를 기관 실무자에게 인계하면 서도 자신의 자녀가 해외로 입양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입양기관의 담당자가 자신들이 누구이며, 친생부모에게 해외입양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입양결정 이전에 전혀 설명해주지 않았기때문이다. 그 결과 친생부모 중에는 자녀를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국내 가정으로 입양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다.

- 해외입양을 직접 결정한 친생부모라도 해외입양의 의미와 친생부모로서 권리, 이후의 어떤 영향을 받을지를 알지 못한 채 입양을 내리기도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해외입양 후 자녀와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친생부모로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입양 결정 후 자신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입양결정 후 취소는 할 수 있는지, 입양 후 재회는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나 상담을 통해 이해하고 입양결정을 내린 경우는 거의 없었다.
- 경우에 따라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친생모의 어떠한 동의도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자녀의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모의 부모나 친지 또는 아동양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친생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것이다. 해외입양 절차의 계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라는 점을 고려할 때,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입양의 법적 효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것이다.

③ 자녀와 헤어진 이후부터 재회 이전까지

•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고 곧바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거나,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하는 상황에서 자 녀가 해외로 입양 보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 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어딘지 알지도 못하는 곳으로 자녀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였다.

④ 재회에서부터 관계의 지속까지

• 친생부모는 오랫동안 입양자녀를 찾고 기다리지만 정작 친생부모와 입양자녀가 서로를 확인하는 과정은 원활하지 못했다. 정작 입양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친생부모 찾기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였고, 친생부모가 자기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입양기관에 수시로 변동 상황을 알려 정보를 업데이트해 놓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이미 가족으로 기록된 적이 있었을 때만

연락과 상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친생부모에게 재회 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의 방식이 지나치게 간소해 친생부모가 지나쳐 버리거나, 친생부모가 남긴 자녀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연락해 와서 상봉이 되지 못할 뻔 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친생부모가 연락처를 남겨두었더라도 입양기관의 착오로 연락되지 않는 경우도 있었다. 다행히 공식적 절차로 재회에 실패하였다가 DNA를 통한 가족찾기로 연락이 된 경우도 있었다.

•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는 자녀와 상봉하면서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가족찾기 과정을 거쳐 자녀를 상봉한 기쁨도 크지만 재회의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해외입양인 자녀가 한국 문화에만 익숙한 친생부모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보낸 이후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이룬 경우에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려야 할지를 고민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되었다. 이때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릴 경우 배우자와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입양자녀를 가족으로 잘 받아들여 줄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처럼 입양자녀와 재회는 오랜 기다림의 끝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많은 친생부모는 재회란 서로의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함께 나누고 조금씩 이해해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에 가까웠다.

⑤ 친생부모의 시각에서 본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 인권

•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는 해외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다시 자녀를 입양 보낸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대한 질문에 다섯 명 모두 다시 결정하게 된다면 입양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답하였다. 이제는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원가족과 헤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성장하게 하고, 더는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아도 되길 바랐다. 이러한 대답은 해외입양이 무조건 나쁜 면만있는 것도 아니며, 해외입양을 간 자녀의 삶이 한국에서 살았을 삶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라기보다 자신이 친생부모로서 겪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수 없는 큰 고통이었으며, 입양자녀가 훌륭히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성장하면

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냈을지를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응답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친생부모와 입양인 자녀가 겪은 인권 현실에 관해서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는 한국해외입양 제도 안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고 개선이 시급하다고 답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정부나 입양기관이 접근해 온 방식이 전면적으로 달라져야 하는데,특히 입양기관이 재회를 원하는 친생부모와 입양인을 보다 적극적으로 연결시켜 주고,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를 죄인처럼 대하거나 무시하고 인격적으로 모멸감을 느끼지 않도록 변화해야 한다고 했다. 지금껏 친생부모에게 침묵을 강요하는 방식 대신,최소한 인권과 존엄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3)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1) 조사 개요

-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실무자 3명, 해 외입양인 가족찾기 등 해외입양 관련 활동을 해왔던 실무자 2명을 대상으로 개별면 접을 진행하였다.
-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는 크게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해외입양 업무 시작 배경, 해외입양 업무의 흐름과 조직, 해외입양 아동의 의뢰과정,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 전 보호, 입양사후관리, 기록관리와 가족찾기, 해외입양 절차상 전반적인 인권문제 및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2) 자료 분석 결과

- ① 해외입양 관련 업무와 활동
-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입양기관에 취업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해외입양인과의 만남을 통해 입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입양업무를

담당했건 지원활동을 했건 간에 실무자는 비슷하게 입양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입양기관의 업무는 대체로 아동이 의뢰되면 상담을 통해 시설 혹은 위탁가정에 배치하고 입양부모와 결연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절차와 기준은 입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해당 국가의 입양기관과 접촉하면서 입양부모와 입양대상 아동의정보를 토대로 결연하는 흐름이었다.
- 입양기관은 아동 인수 과정에서 병원 및 시설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에게 고유번호를 배정하고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 당시 국내입양은 건강한 신생아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 외 모든 아동은 해외입양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국내 입양부모가 요구하는 아동의 조건이 까다로웠고, 해외입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훨씬 많았으므로 입양기관에서는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② 아동의 입양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 입양기관별로 해외로 입양 보낼 수 있는 아동 수를 매년 할당받았고, 입양기관은 최대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인수 단계부터 기관간 경쟁이 치열했다. 더 많은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조산원, 병원, 시설 등을 찾아다녔던 정황을 알 수 있었다.
- 친생부모의 상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임에도 해외입양 아동을 한 명이라도 더 인수할 수 있도록 친생부모나 친척에게 입양을 권유하는 방 향으로 상담하도록 압력을 넣는 입양기관도 있었다.
- 입양기관의 상담부서에서는 고아호적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고아호적 창설을 입양 결연을 위한 방안으로 여기고 있어 실무자도 관련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 입양기관으로 의뢰되는 미아의 경우 경찰은 적극적으로 아이의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가족찾기' 공고만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아동 양육시설로 보내고, 시설에서는 입양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반복했다.

• 입양기관은 아동을 최대한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입양사업을 진행하였다. 아동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입양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아동 위주로 해외입양을 결연하였다.

③ 입양아동의 입양가족 인계 과정

- 해외입양 아동 2~3명을 한 사람이 에스코트하여 입양가족에게 인계하는 대리입양 제도는 입양기관과 해외입양부모에게는 편리한 제도이지만, 아동에게는 위험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직접 예비 해외입양부모가 입양부모로서 적격한지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은 추방입양인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
- 대리입양제도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처음 시작했던 시기인 1950년대부터 미국 해 외입양부모의 자국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로비와 한국 정부의 승인으로 인해 가능해 졌다. 대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인권을 침해하는 제도였지만, 때로는 아동을 직접 만 나 보지도 않고 입양한 입양부모에게 예상치 못했던 아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④ 사후관리 문제

- 해외입양 절차는 아동이 입양가정과 결연된 후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했다. 입양 절차상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는 순간 아동 국적이 바뀌므로 사후관리의 책임은 수령국에 있는 것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사후관리를 당연히 해야만하는 일이라고 인식했던 경우 입양기관에서 전담하는 담당자도 필요하지만, 국가의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해외입양 아동 중에는 처음 배치된 입양가정에서 부적응의 문제, 입양부모가 예상하지 못했던 아동의 건강 문제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해서 새 가정에 재배치되는 경

우도 있었다. 연장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좀 더 철저히 심사하고 준비해야 하고, 배치 후에는 다른 가정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시민권 취득 관련 문제는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부재가 원인으로 작동한다. 입양기관의 무지와 태만으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지 않았기에 결국 해외입양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결과로 이어지곤 하였다.

⑤ 기록관리 문제

- 입양기관은 철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였다. 입양기관은 필수적인 기록을 폐기할 생각을 할 정도로 기록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이루어졌다. 당시에 가족찾기 담당 부서는 없었고, 아동이 성장해서 가족찾기를 위해 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하였다.
- 입양기관은 입양을 보내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입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록이 잘못되더라도 입양이 성사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기록 왜곡의 문제는 해외입양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인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⑥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 열악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해외입양이 좋을 것으로 생각했지만, 사실 인권 보장의 방안이었는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입양의 특성상 아동 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부모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하였다. 또한 국제사회 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비로소 해외입양을 아동인권의 차원에서 문제로 인식하기 시 작했다고 하였다. 해외입양은 실제로 아동의 입장에서 이루어지기보다는 복지비용 의 절감 등을 위해 진행한 것이었다.
- 해외입양 체계에서 국가는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사회 안전망 등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선택해 아동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내몬 것은

책임을 방기한 것이라 하였다.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역할은 해외입양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니터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입양수령국과 함께 해외입양에서 파생한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해외입양인이 인권침해로 겪은 아픔과 고통에 대해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력하였다.

2. 양적 연구결과

•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658명을 표본으로 삼고 최종 분석하였다. 본 연구참여자의 일반적 특성과 주요 관심 변수를 요약·정리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일반적 특성

- 연구참여자의 출생 시 성별은 여성이 526명(80.2%)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성별도 여성(510명, 77.5%)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최종학력은 석·박사 졸업자 (262명, 39.8%)와 학사 졸업자(203명, 30.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참여 자의 약 70%가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가졌음을 알 수 있었다.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이나 동거가 378명(57.4%)으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기타 등은 280명(42.6%)으로 나타났다. 현재 경제 상태는 보통 수준 이상(510명, 77.4%)이라고 응답한 경우가 약 80%에 이르러 대다수가 비교적 경제적으로 안정된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약 5명 중 1명은 경제 상태가 낮거나 매우 낮은 것으로 응답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연구참여자도 적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연구참여자는 홀트아동복지회(277명, 43.3%)를 통해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가 그 뒤를 이었다. 이들 중 10명 중 약 7명(74.4%)은 한국을 적어도 한 번 이상 방문한 경험이 있었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나이(실제 출생 나이)는 45.2세였으며, 대다수(92.7%)는 입양 서류상 나이와 차

이가 없었다.

-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이 입양된 국가는 미국 202명(33.2%), 덴마크 98명(16.1%), 스웨덴 65명(10.7%), 네덜란드 54명(8.9%), 노르웨이 50명(8.2%) 순으로 나타났다. 지금까지 해외로 입양된 아동의 약 67.0%가 미국으로 간 것을 고려하면(이상정 외, 2018) 본 연구는 미국 해외입양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 형제에 관한 정보와 관련해서는 특히 친생형제에 관한 정보(친생 형제 존재 여부, 친생 형제가 입양된 사실 등)는 40% 이상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친생가족과 재회를 하지 않았으면 확실하게 알 수 없는 정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 연구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입양 형제가 있었고, 주로 한국에서 입양된 형제가 있었다. 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연구참여자의 대다수는 친생부모에게 자신이외 다른 자녀가 있고, 자신과 친생 형제자매가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해 친생형제자매를 최대한 같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2) 자료 분석 결과

(1) 인권보호

- 해외입양인의 인권보호와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는 한국 입양기관과 한국 정부가 각각 자신의 인권을 얼마나 충분히 보호했다고 생각하는지를 물어보았다.
- 한국 입양기관의 경우, 연구참여자의 70% 이상이 모든 항목에서 한국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약 95% 는 입양기관이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자신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 한국 정부의 경우, 모든 항목에서 연구참여자의 90% 이상이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함으로써, 한국입양기관보다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노력에 대해 더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에 앞서 자신의 친생부모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고(동의: 10명, 2.5%, 비동의: 395명, 97.5%),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동의: 9명, 1.9%, 비동의: 474명, 98.1%)고 하였다.

(2) 입양인이 입양 전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실

- 자신의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경험을 묻는 질문에는 약 50%에서 80%의 해외입양인이 모른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입양인이 주로 영유기 때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 재회하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입양인이 입양서류에 담긴 내용을 믿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친생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친생부모가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 국내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약 90%가 모르거나 없었다고 답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해외입양인이 영유아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입양 전 상황에 관해서 기억할 수 없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한국 시설 경험을 기억하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중 반수 이상은 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고, 시설에 옷과 음식 등이 부족하고, 위생이 불량하고 인원이 과밀했다고 응답해 한국 시설이 아동양육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시사하였다.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을 기억하는 연구참여자 중 약 10%는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고, 자신을 인도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고 응답해 대리입양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약 35%~6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자신의 입양서류에 담긴 정보를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배경정보의 정확성, 아동인수 보고서의 정확성과 포괄성, 아동발

달 보고서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감정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삶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 입양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대해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모르거나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연구참여자의 약 5% 정도는 입양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를 경험했거나(30명, 4.7%), 자신을 데리고 간 사람이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37명, 5.9%)하였다고 답하였다.

(3) 입양서류에 관한 이슈

-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약 35%에서 60% 정도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실제로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재회를 안 했다면 입양서류가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인지를 알기 어렵다. 다만 자신의 입양서류 정보에 관해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배경정보가 정확하지 않았고, 아동인수 보고서와 아동발달 보고서가 정확하지도, 포괄적이지도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 연구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감정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삶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4) 해외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

• 해외 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의 가해자로 입양모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입양부가 그 뒤를 이었다.

• 성적 학대 가해자로는 입양부를 가장 많이 지목하였고, 그다음으로 입양형제자매, 입양가족의 친척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참여자 중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신의 첫 번째 입양부모가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거의 1명이 첫 번째 입양 배치가 파양으로 끝난 경험을 했고, 소수이지만,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파양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긴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 입양기관과 입양국의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모르거나, 적절하지 못했다고 평가하였다.

(5)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

- 연구참여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 중 반수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고 소속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입양가정 안에서 자기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또한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낀 연구참여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입양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 연구참여자는 주로 소도시나 대도시 부근 교외에서 성장했고, 대다수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소수인종집단의 일원이나 비입양인 한국인,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국가 입양인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백인만 사는 지역사회에서 종종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6) 정보 요청과 원가족 찾기

-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원가족 찾기 경험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친생부모 중 최소 1명과 재회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와 재회한 비율이 5.7%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로 해외입양인 커뮤니티나 단체를 통해 본 연구를 인지하고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악시한다.
- 원가족을 찾기 위해 연구참여자 중 가장 많은 비율(81.9%)은 한국의 입양기관에서 도움을 받고, 그 다음에는 다른 해외 입양인(66.3%). 입양국 입양기관(66.2%), 해외 입양인 단체(65.9%) 순으로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자신이 받은 도움이 실제로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를 물었을 때는 다른 해외 입양인(m=3.07, sd=0.92)과 해외 입양인 단체(m=3.05, sd=0.94)가 가장 도움이 되었다고 하였다.
- 입양국의 한국 대사관과 한국의 시설(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은 원가족을 찾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고, 해외입양인이 원가족 찾기에 도움을 받으려고 가장 많이 찾는 한국의 입양기관(m=2.32 sd=0.91)과 입양국의 입양기관(m=2.27, sd=0.88)은 별도움이 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아동권리보장원에서는 해외입양인 중39.8%만이 도움을 청했는데, 별로 도움도 되지 않았다(m=2.29, sd=0.81)고 하였다.

(7)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 연구참여자의 대다수는 해외입양을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특히 연구참여자의 약 95%가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동의: 568명, 94.7%, 비동의: 32명, 5.3%),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한다(동의: 553명, 94.0%, 비동의: 35명, 6.0%)고 하였다. 한편 연구참여자 중 약 85%가한국은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해야할 정당한 이유가 없고, 오래 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8) 삶의 만족도, 사회적 지지, 정신적 건강

-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삶의 만족도는 평균 3.95점이며, 7점 척도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면, 56.4점에 해당한다. 삶의 만족도 척도 7문항의 합 점수를 7개 구간(매우 불만족, 불만족, 약간 불만족, 보통, 약간 만족, 만족, 매우 만족)으로 구분해 삶의 만족도 수준을 살펴본 결과, 연구참여자의 47.5%(300명)은 자신의 삶에 비교적 만족하지만, 47.0%(297명)은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중간 수준이 265명(42.0%)으로 가장 많았고, 약한 수준이 215명(34.1%), 강한 수준이 151명(23.9%) 순으로 나타났다
- 연구참여자의 우울함 또는 불안함으로 인한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 관련 문제 수준은 500점 만점에 평균 269.9(sd=174.8)로 중간 수준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우울 수준도 6점 만점에 평균 3.49(sd=1.05)로 나타나 중간 수준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다.

(9) 배상

- 연구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72.8%, 479명)은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 연구참여자의 다수는 특히 해외입양인의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음을 시사하였다.

VI. 정책 제언

1. 해외입양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절차 개선

- 첫째, 아동에 대한 전체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양특례법으로 개정해야 한다.
- 둘째,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일원화'해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 셋째, 입양절차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 규정을 도입하고 아동청취권을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또한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 넷째,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입양관련 기관종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의 보장

-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는 아동의 부모를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유엔아 동권리위원회는 2019년에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입양아동이 친생부모에 대한 정 보를 찾을 수 있도록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이를 위해 해외입양인의 정보공개청 구권을 보장하려면 다음과 같이 관련법령을 개선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과 예산을 확 대해야 한다.
- 첫째, 입양인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의 주체를 확대하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를 공개 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 둘째, 국가는 과거 입양기록의 왜곡· 훼손·분실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 대안적 지원을 통해 가족찾기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해야한다.
- 셋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원가족의 재회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와 상담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3) 원가정 보호의 원칙 실현

•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수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현실은 해외입양 아동 중 99.5%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실정이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정부는 첫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둘째, 혼인 외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여 혼인 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헤이그협약의 비준

•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서명을 했으나 아직 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헤이그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²⁾. 입양절차에서 어디까지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할지 이견이 존재하나, 민간에 일임되어 있던 기존 입양절차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

^{2) 2022. 12. 9.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국회 계류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안도 처리하여야 한다.

2.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 결과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 첫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 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 둘째, 국가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상해야 하며, 해외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의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 셋째,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이관받아 공적으로 영구 보관해야 한다.
- 넷째,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하여야 한다.

서론

-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2. 선행연구 3. 연구 방법

1. 연구 필요성과 목적

1) 연구 필요성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시행할 필요가 있다. 첫째,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가장 오래 해외로 입양 보낸 송출국으로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한국은 한국전쟁 이후 2022년 현재까지 70년 동안 정부 공식 통계만으로도 17만 명(민간 추산 20만 명)에 달하는 아동을 해외로입양 보냈다.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직후와 1960년대 중반까지는 미군 등 외국 군인과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과 전쟁 전후로 생겨난 고아를 위한 긴급구호 제도로도입한 것이다(전홍기혜, 2021). 그러나 실제 해외입양 아동 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기 시작했으며, 가장 많은아동이 해외로 입양된 시기는 경제가 가장 빨리 성장했던 1980년대였다. 1985년에는 8천 8백명이 넘은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으며, 이 시기에는 해외입양 아동 수를 출생아동 수에 대비하면 100명 중 1.3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이 높은 수치이다(헤이그국제사업회의, 2015; 이상정·류정희·임정미·이주연·노혜련·변미희, 2018; 72 재인용).

또한, 한국은 코로나19의 전 세계적 위기와 합계출산율 세계 최하위 국가라는 불명예속에서도 2020년 해외입양 아동 수에서 세계 3위(266명)를 기록하였다. 이미 경제 대국으로 인정받은 2020년대에도 한국이 여전히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것은 전쟁과 빈곤, 재난과 같은 대다수 국가의 해외입양 동기와는 다른 구조적 요인으로 설명이 필요하다. 스웨덴 정부의 전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웨덴에 사는 해외입양인(한국 해외입양인비율이 가장 높음)은 일반인보다 정신건강 등 다양한 차원에서 취약한 상태에 있으며 불법 약물 남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가장 높고(Hjern, 2004). 자살로 인한 사람과자살 시도율도 일반인보다 2~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Broczskoski et al., 2006;

Lindblad & Hjern, 2003).

많은 선행연구는 이미 한국 입양관련 법·제도와 입양절차에 인권침해 요소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이경은, 2017; Lee, 2021; 이윤진 역, 2019;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트렌카), 2019; 신필식, 2020; 김재민, 2016). 아울러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단체뿌리의 집과 공동협력사업으로 추진한 연구에서도 해외입양인 당사자와 입양관계자의목소리를 통해 입양아동의 출생과 가족관계에 관한 기록의 위조나 훼손, 입양이 확정된아동을 다른 아동으로 대체, 입양 아동의 입양 수령국 입국 이후 진행하지 않은 사후관리 등 다양한 인권침해 사례를 통해 입양 수령국에서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하고, 친생가족 찾기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뿌리의집, 2021).

이에 한국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가장 오랜 기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로 서 책임을 다하려면 하루빨리 전반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이 어떠한 유 형의 인권침해를 얼마나 널리 경험하고 있는지를 파악하고,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양인 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조사를 시행해야 한다.

둘째, 한국에서도 최근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기 위해 준비할 필요가 있다. 해외입양에 관한 대표적인 국제협약·인권 규범으로는 '유엔아동권리협약'과 '국제입양에서 아동보호 및 협력에 관한 협약' (이하 헤이그협약)을 들 수 있다. 헤이그협약은 국가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진 모든 입양에 대하여 입양아동의 출생국가(상거소가 있는 국가)가 입양아동 인권 보호에서 일차적책임을 져야 한다는 명시함으로써 입양절차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성을 규정하고 있다. 해외입양 국가조사나 해외입양 사고 발생 이후 일시적으로나 영구적으로 해외입양 중단을 선언한 송출국(sending country) 사례로는 파라과이(1995년), 루마니아(2001년), 콩고(2013년), 러시아(2013년), 케냐(2014년), 인도(2018년), 에티오피아(2018년)가 있다. 해외입양 아동 수령국(receiving country) 중에는 네덜란드(2021년)와 벨기에(2021년), 스위스(2020)가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진행한 결과 여러 인권침해 사례를 발견했고, 벨기에는 2021년부터 2년 동안,

네덜란드는 2021년부터 영구적으로 모든 해외입양을 중단하였다. 그 외에도 스웨덴과 덴마크는 2021년부터 조사를 시작해 현재 진행 중이다. 송출국 중에는 칠레(2018)와 아일랜드(2020)가 조사를 진행해 문서 위조, 친생모에 대한 정서적 학대 등의 인권침해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해외입양 수령국 조사위원회는 조사 결과에 따라 정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 보호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을 인정하고, 적절한 제도적 개선이 즉시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해외입양 중단 선언을 하고, 인권침해를 경험한 해외입양인에게 사과는 물론 치료와 회복을 위한 법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의 추후 대응을 정부에 권고하였다.

최근에는 아동권리, 강제실종 관련 유엔인권조약기구와 아동매매·성착취. 인신매매, 강제실종 관련 특별보고관 등이 불법 해외입양에 관해 공동성명을 발표하였다(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Special Rapporteurs, Independent Experts & Working Groups, 2022). 유엔은 성명서를 통해 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하고, 심각한 범죄가 되는 불법 입양은 피해자의 생명과 권리에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하는데, 이는 종종 국가 공무원의 관여나 민간기관의 자유재량을 허용하는 국가 정책의 결과로 나타난 아동 보호제도의 결함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법 입양을 막으려면 국가는 첫째, 모든 해외입양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고; 둘째, 해외입양은 국가 내 다른 대안 양육 가능성을 모두 모색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만 검토해야 하고; 셋째, 해외입양을 통한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을 방지해야 하고; 넷째, 해외입양은 자격을 갖춘 관할 당국이 아동의 친생부모, 친인척, 후견인에게 적절한 상담과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후 입양에 동의했을 때만 허가해야 한다는 원칙을 명시하였다. 아울러 이러한 원칙은 해외입양의 목적이 아동을 위해 입양부모를 찾아주는 것이 아니라 입양부모를 위해 아동을 찾아줄 때 위반된다고 규정하였다.

이제 한국도 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할 시점에 와 있다. 그러나 조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먼저 해외입양인의 전반적 인권침해 상황을 좀 더 깊이 파악할 필요가 있 다. 아울러 한국 해외입양인 규모를 고려하면 해외입양인과 입양 관계자에 대한 질적 연구에 그치기보다는 전반적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양적 연구도 함께 진행할 필요가 있다.

셋째,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 파악과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하고 유형화할 필요가 있다. 공식적으로 17만 명에 달하는 한국 해외입양인은 입양된 시기와 국가가 다양하고, 국가 차원에서 공식적 명단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이는 해외입양을 시작한지 70년이 지난 지금도 한국에서는 해외입양의 핵심절차를 거의 다 민간 입양기관에서맡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국가가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호에 책임을 다하지못한 점과 크게 관련이 있다.

최근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할 필요성은 인식하기 시작했지만, 해외입양인을 접촉할 방법이 제한적일 뿐 아니라, 입양 이후 한국을 방문하지 않는 해외입양인은 한국에서 시행하는 입양 관련 연구에 참여할 가능성이 낮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다양한 국적과 언어 때문에 조사 진행에도 어려움이존재하므로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는 데한계가 있다.

앞서 언급한 뿌리의집(2021) 연구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를 조사한 유일한 연구이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 관계자의 개별 면접을 통해 해외입양인 어떤 인권침해 경험을 했고, 해외입양절차의 문제와 한계를 밝히는 데 크게 이바지함으로써 국가 차원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 하였다. 하지만, 공식적인 해외입양인 수가 17만 명에 이르는 현시점에서 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10명에 지나지 않았고,연구 설계와 연구참여자 선정,연구 질문 문항 선정 등에서 해외입양인 당사자와 국내외입양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국가와 입양시기,인권피해 경험의범위와 다양성 등을 포괄하지 못했다는 점은 추후 연구에서 개선해야할 과제로 보인다.이에 최장기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 해외입양에 대해 해외입양절차에 관여한

이에 최상기간 최대 규모로 이루어진 한국 해외입앙에 대해 해외입앙설차에 판여한 정부와 입양기관 등 관련 조직과 개인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에 대한 좀 더 체계적이고 폭넓은 조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해외입양인 개인이 경험한 인권침해 사례를 축적함으로써 해외입양과 관련된 국제인권기준과 지침에 따른 해외입 양인의 인권침해 양상의 유형화 작업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인 인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인권침해 유형에 따라 좀 더 적합한 치유와 회복 방안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해외입양제도의 입양인 인권보호 의식 변화와 시기별 법 제도의 한계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 해외입양제도와 절차는 보호대상아동을 해외 가정에 입양 보내는 것이 매우 긍정적인 아동보호 방안이라는 전제 아래 이루어져 왔으므로 특히 입양 적격성 판단에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받아 왔다. 이는 핵심 입양절차의 대부분을 기관의 이익 추구에서 자유롭기 어려운 민간 입양기관에 맡겨 진행하는 현실 때문에 더욱더 심각한 결과로 이어졌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을 통해 입양절차에 입양의 최종허가를 가정법원의 책임으로 부여하면서 처음으로 공적 차원의 개입이 공식화되었다. 또한 2021년 7월부터는 친생부모 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하게 됨으로써 민간입양기관이 담당했던 입양아동의 적격성 판단을 공공에서 하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입양을 고려하던 친생부모 중 양육을 선택하는 비율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는 현상으로 이어지고 있다. 이처럼 국내 해외입양 관련 법과 제도의 변천은 입양아동의 인권 보호나 침해 양상의 변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국내 해외입양 관련법과 제도의 변천 과정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입양아동의 인권상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해외입양인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와 해외 국가 조사사례에 대한 검토를 통해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개선과 피해 입양인 지원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의 실태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인에 대한 인권침해를 발견하고, 그 과정에서 국가가 인권 보장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거나, 국가가 마련한 해외입양제도와 절차의 문제로 인한 피해를 확인할 경우, 한국 정부는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구를 통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를 다수 발견하고, 인권침해 상황이 해외입양제도와 관련이 있을 때는 정부는 이미 다른 국가에서 수행한 국가조사위원회 방식을 참조해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양인 인권보장 책임 이행을 위한 조사를 시행하고, 인권침해 피해자의 회복과 치유를 위한 보상, 사과 등을 포함한 해외입양인 인권개선의 필요

성과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따라서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의 국가조사사례를 면밀히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할 때 어떤 방식으로 어떤 측면을 연구하는 것이 바람 직한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실태를 파악한 후에는 어떤 방식으로 인권침해 상황에 대응하는 것이 타당한지 결정하는 데도 해외의 국가조사 보고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크게 도움이 될 것이다.

2)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 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세부 목적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협약·인권 규범을 확인하고, 입양아동 인권 보호에서 국가 가지는 책임 수준을 파악한다.

둘째,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의 국가조사사례의 조사방법과 결과, 추후 대응 방식을 파악한다.

셋째, 국내 해외입양제도 변천과 입양아동 인권 보호 의식의 변화, 시기별 해외입양 법·제도의 한계와 문제점을 검토한다.

넷째, 한국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인권상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인권침해 사례를 수집 하며, 사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양상을 유형화한다.

다섯째,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해외입양 제도 간 관련성을 분석한다.

여섯째, 추후 국가 차원의 해외입양인 인권보장 책임 이행을 위한 정부의 후속적 개입, 피해의 치유, 해외입양인 인권개선의 필요성과 방안을 제시한다.

2. 선행연구

1) 해외입양 실태와 증감 추이

해외입양은 한국전쟁 직후 미국 등 외국 군인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혼혈아동을 법률적 기반 없이 임시구호의 형식으로 해외로 보내는 방편으로 시작하였고(전홍기혜, 2021), 1961년에 이르러서야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통해 해외입양 관련 법률이 마련되었다(원영희, 1990). 현대적 의미의 입양이 시작한 1953년부터 2020년 말 현재까지 한국에서 국내외로 입양된 아동 중 해외입양 아동이 차지하는 비율은 약 60%로 한국입양아동 10명 중 6명은 해외로 입양 간 것을 알 수 있다(이상정 외, 2018; 보건복지부, 2021).

1960년대 중반까지 연간 약 4백 명 머물렀던 해외입양 아동 수는 1960년대 후반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해 매년 수천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가장 많았던 시기는 놀랍게도 경제적으로 가장 빨리 성장하던 1980년대로 88 올림픽을 앞둔 1985년에는 출생 아동 100명 중 1.3명(총 8.837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는데, 이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높은 수치이다(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5, 이상정 외, 2018:72 재인용).

1990년부터는 해외입양 억제를 위한 노력을 시작했는데 이는 해외입양에 대한 부정적 여론과 비판 때문이었다. 그래도 2006년까지는 2천 명대 수준을 유지하다가 2007년 부터 1천 명대로 줄고, 2013년 입양특례법이 본격적으로 발효되면서 200명대로 줄었다가 2017년에는 다시 398명으로 증가했었는데, 2020년에 232명으로 다시 줄었다(중앙입양원, 2016, 이상정 외, 2018: 72 재인용; e-나라지표, 2022).

입양특례법 이후 해외입양 아동 수는 예전에 비해 크게 줄었지만, 한국은 지금까지 해외입양 아동 송출국 중 2020년 말 현재 거의 17만 명을 해외로 입양 보냄으로써 지금 까지 세계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국가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다. 송출국 중 꽤 오랜 기간 해외입양 아동 수 1위를 차지해 왔던 중국도 2020년 말 현재 총 해외입

양 아동 약 15만 명 수준에 머물고 있다(Selman, 2014; 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their Family-ISS, 2021).

한국은 2017년 말 현재 합계출산율이 세계 최저 수준인 1.05¹⁾으로 2017년 출생한 아동은 35만 771명에 지나지 않지만, 2017년 말 현재 여전히 세계에서 5번째로 많은 아동을 국외로 입양 보내는 나라로 아동 1,000명당 1.1명을 입양 보내왔다. 중국은 수치 자체만을 보면 2017년 말 현재 국외로 가장 많은 아동 2,212명(Selman, 2022)을 입양 보냈지만, 합계출산률이 1.24이고 2017년 태어난 아동이 1,723만 명(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8)으로 1,000명당 0.13명을 해외로 입양 보냈는데, 이는 한국보다 8배 이상 적은 수치이다.

최근 급속도로 해외입양 아동 수를 줄여온 중국은 2000년 말 현재 아동 250명만을 해외로 입양 보내 세계 해외입양 아동 수 1위 자리를 콜롬비아(387명)에 내주고 5위에 머물렀는데, 한국은 코로나 위기에도 같은 해 해외입양 아동 수가 266명에 달해 우크라이나(277명) 다음으로 세계 3위를 차지하였다. 이는 합계 출산률이 2020년 말 현재 0.84로 감소해 출생아동 수가 27만 2천 3백 명으로 전년 대비 10% 준 상태에서 나타난 현상이라 더욱더 놀랍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시작한 1953년부터 2017년 말 현재까지 해외로 입양 간 아동수를 국가별로 살펴보면 그중 약 67%가 미국으로 입양 갔다. 그다음으로 프랑스(6.6%), 스웨덴(5.8%), 덴마크(5.2%), 노르웨이(3.9%), 네덜란드(2.4%), 벨지움 (2.2%), 호주(2.0%) 등이 뒤를 이었다(김아람, 2009:36, 중앙입양원, 2016, 이상정 외, 2018: 73 재인용).

2) 해외입양인의 정체성과 심리사회적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대부분 해외입양인의 정체성(박인선, 1993; 안재진·권지성, 2012; 이미선, 2002)이나 심리사회적 발달과 적응(김경옥, 2009;

¹⁾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박미정·이숙영, 2007; 허남순, 1997; 홍진향, 2009), 모국방문이나 뿌리찾기, 국내정착에 관한 연구(고혜연·임영식, 2008; 박미정·이미선·고혜연, 2011)에 집중되었다.

정체성 관련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을 디아스포라로 이해할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고, 해외입양인을 초국가적 경계인이라는 특징을 지닌 사람으로 이해하고 이들의 필요에 기초한 정책을 모색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장윤수, 2008; 임영언·임채완, 2012; 유혜량, 2015). 특히 해외입양인의 적응과 정체성에서 중요한 요인은 백인이 주류인 사회에서 인종적으로 소수자로서 겪는 정체성 혼란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미선, 2002). 한편해외입양인이 한국문화와 접촉을 많이 하면 할수록 민족정체성이 더 높고, 사회적 고립감은 더 낮았고, 민족정체감 수준은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이 미국과 유럽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보다 높았고, 미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은 유럽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혜연·임영식, 2005).

뿌리찾기와 관련해서는 한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거의 모두(96.8%)가 입양인 자신과 입양부모의 인구 사회적 특성, 더 나아가 입양부모와의 관계 수준에 상관없이 뿌리찾기 욕구를 보였을 뿐 아니라 나이가 20대 후반에 속한 입양인은 10명 6명 이상이 직접 시도해 본 경험이 있었다(박인선, 1993). 한편 뿌리찾기 시도 양상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이 정체성 위기를 경험하면 할수록, 입양당시 나이가 많으면 많을 수록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았으며, 연령별로는 30대 초반에 뿌리찾기를 시도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안재진·권지성, 2010).

스웨덴은 유럽에서 해외입양인이 가장 많고 전 세계에서 인구 1인당 해외입양인이 가장 많은 국가(Hubinette, 2003)이기도 한데, 현재 약 4만 8천명의 해외입양인 중 약 9,783명이 1957년과 2022년 사이에 한국에서 입양 간 사람이다(Adoption Centrum, 2022abc; Hong, 2006). 이런 이유로 스웨덴에서는 해외입양인을 일반 인구와 비교한 연구가 많은 편이다. 지금까지 이루어진 연구를 보면 스웨덴의 해외입양인은 같은 코호트의 일반 인구보다 자살로 인한 사망과 자살 시도가 2~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Broczskoski et al., 2006; Lindblad, Hjern, 2003), 해외입양인을 자살 고위험군으로 보고 있다(Hjern, Allebeck, 2002). 전국 차원의 코호트 연구에서도 해외입양인은 불법

약물남용으로 병원에 입원할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Hjern, 2004). 한편 한국 해외입양인은 전체 스웨덴 평균보다는 학교 성적이 좋았지만, 형제자매 코호트보다는 성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Vinnerljung et al., 2010). 입양 관련 학자들은 이러한 부정적 연구결과가 해외입양인이 스웨덴의 일반 인구보다 삶에서 더 복합적인 부담감을 안고 살기 때문에 나타났을 것으로 추론한다.

3) 해외입양체계와 절차, 제도의 문제에 관한 문헌과 연구

해외입양과 관련된 연구의 또 다른 범주로는 입양체계와 절차, 제도에 관한 연구를 들 수 있다. 해외입양 관련 제도 연구는 해외입양 감축과 국내입양 활성화 정책(김유경·임성은, 2011)과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 등 해외입양 관련 국제인권규범을 기준으로 한국 입양제도와 체계를 검토한 연구(노충래, 2012; 신윤정·백선희·임지영, 2017; 이경은, 2017)가 주를 이룬다.

노충래(2012)는 2011년 개정한 입양특례법의 시행을 앞둔 시점에서 헤이그협약의 내용을 살펴보고, 한국의 입양 관련 제도와 정책을 헤이그협약에 부합하게 하려면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를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원가족 보존과 국내입양을 위해 충분히 노력한 후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야 하는 보충성 원칙을 지키기위해 국내 아동보호의 상황을 개선해 왔는지 묻고 있고, 민간입양기관이 고수하는 해외입양비용 비공개 원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입양아동 송출국의 입양관련 잘못된 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할 유능한 국제법 전문가가 필요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신윤정 외(2017)는 헤이그협약 가입에 따라 기대되는 국가의 역할 강화에 부응하는 입양지원 체계 개편과 정부 지원 방안을 모색하면서 입양지원체계 개편을 위한 기본 방향으로 입양 업무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입양대상 아동과 입양부모 적합성 판정, 결연, 입양 허가 등을 공공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하고 입양가족 사후서비스를 위한 입양부모 지원업무만 민간기관에서 역할을 하도록 제시하였다. 현재 거의 모든 입양 업무가 민간 입양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입양대상 아동

과 인력, 입양 비용, 수입·지출을 포함한 입양업무 현황을 파악하려면 입양기관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연구는 한국 민간 입양기관에서 입양업무를 어떻게 진행하는지를 분석할 수 있었던 유일무이한 연구이다. 이 연구에서는 연구대상이 되었던 4대 입양기관이 같은 입양업무를 하고 있지만, 기관별로 인력 운영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였고, 국가에서 구축한 동일한 입양체계에서 입양업무가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성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아동 1인당 비용 추계 결과, 입양대상 아동에게 지출하는 비용은 다른 보호대상아동에 지출하는 비용보다 상당히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나 헤이그협약에서 규정하는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 방지를 위해 입양기관의 입양절차에 소요되는 비용의 합리성과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이경은(2017)은 국제법상 해외입양에서 아동권리를 어떻게 보호하고 있는지를 중심으 로 살펴봄으로써 그동안 다양한 국제인권과 국제사법 기구에서 개발한 아동의 해외입양 에 대한 국제규범 내용을 분석한 결과 한국의 입양관련 법제와 국제규범 간 괴리는 입양 법제 뿐 아니라, 출생신고 제도, 친권개입에 대한 근거와 절차, 후견인 지정 절차 등 가 족법과 아동보호법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한 국은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자국 아동의 권리 보호를 위해 적합한 수준의 협약 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시급한 과제를 안고 있음을 강조하였다. 한편, Lee(2021)는 이경 은(2017) 연구를 영어로 번역하면서 내용을 수정 보완한 것인데, 한국에서는 해외입양 이 가난한 고아에게 가정을 찾아주는 역할을 했다고 널리 알려졌지만, 관련법을 역사적 으로 고찰해 보면 오히려 정부가 서양으로 보낼 고아를 만들어내기 위해 합동으로 혼신 을 다해 노력했음을 보여준다는 점을 지적한다. 더 나아가, 이러한 법적 책략은 해외입 양 아동 수령국의 법과 상호작용했는데, 특히 미국에서는 해외입양을 촉진하고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해외입양 아동을 법적으로 고아로 범주화하였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된 법이 국제와 국내 차원에서 개선되기는 했지만, 지금까지도 이러한 관습의 일부는 한국 의 해외입양 관련법과 제도, 절차에 여전히 남아있다고 하였다. 서문에서는 주요 해외입 양 수령국이 다른 국가와의 외교정책에서는 인권증진을 촉구하고, 국제 차원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데 필요한 막강한 영향력과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막상 수많은 입양인의

기원을 알 권리(right to origins)가 침해당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있었음을 비판하였다. 아울러 최근 몇몇 유럽의 수령국에서 과거 해외입양 관행의 진실을 밝히려는 조사를 시작하고 있는데, 이러한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려면 송출국에서도 같은 형태와 수준의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하면서,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이미 많은 사람이 알고 있는 내용을 선언하는 데 자원과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이러한지의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에 집중해야 함을 역설하였다.

한국에서는 입양사업을 아동복지법이 아닌 입양특례법을 별도로 제정해서 관장하는 등 전체 아동보호체계와 분리된 섬처럼 간주하고 운영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상정 외(2018)의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는 처음으로 전체 아동보호체계 안에 입양체계를 포함한 연구로 의미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한국 입양체계의 문제점을 첫째, 전체 아동보호체계와 분리해서 운영하는 문제; 둘째, 거의 모든 입양업무가 민간기관 중심으로이루어지는 입양아동보호의 공적 책임성 부재의 문제; 셋째, 입양을 관장하는 법이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문제로 나누어 설명하면서, 무엇보다 공공에서핵심 입양업무를 맡아서 수행할 필요성을 강조한다.

구영은(2021)은 한국과 스웨덴 간 초기 해외입양의 역사적 기술을 통해 해외입양과 냉전지정학(Cold War geopolitics)의 관계를 보여주었다. 스웨덴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해외입양을 위해 한국과 협력관계를 맺은 국가이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1970년과 1974년 두 차례에 걸쳐 스웨덴으로의 해외입양을 중단한다. 두 차례의 해외입양 중단은 모두스웨덴이 북한 정부와도 맺고 있던 복잡한 지정학적 관계 때문이었다. 스웨덴을 포함한 북유럽은 당시 남한과 북한 사이에서 중요한 이념전장(ideological battleground)이었고, 남한은 북한으로부터 아이들을 해외에 팔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었다. 동시에 스웨덴은 내부적으로 난임 문제가 있는 사람에게 약속한 부모 신분의 보장(guarantee of parenthood)이라는 정치적 문제를 한국의 해외입양을 통해 풀고자 했으므로 한국 해외입양의 중단은 큰 문제를 야기하였다. 결국 스웨덴은 유엔 총회에서 한국에 유리한 투표를 할 것을 제안하면서 한국과 스웨덴 간 해외입양은 재개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역사는 남한과 북한 간 정치적 긴장은 남한에서 가장 취약한 집단, 즉 해외입양 아동을

통해 풀어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해외입양이 결국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노골적으로 드러내 준다.

나이젤 켄트웰(Nigel Ketwell)은 32년간 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 작성, 유엔총회의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작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등 국가 간 입양에서 아동인권 보호와 관련된 문제를 32년 이상 다루어온 전문가로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이익'(뿌리의집 역, 2022)을 저술하였다. 이 문헌에서는 해외입양에서 아동 최선의이익을 존중하거나 침해하는 조건이 되는 정책, 절차, 의사결정, 관행은 무엇인지에 관해 답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이익의 개념을 살펴보고, 이 원칙이 아동과 관련된 인권법에서어떻게 광범위하고도 중요한 요소가 되었는지를 검토하고, 입양이라는 특수성에 관한한 아동 최선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 되어야 하는 이유와 고려해야할 쟁점,실현 방안 등을 살펴봄으로써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는 데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제시해준다. 이 책에서 저자는 한국과 같은 국가에서해외입양을 장기적으로 지속하는 이유는 아동 송출국의 관련 법제의 취약성과 그 취약성을 아동 수령국이 외면하기 때문이라고한다. 그리고 그러한 문제는 송출국과 수령국이 공적 체계를 가동해해외입양 관련 모든 법제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에 따라 정비하고 실천에 옮길 때만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4)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관련 문헌과 연구

Sarri, Baik, Bombyk(1998)은 직접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관해 언급하지는 않고 있다. 하지만, 한국에서 원래 6.25 전쟁 이후 발생한 고아나 유기된 혼혈아동의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목표로 시작한 해외입양이 그 문제가 없어졌을 뿐 아니라 경제가크게 발전한 후에도 계속해서 더 많이 이루어진 이유를 분석하면서 간접적으로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을 민간기관에서 진행할때는 기관 자체의 조직 유지를 위해 재정과 자원을 확보해야 하는 부담이 있으므로 기관의 사업이나 프로그램이 시작 당시 목표를 이미 달성했더라도 기관에 재정적 이득을 가

져오는 한 종종 해당 사업을 지속하는 '목표 망각(goal displacement)' 현상이 일어난 다는 점을 지적한다. 한국이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이유는 그것이 입양기관 행정가의 조직 유지 욕구를 충족해 주고, 정부가 국내에서 위기 아동과 가족을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을 구축할 책임에서 벗어나게 해 줄뿐 아니라 미국에 한국 아동을 입양하려는 사람이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Pelton, 1988, Sarri et al., 1998:90 재인용). 실제로 입양기관에서는 해외입양을 가능한 한 더 쉽게 진행하려고 아동의 거짓 서류를 만들거나 (박인선, 1997), 민간 입양기관 간 아동 확보를 위한 경쟁이 이루어져 정부가 입양아동의 인수 경쟁을 하지 못하게 공문을 전달하고, 기관들은 '아동확보를 위한 홍보 및 섭외금지'를 결의해야 하는 일까지 있었다(원영희, 1990).

Oh(2015)의 책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이은진 역, 2019)에서는 세계 2차 대전 이후 똑같이 미군에게서 태어난 혼혈아동 을 치울 목적으로 해외입양을 시작한 독일이나 일본과는 달리 한국은 어떤 연유로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을 대중화할 수 있었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책에서는 그 주요 이유로 첫째, '대리입양'을 통해 입양부모가 한국에 오지 않아도 아기를 입양할 수 있었고, 둘 째, '아기 수송용 전세기'를 띄워 한 번에 많은 아기를 미국으로 보낸 것을 들고 있다. 그 배후에는 해외입양 사업의 아버지라 할 수 있는 해리 홀트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는 신앙심과 애국심이 합쳐진 강력한 이데올로기로 무장한 사람으로 1961년 미국으로 한 국 아동의 대규모 이민이 가능하게 해 준 미국 이민법 개정을 끌어내는 데 큰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한국은 1953년에 해외입양을 처음 시작한 후 2011년에 개정한 입양특 례법이 발효되기 전까지는 국외 입양부모가 아이를 직접 보지도 않고 서류로만 입양해 서 해당 국가의 공항까지 호송인이 편리하게 배달해 주는 '대리입양(proxy adoption)' (우편 주문 아동이라고 비판받기도 함)의 형식을 지속했다. 이러한 방식은 초기부터 아 동의 이익에 반하는 입양 형태로 입양전문가 집단이 강력히 반대하고 우려를 표현했었 다(Oh, 2015). 그러나 이 방법은 입양기관이나 예비 입양부모의 입장에서는 매우 편리 하고도 효율적이었기에 60년간 지속했던 것이고, 이는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 저해요인이 되었다.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트렌카)(2019)은 '아이들 파는 나라'라는 책을 통해 한국 해외입양의 실태를 면밀히 분석함으로써, 아동의 인권을 뒤로한 채 경제발전을 이유로 해외입양을 주도해온 국가의 역할을 고발하고 있다. 한해 수천 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가던 1970~1980년대는 해외입양을 위해 '고아'가 만들어지던 때였다고 한다. 실제로는고아도 기아도 아니었던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이름도 약간 바꾸고 서류상 '고아'로 만드는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입양특례법을 개정한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따른 단독 호적(고아 호적) 발급 숫자와 해외입양 아동 수가놀랍도록 비슷하다는 것을 그 증거로 제시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해외입양에서 입양 규모를 결정짓는 것은 송출국에서 가정을 필요로 하는 아동 수가 아니라 수령국에서 입양을 원하는 부모 수였고, 이러한 수요에 부응하기위해 한국에서 가장 취약한 '어머니'의 자녀가 입양대상이 되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해외입양을 보낸 '어머니'중 다수는 1950~960년대 외국 군부대 주변 유흥업소에서일하던 기지촌 여성, 1970~198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상경해공장에서 일하던 젊은 여성, 1980년대 이후 다양한 이유로 미혼모가 된 여성이라는 것이다(김호수, 2015, 전홍기혜 외, 2019: 49 재인용).

이 책은 한국은 해외입양의 제도화를 통해 자국 아동을 지원하고 보호하는 비용을 절 감하는 동시에 서구 입양부모에게서 입양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 물질적 이득뿐 아니라 '정상가족' 규범에서 벗어난 '어머니'의 자녀를 제거함으로써 단일민족과 정상가족이라는 유교적 가부장제에 기반을 둔 이데올로기를 유지하는 이득을 꾀했다고 비판한다. 또한, 미국에서 해외입양 부모의 입양 동기로는 '인도적, 종교적 동기'가 첫 번째였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미국 내 인종 간 입양이 금기인 상황에서 중산층 기독교 가정에서는 한국 아동의 입양을 통해 기독교 신념과 인도주의, 다문화 인종주의를 실현하고자 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 더 나아가 홀트는 2013년 초까지 60여 년간 한국에 토착화된 대리입양 제도를 입양을 원하는 미국 부모의 수요 충족을 위해 창안했는데, 외국의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의 출생 국가에 오지 않고도 대리인이나 대리하는 기관이 아동의 출생 국가에서 모든 절차를 대신 처리하고 아동을 입양국의 공항에서 입양부모에게 인수인계하

는 어느 나라에도 유례가 없는 유일무이한 형식의 해외입양이었음을 강조한다. 이러한 제도는 인종 간 입양을 희망하는 부모가 건강한 아이를 가장 쉽게 입양하는 방법을 제공 해 줬을 뿐 아니라, 입양의 모든 절차를 입양기관과 개인 간 계약 형태로 체결하고 성립 하게 함으로써 실제로는 국가가 주도하는 해외입양을 사적 영역에 머물게 하고,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일부 친생부모와 입양부모의 책임으로 돌릴 수 있는 근거로 남게 했다고 하였다. 그 외에도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경제적 이득, 아동보호 비용 절감, 인구 통제, 고아와 기아 등의 사회적 문제해결 등을 위해 활용한 근거와 사례 등을 제시하면서 한국 사회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은 인권의 주체가 아니었음은 물론 복지 대상도 아니었음을 적시하고 있다. 이렇게 해외로 보내진 많은 입양인은 국가가 주도한 해외입양 사업의 피해자로 정체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구심을 품고 살뿐 아니라 물리적인 폭력과 학대. 입양 국가의 행정적. 제도적 문제로 국가에서 추방되는 등 고통 스러운 삶을 살았고, 현재도 그런 삶을 사는 입양인이 많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자기 정체성을 알 해외입양인의 권리보다는 친부모의 사생활 보호를 우선시하는 제도와 입양 실천, 해외입양을 보낼 때 서류를 간소화하기 위해 거짓으로 기아 호적을 만드는 관행, ㅎ더 나아가 입양인의 개인 정보를 사유 재산으로 여기는 입양기관의 행태가 이들을 더 욱 힘들게 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다.

김재민(2016)은 해외입양을 표준에서 벗어난 '소수자'를 해결하는 국가의 효율적인 통치수단으로 활용하였음을 밝히고자 해외입양의 입양대상이 되는 아동의 사회적 위치 에 주목하였다.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해외입양 구조는 결과적으로 소수자를 관리하 는 방식이었고, 국가는 그 흐름에서 적극적으로 '정상'과 '비정상'을 구별해 소수자를 양 산하고 차별과 편견에 기반해 인권을 침해한 주요 행위자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의 소수자에 대한 지배를 영속화하고자 했던 양상을 3시기(형성-촉진-전환)로 구분해 국가 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해외입양은 한국사회의 유교적 관습, 순혈 주의적 전통, 복음주의적 기독교의 보수성이 결합한 위계적 인종주의가 관통해 가족주 의를 방어하기 위한 흐름으로 전개되는데, 국가는 '전략적' 입장을 취함으로써 시기적 상황에 따라 적극적으로 개입하거나 방임하였다. 해외입양은 정부 수립 이후 '일국일민 주의'에 기초한 사회를 구성하는 목표의 실현을 위해 혼혈아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출발하였고 현재까지 '정상가족'의 범주에서 벗어난 이질적인 존재를 추방해 표준 사회를 구성하는 국가 주도의 '정상국가' 만들기 프로젝트의 일부였다. 입양정책과 제도도 해외입양을 기본 축으로 하며 국가의 이해관계에 따라 변화하였다. 1950년대는 긴급구호 수단으로 해외입양을 선택했더라도 경제발전이 진행된 1970년대 이후 급증해, 1980년대 정점에 도달한 상황을 보면 아동복리는 명목상 취해진 구호일 뿐이었으며 국가는 인권의 수호자로서 해야 할 역할을 방기하였다. 해외입양은 명목상으로는 전쟁고아의 긴급구호, 보호대상아동의 복리 등의 가치로 표방했지만, 사회적 규범을 강화하려는 의도가 있었고, 사회복지 재정을 절감했을 뿐 아니라 외화획득의 수단으로 활용함으로써 해외입양인뿐 아니라 친생부모 등 다른 관련자의 인권을 침해하였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에 접근하려면 진실을 규명할 책임이 있는 국가의 역할을 인권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하고 해외입양의 당사자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입양부모, 더 나아가 입양관계자의 목소리를 통해 인권 의제로 확장할필요성을 환기하였다.

신필식(2020)은 한국 해외입양이 가장 많았던 196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해외입양 증감을 입양을 보낸 친생모의 경험을 통해 설명하였다. 정부가 보관하는 자료나 기록, 신문 기사 등을 분석한 결과 친생모 대부분은 가부장적인 가족법 조건에서 자신들의 자녀를 돌보고 싶었지만, 지원제도가 없었고 입양절차를 통해 다양한 인권침해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생모와 가족이 겪는 인권침해 상황으로는 첫째, 아이를 친생모가 직접 돌보지 못해 친척이나 지인에게 잠시 맡겼으나 친생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입양 보내 버린 경우. 둘째, 자녀를 잃어버린 뒤 전국으로 수소문한 뒤에 자녀가 해외로입양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셋째, 아동복지시설에 맡기고 난 후 자녀를 위해 해외입양에 동의할 것을 설득 또는 강요당한 경우. 입양동의 후 자녀를 양육할 의사를 보였지만, 어떤 법 규정에도 없는 아동의 보호 기간에 해당하는 양육비를 요구하고 입양의사 번복이 불가능하다며 해외입양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해 자녀가 해외로 입양된 경우. 다섯째, 미혼모 보호시설에 입양을 조건으로 입소를 허가받고, 출산 전 입양 동의를 받거나,

생략하고 입양절차를 진행하고, 출산 직후 입양을 보낸 경우 등이 있었다. 또한, 많은 친생모와 가족의 기록이 입양과정에서 위조, 삭제, 훼손 또는 교체되어 해외입양인이 친생가족 찾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많았고, 해외입양인은 종종 해외입양 과정에서 일가창립으로 새로운 '고아호적'을 발급받아 원가족에 관한 기록이 있는지를 전혀 알수 없는 채 입양되곤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모와 가족의 인권침해는 다시 해외입양인이자기 기록과 정체성 회복, 가족찾기 과정에서 훼손되는 인권상황과 연결되고 있음을 알수 있었다.

지금까지 한국에서 직접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인권침해를 실증적으로 연구한 것은 2021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일부로 뿌리의집(2021)에서 시행한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에 관한 탐색적 연구가 유일하다. 이 연구는 미국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 10명과 해외입양 관계자 5명에 대한 개별 면접을 통해 지금껏 의제화하지 못했던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양상과 그로 인한고통을 한국 사회에 전할 수 있었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목소리를 통해 해외입양절차에 어떤 문제와 한계가 존재했고,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상황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밝힐 수 있었다. 이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1964년부터 1984년 사이에 미국, 캐나다, 네덜란드 프랑스, 스위스로 입양 되었는데, 불명확한 입양과정과 제삼자에 의한 해외입양절차의 개시, 고아호적 창설과 신분변경, 입양 이후 사후관리의 부재, 입양부모의 부적격성, 시민권 취득 관련 문제, 모국방문과 가족찾기의 어려움, 자기기록에 대한 접근 제한 등의 인권침해 사례를 언급하였다. 아울러 이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절차에 관한 국내 법제와 국제인권규범을 고찰을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와 해외입양 제도 간 관계를 검토할 수 있었다.

5) 유엔과 국가 차원의 정책과 조사연구 보고서

불법 입양의 문제에 대한 조사와 조처의 시급성은 최근 입양관련 학자들이 거론하는 핵심 이슈 중 하나이다. 최초 해외입양에 관한 공식 국제보고서 중 하나는 유니세프

(1998)가 발표했는데, 세 가지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였다. 첫째, 해외입양정책과 실천에 변화를 꾀할 때 매우 의문스러운 정치적. 경제적 압력이 가해지는 문제; 둘째, 해외입양을 위해 불법적으로 아동을 획득하는 문제; 셋째, 입양절차를 불법적으로 피해 가는 문제이다.

2010년 후반부터는 국가 차원에서 해외입양절차와 실천에 관해 조사하는 입양아동수령국과 송출국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같은 국가에서는 조사에 대한 요청을 처음 한 사람이 해외입양인 당사자였는데, 이들은 자신의 입양이 불법으로 또는 위조한 문서로 이루어졌음을 의심하였다(Ankestyrelsen, 2021a; 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2021a). 칠레에서는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입양서류를 공유하면서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이 조사를 진행하는 데 특히 도움이 된 것으로 나타났다(Carroza, 2018). 벨기에에서는 에티오피아의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에 관한 뉴스가 연이어 보도되면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다(Expertenpanel Inzake Interlandelijke Adoptie, 2021).

국가별로 조사한 시기는 다르지만, 조사 결과는 놀랍게도 비슷하다. 종종 수령국의 관계자는 인권침해에 관해 알고 있었고, 때로는 인권침해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고, 대부분은 이러한 실천을 알고도 침묵하는 입장을 취하였다(Ankestyrelsen, 2021a; 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2021a; Schweizerischen Bundesrates, 1999). 이러한 "인권침해는 거의 영구적인 구조적 문제"였다(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2021a: 15).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조사 사례절차와 결과에 대한 분석은 한국에도 시사하는 바와 크기 때문에 좀 더 깊이 있는 고찰이 필요하다. 따라서 관련 내용은 본 보고서의 3장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고자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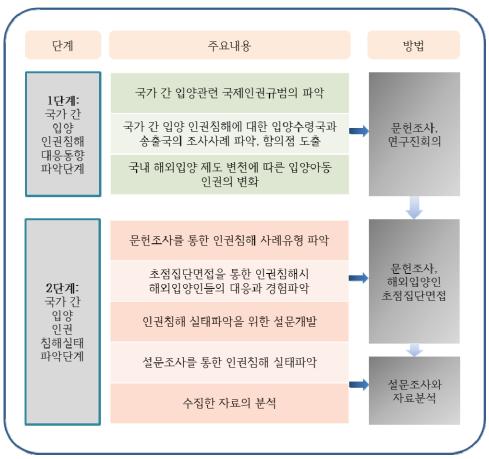
2021년에는 아동정체성보호(Child Identity Protection)이라는 비영리 국제단체가 아동의 이름과 국적,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었는데, 이 단체는 아동 정체성 보호와 관련된 국제 기준과 지역 기준의 온전한 존중을 보장할 수 있도록 국가와 유엔기관, 국제기구와 관련 당사자들과 협력한다(Child Identity Protection, 2022a). 이 단체는 간략한 정책보고서를 통해 해외입양에서는 아

동 정체성에 대한 권리와 관련해 어떤 이슈가 있고, 그 권리를 어떻게 보장해야 하는지 를 정책보고서를 통해 밝히고 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유엔아동권리협약은 8조에서 아동 은 이름과 국가, 가족관계를 포함한 정체성에 대한 권리가 있고, 이 중 한 요소라도 박탈 당했을 때 국가는 아동의 정체성을 신속히 복원해 줄 의무가 있는데, 바로 해외입양의 핵심이 출생 시 부여받은 정체성 즉 이름과 국가와 가족관계의 변경을 수반한다는 점을 적시한다. 해외입양은 아동을 친생부모와 형제자매, 조부모를 포함한 친생가족으로부터 분리할 뿐 아니라 자신이 속한 사회적, 문화적 환경으로부터 단절하는 결과로 이어진다. 아동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이 모든 요소는 해외입양을 통해 크게 변화한다는 것이다. 이 정책보고서는 해외입양과 아동 정체성 권리에 관해 크게 네 개 영역으로 나누어 서술하고 있다. 먼저, 해외입양이 수반하는 가족 관계 관련 아동 정체성의 변경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고로 고려한 상태에서만 정당화될 수 있다고 명시한다. 아동 보호의 방법을 선택할 때는 훈련받은 전문가가 헤이그협약에서 제시하는 모든 법적, 의료·심리 사회적 절차를 거쳐 아동 최선의 이익을 꼼꼼하게 평가하고 결정해서 아동의 개별 욕구 를 가장 잘 충족할 수 있는 대안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가족관계와 관련된 아동 정체성을 변경했을 때는 반드시 기록해서 영구적으로 보관하고 완전한 접근을 보장해야 함을 강조한다. 이는 입양으로 새로운 가족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입양부모를 아동의 출 생증명서에 등록하거나, 입양부모의 요청으로 이름을 바꾸는 등 아동의 정체성에 변화 가 생기기 때문이다. 셋째, 해외입양을 통해 발생하는 서류 위조와 아동 정체성 매매에 관한 문제와 예방의 중요성을 명시한다. 실제로 해외입양 과정에서 수많은 아동의 불법 입양에 따른 정체성의 위조와 매매가 발생했고. 아동 밀매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이 바로 헤이그협약 입안의 촉매제 역할을 했다는 것이다. 보고서에서는 '서류상 고아(paper orphan)'의 이슈를 제일 먼저 제기한 데이빗 스몰린(David Smollin)교수는 아동을 사 기나 강요 또는 돈을 주고 불법으로 입수해 위조된 서류로 '고아'를 만든 다음 '입양아 동'으로 처리할 때 '아동 세탁'이 이루어진다고 진술했음을 언급한다. 또한 중간에서 이 득을 보는 중개자가 원가족에게 아동을 일시적으로 양육시설에 맡기도록 유혹한 다음 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로 입양 보낸 '서류상 고아'의 사례가 매우 많다는 것을 지적하였 다. 마지막으로, 국가는 아동 정체성을 다시 찾아주는 책임을 어떻게 수행해야 하고,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는 어떻게 배상해야 하는지 여러 국가의 사례를 들어 제시해 준다. 예를 들어 캐나다의 케백 주와 스위스는 법을 개정해 입양 기록을 개방해 입양인이 자기 정체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해 주었다는 것이다. 또한 보고서에서는 해외입양 제도가 돈이 관여되어 있거나 기부금과 후원금, 인도주의적 원조 등을 통해 제도 안으로 아동을 유인할 가능성이 있을 때는 아동 최선의 이익은 물론 누구의 이익도 되지못함이 명백하다는 점을 적시하고 있다(Child Identity Protection, 2022b).

지금까지 고찰한 선행연구는 한국의 해외입양이 법과 제도는 물론 절차와 실천 측면에 많은 문제가 있음을 보여준다. 한국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 가장 많은 아동을 해외로보낸 송출국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조사연구를 시행해 아동의 인권을 철저히 보장하는데 필요한 아동보호와 입양체계의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하지만, 지금까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와 관련해 이루어진 연구는 뿌리의집(2021)에서 시행한 연구는 단 하나이다. 이 연구는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상황에 대해 국가의 관심을 환기하는 역할을한 탐색적 연구로 큰 의미가 있지만, 해외입양인이 공식적으로만 17만 명을 넘는 현시점에서 해외입양인과 입양관계자 총 15명만을 대상으로 한 아주 작은 규모의 연구였고,연구의 엄격성을 준수하면서 시행하지 못했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좀더 많은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좀 더 체계적인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실시함으로써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양상과 실태를 좀 더 깊이 파악하고,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와국내 아동보호체계 개선방안,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국가 차원 대응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본 연구의 목적 달성을 위한 과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문헌조 사와 연구진 회의를 통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대응 동향을 파악하는 단계이고, 둘째 는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의 혼합방법론을 활용해 인권침해 실태를 조사하는 단계이다. 각 단계의 주요 내용과 연구 방법을 도식으로 정리하면 [그림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1] 연구단계별 내용과 방법

1)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대응동향 파악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헌조사를 통해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규범, 즉 관련 국제법률, 정책, 입양절차 규정, 비공식적 입양절차 관행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파악하였다. 또한 해외입 양아동 수령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해외입양아동 송출국인 칠레 정부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를 시행한 후 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봄으로써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가 발생할 때 국가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하는지 그 동향을 파악하였다.

2)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실태 파악단계

이 단계에서는 문헌 연구, 질적 조사, 양적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의 실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기존 해외입양 인권실태와 관련된 연구를 조사해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의 양상을 찾아보았다. 그다음 해외입양인, 원가정, 입양기관 관계자와의 개별 심층면접과 초점집단 면접을 통해 해외입양인이 입양 전후 과정에서 실제로 경험한 인권침해 양상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헌 연구와 질적 조사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인권침해 양상이 얼마나 편만한지 알아보기 위해 온라인설문지를 개발해 양적 조사를 실시하였다.

(1) 윤리적 고려

본 연구는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실시 이전에 숭실대학교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의 승인을 받았으며, 제시된 윤리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였다. 연구의 윤리성 확보를 위해 연구참여자에게 면접과 설문을 시작하기 전 연구배경과목적, 연구 방법, 참여 시간, 연구 참여의 의의, 연구 내용의 활용,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중도 탈락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 보호 등에 관한 위험 요소와부작용,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와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 등을 질적 조사는 문서와 구두로, 양적 조사는 문서로 안내하고 설명하였다. 참여자는 연구 참여 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접과 설문을 진행하였다.

(2) 질적 조사

① 개요

본 연구의 질적 자료 수집은 초점집단 면접과 개별 심층면접 방법을 통해 이루어졌다. 참여자 모집 후 조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았다. 해외입양인은 당초 5명씩 7개 초점집단 면접을 실시하려고 계획했지만, 실제로 면접을 진행해 보니 좀 더 깊이 있는 내용을 파악하려면 개별면접이 더 바람직하고, 초점집단 면접을 하더라도 최대 3명을 넘지 않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하였다. 이에 해외입양인의 경우, 개별면접은 총 26명, 2~3명으로 구성한 초점 집단면접은 총 13명을 대상으로 대면 또는 온라인으로 진행했다. 아울러 입양인 자녀 1명은 온라인으로 면접했고, 친생부모 5명과 입양관계자 5명도 대면과온라인을 병행해 개별면접을 하였다. 조사기간, 내용, 자료분석 기간 등 질적 조사의 개요는 [표 1]과 같다.

[표 1] 질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1. 해외입양인 (39명)		
	2. 입양인 자녀 (1명)		
	3. 친생부모 (5명)		
	4. 입양기관 관계자 (5명)		
조사방법	1. 대면 또는 온라인 개별면접 37명 (1회 90분~240분 소요)		
	2. 온라인 초점집단 13명 (총 6회, 1회당 120~140분 소요)		
조사기간	2022년 7월 ~ 2022년 10월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설문조사를 통해 파악해야 할 측면		
자료분석기간	<u></u> 2022년 8월 ~ 2022년 11월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에 면접 대상 의뢰를 요청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성인		

② 주요 질문

질적 조사 담당연구원이 주요 질문의 초안을 마련하고 연구진 내에서 피드백을 받아 수정하는 작업을 거쳤다. 해외입양인과 그 자녀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주로 입양 시 인권 보호의 수준이 어떠한지, 혹은 입양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양상이 어떠한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를 위해 네 가지 영역. 즉 한국 내 입양절차 중 아동양육시설과 입양기관 내 인권보호와 침해, 입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수령국과 입양가정 내 인권보호와 침해,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친생부모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된 상황, 입양을 결정하기까지의 상담 과정과 상담 내용, 입양결정에 영향을 준 요인, 입양동의서 작성과 자녀와의 분리 과정, 분리 후 심리적 변화, 입양자녀와의 재회 경험, 입양기록의 적절성과 자녀찾기 과 정에서의 경험, 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와의 면접을 위해서는 입양기관의 업무 흐름과 조직, 해외입양 의뢰과정,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 전 보호, 입양사후관리, 기록관리와 가족찾기, 해외입양 상실무자가 보는 인권문제와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등에 관한 질문을 개발하였다.

해외입양인과 입양인 자녀, 친생부모, 입양기관 관계자를 위한 구체적인 질문은 질적조사결과와 함께 각각 [표 14], [표 16], [표 18]에 제시하였다.

③ 분석방법

면접 내용은 참여자 동의 후 녹음했고, 녹음 자료를 전사해 질적 분석의 기초 자료로 사용했으며, 주제분석방법을 통해 체계적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흐름 파악을 위해 녹음 파일을 반복해서 듣고, 전사한 녹취록을 반복해서 읽었다. 그다음, 연구주제와 관련해 의미 있는 구, 절, 문장을 뽑아 의미 단위로 진술을 나누고 코드를 붙이는 기초코딩 작업을 반복하면서 전체적인 의미로 통합하는 과정을 진행하였다. 연구의 핵심질문이었던 인권침해 양상을 입양의 단계별로 세분화해 분석하였다. 질적자료 분석은 통합방법론 분석 소프트웨어인 MAXQDA2022를 활용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의 진실성과 상호 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공동연구자들이 면접에 함께 참여했고, 소감을 나누었으며, 결과분석 후 그 내용을 함께 공유하고 토의하면서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고자했다.

(3) 양적 조사: 온라인 설문조사

① 개요

본 연구의 양적 자료수집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입양과정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설문지 초안을 마련하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해 수정 작업을 거쳐 설문지를 자체 개발하였다. 해외입양인 단체를 통해 설문을 홍보·소개하고 응답 링크를 배포하였다. 설문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참여에 동의하고 설문에 응답하였다. 온라인 설문 기간은 10월 20일부터 11월 10일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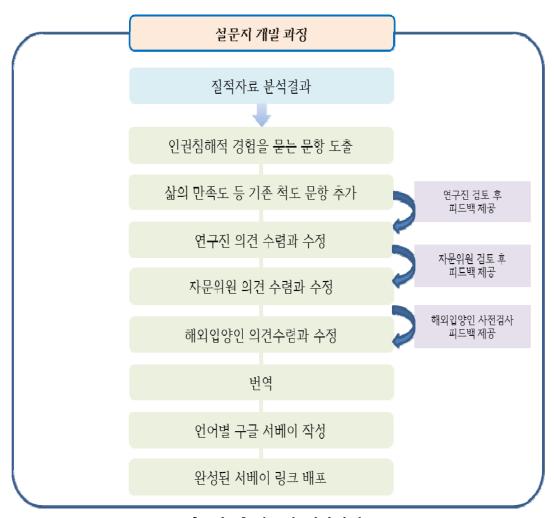
[표 2] 양적 조사 개요

조사대상	해외입양인 658명			
조사도구	자체 개발한 설문에 삶의 만족도 등 기존 척도 추가			
조사방법	비대면 구글서베이 (30분 내외 소요)			
조사기간	2022년 10월 20일 ~ 2022년 11월 10일			
조사내용	인권침해 양상과 경험,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등			
자료분석기간	2022년 11월			
참여자 모집	해외입양인 단체와 온라인 커뮤니티의 설문 조사 홍보와 권유 요청			
참여자격	만18세 이상 해외입양인			

② 설문지 개발과 자료수집

질적 자료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온라인 설문을 개발했다. 먼저 질적 자료의 기초코딩과 통합과정에서 정리한 인권침해 사례를 입양과정의 단계별로 나열하였다. 이렇게 나열한 인권침해 사례를 양적 조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한 설문 문항을 도출하였다. 설문의모든 자체 개발 문항은 액면 타당도를 고려해 개발하였다. 입양과 관련된 설문 이외에도 삶의 만족도를 측정하는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Diener, Larsen, Griffin, 1985), 사회적 지지를 측정하는 Oslo Social Support Scale (Kocalevent, Berg, Beutel, Hinz, Zenger, Härter, Nater, Brähler, 2018), 정신건강 영역을 측정하는 SF-36의 Mental

Health Subscales (Ware, Snow, Kosinski, Gandek, 1993)도 추가하였다. 설문 초안을 본 연구의 공동연구원 내부의 사전검사를 통해 1차 수정한 후 외부 자문위원 8명의 의견을 수렴한 후 2차 수정하고, 해외입양인의 사전검사 후 3차 수정하였다. 이렇게 개발한 영어 설문을 덴마크어, 네덜란드어, 불어, 독어, 이태리어, 노르웨이어, 스웨덴어로 번역해, 총 8개 국어로 된 설문지를 준비하였다(별첨). 번역한 설문은 구글 서베이를 활용해 온라인 응답이 가능하게 했다. 설문지 개발과정은 [그림 2]에 제시한 바와 같다.



[그림 2] 설문지 개발과정

③ 설문지 구성

인권침해 실태 파악을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표 3]에 나타난 바와 같이 총 12개 영역, 136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 영역에 개방형 문항을 추가해 응답자에게 필요시 부연 설명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표 3] 해외입양인 대상 온라인 설문지의 구성

영역	문항수	문항의 출처	
A. 기본 인적사항과 입양관련 기본사항(예: 수령국)	15	자체개발	
B. 국내입양기관과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또는 침해	10	자체개발	
C. 원가정 분리 시 친권포기 관련 또는 아동보호시설	18	 자체개발	
내 발생 가능한 인권침해		사세개월	
D. 입양서류상의 문제	13	자체개발	
E. 입양가정 배치 후 발생가능한 인권침해	16	자체개발	
F. 인종차별 경험	10	 자체개발	
G. 재회경험	16	자체개발	
H.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 의견	7	자체개발	
I. 삶의 만족도	5	Satisfaction with Life	
1. 恕귀 한국도	5	(Diener et al, 1985)	
		Oslo Social Support	
J. 사회적 지지	4	Scale (Kocalevent et	
		al, 2018)	
		SF-36 Mental Health	
K. 정신건강	14	Subscales (Ware et	
		al, 1994)	
L. 배상	8	자체개발	

④ 분석방법

본 연구는 수집한 자료를 SPSS 통계패키지를 이용해 분석하였다. 해외입양인의 인권 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목적이었으므로 주로 빈도분석 등 기술 통계를 활용하였다.

국제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제도

- 1.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2. 요약과 시사점

1. 해외입양에 관한 국제인권규범

1) 유엔아동권리협약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989년 11월 20일 유엔총회에서 채택해 1990년부터 국제인권조약으로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전 세계 196개국이 비준한 국제협약으로 가장 많은 국가가 비준한 국제조약이다. 한국는 1991년 11월 20일에 유엔아동권리협약을 비준하였다. 그에 따라 유엔아동권리협약은 헌법에 의해 체결·공포한 조약으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을 18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아동을 보호 대상이 아니라 권리 주체로 천명한다. 또한 아동을 폭력과 차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참여를 촉진하고,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할 것을 명시한다. 입양과 관련된 조항으로는 입양제도의 운용에서 아동 최상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함을 규정하는 제21조를 꼽을 수 있다.1) 제7조에서는 입양제도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지만,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 성명권, 국적 취득권, 정체성을 알권리를 명시하는데, 이들 권리는 해외입양인에게 가장 중요하지만, 그동안 왜곡된 해외입양 관행에서 가장 심각하게 훼손한 아동의 권리이다.

(1)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는 입양 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권한 있는 관계 당국이 결정해야 하고, 해외입양은 출신국에서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경우 최후의 조치로서만 허용하며, 해외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익 취득을 금지하고 있다. 2013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가 채택한 일반논평 14호의 제38항은 입양과 관련하여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은 한층 더 강화된다고 말하고 있다. 아동 최선의 이익은 단순하게 "최우선" 고려사항이 아니라 "최고의" 고려사항이며 입양에 대한 결정을 내릴 때 결정 적인 요소라고 밝히고 있다.

¹⁾ 한국은 2012년 입양특례법의 개정과 2013년 민법 개정으로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하면서 2017. 8. 31.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가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제21조 (입양)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 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해야 하며 또한,

- 1.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과 절차에 따라,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해 오직 권한 있는 관계당국에 의해서만 결정되어야 한다. 관계당국은 부모나 친척, 법정대리인과 관련된 아동의 법적 신분 및 필요한 경우, 상담 등에 기초한 관계자들의 입양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 여부를 고려하여 입양을 허가하여야 한다.
- 2. 해외입양은 아동이 위탁가정이나 입양가정을 찾지 못했거나 또는 어떤 적절한 방법으로도 아동의 출신국에서 양육될 수 없는 경우, 아동양육의 대안적 수단으로 고려될 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 3. 해외로 입양된 아동도 국내입양 사례에 적용되는 안전보호 기준을 동등하게 향유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 4. 해외입양의 경우, 입양알선이 관계자들에게 부당한 금전적 이익을 주는 결과가 되지 않도록 모든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 5. 적절한 경우 양자 또는 다자간 약정이나 협정을 체결해 본 조항의 목적을 촉진시 키며 이러한 체계 안에서 아동에 대한 해외에서의 입양알선이 관계당국이나 기 관에 의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국은 유엔아동권리협약 제21조 제1항을 오랫동안 유보해왔다가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 2017년에 이르러서야 동조항에 대한 유보를 철회하였다. 입양특례법의 개정은 2012년에, 민법의 개정은 2013년에 이루어졌고, 당시 가장 핵심적인 법 개정 사항 중 하나가 국내외 입양절차에 법원의 허가를 요건으로 도입한 것이었다. 1950년대 전쟁고아에 대한 해외입양을 시작된이래 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2013년까지 약 60여 년간, 해외입양절차는 유엔아동권리협약에서 제시하는 국제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였다.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제5·6차 정부 보고서에 관한 최종견해에서 "법원허가제 도입을 포함하여 입양을 규제하는 조치가 취해진 것은 환영"하나 이전 권고가 모두 이행되지 못한 점을 우려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이 모든 연령대에 있는 아동

을 위한 입양절차에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고. 입양에 있어 미혼모의 자발적인 동의가 의무적일 것"과 "입양기관이 투명하게 운영되고 그들의 활동이 적절히 규제되도록 보장 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2)

입양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실현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 사회는 경험한 바 없다. 아동에게 해외입양만이 유일한 보호 대책이었던 시기에는 가급적 빨리 해외입양부모를 찾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는 것이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 으로 인식되었다. 그 후 경제가 비약적으로 성장했고 더불어 사회복지·아동복지 정책이 확대되었으나, 우리 사회에는 여전히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 지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보호대상 아동을 간이하고 신속하게 해 외입양 보내는 것이 아동에게 최선이라는 인식이 여전히 민간과 공공에 만연해 있고, 이러한 후진적인 인식이 입양제도의 변화와 개선을 더디게 만들고 있다. 입양을 고민하 는 미혼모에게는 우선 아동양육과 관련된 지원 제도와 정보를 제공해 최대한 원가정에 서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치료가 필요하면 의료지원을, 경제적 으로 어려우면 생계 지원을, 일자리가 필요하면 직업 교육과 알선을 지원해야 한다. 친 생부모가 당장 아동을 보호할 수 없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면 원가정 복귀를 전제로 일시 적으로 가정위탁이나 일시보호 등 아동보호체계를 통해 아동을 임시로 보호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절차를 거치고도 친생부모가 도저히 아동을 양육할 수 없을 때만 국내입양을 알아봐야 하고, 해외입양은 최후에 고려해야 하는 것이 아동최선의 이 익에 부합한다.

(2) 출생 등록될 권리·성명권·국적 취득권·정체성을 알 권리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는 아동의 출생 등록될 권리과 성명권, 국적취득권,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협약 협약 제6조에서 규정 하고 있는 권리가 실질적인 생명에 대한 권리에 해당한다면, 제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출생등록될 권리는 '사회적 생명권'에 관한 내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민은경,

²⁾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2021). 아동은 태어날 때부터 권리를 갖고 있지만, 발달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권리를 인지하거나 주장할 수 없으므로, 협약상 의무 주체인 당사국은 건강권과 교육권, 발달권 등 아동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가 있다. 당사국이 이러한 의무를 이행하려면 아동 의 존재를 사회적으로 확인할 수 있어야 하므로 제7조에서 규정하는 권리는 아동이 협 약상 권리를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전제조건인 기본적인 권리인 것이다.

제7조

- 1. 아동은 태어난 즉시 출생등록 되어야 하며, 출생 시부터 이름을 갖고, 국적을 취득하며, 가능한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 받을 권리가 있다.
- 2. 당사국은 국내법 및 이 분야의 관련 국제규범에 따른 의무에 근거하여, 특히 무국적 아동을 포함한 모든 아동의 권리 이행을 보장해야 한다.

전쟁고아에 대한 보호 대책으로 강구한 미국으로의 해외입양은 전쟁 피해를 복구하고 이후 아시안 게임과 올림픽 경기를 개최할 정도로 대한민국의 경제가 성장했음에도 불 구하고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 급증해 1980년대에 정점에 달했다. 미혼모가 혼자서 아동을 키우는 것보다는 해외입양이 낫다는 인식과 미혼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에 대 한 부정적인 낙인으로 한국은 지난 70여 년간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 해외로 입양 보내 는 것에 급급했다. 이 과정에서 많은 해외입양인은 친부모가 존재하지만, 고아 호적으로 해외로 입양되었고 부모에 의해 양육 받을 권리를 박탈당했다. 해외입양을 간이로 진행 하기 위해 선호했던 고아호적 관행은 해외입양인이 성인이 되어 자기 뿌리를 찾고자 할 때 장애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해외입양 관행 하에서 입양아동은 동 협약 제7조에서 보 장하는 출생 등록될 권리, 성명권, 국적을 취득할 권리, 부모를 알고 부모에게 양육받을 권리를 전면적으로 침해받아 왔다.

2) 헤이그협약(헤이그국제입양아동협약)

1960년대 후반 이후 해외입양이 급증함에 따라 아동의 인권침해 문제가 대두하였고. 기존 국내법과 국제법 체계가 제대로 대응할 수 없었다(윤성승, 허남순, 2014). 이러한 배경에서 다자간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헤이그협약이 1993년에 유엔 정기회의에서 채택되었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 헤이그협약에 서명하였지만, 국회 비준동의 절차 는 아직 완료하지 못한 상태이다. 헤이그협약은 전문에서 원가정 양육을 최우선으로 고 려해야 하고, 그다음으로 국내입양을 검토한 후 해외입양은 최후 수단으로 시도해야 한 다고 선언한다.³⁾ 나아가 입양 시 아동을 대상으로 한 탈취·매매 또는 거래를 방지하도록 보호망을 구축하고, 무엇보다 권한 있는 중앙 당국의 개입에 의해 해외입양이 이루어져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4)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 보고서에 대한 제3, 4차 심의와 제5, 6차 심의를 진행한 후 헤이그협약을 비준할 것을 반복해 권고하였다.5)

(1) 원가정 양육 우선의 원칙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 받 을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은 전문에서 원 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서 보 호 가능한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의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원칙으로 선언한다. 우리 아동복지법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 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 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해 원가정 보호 원칙을 국가와 지방자 치단체의 책무로 삼고 있다(아동복지법 제4조 제3항).

³⁾ 국회입법조사처(2017),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24~25.

⁴⁾ 헤이그협약 제4, 5, 6조.

⁵⁾ 제5,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 33. (a), (f).

<전문>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 야 함을 상기하고, 해외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동에게 안 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되고 그의 기본적 권리를 존중하면서 이루어지도록, 그리고 아동의 탈취·매매 또는 거래가 방지되도록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음을 확신하며...

이러한 원칙은 해외입양아동의 거의 100%가 미혼모 가정 출신인 한국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이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부족한 양육지원 제도의 현실이 반영된 결과이다. 입양의 3주체는 입양아동, 친생부모, 입양부모임에도 불구하고 입양절차에서 친생부모, 특히 미혼모에 대한 존재는 지워져 있었다.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전까지만 해도 미혼모가 임신한 상태에서 입양을 결정하면 출산 전에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류를 미리 작성하도록 하였고, 출산하면 즉시 자녀를 친생모와 분리해 보호하였다. 아동을 입양가정으로 인계한 이후에는 친생모가 아동에 관한 어떤 정보도 받지못했다. 어느 가정으로 입양 갔는지, 아동이 해당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지내는지도확인할 수 없었다. 입양절차에서 친생모를 배제하는 관행은 현재도 여전한데, 이러한 입양 관행에는 미혼모의 출산 사실은 은폐해야 할 것으로 치부하는 사회적 인식이 깔려있다. 이러한 사회적 편견은 미혼모가 양육을 선택하지 못하게 했으며, 입양을 선택하도록 작용하였다. 미혼모에 대한 공적인 양육지원을 적극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은 최근 몇 년 사이이다. 최근 성인 미혼모와 청소년 미혼모에 대한 지원 정책이 개선되기는 하였으나,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충분치 않으며 미혼모 가정에 대한 편견과 부정적인 인식도 여전하다.

(2) 권한 있는 당국이 해외입양을 관장

헤이그협약에 따르면 해외입양은 권한 있는 당국이 아동의 입양적격성을 심사하고,

국내 보호를 먼저 고려한 다음. 아동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할 때만 이루어져야 한다(제4조).

제4조

-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행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 a. 아동이 입양가능하다고 인정했고
 - b. 출신국 내에서의 아동의 위탁가능성을 적절히 고려한 후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최선 의 이익이 된다고 결정했으며
 - c.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보했고
 - (1) 입양을 위해 동의가 필요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그에 필요한 상담을 받았고, 동의의 효력, 특히 입양에 의해 아동과 그의 출신가족 간의 법적 관계가 종료되는 지 여부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 (2) 그러한 사람·단체 및 기관들이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동의하였고 이를 서면으로 포시하거나 입증하였다는 것
 - (3) 이 동의가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며 또 철회되 지도 않았다는 것, 그리고
 - (4) 모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오직 아동의 출생 후에 부여되었다는 것
 - d.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보했을 경우
 - (1)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력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효력에 대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 (2)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것
 - (3) 입양을 위해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 에 따라 그리고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다는 것
 - (4) 그러한 동의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

제5조

-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수령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행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 a. 양친될 자가 입양할 자격이 있으며 입양에 적합하다고 결정하고
 - b. 양친될 자가 필요한 상담을 받았다는 것을 확보하며
 - c. 아동이 수령국에 입국하여 영주할 자격이 있거나 또는 있을 것이라고 결정한 경우

이러한 헤이그협약에 따라 체코, 필리핀, 노르웨이 등 위 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입양과 관련된 절차 대부분을 정부에서 관장한다. 나아가 민간 입양기관의 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핵심 입양 업무는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김효진·이재연, 2011). 이에 반해 한국의 현행 입양제도는 법원의 입양허가 이외 모든 입양절차는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또한 입양절차는 공적인 아동보호체계와도 유리되어 운용하고 있어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 입장에서는 입양을 포함한 다양한 공적 아동보호 조치가 통합적이고도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없는 점에서 아동 이익에 반한다. 아동이 친생부모와 함께 살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 방안으로 검토해야 하지만, 한국은 친생부모가 입양기관을 찾아가 아이를 입양 보내달라고 말만 하면 곧바로 입양절차가 개시되었다. 다행히 아동복지법의 개정으로 2021년부터 입양을 의뢰하고자 하는 친생부모는 기초지자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과 상담하게 되어 입양절차에서 공적 개입의 단초가 마련되었다. 6) 하지만 친생부모 상담이외 예비 입양부모의 상담과 교육, 결연, 사후관리 등 다른 모든 절차는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한 실정이다.

⁶⁾ 아동복지법 제15조 ②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이외의 자가 보호대상아동을 발견하거 나 보호자의 의뢰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보호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3) 유엔총회결의안: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 받을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유엔총회는 원 가정 보호 원칙을 실질적으로 구체화하기 위해 2009년 12월 18일 '아동의 대안양육에 관한 지침'(이하 대안양육지침)을 결의하였다. 대안양육지침은 아동은 근본적으로 원가 정에서 적절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원가정에서 아동을 돌보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아동 을 유기·포기할 경우에는 국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호하고 적절한 대안양육을 제공할 책임이 있다고 선언하고 있다(제3, 4항).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 야 하며(제13항), 가능한 한 일시적이고 단기여야 한다고 명시한다(제13항). 또한 물질 적 가난이 아동을 부모의 양육에서 분리하거나 재결합을 막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되며 '가난'은 그 가정에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신호로 보아야 한다고 규정한다(제14항). 더 구체적으로 "국가는 가족이 아동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지원을 보장하고, 부모 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아동의 권리를 증진하는 정책을 추구해야"하며 "이러한 정책은 아동유기, 친권포기, 아동이 가족과 분리되는 근본 원인을 다루어야 한다."고 한 다(제31항). 나아가 "국가는 아동유기, 친권포기, 가족과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서 효 과적인 조치를 이행해야 한다."(제33항)고 규정하며 미혼모와 관련해서는 별도의 항에 서 "혼외 자녀임을 불문하고 한부모와 미성년자 부모와 그들 자녀에 대한 지원과 양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증진하는 일에 특별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제35 항). 만약 부모나 법적 후견인이 아동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기 위해서 공공이나 민간 전 문기관 또는 시설에 방문할 때는, 국가는 그 가족이 계속해서 자녀를 양육할 수 있도록 상담과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여야 한다(제43항). 이후 4절에서 살펴보겠지만, 정부 차원 에서 기아와 미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촉진하고 자율 화하였던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절 해외입양 정책은 이러한 대안양육지침에 정면으로 위배된다.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서를 받고 아이가 태어나 자마자 미혼모와 격리했던 입양관행 역시 입양을 위해 아동 유기와 친권 포기를 조장했 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아동 양육을 영구적으로 포기하고자 하는 부모에 대한 지원과 상담은 2012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에야 비로소 입양절차에 포함되었다. 이처럼 60여 년간 이루어졌던 한국의 해외입양 관행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위배한 것이다.

4) 국가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7)

2022. 9. 29. 유엔아동권리위원회, 강제실종위원회, 진실 정의 배상 및 재발방지 보장에 관한 특별보고관, 아동성매매, 아동의 매매 및 성적 착취에 관한 특별보고관,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특히 여성과 아동 관련 인신매매 특별보고관, 강제실종 또는 비자발적실정에 관한 워킹크룹은 국가 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를 발표하였다. 동 성명서는 불법적인 해외입양을 통해 침해되는 권리를 식별하고 이에 대한 국가의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불법적인 해외입양을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발표되었다. 동 성명서는 국가간 불법 입양을 예방하기 위해서 국가가 지켜야할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아동 최선의 이익은 모든 입양 사례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사항이어야 한다. 둘째, 해외입양은 보충성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해외입양에 의존하기 전에 모든 적절한 국가 차원의 대안적인 해결방안을 아동의 출신 국가에서 고려해야 한다. 셋째, 해외입양과 관련하여 부적절한 재정적 이득은 금지되어야 하며 합리적인 비용과 경비만 부과되거나 지급되도록 해야 한다. 넷째, 해외입양의 허가는 관할 당국에 의해서만 허용되어야 하며, 적절한 상담에 기초하여 입양에 대해 사전 동의를 했는지 여부를 기초로 하여 판단해야한다.

네 가지 예방의 주요 원칙 이외에 공동성명서는 입양에 있어서 아동의 의견이 존중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는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도록 해야하며,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해외입양 결정에 관련된 모든 사법 및 행정절차에서 적절하게 반영되어야 한다. 국가는 법률 규정, 정책 및 관행을 검토하여 국가간 불법 입양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또는 유지에 기여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7) 2022. 9. 29. &}quot;Joint Statement on illegal intercountry adoptions"

한다. 아동보호시스템을 강화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미혼모와 같은 취약 가정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 또한 국가는 모든 아동의 출생신고를 보장하여야 한다. 나아가 국 가는 해외입양에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것을 고려해야한다.

또한 국가는 형법상 범죄로서 국가 간 불법입양을 금지해야 하며, 범죄의 심각성을 반영하는 적절한 제재를 제정하고 신속하고 효과적인 사법적 구제를 보장해야한다. 또 한 국가 간 불법입양 사례가 완전하고 공정하며 성실하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조사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하며 국가간 불법입양을 조사하는 당국이 조사를 효 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관련 문서, 기록 보관소, 기타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공동성명서는 국가 간 불법입양에 대한 국가의 구제의무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불법 입양의 피해자들에게는 진실을 알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면서 국가는 과거에 입양된 사람들을 포함한 모든 희생자들이 그들의 출신(origins)을 아는데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또한 국가 간 불법 입양으로 인해 직접적 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배상받을 권리가 있으며 국가는 필요하다면 국가 간 불법 입양 의혹에 관한 사실을 확인하고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하며 피해자에 대한 적절한 배상 조 치를 제안하기 위해 독립적인 조사위원회를 설립할 것을 제시한다.

2. 요약과 시사적

국제인권규범 중 해외입양에 직접 관련된 것은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이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21조에서 직접 입양제도에 대한 원칙을 밝히고 있다. 입양절차에 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며, 아동의 입양은 법적 절차에 따라 신 빙성 있고 권한 있는 관계 당국이 결정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해외입양은 최후 수 단으로 고려해야 하며 부당한 금전적 이익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한다. 이러한 원칙은 헤이그협약에서 재확인된다. 동 협약에 따르면 무엇보다 아동이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양육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하며, 해외입양은 최후에 고려할 사항으로 권한 있는 당국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유엔총회로 결의한 대안양육지침은 원가정 보호 원칙을 구체적 으로 제시한다. 동 지침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 선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한다. 또한 가정에서 아동을 분리하는 것은 최후 수단이어 야 하며, 국가는 아동유기, 친권포기, 가족과의 분리를 방지하기 위해 효과적인 조치를 할 책임을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을 바탕으로,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에 미혼모로부터 친권포기 각 서를 받고 자녀를 출산하자마자 미혼모와 아동을 분리했던 민간입양기관의 관행과 기아 와 미아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해 해외입양을 촉진하고 자율화하였던 과 거 정부의 정책을 엄중하게 평가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해외입양 정책의 잘못된 부 분을 낱낱이 밝히고 개선 방향을 정리해야 한다.

해외입양 인권침해에 대한 해외 국가조사

- 해외입양 수령국의 조사
 해외입양 송출국의 조사
 요약과 시사점

1. 해외입양 수령국의 조사

1) 네덜란드 국가조사 보고서

(1) 배경

네덜란드의 법무부(Ministry of Justice and Security)는 정부정보법(Government Information Act)에 따라 2017년과 2018년 사이에 입양과 관련해 이루어진 학대에 대 한 14건의 정보 요청을 받았다. 네덜란드 정부가 입양과 관련한 학대를 인지하고 개입했 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법무부의 무임소 장관¹⁾(Minister of Portfolio: Legal Security) Sander Dekker는 네덜란드 해외입양 제도를 조사하기 위해 2019년 4월 18일 독립된 조사위원회를 설립했다. 조사위원회에는 Tjibbe Joustra와 Beatrice de Graaf, Bert-Jan Houtzagers가 위원으로 참여하였다.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2021 년 2월에 발간한 보고서는 해외입양에 관해 가장 철저히 작성한 보고서 중 하나이다.

[표 4] 네덜란드로 아동을 송출한 국가

	대한민국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
년도	1969-2004	1972-1984	1972-1997	1972-1997	1973-1984	1992-1997
			1998-2008	1998-2019		1998-2019
국제	4.000	495	1,101	3,847	2.070	3,292
입양	4,099	495	332	1,642	3,072	108

국가 조사의 목적은 "해외입양에서 학대가 있었을 가능성에 대해 네덜란드 정부와 중개 역할을 했던 기관이나 사람이 인지하고 관여했는지를 파악하는 것"이었다 (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3). 조사 범위는 1967년부터

¹⁾ 무임소 장관은 다른 장관과 같은 권한과 책임이 있는 장관이지만, 다른 장관과 달리 특정 부서를 이끌어가는 대신 해당 부서에서 관할하는 특정 정책 분야를 관리하는 임무를 수행하고, 근무 기 간도 종종 임무 수행에 필요한 만큼 구체적으로 지정되어 있다.

1998년까지 입양아동 송출국인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수령국인 네덜란드 간에 이루어진 해외입양 제도를 다루는 것으로, 연구의 주요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네덜란드가 관여한 해외입양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의 범위
- (2) 네덜란드 정부와 중재기관(인)은 학대의 존재 가능성을 어느 정도까지 인지했으며, 학대과정에 얼마나 연루되어 있었고, 학대 징후에는 어떻게 대응해 왔는가?
- (3) 과거 경험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이고, 네덜란드 정부와 중개기관(인)은 잘 못된 입양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입양인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 수 있는가?

조사 결과는 다음과 같은 관련 당사자와 실무자, 전문가 등 190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면접 160건 이상에 기반한 것이다: (a)입양인, (b)입양부모, (c)친생부모, (d)입양인과입양부모 단체, (e)아동보호국 직원, (f)변호사, (B)중개기관의 전 직원, (h)전 공무원, (i)전법무부와 외무부 공무원, (j)송출국 공무원, (k)송출국 양육시설 직원, (l)대사관 영사(명예 영사 포함), (m)국내외 과학자와 기타 전문가, (n)미혼모기관연합회(Federatie van Instellingen voor de Ongehuwde Moeder) 직원, (o)기자, (p)외국인 경찰과 출입국 관리소 직원(Aliens Police and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Service, (q)아동권리단체와 아동매매방지단체 직원, (r)헤이그 회의 상설국 위원, 위원회는 입양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도 했는데 3,454명이 응답하였다.

(2) 조사 결과 1

최종 보고서는 2021년 2월에 발표하였다. 본 조사는 4가지 쟁점 즉, 첫째. 학대의 원인, 둘째. 해외입양에 대한 일반적인 생각, 셋째. 제도로 본 해외입양, 넷째. 당사자에게미친 영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보고서는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네덜란드의 해외입양에 관해 ① 해외입양과 관련된 구조적 인권침해, ② 네덜란드 정부의 인지와 개입, ③ 네덜란드 중개기관(인)의 인지와 관여, ④ 정부가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⑤ 여론과 정치적 견해가 인권침해의 발생과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⑥ 입

양에서 인권침해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이라는 항목으로 구분되는 6가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① 해외입양과 관련된 구조적 학대/인권침해

조사위원회는 1967년부터 1998년까지 아동의 송출국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와 수령국인 네덜란드 사이에서 이루어진 해외입양에서 "심각한 학대"가 발생했다고 결론지었다. 또한 이러한 인권침해는 이 시기 이전과 이후에도 있었 고, 위에 언급한 5개 국가 외 다른 국가에서도 발생했다고 하였다. 결론적으로 "인권침 해는 거의 영구적이고 구조적인 문제였다"는 것이다(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b: 15). 조사위원회는 [표 5]에 제시한 바와 같이 해외 입양 과정에서 범한 불법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를 둘 다 발견하였다.

[표 5]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러난 불법 행위와 비윤리적인 행위

불법 행위	비윤리적 행위
a. 부정부패 b. 서류위조로 입양인의 출신이나 신원확인을 어렵게 하거나 불가능하게 하는 것 c. 서류에 나이 등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기재하는 것 d. 금전 대가 혹은 강요로 아이를 포기하게 하는 것 e. 아동 인신매매, 납치 f. 아기 농장, 아동의 신분 세탁	a. 잘못된 명분이나 도덕적 압력으로 아이 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b. 어머니의 가난이나 전쟁, 자연재해, 사회적 금기와 같은 사회 문화적 상황을 이용하는 것 c. 부실한 문서 보관 d. 정보 기록 시 주의 부족, 문서의 투명성 부족

② 네덜란드 정부의 인지와 개입

조사위원회는 1960년대 후반부터 정부가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고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음 에도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정부가 아무 개입도 하지 않았 다는 것은 책임과 의무 이행에 실패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네덜란드 중개기관(인)의 인지와 관여

네덜란드의 중개기관(인)은 학대를 인지했으며 학대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했다. 중개자 집단은 규정과 상관없이 스스로 아동을 찾아 해외입양을 주선한 개인 중개자와 민간입양기관의 직원 등을 포함하며, 조사위원회는 이들이 직접 인권침해에 관여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중개기관(인)이 범한 인권침해는 "1) 사익추구, 2) 네덜란드 임시 거주증 발급 등 규정을 우회하는 행위, 3) 정보조작 4) 평판이 의심쩍은 변호사나 기타 개인을 이용한 행위"((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16)등을 포함한다.

④ 정부가 인권침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함

네덜란드 정부는 인권침해 문제와 관련해 다음과 같은 차원에서 효과적인 조처를 하는데 실패한 것이 드러났다. 첫째, 좀 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는 법안을 도입하는 등 시의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 둘째, 입양 실천에 대한 감독을 개선, 강화하지 않았다. 셋째, 법과 규정을 준수하는지 감시하지 않았다. 넷째, 해외입양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 네덜란드 당국이 승인하는 입양 허가는 네덜란드의 기준(예: 아동의 친권포기와 관련된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허용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네덜란드 정부는 이러한 기준 충족과 관련해서 입양 절차를 담당하는 중개기관(인)의 업무를 확인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었다. 1989년에 시작한 인증제도를 중개기관(인)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었는데 인권침해를 확인했음에도 민간기관의 인증을 영구적으로 철회한사례가 없었다.

⑤ 여론과 정치적 견해가 인권침해의 발생과 지속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조사위원회는 입양 자체에 대한 견해에도 초점을 맞췄는데, 입양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는 전통적인 관점이 앞서 언급한 인권침해가 발생하고 지속하게 하는 데 이바지했다고 결론지었다.

⑥ 입양에서 인권침해의 결과가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조사위원회는 해외입양 제도에서 인권침해가 만연했다는 것을 인식하고, 그것이 관련 당사자 집단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였다.

[표 6] 입양 당사자에게 미친 영향

친생부모	입양인	입양부모	
a. 가장 무시당하고 드러나	a. 입양인의 3/4은 입양을 통	a. 입양인이 입양으로 힘들어	
지 못한 집단	해 더 많은 기회를 얻었다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낌	
b. 해외입양 제도의 첫 번 째	고 느낌.	b. 자신들도 피해자라고 느끼	
피해자.	b. 입양인의 약 50%가 더 많	는 사람도 있음.	
c. 상실감과 슬픔, 고립감	은 정보를 요청했음.		
d. 때때로 자신의 아이를 포	c. 자신의 배경에 관한 정보		
기하라는 압력을 받았고,	부족과 불가능한 신원 확		
아이를 도둑맞은 사례도	인으로 인해 분노와 고통,		
있음.	슬픔의 감정을 느낌.		
	d. 상당수는 네덜란드 정부가		
	책임지기를 원함.		

⑦ 네덜란드 해외입양 인권침해 유형

[표 7] 네덜란드 해외입양 학대/인권침해 유형

인권침해 유형	세부 내용			
	문서와 개인 자료의 부재			
	문서 위조			
올바른 행정	의 일반 원칙과 관련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사익을 위해 고의로 어떤 것이나 누군가를 오도하거나 기만하는 행위			
사기와 부패	또는 사익을 위해 권한 또는 권력을 오용하는 행위.			
LIE IIIEL	의도적으로 개인의 출신이나 진정한 혈통을 모호하거나 불확실하게			
신분 세탁	만드는 행위			
	부모 또는 법적 보호자로부터 미성년자를 고의적이고 불법으로 탈취			
아동 유괴	하는 행위			
아동 인신매매	착취를 목적으로 미성년자를 이동, 조달 또는 인신매매하는 행위.			
	(강제성과 무관하게) 여성이 임신하게 하는 곳이나 출산을 위해 머무			
아기 농장 	르는 곳으로 거기서 태어난 아이는 해외입양을 위해 포기하는 장소.			

조사위원회는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인권침해 유형을 [표 7]와 같이 8가지로 규정하였다.

⑧ 설문조사 결과

설문조사 결과 중 건강상태와 상담 경험에 관한 내용만을 선택해서 살펴본 결과는 [표 8]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8] 설문조사 결과: 건강상태와 상담경험

	입양인	비입양인
전반적 건강, 양호	81%	85%
심리학자, 정신과 의사나 심리치료사와의 상담 경험	64%	48%

(3) 조사 결과 2

조사위원회는 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입양 숫자, 학대/인권침해 양상, 언론 보도를 기준 삼아 추가로 해외입양 아동 송출국 중 18개국을 선별했다. 이 국가 중 하나가 대한 민국이었다.

① 대한민국 관련 조사 결과

대한민국은 앞서 [표 4] 에 제시한 바와 같이1969년부터 2004년까지 4,099명의 아동을 네덜란드로 입양 보냈는데, 중국 6,480명, 콜롬비아 5,281명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이다. 또한 1970년대에는 대한민국이 네덜란드 해외입양의 가장 큰 송출국 이었다. 대한민국 해외입양에 관해서는 심층적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간단히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한국인 입양인의 23.9%만이 뿌리찾기 과정에서 받은 모든 정보가 정확하다고 응답하였다.

[표 9] 1998년 이전 대한민국과 네덜란드 간 해외입양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사례

인권침해 유형	발생률
문서나 개인 정보의 부재	구조적으로 발생
문서 위조	구조적으로 발생
올바른 행정의 일반 원칙과 관련 규칙과 절차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지 않음.	구조적으로 발생
사기와 부패	구조적으로 발생
신분 세탁	미상
아동 유괴	미상
아동 인신매매	미상
아기 농장	미상

(4) 권고안

조사위원회는 "네덜란드 정부와 중개기관(인) 이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대응 하는 방식에 심각 한 결함이 있음"(137쪽)을 확인했다고 결론짓고, 다음과 같은 3가지 권고안을 제안하였다.

[표 10] 권고안

정부 잘못의 인정	정부가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인
	정해야 한다 (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138)
	사적 요소를 지닌 현 해외입양 제도는 더는 지속해서는 안 된다. 조사
=11.01.01.01	위원회는 확인된 인권침해의 재발 방지를 담보할 현실적인 공적 체계
해외입양 중단	설계 의 가능성에 대해 매우 회의적이다. 조사위원회는 이에 관해 결정
82	을 내리기 까지 해외입양을 중단할 것을 권고한다(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138)
	해외입양인이 자기 기록을 열람하고 친생부모를 찾고 적절한 심리사회
	적 도움과 법적 지원을 받도록 정체성에 관한 질문과 뿌리찾기, 사후서
국립전문 센터 설립	비스와 관련된 지식을 통합해 지원하는 독립적인 국립 전문센터를 설립
	해야 할 것 이다(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139)

조사위원회는 과거의 잘못은 되돌릴 수 없지만, 개방성과 투명성을 통해 입양인과 입양부모, 원가족의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고 하였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정부가 해외입양 관련 인권침해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지 못한 점을 인정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명시하였다.

더 나아가 조사위원회는 "민간 중개기관(인)과 같은 사적 요소를 지닌 해외입양제도"가 인권침해로 이어졌다고 결론지었다(Committee on the Investigation of Intercountry Adoption, 2021a: 137). 이전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제도의 개편 가능성에 회의적이지만, 해외입양을 즉시 중단하고 향후 절차에 대한 감독에 더 많은 관심을 둘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조사위원회는 해외입양으로 영향 받은 사람이 적절하고 포괄적인 지원을 받도록 보장하기를 원하고, 네덜란드와 해외에서 정보 요청과 같은 입양 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정신건강과 법률 지원과 같은 좀 더 일반적 지원을 위한 조직을 구성한다 고도 하였다.

2) 덴마크 국가조사 보고서

(1) 배경

칠레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한 성인 입양인 중 6명이 자신의 입양 배치와 관련해 불법적 요소가 있었음을 의심해 덴마크의 국립사회심판원(National Social Appeals Board)에 조사를 의뢰하였다. 이러한 사례 근거로 2020년 9월 사회부와 내무부 장관 (Minister of Social Affairs and the Interior) Astrid Crags는 칠레와 덴마크 간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조사를 요구하였다.

조사는 첫째, 해외입양인의 자기 역사에 대한 권리 보장과 둘째, 그러한 권리 보장을 위해 필요한 일을 지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조사 범위는 1978년부터 1988년까지 칠레에서 덴마크 간 해외입양에서 나타난 불법적 요소를 포함했으며, 국립사회심판원은 칠레에서 덴마크로 입양된 구체적인 사례 총 31건 과 법무부(Ministry of

Justice)의 여러 일반 사례의 정보를 조사하였다.

덴마크 국립사회심판원이 작성한 보고서는 입양사례에서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은 의혹이 있는 정황과 해외입양에 관한 헤이그협약 조항을 어긴 정황"과 같은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는 의혹이 있었음을 밝히고 있다(Ankstyrelsen, 2021a: 36).

(2) 조사 결과

덴마크 당국의 민간 입양기관 DIA에 대한 감독과 관련된 핵심 쟁점은 2016년에서야 법제화되었다. 따라서 본 조사는 입양 배치 당시 법이 달랐었고, 어떤 측면에서는 아예 없거나 미흡했다는 점도 결과에 반영하였다. 사회심판원은 1. 입양이 합법적이었고, 2. 아동이 가정 환경에서 성장하게 하려면 해외입양이 유일한 대안이었으며, 3. 입양 관련자 중 누구도 금전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다른 이익을 얻기 위해 입양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확인하기 위해 모든 개별 사례를 검토하였다.

사회심판원은 칠레와 덴마크 간 해외입양을 전반적으로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1) 개별 사례 6건, (2) 아동이 불법적으로 입양제도에 편입된 사항에 관한 칠레 정부 보고서의 요약본, (3) 스웨덴 당국과의 대화, (4) 입양기관 DIA와의 대화, (5) 1970년대와 1980년대 칠레와 덴마크 간 해외입양 절차에 대한 덴마크 당국의 감독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정보를 수집하였다.

더 나아가 사회심판원은 ISS(International Social Service)을 통해 칠레의 관련 법해석을 위해 노력 했다는 점을 언급하는데, 이는 덴마크 당국이 조사 전에는 과연 칠레의 법과 관행을 알고 있었는지에 대한 명백한 의문을 제기하게 한다.

사회심판원은 법원 결정을 검토한 결과 친생부모가 자녀의 후견인과 관련해 동의하면 아동이 해외로 입양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을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또 다른 쟁점은 출생증명서인데, 이들은 거의 미완성 상태였다. 칠레입양인 월드와이드(Chilean Adoptees Worldwide:CAW)에 따르면 특히 입양 과정에서 친생부모 이름을 빠뜨리거나 위조한 것은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보여주는 지표이다.

덴마크 당국이나 입양기관은 조사대상 기간(1978-1988)에 이루어진 금전 거래를 규

제하지 않았다. 덴마크 입양기관은 아동당 입양수수료뿐 아니라 기부금도 냈다. 이 기 부금은 칠레 국립보육원의 입양 담당자에게 지급했고, 나중에는 덴마크 입양기관과 연 락을 맡은 사회복지사에게도 지급하였다. 보육원과 연계해서 일하는 의사에게는 덴마 크 입양기관이 직접 돈을 지급하였다. 사회심판원은 입양 수수료와 기부금으로 통역과 건강검진, 법률상담 등의 비용을 어떻게 충당했는지 뿐만 아니라 관련된 개인이 각각 얼마를 받았는지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

사회심판원은 칠레의 현지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195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이루어 진 해외입양 절차에서 기본적 인권침해가 발생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반복 해서 일어났고, 구조화되었고, 금전적 이득 추구 가능성 때문에 일어났다. 핵심 쟁점은 부정확한 출생신고와 취약한 여성, 특히 지지체계가 없는 미혼모에 대한 착취였다. 아동 인수를 위해 가장 많이 사용한 방법은 자녀가 출산 중 또는 출산 직후에 사망했다고 어 머니를 설득하고, 출생증명서도 제공하지 않고, 아이를 보지도 못하게 하는 것이었다. 결과적으로, 많은 입양 파일은 한 개인이 어떻게 입양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그 개인은 어떤 사람인지에 관한 세부 정보를 담고 있지 않았다.

사회심판원은 친생모에 관해 정보가 전혀 없고 위탁가정에서 보낸 시간과 장소에 관 한 설명이 거의 없다는 점도 알게 되었다. 여러 예비 입양가정은 입양 전 아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을 요청했었지만, 아무런 답변이 없었는데도, 모든 입양을 그대로 진행한 것 으로 나타났다.

덴마크 입양 기관이 칠레의 보육원에 아동의 건강상태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는 데 사 용할 양식을 제공했음에도, 의료기록은 "보통 획일화된 것이었고, 아동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가 거의 없었다"(Ankestyrelsen, 2021a: 36).

결연 과정에도 문제가 있었다. 입양을 위해 친권이 포기된 아동은 일반적으로 출생 증명서의 발급 후 3주에서 10주 사이에 덴마크로 이동하였다. 당시 통신 방식과 속도 를 고려하면, 입양절차 시간이 극히 짧은 셈이다. 실제로 사회심판원은 일부 아동은 예비 입양가정과 결연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또 덴마크 당국이 아동의 입국을 승인하 기도 전에 덴마크로 떠나도록 지정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덴마크 입양기관은 2건 의 개별 사례에서 출산과 관련된 비용을 지급했을 뿐 아니라 칠레 입양기관에 덴마크 에 있는 아동의 예비 입양가족에 관해 알려준 것으로 나타났다.

(3) 권고안

사회심판원은 '입양 절차에서 향후 불법 의혹 처리에 대한 지침(Guidelines on future handling of suspicion of illegalities during the adoption process)'에서 사회심판원 권한의 한계를 언급하고, 향후 입양 절차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였다. 이 지침의 목적은 1) 하나 이상의 입양 사례에서 불법 의혹이 있을 때 덴마크의 입양인이나 다른 사람이 지원받을 자격이 있는지, 2) 그러한 지원을 책임질 당국은 어디인지, 3) 입양 사례의 의혹 처리와 관련해 덴마크 당국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할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사회심판원은 헤이그 협약과 유엔 아동권리협약을 준수하는데, 두 협약 모두 이미 완 료한 입양 절차에서 나타난 불법적인 사항을 처리하는 데 도움 되는 지침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고 한다. 이것을 근거로 사회심판원은 어떤 입양 사례를 불법 적인 것으로 간주하려면, 입양 절차가 이루어졌던 당시 존재했던 법을 위반했어야 한다 는 것을 강조한다. 이러한 관점은 특정 사례와 관련해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훨씬 더 복잡하게 만들고, 더 나아가 법적 권리 이전의 권리, 즉 공식적인 법으로 명시 하지는 않았어도 모든 사람이 원래 가지는 기본권의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

- 이 지침은 다음을 불법의 예로 간주하고 있다.
- 친생모에게 입양 동의 강요
- 보충성 원칙의 무시
- 문서 위조
- 국내에서 그리고 국제적으로 정해진 입양절차의 무시
- 헤이그협약에 반하는 입양 배치 관련 금전 거래

결과적으로, 사회심판원은 다음의 두 가지 책임을 진다.

- 덴마크 입양기관 DIA의 감독
- 헤이그협약에 따른 중앙 당국으로 의무 사항 이행.

이미 완료한 입양에서 덴마크 당국이 불법적인 조처를 했다는 의혹이 있을 때 사회심 판원에 문제를 제기하면 책임부처의 장관에게 보고한다. 그러면 해당 장관은 향후 추가 조사를 어떻게 진행할지에 관한 결정을 내린다. 이러한 '지난' 사례에 대한 의혹은 종종 입양인이 사례에 관한 추가 정보를 얻게 되면서 시작한다. 이에 사회심판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유형의 지원과 지침을 제공한다.

- 입양의 불법적인 요소로 영향 받은 당사자에게 사례를 명료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함.
- 사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지원함.
- 불법적 요소를 확인했을 때 해당 송출국과 입양기관에 불이익을 제공할 수 있음.

사회심판원이 확인한 불법 입양 사례에 대한 후속 조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송출국 과의 관계와 그 관계를 규정하는 지침을 변경할 수 있다. 이러한 변화는 입양 아동 수와 관련된 것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해당 송출국의 입양을 완전히 중단하는 것일 수도 있다. 둘째, 책임 부처의 장관은 해당 입양기관에 입양관련 업무를 하게 부여한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셋째, 불법 입양절차로 영향을 받은 당사자 즉, 입양인과 입양 부모, 친생부모의 지원을 위해 의뢰할 수 있다.

3) 스위스 국가조사 보고서

(1) 배경

스위스 정부는 1961년부터 45개국에 해외입양 허가를 내주었다. 그 국가에는 한국과 베트남, 티벳, 인도, 스리랑카가 포함된다. 그러나 이민국과 입양당국 간 협력의 부족으로 특히 1970년대 입양에 관해서는 신뢰할만한 자료가 절대적으로 부족하게 되었다.

[표 11]은 스리랑카 아동에게 부여한 입국허가 건수를 보여준다. 즉, 1974년에서 1999 년 사이에 스리랑카 아동 총 955명이 스위스로 입양된 것이다. 대한민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같은 기간 스위스로 입양된 한국 아동은 1,111명이었다.

년도		년도		년도	
1970	_	1980	82	1990	27
1971	_	1981	138	1991	16
1972	_	1982	121	1992	15
1973	_	1983	97	1993	10
1974	3	1984	123	1994	4
1975	3	1985	96	1995	5
1976	7	1986	92	1996	4
1977	10	1987	37	1997	1
1978	18	1988	5	1998	2
1979	16	1989	20	1999	3
합계	57		811		87

[표 11] 스리랑카 아동에게 부여한 입국허가 건수

스위스 민법의 개정으로 1973년 4월 1일 이후에서야 입양인도 생물학적인 친자와 동 일한 권리를 갖게 되었다. 하지만 입양 전반, 특히 해외입양에 관한 법체계는 미흡하거나 부재한 상태였다. 해외입양에 관한 내용은 민법에서는 물론에서도 입양법에서도 다루고 있지 않았다. 특히 다음 두 가지 부분에서 해외입양에 관한 규정은 미흡하였다. 먼저, 입양을 완료하려면 2년간의 위탁기간을 거쳐야만 필수요건이 존재한다. 이 요건은 해외 에서 입양을 위해 입국한 후 2년간 위탁 아동으로 있어야 하는 아동의 지위를 모호하게 한다. 왜냐하면 그들의 시민권 지위는 2년의 위탁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입양이 법적으 로 완료되는지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이다. 둘째, 민법에서는 출생 후 6주까지는 친생부 모가 입양동의를 할 수 없으며, 출생 후 12주까지는 입양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고 규정 하고 있으나, 6주가 채 되지 않은 스리랑카 아동을 스위스 가정에 배치한 경우가 있었다. 스위스에서는 입양부모의 재정적, 사회적 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입양이 이루어졌으

나, 1978년부터 입양을 목적으로 위탁부모가 되려면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는 기준이 생기면서 바뀌게 되었다. 나아가 위탁보호의 승인은 아동을 특정한 상태에서만 부여하였다. 또한 입양을 목적으로 아동을 위탁보호하려면 아동의 친생부모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였다.

입양체계와 관련한 문제에서 살펴보아야 할 또 다른 특징은 스위스가 연방제 국가라는 점이다. 따라서 연방법은 중앙에서 통과된 다음 각 주 정부가 집행 하는 방식을 따랐다. 그 결과 주마다 법 집행과 행정에 큰 차이를 보였다. 예컨대, 법적 후견인과 같은 중요한 문제와 관련해서 주정부 자체가 법적 후견인의 역할을 맡은 주도 있는가 하면 그 역할을 민간 사업자에게 위탁한 주도 있었다.

2017년부터 언론 보도가 증가하면서 2018년 스리랑카 아동의 입양을 조사하기로 결정하였다. 스위스 연방정부 법무부는 취리히 응용과학대학(Zurich University of Applied Sciences)에 연구조사를 수행해달라고 요청하였고, 8개월 후인 2019년에 완료한 연구가스위스 국가 보고서의 토대가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과거와 현대 스리랑카의 입양절차를 살펴보는 것이었다. 스위스의 스리랑카 출신 입양인의 모임인 <뿌리로의 회귀: Back to the Roots >라는 단체는 몇 가지 사안을 보고서에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그들이 요청한 사안 대다수는 그들의 역사적 특성 때문에 조사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간주해 포함되지 못하였다.

(2) 조사 결과

스위스는 1970년대 중반부터 스리랑카 아동을 받기 시작했음에도, 이 보고서는 1980년대 이후 사례에 초점을 두고 있다. 보고서의 범주가 제한적인 것은 연방 이민국의 통계와 연방 입양 당국이 제공한 통계가 서로 모순되거나 부정확하기 때문이다. 특히 스위스에서 스리랑카 아동을 입양하기 시작한 초기에는 통계 수치에 오류가 많았다. 또 다른 문제로는 국가별로 입양을 기록하지 않았던 관행이었다.

조사를 통해 분명하게 드러난 점은, 1981년부터 최근까지 정부는 입양의 변칙적 관행과 아동밀매의 사례를 인지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Bitter, Ramsauer, 2020: 4) 해외입양과 관련된 문제와 학대에 관한 정보와 보고가 늘자, 1989년 스위스는 아동밀매를 방

지하기 위해 입양법을 개정하였다.

조사팀은 특히 스위스 입양기관 Terre des Hommes의 Alice Honegger라는 여성이 270건에 해당하는 아동밀매와 불법 입양과 관련되어 있음을 밝혀내었다. 이 여성은 소위 아동밀매 네트워크의 일원이었다. St Gallen 출신인 Alice Honegger는 기독교민주당 의원이자 같은 St Gallen 출신인 Edgar Oehler과 함께 입양 아동의 입국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입양당국을 설득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조사팀은 1987년 스리랑카에 아기 농장(baby farm)이 존재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경찰이 현장을 급습한 결과, 아기 농장에서 아동을 인수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스위스 입양부모를 발견하였다. 이 보고서는 입양서류뿐만 아니라 친생모가 제공한 정보도 위조되었고, 부패와 수익성 좋은 아동 시장이 불법 입양을 촉진하였다고 결론지었다.

(3) 권고안

조사팀은 스위스의 해외입양을 충분히 연구하려면 아직 멀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보고서는 스리랑카 외에도 다른 국가를 조사할 것을 권고했으며, 그중에는 여러 아시안 국가가 포함되는데, 그러한 조사는 유럽의 다른 입양수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하였다. 실제로 스위스로 아동을 입양 보낸 나라 대부분은 유럽의 다른 국가에도 입양을 보냈다.

2. 해외입양 송출국의 조사

1) 칠레 국가조사 보고서

(1) 배경

칠레의 역사는 한국과 유사점이 많다. 칠레 전직 대통령 Augusto Pinochet는 1973

년 9월 11일 쿠데타를 통해 집권하였고, 1990년까지 권력을 행사하였다. 오늘날 칠레가 자신들의 과거를 받아들이는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입양의 면면이 밝혀지고 있다. 강압적 이주 프로그램이었던 해외입양은 당시 정부가 인구통제 대책으로 활용하면서 정적의 자녀를 표적으로 삼기도 하였다(Londoño, 2021). 강압적으로입양 보내진 아동의 정확한 통계치는 없고며 추정만 가능한데, 칠레의 해외입양 관행을조사한 Mario Carroza 판사는 대략 20,000명의 아동이 이러한 조처에 희생되었을 거라고 예상하였다.

Gustavo Villarrubia는 2014년 칠레의 조사전문 언론사인 CIPER에 기고한 기사에서 해외입양 관행의 문제점을 폭로하였다(Villarrubia, 2014). Villarrubia는 이 기사에서 입양대상 아동을 조달하기 위해 가톨릭 신부와 10명 이상의 산부인과 의사 사이에서 이루어진 네트워크와 협력관계을 밝혀내었다. 친생모는 종종 자신들의 아이가 사산했다고 전달받았으나,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된 후 많은 친생모와 입양인이 서로를 찾으려는 노력을 시작하였다. 실제로 입양인과 친생모로 구성된 한 단체는 칠레 의회에 조사를 착수해달라고 로비하기도 한다. 개인과 비영리단체, 보건부와 법무부와 같은 정부기관 등의 증언을 바탕으로 완성한 최종 보고서는 기록 열람과 관련 행정 조직의 협조를 보장하는 변화가 필수적이라고 기술한다.

Mario Carroza 판사가 조사팀을 직접 구성해 이끄는 또 다른 조사는 2018년에 시작하였다. Mario Carroza 판사는 특별조사 판사(Special Investigating Judge)의 자격으로 칠레 산티아고의 Rol 1044-2018이라고 알려진 사건과 관련된 조사에 착수하였다. 이 조사의 목적은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 등을 살펴보는 것이었는데, 조사팀은 특정 사례보다는 '아동 유괴와 불법 입양 절차에서 공통으로 드러난 양상과 이에 가담한 사람'(Carroza, 2018:2)에 초점을 두고 조사하였다

(2) 조사 결과

Carroza 판사의 조사팀은 친생모와 입양인과 같이 입양에 의해 직접 영향을 받은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입양 조력자와 지역의 아동복지 기관, 해외입양 아동

수령국의 입양기관에서도 증거를 수집하였다. 이 보고서의 작성 시점인 2018년까지 증 거 수집과 분석은 잘 진행되었다.

[표 12] 칠레 국가 조사를 위한 자료 수집

조사 시기	조사 대상	조사 자료	아동 수
		351개 파일	
2017년	사회보조원(Social Assistant)	8개 현장 노트북	579명
6월 ~ 9월	이름: Telma Uribe Ortega	4개 파일 캐비닛	3/98
		5개 정책	
	사회보조원(Social Assistant)		
	이름: Telma Uribe Ortega	11 상자 (입양서류)	371명
	Esmaralda Quezada		
2010년 2위	Quinta Home, Tilcoco	מבוו וונסו	200 H
2018년 3월	Alceste Piergiovanni 신부	25개 파일	390명
	미성년자 국가서비스국의 입양부서		
	(The Adoption Unit of the National 5,000개 파일		
	Service of Minors)		

조사팀은 [표 12]에 제시한 자료를 바탕으로 2017년에 먼저 칠레에서 해외입양을 위 해 아동을 데리고 나간 사례 579건을 밝혀내었는데, 이들 중에는 유괴된 아동도 있었다. 특히 Telma Uribe Ortega와 Esmaralda Quezada라고 하는 두 명의 사회복지사가 입 양 사례와 관련한 정보를 보유하고 있었다. 조사팀은 이 정보를 토대로 1,000명에 달하 는 아동의 신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사팀은 Alceste Piergriovanni 신부의 지휘 아 래 Tilcoco의 Quinta Home의 정보를 통해 입양된 400명에 달하는 아동의 신원도 알아 내었다.

스웨덴은 비입양인 대비 해외입양인의 인구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나라인데, 1973년과 2005년 사이에 칠레에서 2,177명의 아동을 입양하였다 (Sepúlveda, 2019). 이 기록은 Carroza 판사의 조사팀이 입양으로 분리된 가족과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때 필수적인 정보가 되었다. 종합해서 볼 때, 조사팀은 입양 절차에서 6가지 범주로 분 류할 수 있는 문제를 발견하였다.

① 아동 인수

입양 과정의 시작, 즉 입양을 위한 아동 인수는 합법적인 경우와 불법적인 경우가 혼재되어 있었다. 분명히 아동을 자발적으로 양도한 사례도 있었지만, 조사팀은 의식주와 의료 서비스와 같이 생존에 필수적인 것의 지원이 아동의 양도 결정에 미쳤을 영향을 지적하였다.

스웨덴 당국이 작성한 매뉴얼에서는 친생모에게 영향을 미치려는 체계적 활동과 '친생모의 설득을 통한 아동 양도'의 증거를 발견하였다. 예를 들면 그 매뉴얼은 친생모와 아동 간에 애착관계가 형성되지 못하게 하는 것과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면 의료적 치료를 받을 수 있다고 설득하는 것을 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다. '아동 유기 신고'는 여러 사례에서 발견되었고, 조사팀은 "'유기'를 신고한 기관과 해외입양을 주선한 기관은 이와 관련해 사전에 협력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지었다(Carroza, 2018: 4). 아동은 출생 직후 또는 입원 직후 병원에서 없어지기도 하였다. 또한 아동양육시설에 거주하는 아동 중 가족 방문이 뜸하다고 보육사가 판단한 경우에는 유기로 신고하였다.

간호사가 아동을 빼돌리는 현상도 있었는데, 이는 친생모에게 아동이 사산했다거나 기형아로 출생했다거나 생존 확률이 극히 낮다고 안내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출생등록을 막았던 것을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아동의 의료/심리 보고서의 위조는 일반적 절차의 한 부분이었다. 의료기록에 들어가야 하는 친생모의 서명은 문맹이 만연한 덕분에쉽게 얻을 수 있었기 때문에 보고서의 위조도 쉽게 이루어졌다. 조사팀은 조산아를 입양대상으로 승인한 스웨덴 중앙 당국의 조처가 칠레의 지역 당국이 입양을 용이하게 하려고 앞장서서 아동을 조산아로 분류했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② 입양전 아동 보호

해외입양이 정해진 아동은 입양을 기다리는 동안 개인이 보호하였다. Telma Uribe

Ortega는 Ana Maria Elmgren(칠레 내 스웨덴 입양센터 대표)와 함께 이러한 '개인에 의한 아동보호'를 관리하였다. 아동은 '개인'이나 '전문 의료진' 혹은 '시설'에 보내졌다. '개인'은 아동을 매일 돌보는 대가로 사회복지사 혹은 입양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에게 서 돈을 받았다. 아동은 간호사의 보호를 받기도 하였다. 아동이 병원에서 퇴원하면 간 호사가 적절한 의료 장비가 없는 자기 집에서 계속 보호하였다. 또 다른 대안은 아동을 시설에서 보내는 것이었는데, 입양부모가 직접 시설에 와서 아동을 데리고 가거나 아동 보호를 의뢰받은 개인이 아동을 인도해 가기도 했다.

③ 법적 절차

칠레에는 1988년까지 입양을 규정하는 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1970년대에는 사회복 지사나 공무원이 법정에서 입양부모를 대변하였고, 입양신청에 이의를 제기하는 상대편 이 없었으므로 친권포기 과정은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간주하였다. 조사팀은 친생모 가 자녀의 입양에 관해 전혀 알지 못한 사례도 발견하였고, 입양절차를 단기간에 진행했 거나, 아동이 칠레를 떠나도 좋다는 허가가 즉각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사법 공무원에게 서 위협을 받았다는 주장과 같이 불법적인 요소가 있었음을 밝혀내었다. 또한 한 사건에 두 가지 판결이 존재하는 경우도 발견하였는데, 이는 한 아동이 다른 아동을 대신해서 칠레를 떠난 사례로 추정하였다. 또한 첫 번째 법원에서 기각된 후, 다른 법원에서 해외 입양을 진행한 사례도 발견하였다.

④ 해외입양부모에게 아동을 인도

아동을 해외입양부모에게 인도하기 위해서는 입양부모가 칠레로 와서 아동을 직접 데 려가는 경우가 있었고, 제삼자가 아동을 입양아동 수령국으로 데려다주는 경우도 있었 다. 친구나 친척과 같은 제삼자가 아동 인도를 한 사례가 다수 보고되었다.

⑤ 입양 수령국에서 입양 법제화

조사팀은 칠레에서 입양 절차를 완료하려면 두 가지 핵심 서류글 구비해야 하는데,

그중 하나는 법원 판결문이고 다른 하나는 칠레에서 아동을 이동시켜도 좋다는 허가증 이라고 하였다. 스웨덴이나 미국과 같은 입양수령국은 각자 요구 사항이 다르긴 했지만, 대체로 입양 수령국에서는 입양 허가를 자동으로 부여하였다. 그러나 조사팀은 모든 입 양사례가 문제가 없었던 것이 아님을 주목하였다. 이들은 입양수령국에서 건강 혹은 행 동장애의 이유로 보호시설로 보내진 아동의 사례가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조사팀은 청 소년기에 사춘기와 관련된 갈등으로 칠레로 되돌려 보내진 입양아동들의 사례도 발견하 였다.

⑥ 뿌리 찾기

조사팀은 사회복지사 Telma Uribe와 Esmeralda Quezada가 입양인이 성장해서 칠 레로 돌아와 뿌리찾기를 요청하면 그들에게 비용을 청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동과 친 생가족에 관한 정보를 보관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가족을 찾은 입양인도 있지만, 언어 장벽은 의사소통에 큰 장애물이었다. 또한 입양인의 배경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가 틀린 경우도 있었다.

(3) 권고안

이 조사는 아동이 자기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의 8조와 9조에 구체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칠레에서는 66,000개가 넘는 해외 입양인 관련 자료를 중앙에 통합해 관리함으로써 해외입양인과 칠레의 원가족이 실제로 서로를 찾고 다시 연결할 방법을 제공할 수 있었다. 현재까지는 해외입양인 1,238명의 배경과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를 복원할 수 있었다.

3. 요약과 시사적

최근 다수의 입양수령국과 입양송출국이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 보고서는 네덜란드 정부와 덴마크 입양 당국, 스위스 입양 당국이 시행한 조사에서 발견한 것을 요약하였 다. 보고서는 1970년대와 1980년대 주요 입양송출국이었던 칠레 사례도 간략히 요약해 기술하였다.

네덜란드 조사 보고서는 방글라데시, 브라질, 콜롬비아, 인도네시아, 스리랑카로부터 의 입양에 초점을 둔다. 덴마크에서는 칠레를 조사하였고, 방글라데시, 콜롬비아, 인도 네시아, 스리랑카에 관해서는 내부 문서를 발행하였다. 스위스 조사도 스리랑카에 초점 을 두었다. 조사결과 입양수령국의 입양 중개기관과 입양 당국이 국내법과 국제법을 준 수하지 않는 입양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거나, 적어도 그 사실을 인지했다는 사실을 발 견하였다. 과거의 관행을 오늘날의 법적, 윤리적 잣대로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합의도 존재하지만, 이러한 관행은 아동의 불법적 확보와 해외입양을 통한 금전적 이윤 추구를 포함한다.

입양인과 그 원가족은 거짓 없는 배경 정보의 제공과 재회의 중요성에 대한 의견에서 일치한다. 그러나 국가 조사 후 가족이 서로를 찾을 길을 마련한 국가는 오로지 칠레뿐이. 다. 종합해볼 때, 국가 조사 후 초기 입양서류를 전보다 더 잘 보존하게 되었다는 명백한 증거도 없고, 입양 당사자가 입양 관련 정보를 더 쉽고 편하게 열람하게 된 것도 아니고, 입양사후서비스가 개선되지도 않았다. 나아가 2022년 가을 덴마크 입양 당국이 국제법이 발효된 1978년을 입양 과정상 금전 거래를 규제하기 시작한 시점이라고 적시한 것이 사실 이 아니었었음을 인정하면서 이러한 국가 조사에 문제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사실상 국내법에는 입양 관련 금전 거래에 관한 규정이 1956년부터 존재했기 때문이다. 한편 네덜란드는 국가 보고서의 권고안과는 반대로 해외입양 재개를 결정하였다.

스위스의 입양 관행은 불충분한 법안의 또 다른 예이다. 스위스에서는 민법과 입양법 둘 다 해외입양을 온전히 다루고 있지 않다. 이는 다음 두 가지 영역에서 특히 문제가 되었다. 먼저, 시민권은 입양 완료 후에만 부여되는데, 입양 완료는 2년의 위탁 기간이 지나야만 가능하므로 입양을 위해 해외에서 입국한 아동의 법적 지위가 위태롭게 되었 다. 두 번째로, 민법은 아동이 생후 6주가 지난 경우에만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가능하 고, 생후 12주 내에는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스리랑카 아동은 생후 6주 이전에 스위스 가정에 배치되기도 하였다.

현재 조사를 진행하는 다른 국가 중에는 한국에서 가장 많은 아동을 입양한 나라 중 하나인 스웨덴도 있다. 벨기에도 해외입양 체계에 대한 조사를 준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예정된 조사의 결과에 대비해 문서 위조를 불법으로 규정하였다.

민간 입양 중개인과 의료진, 다른 입양 관련 기관에서 입양서류를 중앙으로 모으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입양인과 가족이 서로를 찾는 데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최근 입양수령국과 송출국에서는 기록보관소를 개관하고 기록을 중앙으로 이관하는 노력이 지속적인 추세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노력에 참여하는 국가는 그 결과 유엔아동권리협약을 위반하지 않는 입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한 국은 주요 입양송출국으로서 '모든 아동이 친생부모와 친생형제 등 자기 뿌리를 알 권리 가 있다'는 국제적으로 합의된 인권 기준을 준수하고, 이를 국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해. 야 할 것이다.

국내 해외입양제도의 특징과 변천, 국가의 책임

- 1.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 2.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천
- 3. 과거 해외입양 절차상 아동인권침해 관행
 4.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법·제도의
 문제: 아동인권과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 5. 요약과 시사점

1.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1)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한국의 해외입양은 이승만 정권 시절 시작되었다. 해방 이후 미군이 남한에 상주하면 서 한국인 여성과 미군 사이에서 자녀가 탄생하기 시작했다. 한국인 여성과 미군이 가정 을 이루고 계속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드물었기 때문에 '혼혈아동'¹⁾은 대체로 한부모 가정에서 자랐다. 이승만 대통령은 1948년 8월 15일 정부 수립 이후 반공체제를 구축하 기 위한 목적에서 '일국일민주의'를 신조로 내세웠다.2) 일국일민주의는 같은 혈통과 운 명이라는 민족의 공통 기반 위에서 단일민족 이데올로기와 한민족의 결집을 강조했다. 따라서 이승만 정권은 한국전쟁 이후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했다(민병웅, 2022). 혼혈아동을 낳은 여성 은 기지촌 여성으로 간주했고, 아이는 엄마와 함께 사회적 편견과 배제의 대상이 되었 다. 그 결과 이승만 정권은 혼혈아동과 그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하는 대신 혼혈 아동을 민간구호기관을 통해 미국으로 해외입양 보내 사회에서 제거하는 방식을 선택했 다. 이승만 정권은 긴급명령까지 내려 혼혈아동의 해외입양을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 라로 보낸다는 명분으로 정당화하고자 하였지만, 이는 혼혈아동에 대한 강제이주의 성 격을 갖는다.3)

이런 배경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1954년 1월 국무회의에서 "혼혈고아를 양자, 양녀로 원하는 외국인이 있는 경우에 여차한 외국인의 원망에 부응하도록 조치"하도록 혼혈아 동의 해외입양을 위한 정책을 직접 지시하였다(신필식, 2020). 또한 한국아동양호회를 설치해 혼혈아동을 해외입양단체와 잘 연결할 수 있도록 주선하게 하였고 해외입양절차

¹⁾ 혼혈아, 혼혈인, 혼혈아동이라는 표현은 아동의 민족, 인종, 국가 등 출신배경을 차별적으로 부각 하는 점에서 인권침해적인 용어이나 미국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동을 달리 지칭할 단 어를 찾지 못해 당시 사회에서 그들을 불렀던 혼혈아, 혼혈아동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²⁾ 전홍기혜,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은 '혼혈아 청소'였다", 2017. 9. 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6089

³⁾ 전홍기혜,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은 '혼혈아 청소'였다", 2017. 9. 8.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6089

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행정업무를 처리하게 하였다(민병웅, 2022: 14). 보건사회부 통 계를 살펴보면 1950년대 해외입양아동 중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외입양 아동 중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5년 88.1%, 1956년 92.1%, 1957년 84.6%로, 매년 해외입양 아동의 80~90%를 차지하였다. 이후 해외입양 에서 혼혈아동이 차지하는 비중은 1959년에 51.8%, 1961년 54.7%, 1963년 44.3%, 1965년 44.6%로 점차 감소하였다(신필식, 2020). 해외로 입양된 혼혈아동은 진정한 의 미에서 부모가 없는 '고아'가 아니었다. 보건사회부에 따르면 1955~1961년 전국 조사 에서 확인한 혼혈아동 5천485명인데 그중 4천89명(74.5%)이 어머니가 양육 중인 가정 출신이었고, 나머지 1천396명(25.5%)만이 영·육아원, 모자원 등 시설에서 보호 중인 아 동이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같은 시기에 전체 혼혈아동 중 4천 185명(76.3%)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다. 따라서 시설에서 보호 중인 혼혈아동 전원(1천 396명)이 해외로 입양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 해외입양 혼혈아동 중 2천789명(66.6%) 이 가족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아'로 처리되어 부모와 생이별하고 해외로 입양되었다.

2)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은 이승만 정권 시절 법적 근거 없이 정부기관과 민간입양단체의 협의만 으로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하였다. 즉 1961년, 정권이 시작된 지 얼 마 지나지 않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해외입양에 대한 법적 근거를 도입한 것이다. 고아입양특례법은 입양대상 아동인 '고아'의 개념을 실제 부모가 없는 아동뿐 아니라 부양의무자에게 입양 동의를 받은 아동까지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 입양 부모에 관한 규정에는 내국인에 관한 내용은 없이 외국인으로 한정하였다. 고아입양특 례법은 한국인 고아 아동의 국내입양은 배제하고 해외입양만을 전제로 만들어진 법인 것이다. 한편 같은 법은 고아를 보호할 구체적인 보호 대책이나 입양부모를 검증하고 기아나 미아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도 규정하지 않았다(조가은, 2019). 이처럼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한 고아입양특례법은 아동의 복리를 실현하고 보

호하기보다는 해외입양의 추진을 뒷받침하고 촉진하는 내용에 치우쳐져 있었던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신필식, 2020).

고아입양특례법 제정을 논의했던 1961년 9월 20일 국회에서는 국회 보건사회부 아동 과장이 "4,015명의 고아가 미에 3988, 놀웨이 영·서·인 등 국에 백 1951, 흑 693, 기타 1,371으로 되어 있다.4) 민법상의 결함과 국내 제 사정으로 고아들은 해외에서 양육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보고하였고, 송창규 위원이 해외입양은 "6만 명 넘는 고아를 보 호하는 한 방법"이며 "특히 국제적으로 널리 입양케 하기 위해 국내적인 법률상의 대책" 이 필요하다고 동의함에 따라 통과되었다(조가은, 2019: 29). 이러한 법 제정 논의는 박 정희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이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정부의 책임 회피로 이루어졌 으며, 이승만 정권 시절부터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제도로 고착화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혼혈아동을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하고 민간기관이 주도하는 해 외입양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던 이승만 정권 시절 정부의 인식은 박정희 정권에 서도 계속 유지되었다. 전근대성 타파와 경제 성장을 정권 목표로 삼은 박정희 정권에는 고아, 혼혈아, 부랑아 등은 불편한 존재였다. 이러한 인식은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당시 국회 논의 과정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당시 보건사회부 차관은 "걱정해주시는 국가적 수치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일부 동감인 점이 있습니다. 우리 배달민족이 외국 사람하고 결합이 되어 가지고 단일민족이 아닌 아이를 난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느끼 지 않을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동감입니다."라고 발언해 당시 혼혈아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반영하고 있다(조가은, 2019).

1960년대부터 해외입양 대상 아동은 혼혈아동뿐만 아니라 장애아동. 기아. 미혼모 자 녀, 가정해체로 인해 보호자가 없어진 보호 필요 아동을 포괄한다. 특히 박정히 정권 시 기인 1961년부터 1979년 사이에 미혼모 가정 출신 아동이 입양대상 아동이 되는 숫자 가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양대상 아동 중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4) &}quot;보건사회부 과장의 통계는 한국전쟁 때부터 법이 제정될 시점까지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된 아동 의 수로, "백"은 백인 혼혈아, "흑"은 흑인 혼혈아, "기타"는 비혼혈 또는 다른 인종의 혼혈아 를 의미한다."(조가은, 2019: 29)

17.9%였던 것이 1970년대 36.5%를 차지하는 것으로 증가하다가 1980년대에는 전체 입양아 중 72.2%를 차지하게 되었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는 92.5%를 차지하기에 이르 렀다(조가은. 2019). 해외입양에서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이 급증한 사실은 혼혈 아동에 대한 정권 차원의 사회적 편견과 배제가 미혼모와 그 자녀에게로 옮겨간 것을 보여준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의 역선전으로 국위 선양에 저해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1970년 12월 1일 스웨덴과 인접 6개 중립국에 대한 국제입양을 중단하였다.5) 이후 해 외입양 부모의 입양중단 해제 진정과 해외주재 한국대사관의 요청으로 1971년 3월 2일. 3개월 만에 입양 중단을 해제하였다가 1974년 11월 20일에 북한 공관이 주재하고 있는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3개국에 대해 다시 입양을 중단하였다.(6) 그후 스웨덴 대사와 덴마크 대사는 보건사회부를 방문해 입양재개를 요청하였고 3개국 정부는 외무부를 통 해 9회에 걸쳐 외교문서로 입양을 촉구해왔다.7) 이에 더해 입양을 원하는 진정이 총 1,363건 접수됨에 따라 박정희 정부는 1975년 10월 10일 제69회 국무회의에 보고한 후 입양중단을 다시 해제하였다.8) 이러한 시도 후 박정희 정권은 1976년 입양특례법을 만 들어 국내입양을 활성화하고자 입양기관에 국내입양 수에 비례해 해외입양 수를 배당하 는 쿼터제를 도입하면서, 매년 국내입양을 10퍼센트씩 늘려 1985년에는 해외입양을 중 단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하지만 박정희 정권의 해외입양중단 계획은 선언에 그치고 말았다. 몇 차례 해외입양 중단 조치를 취했으나 단체 출국 금지, 개별 입양의 허용, 국내 여론과 언론의 비난 완화 등의 확인을 조건으로 해외입양 중단조치를 해제하였고,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대응은 해외입양의 정책 방향을 근본적으로 변경할 의사가 없었음을 드러내었다(신필식, 2020). 결국 경제개발을 위해 복지비용을 최소화하는 아동보호정책을 수립했고, 아동보호에 예산을 편성하는 대신 다시 해외입양을 선택한 것이다. 이러한 박정히 정권의 정책 방향은 당시 사회복지 예산 상황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전체 예산에서 보건사회부 예산이 차지하는 비율은 1960년 4.76%, 1968년 3.35%, 1970년에는 1.98%, 1972년에

⁵⁾ 보건사회부,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1978. (국가기록원)

⁶⁾ 보건사회부,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1978. (국가기록원)

⁷⁾ 보건사회부,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1978. (국가기록원)

⁸⁾ 보건사회부, '해외입양에 관한 연구', 1978. (국가기록원)

는 1.55%로 계속 감소하였다(신필식, 2020). 또한 1975년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었던 고재필이 해외입양부모에게 보낸 편지를 통해서도 당시 정부의 입장이 잘 나타나 있다. 편지에는 "우리는 아동 이익과 사회복지의 계획 일부를 포기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친절한 도움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1980년까지 경제자급을 달성하 고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라고 쓰여 있었 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한편 박정희 정권은 해외입양의 해결방안으로 국내입양의 확대를 제시하였다. 박정희 대통령은 1975년 2월 16일 보건사회부 순시에서 직접 "고아들을 국내가정에 입양시키 는 방안을 연구해서 확대해라.", "고아문제는 외국인에 의한 해외입양보다 국내입양으 로 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고 지시하였다(신필식, 2020: 102). 하지만 해외입양 기관은 국내입양을 확대하라는 정부 요구를 적극적으로 추진할 동기가 부족하였다. 정 부의 지원 없이 입양기관을 운영했던 민간기관은 해외입양 알선을 통해 얻는 수수료와 후원금으로 재정을 충당해왔다. 국내입양에서는 해외입양에서와 같이 알선수수료를 청 구할 수 없었고, 거액의 후원금이 들어오지도 않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내입양의 우선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었음은 자명하다. 국내입양 추진에 강제성을 부여하고자 박정희 정부는 입양기관별로 전년 대비 일정 비율의 국내 입양 증가율 설정, 국내입양 목표 달성을 기준으로 해외입양 대상 아동 수 배정 등을 내용으로 하는 쿼터제를 도입해 국내입양을 확대하고자 하였다(신필식, 2020).

3)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

박정희 정권에서 제도화된 해외입양은 전두환 정권에서 급증하였다. 전두환 대통령이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입양을 촉진함에 따라 국내입양 활성화 를 목적으로 실시하던 해외입양 아동 수 감축 계획과 인원제한을 철회했고 해외입양은 전면 개방되었다(신필식, 2020). 1980년 10월 15일 보건사회부는 '보사행정 장기개선방 안'을 확정 발표했는데, 여기에 1985년 이후 해외입양을 폐지하려던 방침을 변경해. 해 외입양을 전면 개방하고 입양대상 국가에 대한 제한도 완화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신필식, 2020). 이러한 전두환 정권의 입장은 1981년 2월 23일 국무회의에 보고된 '입양사업 개선대책'을 통해서도 재확인된다(신필식, 2020). 이런 기조로 1982월 1일 20일 보건사회부는 4대 해외입양 기관장이 참석한 입양알선기관장 회의에서 해외입양 사업을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개방하며 기존 할당제를 폐지한다고 고지하였다.9)

1982년 3월 11일 국회 보건사회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당시 보건사회부 장관이 한 발 언은 전두환 정권의 해외입양 정책에 대한 인식과 관점을 보여준다. 한 국회의원이 쿼터 제 폐지 등 해외입양에 대한 제한 조치를 완전히 폐기한 배경과 이유를 질문하자, 보건 사회부 장관은 "본인이 취임을 하고 보니까 1년에 기·미아가 약 1만 명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1만 명 이상을 국내입양으로 처리를 하자니까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 서 여러 가지 해외에 문제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기·미아라면 벌써 정상적인 가정교육 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고 버려진 아이니까 이것은 국가가 그 사람이 성장할 때까지… 어느 면에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 여러 나라에 서 입양을 원하는 나라도 있고 해서 정부가 정책적으로 아무튼 국내입양을 우선 하되 국외입양을 트자 해서 터버렸습니다. 여기에 대해 여러 가지 비난도 있겠습니다마는 할 수 없이 인구 정책적 문제에서도 그렇고 앞으로의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 도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서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신필식, 2020) 라고 답변하였 다. 즉 전두환 정권은 연간 만 명 이상 발생하는 기아와 미아를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사람으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으로 해외입양 자율화 정책을 실시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 결과 1980년대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최고조에 달해 10년 동안 6만 5천511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1985년 과 1986년에는 한 해 평균 8천 명이 넘는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었다. 1986년 한 해 미국 으로만 입양된 한국 출신 입양인이 6천188명으로 미국 전체 해외입양의 59퍼센트에 달 했다.

1982년 3월 8일 자 동아일보는 "해외입양, 억제서 개방으로, 「85년까지 폐지」서 슬그

^{9) 1982. 1. 20.} 입양알선기관장 회의결과. 국가기록원

머니 바꿔"라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정부의 변화된 해외입양 정책이 국내 해외입양기관간 입양아동 모집을 위한 경쟁을 조장했고, 생활 형편이 어려운 부모에게는 친권 포기를 유인하고, 부모가 있는 아동을 기아나 미아로 만드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신필식, 2020). 1980년대 후반 주한 미 대사관에 이민 비자를 담당했던 영사 로버트 애크만은 1988년 미국의 진보적인 월간지 '프로그레시브'와의 인터뷰에서 "한 달에 500명의 아기는 단지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이 안 되는 지나치게 많은 숫자다. 인도주의가 멈추고 사업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딘지 물어야 한다."고 말하며 한국의 입양이 산업화하였다는 점을 지적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이러한 한국의 해외입양 실태에 대해 '프로그레시브'는 "아기매매-한국이 아기를 만들고 미국이 이들을산다."라는 제목으로 기사를 실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같은 해 '뉴욕타임스'에도 한국의 해외입양을 비판하는 기사가 실렸다. 결국 전두환 정권이 이민활성화의 일환으로 장려한 해외입양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수출국'이라는 오명으로 돌아왔다.

2. 입양 관련 국내법의 변천

한국에서 입양은 1950년대 중반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전후 사회·경제적으로 열악했던 우리 사회는 전쟁고아와 가난으로 유기된 아동에 대한 보호를 민간 주도의 해외입양에 의존했다.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제대로 교육받고 건강하게 성장해 성인이 되어 돌아온 해외입양인의 성공담은 우리 사회에 해외입양에 대한 '신화'를 양산했다. 성공신화를 배경으로 1970, 1980년대, 민간 입양기관은 국내와 해외에 구축된 시스템에 기반해 더욱 공격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했다. 그 결과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올림픽대회를 개최했던 한국은 1980년대에 연간 6,000여 명, 제일 많았을 때는 약 8,000여 명의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10) 2011년에는 미국으로 입양

^{10) 2011. 2. 21.} 국민권익위원회 블로그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가족입니다. 입양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EHG&articleno=3571&categoryId

보낸 아동의 출신국 순위에서 1위를 기록했고 2016년에는 중국, 에티오피아에 이어 3 위, 그 후 최근까지 중국·에티오피아·우크라이나·우간다 등과 함께 미국에 아이를 보낸 '고아 수출국 톱 5'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¹¹⁾ 그 결과 한국은 국제사회로부터 '아동수출 국'이라는 오명을 얻었다.

한국이 1991년에 가입한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선언하 고 있으며(협약 제3조) .이 원칙은 한국의 아동복지법에 기본 이념으로 반영되어 있 다(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또한 입양절차와 관련해서는 입양특례법에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고 특별히 명시하고 있다 (입양특례법 제4조). 1993년 국제사법에 관한 헤이그 회의에서 채택한 헤이그 협약 은 해외입양에서 입양 아동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국제 기준을 정하고 있다.12) 이후 살펴보겠지만, 한국의 전통적인 입양제도는 가의 승계를 위한 제도로 운영되었 다. 양자될 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했고, 양자의 성별 또한 남성으로 제한되어 있 었다. 자녀의 복리를 위한 입양과는 출발점부터 달랐다. 전쟁고아를 돌보기 위해 해외입 양을 촉진하고자 제정한 구 고아입양특례법은 가급적 입양절차를 간이화하고 촉진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고액의 입양수수료를 지불하는 해외 입양부모의 의사를 입양 절차에 반영하기는 수월했던 반면 아동의 이익을 반영하길 기대하기는 어려운 구조였 다. 이러한 한국의 입양 전통과 관행에서 입양제도를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 관점에서 질문하고 재구조화하기란 쉽지 않다. 일례로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 당시, 입양 숙려제와 법원허가제의 도입에 대해 입양기관과 일부 입양부모 커뮤니티에서는 반대의 목소리를 제기했다. 입양숙려제는 출산 후 7일이 지난 후에야 친생부모가 입양에 동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제도이다. 법원허가제는 입양의 성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심리와 허가를 거치도록 하는 제도이다. 입양기관과 일부 입양부모 커뮤니티는 이러한 절차를 도입하면 입양절차에 드는 시간이 길어져 아동이 시설에서 보내는 기간

^{= 4&}amp;regdt=20110221233100

^{11) 2016. 3. 30.} 세계일보, 이현미 기자, '고아 수출국' 오명 벗지 못한 한국" http://www.segye.com/newsView/20160330003518

¹²⁾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 협약에 서명하고, 2017년 10월 18일 국회에 비준 동의안을 제출했지만, 아직 비준하지 않았다.

이 연장되므로 도리어 아동 이익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법원 허가제를 도입하면 출생신고가 강제되어 출생 사실과 입양 사실을 숨기고 싶어 하는 미혼모와 입양부모가 오히려 입양을 꺼리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하지만 2011년 입양특례법의 전면 개정 운동은 불법적인 입양 관행으로 아동의 이익 이 침해되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당시 입양기관이 주관한 아동입양절차는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와 친생부모의 요구에 따라 아동을 마치 입양부모의 친자 녀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는 입양신고에 따라 입 양이 성립하도록 정하고 있는 당시 법을 위반한 불법적인 관행이었다. 또한 입양을 결심 한 친생모는 입양기관이 주선한 미혼모 시설에 입소한 후, 아동을 출산하기도 전에 미리 친권포기각서와 입양동의 서류를 작성해야 했다. 출산 후 아동을 보면 입양동의 의사가 바뀔 수 있다는 이유로 친생모는 출산과 동시에 아동과 분리되어 생이별해야 했다. '신 속'한 절차에 의한 '비밀' 입양이 과연 해당 아동을 위한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에 대해 어떠한 공적인 심사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입양특례법은 2011년에 전부 개정해 2012년부터 시행하였다. 법 개정의 주요 내용은 입양의 최종 성립을 위해 법원 허가가 필요한 법원허가제를 도입하였고, 자녀 출생 후 7일이 지나야만 입양에 대한 동의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입양숙려제도를 신설 했다. 또한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도입하였다. 해외입양 60여 년 만에 이루어진 대대적인 개정이었으나, 법원 허가 이외에 는 모든 입양절차가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되어 있어 앞으로 개선해야 할 지점이. 많다.

한국에서 아동에 대한 입양절차를 규율하는 법률은 민법상 가족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발전해 왔다. 1958년에 처음 제정된 가족법은 입양의 일차적 목적을 가계 혈통과 재산을 유지할 수단을 제공하는 것으로 삼았다. 이러한 연혁에서 시작한 민법상 입양제도는 입양을 가족 내 사적인 문제로 인식해 사법적 감독을 최소화했다(이봉주, 2015).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입양을 규율하는 최초의 법은 1961년 「고 아입양특례법」이었다. 이 법의 일차적인 목표는 한국 전쟁고아와 가난 때문에 버려진 아동에게 영구적인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해외입양을 촉진하는 것이었다(이봉주, 2015). 입양에 대한 민법과 입양특례법의 각기 다른 접근 방식과 변천 내용은 한국 입양제도가 가계 승계를 위한 사적 계약 관계의 관점에서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한 대안적가정 마련이라는 아동복지 관점으로 변화해가는 과정을 잘 보여준다.

1) 입양특례법의 변천

(1)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 제정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쟁고아의 국외입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제정한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이 대한민국 국민인 고아를 양자로 함에 있어서 간이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고아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것을 입법 목적으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다(동법 제1조). 이 법은 입양 조치를 '간이화'함으로써 대한민국 국적 아동의 해외입양을 '촉진'하고자 한다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양자될 자격(제2조)과 양친될 자격(제3조)를 규정한 후 외국인이 고아를 양자로 하고자 할 때는 법원의 인가를 받도록 하였다(제4조). 아울러 외국인이 입양하는 경우 입양기관이 입양절차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도 명시하였다(동법 제6조)¹³). 대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부모의 자격을 심사할 수 없게 만들어 아동의 생명권과 신체의 자유를 침해할 위험을 야기하였다. 이러한 고아입양특례법은 제정 당시부터 보호가 필요한 양자의 복리를 실현하기에 미흡하다는 비판을 받았다(김진, 1962).

1966년 일부 법 개정을 통해 고아의 입양알선업무를 행할 수 있는 자를 보건사회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입양알선기관으로 한정해 입양알선업무에 대해 감독을 하고자 하였다(제5조 제1항). 나아가 입양알선기관에게는 "외국인의 양자가 된 후에도 그의 신상에 관한 사항을 상시 파악하여야 하며, 당해 외국국적을 취득한 것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무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해 사후관리의무를 부여하였다(제5조 제4항).

¹³⁾ 고아입양특레법 제6조: (외국인의 대리)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

(2) 1976년 입양특례법

1976년 12월 31일 입양특례법의 제정으로 고아입양특례법은 폐지되었다. 1976년 입양특례법은 제정 이유에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 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때는 입양알선기관이 그 입양절차를 취하도록 하고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입양 업무를 사실상 입양알선기관에 전부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외국인이 국내에서 입양하고자 할때는 가정법원의 인가를 받아야 했지만, 해외에서 입양할 때는 법원의 인가 절차는 필요 없고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이주허가만으로 입양이 가능하게 하였다(제9조). 양친이 될외국인은 국내에 와서 양자가 될 자를 직접 만나보지 않고도 입양 성립 전에 입양을 전제로 아동을 자국으로 입국시킬 수 있었고, 심지어 아동을 데리러 올 필요도 없었다. 당시해외입양이 결정된 아동은 입양부모의 해당국으로 유학이나 출장을 가는 사람을 활용해보내는 일명 '에스코트' 제도를 통해 해외로 이동하였다. 입양알선기관은 해외입양아동을 '에스코트'하는 사람에게 항공료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대가를 지불했다. 이상과같이 입양특례법상 양친될 자의 자격 심사, 결연,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아동의 보호와 이동에 이르는 해외입양의 모든 절차는 민간 입양알선기관에서 맡아 진행하였다.

또한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동법 제13조), 보호시설의 장의 입양동의로 입양기관에 위탁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2조)¹⁴⁾.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이루어지는 한국 출신 아동의 입양 허가 재판 절차에서 한국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한 입양동의서가 입양 동의 효력을 인정받는 근거가 되었다.

(3) 1995년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1995년에는 입양특례법의 전면개정을 통해 법명을「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

¹⁴⁾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입양알선기관의 장의 후견직무): 입양알선기관의 장은 입양을 알선하기 위하여 보호시설의 장으로부터 입양될 자를 인수한 때에는 그 인수한 날로부터 입양이 완료될 때까지 후견인으로서의 직무를 행한다.

법」으로 바꾸고, 입양에서 국가의 책임을 명시·강조함으로써 이전 입양법과 차별화하고 자 했다(안재진, 2011) 모든 아동은 그가 태어난 가정에서 건전하게 양육될 권리가 있음을 선언하였고(제3조 제1항), 그렇지 못할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아동이 건전하게 양육될 수 있는 다른 가정을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와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조 제2항). 나아가 입양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입양기관에 대한 감독, 입양기관을 통한 입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 입양 후 사후관리 등의 내용을 포함하였다. 출생한 가정에서 양육 받을 아동의 권리를 선언한 점과 교육 및 감독, 사후관리 등을 강화한점은 이전보다 진일보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모든 입양절차를 여전히 민간 기관에게일임하고 있는 점에서 아동복지 보호에는 여전히 미흡하였다(김상용, 2009). 외국인 입양부모는 여전히 아동을 직접 만나지 않고도 해외에서 입양할 수 있었고, 국내 가정법원의 인가를 밟을 필요도 없었다. 한국 국가기관에 의한 입양부모 심사 규정은 없었고, 입양부모 국적국의 조사보고서를 심사로 갈음하였다. 또한 입양정보의 보관 의무를 입양기관에 전적으로 맡겨 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가 부재했으며, 입양인이 입양된 이후자기 뿌리찾기를 위한 입양정보에 대한 공개를 청구할 절차도 마련되지 않았다.

(4)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

2011년에는 16년 만에 입양특례법이 전면 개정되었다.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¹⁵⁾, 미혼모 당사자 단체¹⁶⁾, 아동인권 옹호 시민사회단체¹⁷⁾가 주축이 되어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었던 입양의 성공 신화와 그에 기반 한 입양 관행에 의문을 제기한 결과였다. 입양에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신설하고(입양특례법 제4조),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이었던 법 명칭을 「입양특례법」으로 바꾸었다. 아동은 출생한 원가정에서 양육하는 것이 최선이라는 헤이그협약의 원칙을 실현하고자 친생부모의 입

¹⁵⁾ TRACK(Truth and Reconciliation for the Adoption Community of Korea), GOAL(Global Overseas Adoptee's Link, ASK(Adoptee Solidarity Korea) 등의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가 입양법 개정 운동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했다.

¹⁶⁾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해외입양인 친생모 모임 '민들레회', 미혼모가족 협회 등

¹⁷⁾ 사단법인 뿌리의집,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탁틴 내일 등

양동의 시점을 아동의 출생일로부터 1주일 후로 제한하는 '입양숙려제'를 도입했다(동 법 제13조 제1항18)). 또한 입양 동의 전에 친생부모는 반드시 양육 지원 정책과 입양의 법적 효력 등에 관해 상담받도록 하였다(동조 제3항). 이를 통해 자녀를 출산하기도 전 에 친생모로부터 친권 포기 각서와 입양 동의 서류를 받아왔던 입양 관행에 제동이 걸렸 다. 기존 관행은 친생모의 양육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해 친모의 양육권과 친가정에 서 양육될 아동의 권리를 모두 침해하였다.

한편 입양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모든 절차를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했던 기존 입양 관 행을 개선하고자 법원에서 입양이 아동 복리에 최선인지 심사하게 했다(입양특례법 제 11조)19). 이는 권한 있는 공적 기관이 입양절차에 관여해야 한다는 헤이그협약 원칙에 도 부합한다.20)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양친될 자격에 관한 증빙 서류, 입양 동의 요건을 충족했다는 서류 등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법원은 입양 부모의 입양동기, 양육능력, 양육화경 등을 고려해 입양 허가를 심판한다. 입양 허가를 받으려면 법원에 아동의 출생신고 서류를 제출해야 함에 따라 입양신고 대신 허위 친생 자 신고를 하던 기존 입양 관행에도 제동이 걸렸다. 기존 입양 관행은 호적과 가족관계 등록부와 같은 공적 신분 기록에 입양부모를 아동의 친생부모로 허위로 기록하게 하는

¹⁸⁾ 입양특례법 제13조(입양동의의 요건 등)

① 제12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동의는 아동의 출생일부터 1주일이 지난 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② 입양동의의 대가로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 그 밖의 반대급부를 주고받거나 주고받을 것을 약 속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입양기관은 제12조제1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친생부모에게 아동을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받 을 수 있는 사항 및 입양의 법률적 효력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 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④ 입양기관은 제12조 제4항에서 정한 입양동의 전에 입양될 아동에게 입양동의의 효과 등에 관한 충분한 상담을 제공하여야 하며, 상담내용 등에 대하여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¹⁹⁾ 입양특례법 제11조(가정법원의 허가)

① 제9조에서 정한 아동을 입양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 아야 한다.

^{1.} 양자가 될 아동의 출생신고 증빙 서류

^{2.} 제9조 및 제10조의 자격을 구비하였다는 서류

^{3.}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입양동의 서류

^{4.} 그밖에 아동의 복리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

② 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사람의 복리를 위하여 양친이 될 사람의 입양 동기와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²⁰⁾ 헤이그협약 제4, 5, 6조.

불법적인 관행이었다.

나아가 입양인의 알권리와 정체성 회복을 보장하기 위해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입양인의 권리로 도입했다(제36조). 자신의 뿌리찾기를 위해 한국에 돌아온 해외입양인은 입양 기록을 확인하기 위해 입양기관의 문을 가장 먼저 두드린다. 하지만 입양기관은 "기록이 없다, 개인정보여서 제공할 수 없다, 친생부모의 의사 확인이 안 된다."는 등부정적인 답변을 하는 경우가 많았다. 해외입양인이 여러 차례 입양기관을 찾아가거나 읍소를 하면 담당자에 따라 입양기록을 내주기도 했다. 해외입양인은 본인의 기록임에도 접근할 수 없는 현실에 절망했고, 원칙 없는 입양기관의 임의적인 일 처리 방식에분노했다. 해외입양인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누구보다 앞 장 서서 입양법 개정을 요구했고, 그 결과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이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다. 법 개정 후 법적 근거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입양정보가 관리되고 공개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피부에 와 닿는 변화를 느낄 수는 없었다.

2) 민법상 입양제도의 변천

1958년 2월 22에 제정한 민법은 민법 제정 전에 이루어졌던 가계 승계를 위한 입양관행을 법제화하였다(안문희, 2018). 호주상속을 하는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의 혈족이어야 한다는 규정과(제877조 제2항), 사후양자(제867조), 유언양자제도(제880조), 서양자제도(제876조 제1항) 등이 이에 해당한다. 한편 '자를 위한 입양'의 성격을 갖는 규정이 일부 도입되었는데, 성년자라면 기혼, 미혼, 남자, 여자를 불문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한 점, 부부가 공동으로 입양하도록 하고, 남녀 불문하고 양자가 될 수 있게 한 점 등이에 해당한다(안재진, 2011).

1990년 민법 개정을 통해 가계 승계를 위한 요소는 대폭 폐지했으나 아동 복리를 위한 입양제도로서는 여전히 불충분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비밀입양을 원하는 입양부모의 욕구를 반영해 입양부모가 양자를 친생자인 것처럼 허위로 출생 신고하는 관행이 만연했고, 이에 대하여 대법원도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를 입양신고로 해석해 용인하는 태

도를 보였다(대법원 1977. 7. 26. 선고, 77다492판결)(안재진, 2011). 이와 같은 허위출 생신고 방식의 '비밀입양' 관행은 입양 관련 법적 규제를 형해화하고 국가기관의 통제를 거치지 않고 은밀하게 입양이 이루어질 기회를 제공하였다(김상용, 2000), 산부인과 등 에서는 미혼모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산모로부터 아이를 넘겨받아 비밀리에 입양 보내는 사례가 종종 언론에 보도되었다.21) 한편 비밀입양 관행은 입양아동이 친생부모를 알 기 회를 전면 차단하는 문제를 야기했다. 공적 신분 기록에 친생 가족에 관한 기록이 기재 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전히 입양의 성립을 당사자 간 합의와 신고만 으로 가능케 하고 있어 입양부모의 자질·요건에 대한 규정이나 이를 심사하는 국가기관 의 개입이 전혀 없었던 점에서 아동 복리를 위태롭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안재진, 2011).

2005년 민법 일부 개정으로 친양자입양 제도가 신설되었다. 친양자입양 제도는 기존 일반 양자와 달리 양자와 친생부모의 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고 입양부모가 양자에 대한 단독 친권자가 되는 완전양자제도이다. 양자는 양친의 성과 본을 따르고 가족관계등록 부에 친생자로 기재되어 양친의 친생자와 동일하게 입양가족의 구성원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안문희, 2018). 친양자 관계의 성립을 위해서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민법상 입양 제도에 국가기관의 개입을 최초로 도입하였다. 가정법원은 친양자가 될 아 동의 복리를 위해 양육 상황, 입양 동기, 입양부모의 양육능력과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 해당 입양청구가 적절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를 기각할 수 있다(민법 제908 조의2 제2항). 입양의 성립에 법원의 심리와 허가를 받도록 한 점은 아동 복리를 위한 조치로 긍정적이지만, 친양자입양의 파양 사유로 친양자의 패륜행위를 인정한 점에서는 아동 복리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다(안재진, 2011).

민법상 미성년 입양절차에 보편적인 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것은 2011년 입양특례법 을 전면 개정함에 따라 법원 허가제를 도입한 이후인 2012년 2월이다. 당시 민법 개정 이유를 살펴보면 "현재 미성년자의 입양과 파양은 시·읍·면의 장에 대한 신고만으로 가 능하기 때문에 아동학대의 습벽이 있는 사람 등도 손쉽게 입양을 할 수 있고 그 결과

²¹⁾ 동아일보 1999년 10월 19일 자 보도

미성년자의 복리에 악영향을 끼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으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미성년자를 입양할 때에는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라고 취지를 밝히고 있다.²²⁾ 입양특례법과 마찬가지로 미성년자 입양에 법원의 허가는 받도록 개선한 점은 반갑지만, 입양특례법과 비교했을 때 민법상 미성년자 입양절차에는 여전히 많은 공백이존재한다. 입양특례법에서 규정하는 예비입양부모 교육, 입양 후 아동의 적응 상태 모니터링 등 사후관리와 사후서비스 지원 등이 민법에 따라 입양한 입양가정에는 적용되지않기 때문이다.

2016년 대구와 포천에서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아동학대로 사망한 사건이 발생함에 따라, 2016년 12월 29일 가사소송규칙 일부를 개정해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입양부모도 법원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해야만 하게 되었다(가사소송규칙 제62조의9). 민법에 따른 입양절차에도 예비입양부모에 대한 교육과정을 의무화했다는 점은 환영할만하지만, 여전히 충분치 않다. 민법상 예비양부모를 위한 교육 시간은 기본적으로 총 3시간, '입양의 법률적 이해', '자녀의 발달과 적응', '아이와 부모의 행복한 소통법'으로총 3개의 강의로 이루어진다(안문희, 2018). 총 8시간으로 구성된 입양특례법상 예비입양부모 교육과 비교했을 때 민법상 예비 입양부모 교육 시간은 충분치 않다. 입양특례법상 교육도 시간이 너무 짧고, 일회성 집체 강의 형식으로 이루어져 형식적이라는 비판이었다. 입양특례법상 예비 입양부모 교육에 실효성을 기대하기란 어려워 보인다. 좀 더 근본적으로 입양특례법은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을 비교적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지만(입양특례법 제10조23)), 민법은

²²⁾ https://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L0002038D7206EF4 (로앤비 2020. 4. 13. 검색)

²³⁾ 입양특례법 제10조(양친이 될 자격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양자를 부양하기에 충분한 재산이 있을 것

^{2.} 양자에 대하여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그에 상응하는 양육과 교육을 할 수 있을 것

^{3.} 양친이 될 사람이 아동학대·가정폭력·성폭력·마약 등의 범죄나 알코올 등 약물중독의 경력이 없을 것

^{4.} 양친이 될 사람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경우 해당 국가의 법에 따라 양친이 될 수 있는 자격이 있을 것

^{5.} 그밖에 양자가 될 사람의 복지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요건을 갖출 것

② 양친이 될 사람은 양자가 될 아동이 복리에 반하는 직업이나 그 밖에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직업에 종사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양친이 될 사람의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따라서 입양특례 법상 양친의 자격 등에 관한 엄격한 규제를 피하고자 민법상 입양제도를 이용할 우려가 있다(국회입법조사처, 2017).

3. 과거 해외입양 절차상 아동 인권침해 관행

한국의 전통적인 입양제도는 가계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 자식이 없는 부부에게 남자 상속자를 제공하는 제도로 도입되었다(김주수·김상용, 2019). 남자아이를 입양해 제사 의 주재자로 삼기 위한 것이었기 때문에 양부와 성과 본이 다른 아이는 양자가 될 수 없었으며 여아는 배제되었다. 양자는 양부와 동성동본이어야 했고 양부의 자의 항렬에 해당하는 남아로 한정되었다(김주수·김상용, 2019). 따라서 대를 잇기 위한 입양은 주로 친족 내에서 이루어졌다. 가계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한 입양은 '가정최상의 이익'을 유 지하고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다(이봉주, 2015). 이러한 입양과 달리 사회적인 보 호가 필요한 아동에게 대안 가정을 찾아주기 위해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한국전 쟁 이후 전쟁고아에게 미국과 유럽 등지에서 입양부모를 찾아주었던 해외입양을 통해서 이다. 특히 미국인 홀트가 주도한 한·미간 해외입양은 이후 공적 개입을 배제한 채 민간 주도로 이루어진 해외입양 관행의 전형으로 자리 잡았다. 민간이 주도한 한 미간 해외입 양은 이후 수십 년간 한국에서 사회적인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대안으로 활용되었 고, 현재까지도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현행 입양제도와 관행을 제대로 파악 하려면 해외입양이 어떻게 시작되었고, 그 당시 입양 관행의 특성은 어떠했는지부터 살 펴볼 필요가 있다.

③ 양친이 되려는 사람은 입양의 성립 전에 입양기관 등으로부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마쳐야 한다.

1) '전쟁고아'의 해외 입양

한국에서 해외입양은 전쟁고아에 대한 민간 차원의 구제활동으로 시작하였다. 전후 전쟁고아를 직접 돌볼 수 없었던 우리 사회는 입양을 보호가 필요한 아동에 대한 유일한 대책으로 삼았다(김동수, 2015). 민간 입양기관들이 한국의 전쟁고아를 미국의 입양부 모에게 입양시킬 수 있었던 것은 미국 난민법상 '고아(displaced orphan)'의 정의에 한 국 아동을 포함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이경은, 2017). 미국은 1950년 난민법 개정을 통 해 양부모를 다 잃은 고아뿐만 아니라 '기아가 된 아동', '한 부모만 남은 아동으로 그 부모가 아동을 돌보지 못하고 아동의 출국·입양에 동의하거나 다른 후견인에게 친권을 포기한 경우'까지 고아의 범위를 확대하였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1957년에 미국은 한국 주둔 미군과 한국 여성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에게 3,701개의 난 민 비자 쿼터를 배정하였다. 이는 총 난민 쿼터 10,937명 중 34%에 달하는 숫자였다(이 경은, 2017).

이후 1961년 미국 이민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Law)의 개정으로 입양아동 은 난민법의 쿼터 제한 없이 완화한 요건으로 미국 입국이 가능해졌다(전홍기혜·이경은· 제인 정 트렌카, 2019). 항구적이고 정상적인 미국 이민 자격의 하나로 이민법상 '고아' 자격을 신설한 것이다. 이 법에 따라 미국 시민권자는 타국의 14세 미만 '고아'를 자신이 입양하기 위해 미국에 입국하게 할 수 있었으며, 이때 '고아'란 '양쪽 부모가 모두 사망 하거나 실종된 경우뿐만 아니라 부모로부터 유기·분리된 경우, 한쪽 부모의 사망·실종· 유기·분리로 한 부모만 있고 그 한 부모가 아동을 적절하게 보호할 수 없어 이민과 입양 을 위해 내놓은 경우'를 모두 포함했다(이경은, 2017). 해외입양 진행 사례 중 아동의 미국 입양 추진을 위해 입양알선기관 종사자가 친모에게 친부와 이혼 절차를 서두를 것 을 종용했다는 사례도 확인되고 있다. 이후 미국은 1961년부터 1975년까지 15년 동안 전 세계 34,568명의 고아에게 입양목적의 입국비자를 발급했는데, 그중 한국 아동이 차 지하는 비중은 전체의 54%인 19,283명이었다(이경은, 2017).

2) '고아 호적' 관행

과거 해외입양은 입양아동 수령국의 입양제도를 고려해 입양대상 아동의 고아호적을 발행하여 입양이 성사될 수 있게 하였다. 친생부모의 동의를 구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 를 위한 노력을 하지 않거나, 부모의 존재를 알면서도 불법적으로 아동을 기아로 처리한 사례도 발견되었다. 2012년까지 기아 발견에 의한 단독 호적 발급 숫자와 해외입양 아 동의 숫자가 거의 유사하다는 사실은 기아호적 관행의 실재를 뒷받침한다(전홍기혜·이 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또한 실종 아이나 미아인 경우, 가족을 찾아주는 노력보다 입양을 우선 추진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길을 잃은 아이가 '미아'에서 5~6개월 만에 '기 아'로 둔갑해 해외로 입양 보내졌던 사례는 여러 차례 기사화되며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도 하였다²⁴⁾. 입양기관이 아동을 기아로 처리해 해외입양절차를 진행한 이유는 고아인 경우에는 여권 발급에서부터 미국 비자 발급, 미국 내 입양재판에 이르기까지 친생부모 의 동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어 입양절차가 더 간단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배경하에 1961년 한국에서는 외국인에 의한 고아입양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고아입양특례법」이 제정되었다. 고아입양특례법상 고아의 정의는 '만 18세 미만의 자 로서, 부양의무자가 알려져 있지 않거나 부양의무자의 동의를 얻은 자'이다(동법 제2조 제1항). 1977년 1월 31일 고아입양특례법을 폐지하고 시행한「입양특례법25」」은 제정 이유에서 '보호시설에 수용되어 있는 불우 아동의 입양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한 것이라 는 취지를 밝히고 있다. 위 입양특례법에 따르면, 외국인이 국외에서 입양을 원할 때는 입양알선기관이 그 입양절차를 진행하게 하고, 해외입양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해외입 양 업무를 사실상 입양알선기관에 전부 위탁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입양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취적을 할 수 있고(동법 제13조), 보호시설 장의 입양동의로 입양기관에 위 탁한 아동에 대한 후견직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동법 제12조). 해당 조항은 미국에서

^{24) 1979}년 5월 16일, 동아일보, "유괴된 딸 추적 1년 3개월...어른 무성의로 이미 미국 입양", 1975년 10월 5일 조선일보 "외아들을 돌려주오" 등

^{25) 1990. 12. 31.} 법률 제43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한국 출신 입양아동의 입양 허가 재판 절차에서 입양기관의 장이 작성한 입양동의서의 존재만으로 입양동의의 효력을 인정하게 하는 근거가 되었다.

3) '대리입양' 관행

한-미 간 입양절차에는 다른 나라 해외입양에서는 유래를 찾아볼 수 없었던 '대리입양' 관행이 처음부터 자리 잡았다. '대리입양'이란 입양부모가 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 대리인을 통해 입양아동의 출신국에서 입양을 진행할 수 있게 허용하는 입양방식을 뜻한다. 이러한 대리입양은 1950년대 한-미 간 해외입양을 주도한 홀트 양자회의 회장 해리 홀트에 의해 주창되었다(캐서린 시너 초이, 2015). 비용과 시간상 효율적인 입양절차의 수행을 위해 입양알선기관이 입양부모를 대신해 입양절차를 진행하도록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대리입양'은 입양부모가 직접 입양아동의 국가를 방문하지 않아도 입양을 할 수 있게 해 해외입양 과정에서 드는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게 하였다. 그 결과 한국에서 미국으로 입양되는 아동 수가 단기간 급증하였다.

미국 주 정부 산하 아동복지기관과 사회복지 전문가는 대리입양제도가 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는 제도라는 점을 지적하며 강력히 반대하였다. 자칫 잘못하면 입양절차에서 가장 중시해야 할 아동의 복리를 내팽개친 채 입양 부모와 사적 입양 알선 기관의 이익에만 초점이 맞춰질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었다(이경은, 2017). 신속한 입양절차를 추구했던 대리입양제도는 미국 쪽 입양부모와 가정에 대한 한국 쪽 심사와 사후관리를 최소화하거나 생략했다. 입양부모에 대한 미흡한 심사 결과 1957년 미국 오리건주에서 대리입양절차를 통해 미국으로 입양된 한국 입양아동이 머리를 구타당해 사망한사건이 발생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이처럼 대리입양은 입양되는아동의 안전과 복지를 전혀 담보할 수 없는 불충분한 제도로서 입양되는 아동의 권리를 침해할 중대한 위험성을 내포한다.

하지만 한국의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은 "외국인은 각령의 정하는 기관으로 하여금 입양절차의 일부를 대리하게 할 수 있다."고 명시함으로써 대리입양의 근거 규정을 명시 해 도입하였다(동법 제6조). 이후 '1977년 입양특례법'에서는 외국인이 해외에서 입양하 고자 할 때는 입양알선기관에 그 알선을 의뢰하도록 규정하면서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법원 인가가 아닌 보건사회부 장관의 해외이주허가만으로 가능하도록 규정하였다(동법 제9조). 또한 입양 알선기관의 장은 무적아동의 일가창립 절차를 밟을 수 있고, 후견직 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해 입양부모가 입양아동을 직접 보지 않고도 해외에서 입양할 수 있게 하였다(동법 제9조, 제12조, 제13조).

4) 입양의 '산업화'

앞서 살펴보았던 기아호적 창설, 대리입양 허용 등을 통해 해외입양을 용이하게 한 결과 한국 아동이 대규모로 해외가정에 입양되었다. 아동에게 대안가정을 찾아주기 위 한 아동 보호 차원에서 진행했다고 보기에는 용납하기 어려운 불법적인 수단이 동원되 기도 했다. 전세기로 한 번에 입양아동 100여 명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아동 사망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고, 입양 아동의 손목을 빨랫줄로 묶어 미국으로 인솔해가는 행태가 사회 문제화 되기도 했다(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 트렌카, 2019). 전쟁고아를 구제하기 위해 해외입양의 활성화가 필요했다고 하나. 1970년대 이후 해외입양 통계가 훨씬 증가한 점 에서 전쟁고아와 해외입양 활성화 간 연관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 오히려, 해외입양을 통해 지급받는 입양수수료 수입에서 해외입양 증가의 원인을 찾는 비판의 논거가 더 설 득력 있어 보인다.

한국 아동의 입양 수수료는 1988년 5,000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4,571 달러), 2009년 1만 7,215달러(같은 해 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 1만 7,074달러), 2018년 기준 홀트 인터내셔널 홈페이지에 소개된 입양 수수료는 입양 심사비용, 여행 경비 등을 제외하고도 최대 33,600달러에 이른다²⁶). 정부는 입양 수수료를 규제하기 위한 실효적 인 조치를 하지 않았으며, 민간 입양기관은 입양 수수료를 해외로 입양 보낼 아동을 확 보하기 위해 양육시설, 병원 등 아동이 있는 시설과 기관에 대한 로비 자금으로 이용하

^{26) 2019. 1. 22.}자 검색 결과 https://www.holtinternational.org/adoption/fees.php

기도 했다²⁷⁾.

미국, 영국 등 해외 언론은 이처럼 산업화한 한국의 해외입양 행태를 강하게 비판했다. 1988년 1월 미국 월간지 프로그레시브(Progressive)는 한국의 해외입양을 커버스토리로 다루었다. "아기 매매-한국이 아기를 만들고 미국이 이들을 산다(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는 제목의 이 기사는 입양기관이 해외입양부모로부터 아동 1명당 5,000달러를 받고 있으며, 한국이 해외입양으로 벌어들이는돈은 1년에 1,500만~2,000만 달러에 달한다고 보도했다. 위 기사에서 주한미국대사관INS 이민비자 담당 영사 로버트 애크만은 당시 인터뷰에서 한국 아동이 한 달에 500명정도 미국으로 입양되고 있는데, 이는 인도적인 이유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큰 숫자로, 한국의 해외입양이 비즈니스가 되어 버렸다고 하였다. 28) 전쟁고아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시작된 해외입양아동 수는 사회·경제적으로 크게 발전한 1980년대에 오히려 폭증한 것이다. 우리 정부가 국가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보살피는 복지 체계를 구축하는 대신 해외로 입양 보내는 길을 택한 결과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해외입양 제도의 관행상 특성, 즉 고아호적 창설, 입양부모 없이 진행한 대리입양, 고액의 입양수수료와 기부금 수령 관행은 이후 수십 년간 입양 관행으로 자리 잡았고, 2011년 입양특례법 전면 개정 당시까지 지속되었다.

^{27) 1989. 9. 27. &}quot;입양아 확보 위해 뒷돈", 한겨레 기사 중 "입양기관들이 입양아동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 고아원 등 복지시설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양육비, 사례금 명목으로 막대한 자금을 주어 온 것으로 보건사회부 감사 결과 드러났다. 보사부가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89년도 보사부감사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홀트아동복지회는 국외입양대상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86-88년 성로원 등 51개 사회복지시설에 입양 대상 아동 1명당 6만 원의 양육비와 입양 때 20만 원의사례비를 주는 등 모두 7억8823만 원을 지원했다."

²⁸⁾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by Matthew Rothsch ild, The Progressive, January 1988, http://www.transracialabductees.org/politics/progressive.html

4. 국제인권규범에 비춰 본 해외입양 법 제도의 문제: 아동인권과 국가 책무를 중심으로

1)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 위반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유엔아동권리협약은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 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 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으며(동 협약 제3조), 더 나 아가 입양절차에서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구체적으 로 명시하고 있다(제21조). 헤이그협약 또한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최선이 되고, 국제법 에서 인정된 그의 기본적 권리가 존중되면서 이루어지도록 보호조치를 확립"하여야 한 다고 협약의 목적을 정하고 있다(제1조 a). 이러한 원칙은 한국 아동복지법 제2조 제3항 의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는 규정과 입양특례법 제4조(입양의 원칙)의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한국전쟁 이후 수십 년 동안 민간 입양기관 주도로 이루어진 해외입양절차와 관행은 과연 국제법에서 정하고 있는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살펴보았다. 이승만 정권 때 시작한 해외입양은 미군과 한국인 여성 사이에 출생한 혼혈아동을 아버지의 나라로 보내겠다는 목적에 따라 법적 근거도 없이 이루어졌다. 그 결과 1955년부터 1961년 사 이에 해외로 입양되었던 아동 전부가 혼혈아동이었고, 혼혈아동 중 대다수 아동에게는 부모가 있었다. 부모가 있는 아동을 고아로 만들어서 미국으로 입양 낸 것이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정책이었을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박정희 정권 때는 1961년 고아입양특례법을 제정함으로써 이승만 정권 때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적으로 제도화했다. 하지만 당시 고아입양특례법은 고아 를 보호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책이나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최소한의 보호정책에 대해 아무런 규정도 하지 않고, 입양부모의 자격에 대해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해외로 입양 보내는 데만 급급한 내용을 담고 있었다. 혼혈아동으로 시작한 해외입양은 미혼모 아동으로 입양대상 아동을 확대하였다. 미혼모의 자녀가 해외입양대상 아동이 된 것은 여성의 혼전 임신과 출산, 양육은 물론 아버지가 없는 아동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사회적 차별의 결과이며, 이러한 인식을 그대로 받아들인 정부가 어떠한 적극적인 지원 대책도 마련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이다. 미혼모가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사회적환경과 정책적 지원 제도를 마련했다면 1980년대 연간 8,000여 건에 달하는 해외입양통계는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 미혼모에게는 자녀를 출산하고 양육할 기회를 박탈하고, 아동에게는 부모를 알고 원가정에서 양육될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과거 해외입양절차와 제도는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위반하였다. 이 문제는 다음 목차에서 살펴볼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의 위반 문제로 이어진다.

2)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 위반

1980년대 이후 한국에서 해외로 입양 보내는 아동의 90% 이상이 미혼모 가정 출신이라는 통계는 한국에서 원가정 양육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대상 아동 중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 (1961~70년) 17.9%였던 것이 1970년대(71~80년) 36.5%로 증가하다가 1980년대(81~90년)에는 전체 입양아동 중 72.2%, 1990년대(1991~2000년)에는 92.5%에 이르렀다(조가은, 2019). 최근에는 이러한 경향이 더 심해져서 2020년에는 해외입양 아동 232명 중 1명을 제외한 모든 아동(231명: 99.6%)이 미혼모 자녀였다²⁹⁾. 이처럼 해외입양대상 아동의 90% 이상을 미혼모 자녀가 차지하게 된 것은 엄마 혼자 아이를 키우는 것보다는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는 것이 아이에게 더 낫다는 인식과 세금으로 혼외 관계에서출생한 아이의 양육을 지원해서는 안 된다는 미혼모에 대한 사회적 편견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²⁹⁾ 보건복지부 www.mohw.go.kr

하지만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야 하다고 선언하고 있다. 특히 헤이그협약은 전문에 서 원가정 보호를 원칙으로 천명하고 있으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국내에 서 입양할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 수단으로 검토할 것을 선언하고 있다. 해외 사 례를 보더라도 필리핀에서는 입양숙려기간을 3개월로 정하고, 그 기간 미혼모에 대한 상담과 지원을 보장하고 있다30). 또한 이후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도 친생부모가 입양 전까지는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다. 체코에서도 입양숙려기간을 6주로 보장하고, 이 기간에 친생부모가 아동을 양육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31). 이때 원가정 양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아동보호체계상 일시보호를 위한 시설 또는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도록 공적 지원 체계를 설계해두고 있다.

혈연 중심의 가족주의와 입양에 대한 사회적 편견이 작용한 결과로 자리 잡은 비밀입 양 관행하에서는 친생부모가 입양과정에 개입할 여지를 전혀 보장하지 못했다. 입양을 결정한 순간 친생부모는 아이를 입양기관에 맡겨야 한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전 의 입양체계에서는 입양기관과 연계된 미혼모 시설의 주도하에 미혼모는 아동을 출산하 기도 전에 친권 포기각서와 입양동의서를 작성해야 했고, 출산하자마자 자녀와 생이별 해야 했다. 이후 아동의 보호와 입양절차는 입양알선 기관이 전적으로 맡아서 진행했고, 이 과정에 친생부모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는 전무했다. 입양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아동 의 상태를 알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입양 완료 후 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고 생활하는지에 관해서 어떠한 정보도 제공받지 못했다. 필리핀에서는 입양절차가 진행되 는 동안 친생모가 직접 양육하도록 보장하면서 국가가 양육을 지원하는 것과는 매우 대 조적인 입양관행이다³²⁾. 이러한 해외입양 관행은 미혼모의 친권과 양육권을 전면적으로 배제하고 있어, 헌법상 보장하는 친생모와 자녀의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 가족생활권 (헌법 제36조) 등을 침해한다.

³⁰⁾ 구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2014). 헤이그비준준비팀,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³¹⁾ 구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2015),조사연구부 헤이그협약팀, 공무 출장 결과보고서-체코, 폴란드.

³²⁾ 구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2014), 헤이그비준준비팀,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3) 입양의 공적 책임 원칙 위반

현행 입양절차에서는 아동에게 입양이 최선이라는 판단(아동의 입양적격성 결정),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에 이루어지는 아동 인수와 보호, 입양아동과 입양부모 간 결연, 입양전제위탁 결정까지 거의 모든 입양절차가 민간기관인 입양기관 단독의 결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2011년 입양특례법 개정 이후 법원 개입이 이루어졌으나, 모든 절차를 거친 후 사후에 입양을 승인하는 정도의 역할에 머무르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과 헤이그협약은 입양을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관장할 것을 규정한다33). 이러한 국제인권규범에 따라 체코, 필리핀, 노르웨이 등 위 협약에 가입한 대다수 국가는 입양과 관련된 절차 대부분을 정부에서 관장한다. 나아가 민간 입양기관의역할은 최소한으로 축소하고 핵심 입양 업무에는 민간이 개입하지 못하게 제한한다(김효진·이재연, 2011). 입양을 아동복지체계와 분리해 운영하는 것도 큰 문제다. 아동이친생부모와 함께 살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아동복지·사회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입양은 최후 방안으로 검토해야 한다. 2021년 7월부터는 지방정부에서 입양 적격성 결정을하게 된 것은 매우 긍정적인 변화이다. 하지만,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동안 해당 아동에대한 보호를 입양기관이 맡아서는 안 되며, 친생부모가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상황이 어려운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보호조치에 따라 아동복지법상 가정위탁또는 시설보호로 의뢰해야 한다(김진석, 2017). 입양하고자 하는 부모는 입양기관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입양을 신청하고, 자격을 검증받아야 한다. 입양의뢰된 아동과 입양부모가 될 가정의 결연도 입양기관이 아니라 공적 기관인 보건복지부 장관이 맡아 진행해야 한다(노혜련, 2017).

³³⁾ 헤이그협약 제4, 5, 6조

4)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

현행 입양특례법은 제36조 단 한 개의 조문을 통해 입양인이 자신의 입양기록에 접근 할 근거를 규정하고 있다. 입양인의 가족찿기를 권리로 인식하지 못한 결과, 입양기관과 관련 시설은 입양인과 관련된 문서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등을 내세우며 입양인에게 비 협조적인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입양특례법상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통해 가 족을 상봉하는 사례가 극소수라는 사실은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보장하지 않고 있는 현행 법·제도의 한계를 단적으로 드러내 준다. 2021년 국회 남인순 의원의 '해외입양인 정보공개 청구 현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1년 사이에 이루어진 해외입 양인의 입양정보공개청구 총 9,022건 중 가족상봉을 한 건수는 434건으로 4.8%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³⁴⁾. 총 9,022건 중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할 수 없는 실종, 유기 등은 1,471명(16.3%)에 달했고, 친생부모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었던 경우는 7,551건으로 83.7%였다35). 친생부모 정보를 확인하고 주소 파악이 가능한 경우는 5,113건으로 67.7%, 주소지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2,438건으로 32.3%에 달았다³⁶). 주소파악이 가능했던 사례 중 친생부모에게 입양인이 가족을 찾는다는 소식을 전달한 경우는 1,819 건으로 24.1%, 거부와 무응답이 2,799건으로 37.0%으로 나타났다.³⁷⁾ 이를 보면 2011 년 법 개정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의 법적 근거는 도입되었지만, 현 실적으로는 실효성이 미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중략)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다.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동 조문에 근거해 회원국을 상대로 "당사국 내에서 입양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가 보호되지 않는다는

^{34)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35)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36)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37)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사실"에 대해 우려를 표하면서 "당사국이 입양 아동 본인의 출신을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적절한 연령 및 전문적 지원 조치를 포함한 상기 목적의 법적 절차를 확립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³⁸⁾. 그런데 현행 입양특례법은 입양정보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만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친생부모와 형제자매 등 입양인의 가족도 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해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가족을 알 권리를 갖는다. 미국은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을 '친생부모'에게 보장하고 있는 곳이 42개주, '형제자매'에게 인정하는 곳이 33개주로, 대부분의 주에서 입양인뿐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형제자매에게도 입양정보공개청구권을 보장하고 있다³⁹⁾. 이에 비교했을 때한국의 입양정보공개청구권자의 범위는 매우 협소하다.

한편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제3항은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실무 현장에서는 이 조항을 적용할 때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라도 입양인에게 치료를 위한 목적이 존재하는지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법 규정과 법 해석은 애초 동 조문의입법 취지를 몰각하는 것이다. 2011년 개정 당시 동 조문은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와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권'의 균형을 도모하려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다. 즉 친생부모가 사망했거나 그에 준하는 사유로 동의할 수 없을 때는 친생부모의 사생활 보호필요성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므로 생존하는 입양인의 알권리를 더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기타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와의료상 치료 목적이 있는 경우를 별개의 사유로 규정해 각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더라도 입양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해야 할 것이다.

해외입양인에게 자신의 정체성을 알 권리는 살아가는 동안 반드시 풀어야 할 화두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마음속 내재하는 근원적인 불안과 불화를 해소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입양특례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도 필요하겠지만, 무엇보다 해외입양

³⁸⁾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33.(e).

³⁹⁾ https://www.childwelfare.gov/topics/systemwide/laws-policies/state/ 통해 리서치 정리한 내용임

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가 얼마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지 우리 사회가 제대로 인식하고 직시할 필요가 있다.

5. 요약과 시사적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정책을 살펴보면 이승만 정권 시절에 혼혈아동과 전쟁 고아에 대한 조치로서 해외입양을 도입해 적극적으로 장려하였다. 박정희 정권은 '고아 입양특례법'을 제정해 법적 근거 없이 이루어졌던 해외입양을 법제화하고 고착화시켰 다. 박정희 정권은 북한과의 체제경쟁을 의식해 해외입양 쿼터제를 도입하고 국내입양 우선 정책을 시행하고자 하였으나 국내입양을 포함한 국내 아동보호체계에 대한 예산을 더욱 줄여나갔던 점에 비추어 보면, 해외입양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의지는 없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후 전두환 정권은 '이민확대 및 민간외교'라는 명분을 내세워 해외 입양 쿼터제를 폐지하고 자율화 정책을 시행해 해외입양을 정부차원에서 촉진하였다. 그 결과 1985년과 1986년에는 연간 8,000여명의 아동이 해외로 입양되어 역대 최고 기 록을 세우기에 이르렀다.

이처럼 1950년대부터 1980년대까지 해외입양의 시작과 제도화, 활성화 과정에는 과 거 권위주의 정권의 해외입양에 대한 입장과 관련 정책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이러한 정부 정책의 영향 아래에서 해외입양은 고아 호적 관행, 대리입양 관행, 입양 수수료 징 수를 통한 이윤 추구의 성격을 띠며 이루어졌다. 이러한 해외입양관행은 앞서 살펴보았 던 국제인권규범에 비추어 보았을 때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과 원가정 양육 우선 원칙에 반하다. 또한 민간 주도로 해외입양이 이루어짐으로써 권한있는 공적 당국에 의해 입양 이 이루어져야한다는 원칙도 위배하였다. 또한 부모를 확인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 아호적으로 해외입양을 추진한 결과,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 하였다.

해외입양인 인권침해 사례 유형과 실태

- 1. 질적 연구결과 2. 양적 연구결과

1. 질적 연구결과

1) 해외입양인

(1) 연구참여자 특성

해외입양인의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입양인 39명과 입양인 자녀 1명을 포함한 총 40명을 대상으로 개별면접 또는 초점집단 면접을 진행하였다. 참여자 모집은 해외입양 인 커뮤니티와 해외입양인 권익 옹호 단체 등에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접대상자 를 연결해줄 것을 의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면접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개 별적 특성은 익명성 보장을 위해 [표 13]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 하였다. 성별은 여성이 33명(82.5%)으로 남성보다 압도적으로 많았다. 출생년도는 70년 대가 47.5%, 80년대가 27.5%, 60년대가 25.0%였다. 입양연도는 70년대가 55%, 80년 대 40% 순으로 나타났다. 입양수령국은 미국이 47%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덴마크 와 벨기에가 그다음으로 각각 12.5%였다. 입양을 주선한 국내입양기관은 홀트 35%, KSS 25%, 동방아동복지회 17.5% 순으로 나타났다.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전체 중 60.0%에 해당하는 24명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증 언하였다. 이 중 여러 명이 신체학대와 성적학대, 정서학대를 복합적으로 경험했는데, 학대 유형으로 분류해서 보면 13명(32.5%)이 신체학대, 12명(30.0%)이 성적학대, 5명 (12.5%)이 정서학대를 받았다고 진술해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매우 높은 비율이 학대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3]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n=40

	구분	total	비율(%)
 성별	여	33	82.5
(O) E2	남	7	17.5
	1960-1965	5	12.5
	1966-1970	5	12.5
ᄎᄱᅄᄃ	1971-1975	12	30.0
출생연도	1976-1980	7	17.5
	1981-1985	6	15.0
	1985-1990	5	12.5
	1965-1970	2	5.0
	1971-1975	11	27.5
입양연도	1976-1980	11	27.5
	1981-1985	8	20.0
	1986-1990	8	20.0
	미국	18	47.0
	덴마크	5	12.5
	벨기에	5	12.5
	캐나다	1	2.5
	호주	3	7.5
입양수령국	노르웨이	3	7.5
	네덜란드	2	5.0
	스웨덴	1	2.5
	프랑스	1	2.5
	해당없음	1	2.5
	홀트아동복지회	14	35.0
	한국사회봉사회	10	25.0
	동방아동복지회	7	17.5
국내입양기관	대한사회복지회	3	7.5
	개인입양	3	7.5
	기타	1	2.5
	모름	2	5.0
=LCII	있음	24	60.0
학대	없음	16	40.0
하미조리	신체학대	13	32.5
학대종류	성적학대	12	30.0
(복수응답)	정서학대	5	12.5

(2) 주요 질문

해외입양인 면접조사에서는 크게 네 영역으로 나눠 질문하였다. 첫째, 해외로 입양되기 전 한국 내 입양절차 중 인권보호 수준이 어떠했는지, 이 단계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이 어떠한지; 둘째, 입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수준은 어떠했는지; 셋째, 수령국 입양기관과 입양가정의 인권보호 수준은 어떠했으며 이 단계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이 어떠한지; 넷째,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를 물었고 각 영역에 대한 탐침 질문도 활용하였다. 면접에서 활용한 구체적인 질문은 [표 14] 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14] 입양인과 입양인 자녀 면접조사 주요 질문 항목

 구분	주요 질문
한국 내 입양절차 중 인권보호 수준	 한국 입양기관이 당신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했다고 생각하시나요? 0-10점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양되기 전 아동양육시설 등에서 한 생활은 어떠했나요? 한국 입양기관의 실천 중에서 혹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어떤 측면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과정과 의미를 어느 정도로 잘 설명했다고 보시나요? 입양관련 문서는 어떠했나요? (형제자매가 있다면) 한국입양기관에서 형제자매를 같은 곳에 배치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했나요? 한국 입양기관과 아동양육시설 등이 당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어떻게 다르게 해야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입양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	 한국 정부는 입양과정에서 당신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했나요? 0-10점 척도를 활용해서 평가해보십시오.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입양서류에 대한 접근 등을 위해 한국 정부기관(예: 아동권리보장원, 한국대사관/영사관등)의 도움을 받았다면 얼마나 도움이 되었고, 어떤 측면에서 도움이 되었나요? 해외입양에서 인권침해와 관련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생각하시나요?

구분	주요 질문
수령국과 입양가정 내 인권보호수준	 입양가정은 당신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했나요? 혹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해외 입양기관은 당신의 인권을 얼마나 잘 보호했나요? 0-10점 척도 를 활용해서 평가해보십시오. 그 점수를 준 이유는 무엇인가요? 해외 입양기관의 입양 후 서비스에 관해 이야기해주세요. 해외 입양기관과 관련해 혹시 인권침해적 요소가 있었나요? 있었다면 무엇인가요?
해외입양에 대한 전반적인 의견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가요? 한국은 해외입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혹시 해외입양을 제한된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입양인의 권리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권침해 관련 배상에 대한 의견	 인권침해가 있었다고 밝혀지면, 어떤 결과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한국 정부는 어떻게 대응하고, 어떻게 배상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3) 조사 결과

해외입양인과의 개별면접과 초점집단 면접은 일부 자료를 일차로 기초 코딩한 후 코딩을 통해 나타난 주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는 텍스트 시각화 방법, 즉 언급빈도가 높고 중요한 주제를 부각하는 코드구름 시각화 방법으로 코드를 제시하였다 [그림 3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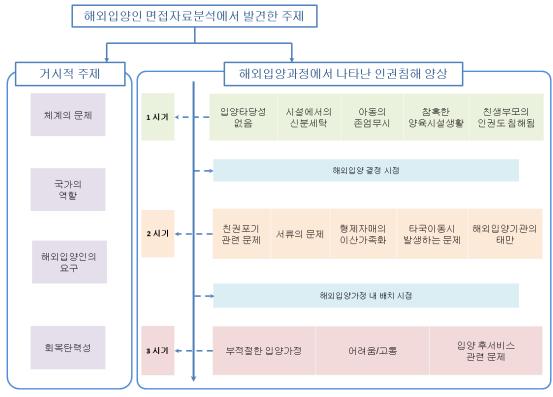
[그림 3]에서 나타나듯이 해외입양인 면접자료에서 가장 핵심으로 나타난 주제는 코드구름의 정중앙에 있는 'commodification of adoptees(해외입양인의 상품화)'이다. 그외 해외입양인이 집중해서 언급한 주제는 'abuse/neglect(해외입양인에 대한 학대와 방임)', 'adoptee's requests(해외입양인의 요구)', 'resilience(해외입양인의 회복탄력성)', 'difficulties in searching(뿌리찾기의 어려움)', 'problems around relinquishment (친권포기관련 문제)', 'lies, manipulation, hiding information, gaslighting, negligence (거짓말, 조작, 정보은폐, 가스라이팅, 태만)', 'help adoptees(해외입양인 돕기)', 'inaccurate information/falsification(부정확한 정보/위조)', 'repair the damage

(손상을 치유하기)' 'the system is the problem(체계자체가 문제)', 'lifelong impact(평생 계속되는 영향) 'inadequate PAS¹)(입양사후서비스 관련 문제)' 'racial discrimination/ prejudice(인종차별/편견)' 'struggles in search for identity(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을 들 수 있다.



[그림 3] 코드구름 시각화

¹⁾ PAS: Post Adoption Servic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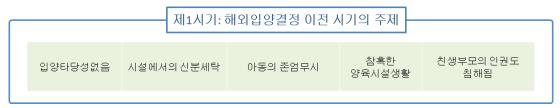
[그림 4]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주제는 크게 2개, 즉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거시적 주제'로 나눌 수 있다. 대분류 중 하나인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은 다시 세 개 시기로 분류해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기초 코드를 주제별로 범주화하기 위해 입양과정의 흐름에서 중요한 두 개 시점. 즉 입양이 결정되는 시점과 입양가정에서 실제로 생활하기 시작하는 시점을 기점으로 입양과정을 나눈 다음이 두 개 시점을 기점으로 입양과정을 세 개 시기로 구분한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해외입양이 결정되기 이전 시기, 두 번째 시기는 해외입양이 결정된 이후부터 해외 입양가정에 실제로 배치되기 직전 시기, 세 번째 시기는 해외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시기이다. 또 다른 대분류인 '거시적 주제'는 해외입양인과 자녀의 면접에서 나타난 주제 중 시기에 구애받지 않는 해외입양 전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면접을 통해 파악

한 코드의 범주를 도식화하면 [그림 4]와 같다.

먼저 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에 해당하는 주제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제1 시기인 해외입양 결정 이전 시기와 관련해 나타난 주제는 다음과 같다.2)

① 제1시기: 해외입양결정 이전 시기



[그림 5] 제1시기: 해외입양결정 이전 시기의 주제

이 시기에 떠오른 주제는 '입양타당성 없음(no validity to one's adoption)'. '시설에 서의 신분세탁(identity laundering)', '아동의 존엄무시(a complete disregard)', '참 혹한 양육시설생활(dire conditions at the orphanage)', '친생부모의 인권도 침해됨 (perpetration on birth families)' 등이다 [그림 5 참조].

■ 입양타당성 없음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에는 당시 친생부모가 생존해 있었으므로 자신이 고아가 아닌데도 서류상 고아로 만들어진 사람도 있었고. 친생부모에게 자신이 출생 직후 사망 했다고 통보해 입양된 사람도 있었고. 자신이 기아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확인하는 과정 없이 기아로 기록해서 입양 보냈기에 친생부모와 재결합하기 전까지는 평생 자신 을 기아로 알고 살아온 사람도 있었다.

우리는 분명히 고아가 아니었어요. 집에서 부모님이랑 살았는데 고아 비자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보육원에서 중개를 해줘서 받아냈어요. 엄마가 실제 로 우리를 비행기에 태웠어요. 나랑 동생은, 나는 동생 얘기할 때는 항상 울어요,

²⁾ 본문에 포함한 인용문은 인적사항 등을 익명 처리한 것이다.

기억해요. 공항에 갔는데, 엄마가 온갖 사진을 준비한 거예요. 비행기 안에서 꺼내 봤는데, 온전한 가족사진들이었어요. 그럼 입양부모가 '아니, 얘네들이 고아라고 했는데' 또는 '이 아이들 버림받았다고 했는데 이 엄마 아빠랑 같이 있는 사진들은 다 뭐지?'라고 질문해야 하잖아요? 질문하지 않았어요. 한참 후에, 내가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아내는 데 수십 년이 걸렸어요, 입양기관에 뭐가 잘못된 건지, 고아인 지 알아봤냐고 물어봤는데, 그런 적이 없었어요. (중략) 내 (친생)엄마는 한복을 보 냈어요. (중략) 내가 자라는 동안 계속 편지도 썼고. 편지들을 발견했을 때가 기억 나요. 아무도 말해주지 않았던 편지들이었죠. (중략) 친생모가 살아있고 주소도 알 고 연락하려고 하는데 아무도,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예요. (해외입양인 1)

내 입양에는 전혀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해요. 고아도 아닌데 거래된 거죠. (해외입 양인 2)

내가 친생부모 찾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고아가 아님을 암시하잖아요. (중략) 내 고아호적 내용을 봤는데, 참 놀라워요. 어떻게 하나의 파일에는 친생부모의 이 름이 적혀있고, 다른 파일에는 부모도 가족도 없다고 나오죠? (해외입양인 30)

친생모는 난산이라 의식이 있었다 없었다 했었고, 친생부가 병원에 오지 못했어요. (중략) 병원에서 친생가족에게 내가 출생 당시 사망했고 시신을 처리했다고 통보했 어요. 허위가 만들어진 거죠. 많은 입양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에 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어요. 내 이야기만 할게요. (중략) 내 친생가족이 나한테 '꾸며진 사망'당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 수 있는 정보에 접근하지 못하게 막았고, 인 신매매를 도운 거예요, 인도적 지원이라는 이름 하에 뒤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중략) 마침내 아동권리보장원을 통해서 내 부모님을 찾았는데, (특정 입양기관)을 통해 만나려고 했을 때는 정보가 없다고 했었어요. 찾기를 원하지 않아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내 서류를 들여다보고 금세 찾았어요. 그런데 내 친생부는 어리둥절했어요, 애가 죽었는데 무슨 소리냐...(중략) 우리 가 족에게는 내가 죽은 사람으로 삼십 년 이상 전해져 내려왔는데. (해외입양인 3)

그래서 우리 서류에 어딘가 우리가 버려졌다고 나와요. 왜냐하면 우리 엄마가 우

리를 포기한 적이 없어요. 우리 부모가요. 그래서 입양대상자를 만들기 위해 버려 졌다고, 어딘가에서 발견됐다고 적는 거예요. 우리는 버려진 적도 없는데. (해외입 양인 4)

진짜 신속하게 진행된 거죠. 2월 초에 갔는데 (중략) 4개월 후 보내진 거니까. 내가 패스트트랙으로 특별 처리한 게 아닌가 하는 기분이 들어요. 진짜 고아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것 같아요. 헤이그협약에 의하면 가족을 찾아주려고 먼저 노 력해야 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부모를 찾아주려고 광고도 해야 하고. (해외입양인 5)

■ 시설에서의 신분세탁

이처럼 부적절하게 이루어진 해외입양은 아동의 해외입양 절차를 진행하는 어느 지점 에선가 '신분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볼 수 있다. 해외입양인은 새로운 이름과 생년월일을 부여받는 등 다른 사람으로 바뀌었고, 친생가족과의 연결지점이 끊 어지면서 입양 대상자가 되었다고 하였다. 입양기관 종사자로부터 당시 아동을 '바꿔치 기'하는 것은 흔히 일어나는 일이었다고 들은 해외입양인도 있었다. 실제로 DNA 검사 를 통해 친생부모나 형제자매와 재결합한 여러 해외입양인의 사례를 담은 문헌에도 이 미 해외입양부모에게 가기로 한 아동이 사망해서 그 대신 보내진 아동이 성인이 되어 다른 해외입양가정으로 보내진 친언니와 재결합한 사례(Cannon, Blackman, Kim, Kim & Rounds, 2020)가 있어. 이런 일이 드물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신분세탁이라는 말은 입양인의 표현 그대로이다.

새로운 이름이랑 생년월일이 주어져요, 처음 (특정 지역의 특정 시설)에 들어가면. (중략) 네다섯, 여섯 살 또래 애들 볼 때마다 내가 누구고 어디 살았는지 알았겠구 나... 그런데 어른들이 네 살짜리 애한테 새 이름, 새 생년월일도 주면 결국 그걸 믿겠구나... 현실이 뭔지 그때는 잘 모르고 권력자가 와서 이렇다고 얘기하는데 뭘 알겠어요? 그런데 평생 나는 지금 이 생일이 진짜가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입양모 에게 물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14살, 15살쯤에. 엄마한테 '이거 내 진짜 생일 아닌 거 알지?'(중략) 이렇게 새 이름이랑 생일을 줬고, 나는 그때 그게 아니라고 말할 수 없었어요. 이건 옳지 않아요. (특정 시설장)이 완전히 바꿔버리길 원한 거고, 내 정체성을 없애 버린 거고, 다른 삶을 시작하게 한 거죠. (해외입양인 2)

당시에 바꿔치기(switching)는 아주 흔한 일이었던 것 같아요. 이 사람 아직도 (특정 입양기관)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특정 연도)부터 거기 있었죠. 이름은 (성명) 이고요. 기꺼이 인정하기를, 바꿔치기가 자주 일어났고, 대개는 위조된 문서 뒤에 실제 아동에 관한 정보가 적혀있을 것이라고 (제삼자) 앞에서 말하더군요. (해외입양인 7)

내 권리가 보호되었는지에 대해서 0점을 주겠어요. (중략) 나를 다른 아이 서류랑 바꿔치기했거든요. (특정 입양기관)이 얼마나 알고 있었는지 분명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렇지만 시설장은 알고 있었고 거기서 바꿔치기한 거예요. 내가 다른 아이 이름으로 입양 간다는 걸 당시 입양기관의 담당사회복지사가 알고 있었을 가능성도 높아요. 심각한 인권침해죠. (해외입양인 7)

■ 아동의 존엄 무시

해외입양인은 입양기관이나 양육시설이 아동을 한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고 노동력이나 물건으로 간주했다고 이야기하였다. 이 주제는 2개 대분류 중 하나인 '거시적 주제'에 속한 '체계의 문제'에서 언급하는 '해외입양인의 상품화'와 직결된다.

시설에 입소할 때 죄수처럼 번호를 들고 찍은 사진이 있고 접수지에 보면 '건강은 좋은지' 묻는 질문에 (내가) 당시 4살 된 아이인데 "노동 가능"이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해외입양인 2)

나는 독서를 좋아했는데, 그 (시설) 여자는 내가 책을 못 읽게 했어요. (중략) 나중에 (입양수령국)에 그 여자가 방문해서 입양된 아이들을 둘러 보는데 정말 거짓말쟁이예요, 나한테 '잘 지낸다며? 그런데 네 엄마가 너 그렇게 책만 보는 거 싫어해. 집안일도 해야지.'그러는 거예요. (중략) 애들한테는 아무것도 설명해주지 않았어

요. 모든 일이 다 어른들 사이에서만 결정되었어요. 누가 우리를 앉혀놓고 다 알려 주겠어요. 우리는 그냥 존재하지 않는 거였어요. 우린 그냥 팔리기 전 상품과도 같 았어요. (해외입양인 8)

■ 참혹한 양육시설 생활

해외입양인은 한국의 양육시설에서 생활할 때 학대당한 경험이 있었고, 열악한 환경 에서 영양과 위생 측면에서 방임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영유아가 아닌 아동은 상대적으 로 나이가 많다는 이유로 어린 아동을 돌보아야 했다.

(나랑 같은 양육시설에 있었던 사람이) 나를 기억해서 깜짝 놀랐어요. 내가 그 방 리더였는데 다른 애들이 자기 일을 하게 만들어야 했어요. 내가 되게 못되게 굴었다. 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네가 나빴나 보지...'라고 했는데, 생각이 안 나요. 거기 서 음식도 아주 부족했고, 왜냐면 입양왔을 때 내가 아무도 내 음식에 손대지 못하게 지켰어요. (중략) 그건 못 먹은 사람한테는 정상적인 행동이에요. 내 입양부모님이 그러는데, 그 버릇을 중단하는데 일 년 반 정도 걸렸대요. 누가 내 음식에 가까이 오면 나는 극한 반응을 했대요. (해외입양인 9)

성추행 외에도 또 뭐가 있었냐면, 나는 그 사람들 하녀였어요. 왜냐하면 나이가 많 은 편이었거든요, 내가 제일 큰 아이였던 때도 있었고요. 요리, 설거지, 빨래…도 뭐였더라… (해외입양인 8)

어...좀 무서워서요. 왜냐면은 방이 한 3m에서 길이가 한 3.5m? (중략) 애들은 한 방이 적으면 20명에서 많으면 30명. (중략) 저녁 식사하러 한 6시 반? 7시 그때쯤 내려갔는데 '아, 이게 사람이 먹을 수가 없는 음식이야.' 어... 보리밥 굳은 거 반 공기에다가 이 반찬이 시금치가 이게 상하면은 누렇게 되잖아요. 뭐 그런 거 그리 고 좁은데 열 명이 앉아 있어요. 이 이 이거보다 더 작았어요. 그 접시들이, 근데 이거 철로 된 거 하나둘 셋 그리고 그거, 어, 감자 뭐 한 네 조각 그런데 알고 보니 까 순서가 있는 거예요. 먹는 순서가 있는 거예요. 맨 먼저 들어가 있는 아이들 아 니면 나이가 있는 아이들이 먼저 먹고, 맨 밑에 있는 아이들은 맨 나중에 그러니까

먹을 게 없는 거죠. 그래가지고 첫날은 배고프지 않으니까 그래도 동생한테 먹지 절대로, 먹지 말라고, 냄새난다고, 그냥 보리밥만 먹고, 이 반찬은 만지지도 말라고. 이건 사람 먹는 음식이 아니라고. (중략) 그래서 아니 오늘이 무슨 특별한 날이라서 이런가 보다. 믿을 수가 없는 수준이라서. 그런데 그다음 날 보니까 똑같아요. 그래서 무슨 진짜 물 같은 된장국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동생한테 그냥 밥,보리밥하고, 거기다가 말아먹고 저건 만지지 말라고. 아니면 우리가 배탈 난다고 (중략) 뭐 칫솔은 하나에 25명이 쓰는 거예요. 동생한테 너무 더럽다고. 그냥 부엌에 가서 소금 받아서 그냥 손가락으로 이렇게 하라고 한 거고 (중략) 위생 상태가너무 바닥. 심지어 이것도 없었어요. (화장지가 없고). 신문을 가지고 오라고 그래요. 다 잘라 가지고 한 페이지에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네, 16장이나와야 해요. 그리고 온 그 시설의 그 청소 관리 이런 거는 다 아동들이 했죠. (해외입양인 10)

■ 친생부모의 인권도 침해됨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해외입양인은 병원에서 친생부모에게 살아있는 자신이 사망했다고 허위 보고한 경우, 한국 입양기관에서 입양 의뢰한 아동을 되찾으려고 즉시 찾아간 친생부에게 이미 늦었다고 답변하거나 조부모나 친척이 아동의 입양을 의뢰했을 때 친생부모에게 확인도 하지 않고 입양보낸 경우 등과 관련된 경험을 하였다. 이 주제는 제2시기에 나타난 '친권포기 관련 문제'와도 직결된다.

나를 다시 아버지한테 보냈는데, 아버지는 아직 병원에 있었어요. 아무도 나를 돌보는데 도움을 주지 않고 (입원해 있는) 아버지가 나를 돌볼 수도 없어서 시청으로 나를 데려갔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언제 퇴원할지 몰랐어요. 두 달 후에 다시가서 나를 찾았는데 나를 벌써 유럽으로 보냈다고 하더래요. 두 달 만에. 네. 두달 만에요. 아무도 1970년대에 그렇게 빨리 해외입양을 진행할 수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직 거기 있는데 내 아버지에게 그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을 거예요. (해외입양인 5)

일단 나는 고아가 아니고요, 친생부모님들은 결혼하셨고 형제자매들도 있어요. 엄

마가 내가 태어난 날 나를 입양 보내려고 포기한 걸 알고 아버지가 그날로 찾아갔 는데, 너무 늦었다고 했다는 거예요. 내가 벌써 입양이 결정돼서 어디론가 가고 있 다고, 그런데 그게 사실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 서류를 보면 내가 (특정 도시)에 6일 있었고 (특정 도시)의 위탁가정에서 4개월 반을 지냈거든요, (입양수령국)으로 오기 전에요. (해외입양인 11)

내 어머니의 권리를 분명 침해한 것이고, 할머니가 나를 기관에 넘기긴 했지만, 내 가 국내에서 입양될 것이라고 믿었다는데, 그렇다면 할머니의 권리도 침해된 거예 요. (해외입양인 30)

②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시점부터 해외입양가정 내 배치 시점 전까지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	시점부터 해외입양기	ŀ정 내 배치 시점 전	까지의 주제	
친권포기 관련 문제	서류의 문제	형제자매의 이산가족화	타국이동시 발생하는 문제	해외 입양기관의 타	l만
	부정확한 정보/위조물충분하고 접근물가능				

[그림 6] 제2시기: 해외입양 결정시점부터 해외입양가정 내 배치 시점 전까지의 주제

이 시기의 주요 주제는 '친권포기 관련 문제(problems around relinquishment)', '서류의 문제(problems with official documents)', '형제자매의 이산가족화(siblings not being placed together)', '타국 이동시 발생하는 문제(problems while moving overseas)', '해외입양기관의 태만(overseas adoption agency's negligence)' 등이다. 이 중에서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코드구름 시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서류 의 문제'는 다시 '부정확한 정보/위조(inaccurate information/falsification)'와 '정보 에 접근못함'이라는 하위주제가 있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위조'는 코드구름 시각화를 통해서 부각되었던 중요한 주제 중 하나이다 [그림 6 참조].

■ 친권포기 관련 문제3)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친권포기와 입양의 진정한 의미를 친생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경우이다. 해외입양인은 친생부모가 있는데도 조부모가 친생부모 대신 친권을 포기한 경우,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을 마치 유학을 보내는 것처럼 좋은 것으로 설명함으로서 아동의 포기를 조장한 경우, 친생부모에게 아동이 해외로 입양될 것이라는 사실을 설명하지 않은 경우를 이야기하였다.

제 사례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입양 보내려고 나를 넘긴 사람이 내 어머니도 아니고 아버지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내 외할머니가 부모님 동의도 없이 나를 입양기관에 데려갔어요. 아버지가 그것 때문에 화가 많이 나 있다는 걸 알아요. 옛날 한국은 지금과는 달랐고 아버지가 할머니를 존중했다는 것도 알고요. 내 아버지에게 묻지 않았고 어머니에게 묻지도 않았어요. 외할머니가 입양을 보냈는데, 그게 괜찮았거나 가능했다는 거예요. 이 지점에서 내 아버지의 권리도 존중하지 않았다고 생각해요. (해외입양인 12)

(특정 입양기관)에서 친생부모한테 하는 말이 있어요. 유학 보내는 거랑 같다고. 입양 보내면 유학생 생기는 거라고. 친생부모는 입양 보내는 게 친권 포기라는 걸 몰라요. 그들은 자주 '그런데 18세 되면 다시 와서 다시 같이 행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해요. 미국에서 돈도 많이 벌어 와서 도움이 될 거라고. 그런 얘기는 친생부모에게 (특정 입양기관)의 재난과 같아요. 그리고 서류에 서명하면 모든 걸 잃고 그 이후에는 너무 늦은 거죠. (중략) 내 어머니는 몰랐어요. 어머니는 내가 죽은 줄 알았어요. 할머니가 그랬대요, 내가 죽었다고. 내가 나타났을 때 어머니는 귀신보는 줄 알았어요, 내가 죽었다고 생각했으니까. (해외입양인 13)

³⁾ 해외입양 과정에서 흔히 쓰였던 표현인 친권 포기는 친권이나 양육권에 관한 자기 의무와 권리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친권 포기각서는 그 내용을 문서로 남긴 것이다. 그러나 친권 자체는 포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법적 구속력이 없다. 그런데도 과거 해외입양 과정에서는 친생부모의 입양동의를 의미하는 문서를 친권 포기각서로 지칭하는 등 친권 포기를 입양동의와 사실상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실제로 입양동의는 철회할 수 있는 것임에도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친권 포기각서에 서명하면 친권 포기를 철회할 수 없는 것으로 고지함으로써 친생부모의 권리를 제한하고 박탈하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역사적, 관행적 용례를 반영해 필요에 따라 친권 포기, 친권 포기각서와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친생부모의 입양동의서 양쪽의 용어를 혼합해 사용하였다.

아, 저는 작년에 정인이 사건이 터졌을 때 (특정 입양기관)에 연락해가지고 어... 화가 나가지고 아직도 이런 부모들한테 아동을 보내고 있구나. 그래서 제 파일을 달라고 했어요. 떳떳하게. 그랬더니 뭐, 이 서류 뭐 저 서류 작성하고. 그리고 보내 줬어요. (중략) 서류를 일일이 보니까 부모님 동의서가 없는 거예요. (중략) 우리 아버지 이름도 무명, 우리 어머니 이름도 무명, 거짓. 이래가지고 '아, 이거 뭐가 잘못됐는데'. 그리고 한 종이에 제가 버림받은 아이, 기아 그리고 고아라고 적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단어가 의미가 다르잖아요. 기아라고 해도 부모는 있을 수 있잖아요. (중략) 그리고 내가 만약에 고아라면 우리 부모님들이 돌아가셨다는, 둘 중 한 명이라도 돌아가셨다는 사망진단서가 어디 있냐? 증명하는 게 없다. 그리고 나는 우리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 알고 있었죠. (중략) (시설장 이름)이 입양 동의 서를 (조부모에게서) 받아냈더라고요. (중략) 우리 입양이 다 됐는데 출국하기 한 달 전에 동의서를 받았고 (중략) 우리 할머니가 처음에는 이 아이들이 왜, 어떻게 입양을 가느냐, 우리들이 키워야 한다. 우리들이 데리고 가겠다고 했는데 고아원에 서는 안 된다. 부모들이, 양쪽부모가 다 동의해줬다, (특정 입양기관)에 와가지고. 그래서 할아버지는 어, 부모가 다 해줬다는 게 참 희한하지만, 뭐 해줬다고 하면 우리는 뭐 어쩔 수가 없지. (중략) 그 고아원에서 우리를 무적아로 만들어서 (특정 입양기관)으로 넘겨줬어요. (중략) 그래서 우리 애들 잘 있냐고 물었더니 '아 모르 세요? (특정 수령국)으로 보내달라고 해서 갔는데요?' 그래 우리 엄마가 '무슨 소리 하느냐?' (중략) '어미, 애비가 여기 있는데 어디를 가요. 우리 애들 어딨어?' '지금. 아, (특정 수령국)으로 갔다니까요, 석 달 전에.' '(특정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안 오던가요?'(중략) 아버지가 그다음에 (특정 입양기관) 찾아가서 '어떻게 내 허락 없이 이 아이들이 국경을 넘어가 입양됐느냐, 우리 아이들 돌려 달라.' 설명해 주는 사람 아무도 없고 (중략) 그래서 6개월 동안 술만 드셨대요. (해외입양인 10)

내 경우에는 할머니가 나를 포기했는데, 할머니를 만났을 때 얘기를 들어보니 내 가 국내입양될 걸로 이해하셨다는 거예요 (중략) 할머니가 입양 보낸 거니까 친생 모는 동의하지 않았던 것이고요. 나는 이게 불법이라고 생각해요 내 친생모는 나 를 나은 직후 매우 아팠다고 해요(중략) 좀 나아졌을 즈음에는 벌써 입양이 결정되 어 진행된 상태였고요. (해외입양인 30)

입양서류에 엄마가 입양을 동의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해외입양인 31)

친생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아버지는 돈 버는 동안 나를 친할머니에게 맡겼고 어머니는 친정에 가 있었는데 (중략) 친할머니가 나를 입양기관에 넘겼고 어머니가 할머니를 찾아와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입양 보냈다고 했대요. (해외입양인 20)

■ 서류의 문제

'친권포기 관련문제'를 보여주는 인용문에서도 드러난 바와 같이 면접에 참여한 해외 입양인은 입양서류의 문제도 자주 언급하였다. '서류의 문제'는 다시 '부정확한 정보/위 조'와 '불충분하고 접근 불가능'이라는 하위주제로 나뉘었다. 특히 '부정확한 정보/위조' 는 코드구름 시각화를 통해서 크게 부각된 주제 중 하나이다.

'부정확한 정보/위조'는 입양서류에 이름과 생년월일, 가족사항 등을 다르게 기재한 경우를 말한다.

나랑 내 쌍둥이 자매가, 우리가 그때 두 살이었는데 이름도 얘기하고 우리 둘이 쌍둥이라고 했다는 거예요. (중략) (특정 시설)에 가서 알아보니 그날 여자아이 둘이 입소한 것은 맞는데 쌍둥이가 아니고 한 살 터울이었대요. (중략) 내 양부모님도 쌍둥이를 원한다고 기관에 얘기했는데, 내 아버지는 솔직히 어떻게 그렇게 빨리 찾았나 놀랐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중에 DNA 검사를 해보니 우리는 자매는 맞지만, 쌍둥이는 아니래요. 내 서류의 모든 정보가 다 부정확한 것이고 그이후로는 더 이상 추적할 것이 없었어요. (해외입양인 4)

그들은 날조된 이야기를 배포하는 거예요. 내 친생부모님이 사무실에서 일하면서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를 갖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책임을 못 지고 어머니는 혼자 나를 돌보지 못했다~~ 어쩌고저쩌고... 그 이야기가 하나도 맞는 게 없어요. 내 부모님은 결혼했었고 사무실에서 일하지도 않았었고. 네. 하나도 맞지 않아요. 그러니 확인도 안 하고 과자 찍듯 찍어낸 이야기를 그냥 배포하는 거죠. 다른 입양인과 면접을 계속하면 자꾸 나올걸요. "내 친생부, 친생모는 결혼하지 않은 상태였고, 친생모가 나를 계속 데리고 있을 수 없었고, 친생모는 싱글맘이었고..." (해외입양인 6)

한 서류에는 내가 75년에 입양되었다고 나오고 다른 서류에는 76년이라고 나와요. (해외입양인 10)

한국에 올 때 (특정 수령국)의 입양기관 사람이 그러더라구요. 입양서류에 부모에 관한 정보가 없다고 적혀있거나, 거짓으로 적혀 있을지도 모른다고. 나는 그런 일 이 일어나곤 한다는 것에 놀랐는데, 내 서류가 그렇더라고요. (해외입양인 12)

기관의 사회복지사가 번역해준 내 입양 이야기는 매우 다른 버전이 있어요. 그 중 어느 하나도 내 한국친구가 읽었던 내 파일에 적혀 있던 내용과 맞는 것이 없어요. 그 사람들은 전체 파일을 공유하지 않아요. 내가 아닌 다른 아이의 정보가 분명히 적혀있지만...(해외입양인 14).

문제는 내가 실제로는 세 살이나 어린애였다는 걸 보고하지 않은 것이지요. 나는 이것이 내 권리의 심각한 침해라고 생각해요. (중략) 내 입양부모는 더 나이가 많 은 아이를 원했는데 나이 많은 아이가 없었던 거예요. (해외입양인 13)

내 서류에 내가 출생한 날 기관으로 보내졌다고 기록되어 있는데, 그건 사실이 아 니에요. 태어나자마자 나는 친생모와 집으로 갔고 약 일주일쯤 후에 기관에 보내 졌어요. 저는 이게 '이 아이는 완전히 분리되었다, 우린 이 아이가 태어났을 때부 터 데리고 있었고 친생부모가 이 아이를 다시 찾을 리가 없다'라는 메시지를 전달 하기 위함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강하게 들죠. (해외입양인 30)

입양서류에는 아버지가 고혈압으로 사망했다고 적혀있어요. 하지만 사실은, 분명 히 기억해요, 아버지는 나와 언니 앞에서 자살했다고요. 아버지가 나한테 밧줄을 달라고 했고 그걸로 목을 매달았어요. 바로 어제 일 같아요. (해외입양인 33)

(시설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내가 입양될 거라고 내 이름을 바꿔야 한다고 했어요. 원래 이름은 (이름)인데 (다른 이름)이 되었어요. 내 생일이랑 가족 이야기도 다 바 꿨어요. (해외입양인 34)

'불충분하고 접근 불가능'이라는 하위주제는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에 관한 정보가 있더라도 매우 불충분하고 해외입양인은 접근할 수 없는 현실을 말한다.

아무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유일하게 적혀있는 건 '발견되었다.' '양육시설에 보내 졌다.' 누가 찾았는지, 어디서 찾았는지, 발견한 날짜와 시간이 언제인지, 무엇을 입고 있었는지, 어떤 물건을 가지고 있었는지, 아무 정보도 없어요. 친척을 찾아보려고 했는지, 경찰서에 알렸는지도... (해외입양인 자녀)

내 아동기 전체가 단 3페이지로 축소된 거죠. (해외입양인 2)

탁자에 두꺼운 기록이 보이는데 그 서류에 뭐라고 쓰여 있는지 알려주지를 않는다 니 실망스럽죠. 그 기록에 적혀있는 모든 것이 다 나에 관한 것이에요.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왜 그 정보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인지. 그 남자는 아주 태연하게 나한테 직접 보라면서 탁자에 서류를 던졌어요. 다 한글인데. 물론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건지지 못했죠. (해외입양인 12)

■ 형제자매의 이산가족화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입양기관이 친생 형제자매를 같은 입양가정에 배치하려고 노력한 증거가 없고, 실제로 형제자매가 뿔뿔이 흩어진 경우도 있었다고 진술하였다. 앞서 언급한 문헌에도 서로 다른 해외입양가정으로 입양된 형제자매가 DNA 검사를 통해 재결합한 사례가 적어도 2개 이상 있어(Cannon et al., 2020) 이러한 일이 종종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11살짜리 여자아이가 있는데 절대로 자기 동생 없이 움직일 애가 아니다. 왜냐면은 (특정 연도) 여름쯤 된 것 같아요. (특정 기관종사자)가 나한테 '미국가고 싶지 않아?' 그러더라고요. '왜요?' 그랬더니 '한국 여자아이를 찾는 부모님이 있어.'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동생은 어떻게 해요? 그리고 '우리 아빠 엄마이거 동의 안 하실 텐데요?' 그랬더니 '부모님은 다 동의해 주실 거야.' 그리고 9살짜리 애를 원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무슨 9살이에요?' 그랬더니 그거는 아무 문제 아니다, 자기들이 만들어 주겠다고 그러더라고요. 허허허 그러니까 생년월일도 그쪽에서 원하는 대로 맞춰주는 거예요. (해외입양인 10)

■ 타국 이동시 발생하는 문제

해외입양인은 입양을 위해 아동을 해외로 이동할 때 아무런 연고도 없고 훈련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동을 이송하다가 아동이 아프든지 각종 곤란한 상황을 경험했다는 이야 기, 다수의 아동을 한 사람이 이송하다가 아동이 뒤바뀐 정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 이 동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다는 증언 등을 하였다.

한국을 떠나서 (경유 국가)로 가려고 비행기를 탔어요. 제3국에서 하룻밤 지내고 다시 (또 다른 경유지)로 갔고, 거기서도 하룻밤 있었어요. 그리고는 (또 다른 경유 지)로 갔는데, 그때는 비행기 안에서 잤고요. 거기서 또 비행기로 (목적지)로 갔죠. 꼬박 이틀하고도 반이 걸렸어요. (해외입양인 23)

엄마가 얘기해줬는데, 내 비행기가 하루 반을 늦게 도착했대요. 그저 기다리는 동 안 정말 불안했다고 하더라고요. 왜 연착했냐 하면 비행기 안에서 아이가 사망했 거든요. 공항에서 같이 기다리던 한 부부는 아이가 도착하지 않았고요. 이 일로 비 행기가 (경유 국가)에 들렸어야 했대요. 근데 너무 오래 걸려서 내 기저귀에 입양 서류를 고정하려고 안전핀을 사용했는데, 그게 내 살을 찢었대요. 그 위에 너무 오 래 뉘어놓았던 거죠. 네 살짜리 남자아이도 있었는데, 걔 입양부모는 갑자기 생각 을 바꿔서 아이를 거부했대요. 공항에 나오지도 않았고 그 아이는 한국으로 돌아 갔대요. 그 아이는 어떻게 노는 줄도 모르는 아이였나봐요. 그림을 그리라고 종이 랑 크레용을 줬는데, 잠시 후 크레용을 먹더래요. (해외입양인 24)

내 입양부모가 공항에서 내가 도착하는 것을 비디오로 촬영했는데 사회복지사랑 한 30초쯤 만났고, 그때 양아버지가 서류 하나에 서명하고 어머니는 나를 이미 받 았어요. 양아버지 신분증도 확인하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 서명하라고 하고 '여기 당신들 아기가 있어요' 하고 그냥 넘겨줘요. (80년대 특정 연도)에 그런 식으로 일 곱 명의 아기를 보내는 거예요. 생각하면 무서워요, 한 사람을 다른 사람에게 신분 증 검사도 안 하고 넘겨주다니. (중략) 어떤 아기들은 신분을 밝히는 정보가 핀으 로 고정되어 있는 경우도 있었는데, 나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내 양어머니는 그때 '이 아기들을 언제 마지막으로 먹였나' 궁금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런 안내도 못 받고 정보도 못 받았어요. (특정 수령국) 서류에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내 서류를 요청했는데, 내 여행과 관련된 서류가 없어요. 여기 입양기관에서도 없다고 하고요. (해외입양인 6)

■ 해외입양기관의 태만

면접에 참여한 여러 해외입양인은 수령국에 도착한 이후 '해외입양기관의 태만'을 통해 어려움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였다. 해외입양기관이 아동의 배치과정을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원래 배치된 가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가정으로 가게 된 경우도 있었고, 입양가정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않은 상태에서 아동을 갑작스럽게 배치한 경우도 있었다.

내 양어머니가 얘기해주시더라고요. (특정 수령국의 특정 입양기관)에서 연락이 왔대요. (특정 공항)으로 오는 여섯 살 난 여자아이가 있는데, 내일 데리고 갈 수 있냐고. (중략) 하루 만에 한국에서 온 여섯 살 난 아이와 함께 살게 된 거죠. (특정 수령국의 특정 입양기관)이 얼마나 즉흥적으로 '이 아이 집을 찾아줘야 하는데, 누구한테 연락할까?' 했는지 알 수 있죠. 이게 내가 양부모 집에 가게 된 배경이에요. (중략) 내 양아버지가 그러는데 원래는 한국에서 다른 여자아이가 오기로 되어 있었대요. 그런데 발달문제가 있어서 더 이상 입양보낼 수 없게 되었고. 나는 한국에서 여기 보내려고 이미 비자랑 여권을 다 발급받아 놓은 상태였고 (다른 특정 지역)으로 보내져야 했는데, 그쪽 가족이 마지막에 취소했고 (기관입장에서는) 나를 위한 집은 찾아야하고... (해외입양인 2)

③ 제3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

제3시기: 합양가장에서 생활하기 시작인 이우의 주제		
부적절한 입양가정	어려움/고통	입양 사후 서비스 관련 문제
 입양가정의 금전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픈 양부모 기준이하의 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법적지위없음/집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찾기에서겪는 어려움 평생계속되는 영향 정체성찾기의 어려움 	

[그림 7] 제3시기: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의 주제

이 시기에는 '부적절한 입양가정(inappropriate adoptive homes), '어려움/고통, ' '입양사후서비스 관련문제(inadequate PAS4)' 등의 주제가 눈에 띄었다. 이 중에서 특 히 '부적절한 입양가정'과 '어려움/고통'이라는 주제는 많은 하위주제가 쏟아져 나왔다. 먼저 '부적절한 입양가정'은 '입양가정의 금전문제(adoptive home w/money issue),' '학대와 방임(abuse/neglect),'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mentally ill adoptive parents), '기준 이하의 입양부모(substandard adoptive parents), '관계의 어려움 과 갈등(conflicts & challenges in relationship)' 등의 하위주제가 발견되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코드구름 시각화에서 매우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고 이는 면접에 참여 한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에서 나타난 높은 학대율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어려움/고통'의 경우에는 '법적지위없음/집없음/방황(no legal status/homeless/ wandering), '인종차별과 편견(racial discrimination and prejudice),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psychological, mental health consequences), '뿌리찾기 에서 겪는 어려움(difficulties in searching)' '평생 계속되는 영향(lifelong impact),'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struggles in search for identity)' 등이 하위주제로 분류되었다. 이 중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은 코드구 름 시각화에서 중요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그림 7 참조].

■ 부적절한 입양가정

이 주제는 '입양가정의 금전 문제,' '학대와 방임,'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 '기준 이하의 입양부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등의 하위주제로 나뉜다. 하위주제 별로 나타 난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입양가정의 금전문제'와 관련해서는 입양가정이 아동을 적절히 양육하기에 충분한 경제적인 능력이 없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⁴⁾ POS: Post Adoption Service

또 한 가지는, 그들이 금전적인 부분을 점검했어야 했어요. 내 양아버지가 미 공 군 사관이라는 인상을 받았나 봐요. 내 아버지는 말단이었어요. 그게 무슨 의미냐 하면 보수가 사관보다 훨씬 적었다는 것이고 (중략) 내가 자랄 때 금전적으로 어려웠어요. 입양부모가 친생자녀를 갖기 시작했거든요. (해외입양인 15)

'학대와 방임'는 특히 중요하게 부각된 주제인데 이와 관련해서는 입양부모가 직접 신체적, 성적 학대를 가했거나, 영양 불충분 등의 방임과 교육적 방임이 일어난 정황, 입양형제가 성적 학대를 가했는데 입양부모는 입양인을 보호하지 못한 상황, 입양부모가 자신을 직접 학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형제자매를 학대하는 모습에 늘 노출된 경험을 언급하였다. 신체적 학대는 경계선의 모호한 학대보다는 주먹으로 치는 등의 분명한 학대를 언급하였고 성적 학대는 주로 입양부나 남성인 입양형제나 친척이 여성 입양인에게 가한 것이었으나 입양모가 딸을 성학대한 경우도 있었다.

맞기도 하고 욕도 듣고 (중략) 도착했을 때 여섯 살이었는데 양어머니가 나한테 영어를 배우게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한국말을 할 때마다 나를 때렸어요, 억지로 영어를 하게 하려고. 생각하면 지금 내가 한국말을 배우고 싶은데 심리적으로 너무 어려운 거예요, 맞은 것이 상기가 되니까요. (해외입양인 9)

내가 자란 집은 너무 학대가 심해서 16살에 가출해야 했어요. 같은 집에 한국에서 온 여자아이도 있었는데, 걔는 열 살 정도까지 성추행을 당했고 (중략) 가장 오래된 생생한 기억은 우리를 입양한 남자가 한 살 정도 된 여자아이가 운다고...이 얘기는... 너무 폭력적이어서 얘기하면서도 마음이 상하는데... 죄송해요... 목을 조르고 입에 수건을 집어넣고 때리면서 그만 울라고 소리 지르는 장면이에요 나는 네살이었고요. (중략) 무력하고 두렵고. 이게 첫 번째 생생한 기억 중 하나예요. 네, 그러고는 벌로 먹을 것을 주지 않는다든지, 주먹으로 때린다든지, 손을 펴고 때리는 거랑 주먹 쥐고 때리는 거랑 법적으로 구분하잖아요? 주먹으로 여러 번 맞았고욕도 많이 들었고, 여섯 살도 안 되었을 때인데. (중략) 물건을 나한테 던진다든지, 집에 총이 있었는데 그걸 나한테 보여주면서 내가 잘못하면 나를 쏘는 건 문제없다고 한다든지, 영양도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일정 기간 이상한 음식도 먹었던 기억이 나요. 나보다 상황이 안 좋았던 사람들도 많겠지만, 예를 들면 그냥 식빵이

랑 통조림 콩을 점심으로 먹는다든지, 음식이 부족하곤 했어요. 차를 한 대 더 사 고 뭐 그럴 돈은 있었던 것 같은데. (중략) 초등 1학년 때 나를 공립학교에서 빼냈 고 책만 주고는 나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더라고요. 초등학교 공부를 혼자 한 거예 요. (중략) 여동생이 성 학대 당하는 것을 양모는 알았는데 그걸 중지하는 데는 관 심이 없었어요. (해외입양인 3)

여섯 살쯤이었던 것 같아요. 양엄마가 심리적 문제가 많았는데 (중략) 나를 가둬놓 고 감옥의 죄수처럼 다뤘어요. 지하의 화장실에 나를 가두곤 했어요. 나는 칠흙 같 이 깜깜한 곳에 앉아서 이틀 정도 낮인지 밤인지도 모르면서 기다려야 했고 이후 엔 나를 내 방에 가뒀어요. 통을 화장실로 쓰게 만들었고요. 여섯 살부터 한, 글쎄 요, 아홉 살, 열 살 정도까지, 그랬다가 안 그랬다가. (중략) 내가 9세쯤 되었을 때 자살 성향이 있었던 것이 생각나요. (중략) 팔 들고 벌서게 만들다가 내가 팔을 내 리면 얼굴을 있는 힘껏 주먹으로 쳤어요. 뾰족한 것으로 때리기도 하고, 머리도. 머리카락으로 가려지니까. 이런 건 일부고. 심리적인 게 많았어요. 이상한 이야기 들을 만들어내서 내 형제자매들한테 이야기하게 만든다든가 (중략) 가장 싫었던 것 은, '너는 정말 행운아다, 우리가 너를 받아줘서. 네 부모는 마약중독자였다, 여기 있다는 것이 행운이다.' (해외입양인 16)

두 번째 입양된 가정에서 입양부가 이차성징 직전까지 매일 밤 성추행했어요. 입 양모는 신체적으로 학대했고요. 한국 엄마들을 이해해요. 아주 엄하고, 어떤 때는 화도 잘 내고 많은 한국 엄마가 훈육을 엄하게 시키잖아요. 그건 달라요. 내 양어 머니는 좀 심했어요. 나는 나쁜 아이가 아니었어요. 실제로는 매우 좋은 아이였어 요. 성적도 잘 받았고 남자친구도 없었어요. 엄마가 하라는 거 하고 (중략) 방이 깨끗하지 않으면 정말 화를 내면서 내 방에 들어와서 가구를 나한테 던져요. (해외 입양인 17)

'정신적으로 아픈 입양부모'와 관련해서는 주로 입양모의 정신질확에 관한 언급이 많 았는데, 편집증적인 증상이 있어 이유 없이 의심하고 때리는 사람도 있었고, 양극성 장 애로 진단받아 전기충격치료까지 받은 이력이 있는 사람도 있었고, 거식증을 앓고 있는 사람도 있었다.

내 양어머니는 정신적으로 안정적이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친구도 없고 심하게 불행했어요. 내가 입양되고 거의 그날부터 내가 자기 남편을 유혹한다면서 나를 심하게 때리는 거예요. (중략) 한국 책도 다 없애고 영한사전도 없애고, 일제 강점기감옥 같은 곳처럼. 그리고 이건 지어낼 수도 없는 얘긴데, 나랑 내 동생이 서로 얘기하지 못하게 막았어요. 편집증적이었던 거예요. 분할하고 정복하는 것 있잖아요. 병적인 방식으로 내 동생을 이용해서, 내 동생에게 나에 대한 혐오스러운 생각을 주입했어요. (중략) 멈추지 않고 때리고. (해외입양인 8)

내 양모는 조울증 진단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전기충격치료도 받았고요. (중략) 내동생의 입양부모는 둘 다 알코올 중독자였고요. (해외입양인 2)

내 양모는 거식증을 앓고 있었어요.(해외입양인 18)

'기준 이하의 입양부모'는 입양기관의 심사에서 성격의 문제로 입양부모로 적격하지 않다고 판단되었는데도 여러 번의 시도와 훌륭한 기독교인이라는 추천서로 끝내는 입양하게 된 경우, 자신의 문제가 많아 입양아동을 양육할 능력이 없는 해외입양부모에게 입양된 경우 등을 포함한다.

입양모는 나를 원치 않았어요. 금발의 파란 눈 아이를 원했어요, 가족사진에 잘 맞으라고. 하지만 (특정 수령국)에서는 대기 시간이 길었어요. 그래서 (특정국의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을 권유했대요. (중략) 입양모가 지원하고 (특정국의 입양기관)에서 성격테스트를 했는데 입양모로서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는 결과가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터뷰를 했던 것 같은데, 자기애(narcissistic)가 강해서처음에 지원했을 때 거부당했대요. 다시 지원했는데 또 거부당했대요. 세 번째 지원했을 때 내가 입양된 거지요. 세 번째는 (특정국의 입양기관)에서 훌륭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여성이니 아이를 입양하게 해달라는 아주 훌륭한 추천서를 써줬다는 이유로 통과된 거지요. (해외입양인 9)

역시 한국에서 입양된 언니가 있었는데 언제나 아주 난폭했어요. 소리 지르고 던

지고. (중략) 부모님은 언니랑 항상 갈등이 있었고요. 언니가 항상 뭐랄까 중심이 었고. 제 나름의 생존전략은 그냥 거기 끼어서 수년간 눈에 띄지 않는 존재로 살 아가는 거였어요. 실제로 부모님은 나를 항상 무시한 거죠. 내 욕구도 무시당하 고. (중략) 어머니는 어려서 되게 불안한 아이였다고 하고 아버지는 상실과 트라 우마가 있었는데 그게 깨어난 것 같아요. (해외입양인 33)

마지막 하위주제인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은 해외입양인이 입양부모와의 관계에서 심한 갈등과 어려움을 겪은 경우를 말한다.

양모와는 결코 애착관계를 형성하지 못했어요. 양아버지는 일만 했고. 둘 다 매우 바빴어요. 입양모는 해외 출장이 많았어요. (중략) 무관심하고, 같이 있지를 않았어. 요. 내가 스무 살에 첫아이를 임신했을 때 얘기했더니 양모가 전혀 지지하지 않으 면서 '좋은 엄마가 되지 못할 것 같으니까 입양 보내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해외 입양인 5)

(특정 연도)까지도 가끔 연락했었는데, 나를 너무 파괴하는 것 같아서 다시 연락하 지 않겠다고 쪽지를 보냈어요. (해외입양인 1)

■ 어려움/고통

이 주제는 다시 '법적 지위 없음/집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 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리찿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찿 기의 어려움' 등의 하위주제로 나눌 수 있다. 특히 이 여섯 개의 하위주제 중 5개인 '인 종차별과 편견.''심리적 문제. 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고통.''뿌리찾기에서 겪는 어려 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은 해외입양인이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였다. 심리적 문제, 정신적 건강 문제는 면접에 참여한 거의 모든 해외입양인이 언 급한 주제이고 과거에 자살을 생각하거나 시도했던 경험, 자해 경험에 관한 이야기가 자주 등장하였다. 이 하위주제들은 모두 경계선이 모호하고 연결되어 있기도 하지만, 강 조점이 조금씩 다르다.

'법적 지위 없음/집 없음/방황'은 주로 미국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이 한국과 해외의 입양기관이나 입양부모가 확보해야 했던 입양인의 법적 지위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아 지금까지도 어려움을 겪고 있거나 입양가정의 학대로부터 뛰쳐나온 후 방황한 이야기가 있었다.

대학 갈 때 내가 시민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어요. 주민번호도 못 받았고요. 내 양부모가 아무것도 안 한 거죠. 내가 자동으로 시민이 될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는지 몰라요. 수년간 머리 아파가면서, 시민권 받기까지 오래 걸렸어요. (특정 수령국)이든 한국 정부든 양부모가 이해하도록 해야 했던 것 중 하나잖아요. (해외입양인 24)

집에 갇혀 있다가 10살쯤 내 스스로 탈출할 힘이 생겼을 때 도망갔어요. 그냥 길거리에 있고, 친구 집에 가서 숨고, 잡혀서 다시 오고, 그럼 또 도망가고. (중략) 결국 그 집을 떠나 양부모의 친척 아저씨네 집으로 가게 되었어요. 좋은 분이었죠. 내가열 살쯤에. 그런데 그분도 심리적으로 문제가 많은 분이었어요. (중략) 17살쯤에 거길 떠나서 그때부터 양부모의 아들 집에 좀 가서 살고 양부모와 완전히 연을 끊고 살고 있고요. (해외입양인 16)

영구적인 주소가 없이 지낸 지 15년 정도 됐어요. 주소 없이 생존하는 법을 터득했어요. 주변 사람들은 다 내가 괜찮은 줄 알았죠. 그냥 학교 기숙사에서도 살고 안정된 직장생활을 하니까. 실제로는 그냥 떠다녀요. 이렇게 살아서 자유롭기도 하지만 트라우마도 있어요. (해외입양인 25)

아무도 내 시민권을 신청하지 않았거든요. 그 간단한 것을. 한두 개 서류에 서명만 하면 되는데, 그러면 내가 시민권이 있을 텐데. 그런 영향이 계속 나를 따라다녔어요. (중략)이 위탁가정에서 저 위탁가정으로, 보호관찰소에서 길거리 등으로 여기저기 한 십 년간을. 양부모네서 열두 살에 쫓겨나고 그 이후로는 길거리 신세였어요. (중략) 추방당했고요. (해외입양인 15)

'인종차별과 편견'은 북미와 유럽 어느 곳으로 입양이 되었든 상관없이 보편적으로 경

험한 것으로 보인다. 해외입양인은 성장하면서 동양인이라고 놀림을 당하고, 주변에 긍 정적인 역할 모델이 될 동양인이 없어 자신이 늘 못생겼다고 생각하고, 데이트도 못 하 거나 다른 동양인과만 하고, 입양부모가 인종차별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거나 심지어는 직접 인종차별을 했던 경험을 포함한다.

내가 동양인이라고 많이 놀렸어요. '눈이 그렇게 작은데 어떻게 볼 수 있어?'처럼 바보 같은 질문들. 욕도 많이 듣고. 고등학교에서 데이트해본 일이 없어요. 동양 여자애랑 데이트하려는 아이가 없으니까요. 내 양부모는 다른 문화에 관해 알지 도 못하고 다른 문화를 수용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고. (해외입양인 9)

다 백인인 동네에서 자라고. 다른 동양인은 볼 수 없고. 언제나 내가 못생겼다고 느끼게 돼요. 항상 나는 배제되었다고 생각하고. 지금은 덜하지만, 그때는 동양인 을 긍정적으로 묘사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해외입양인 5)

데이트했던 첫 번째 상대는 몽골 사람이었어요. 두 번째는 태국 사람이었고. 왜 이 동양 남자들이 나랑 데이트하려고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들에게는 자기 여동생 이 아니었던 동양인은 딱 나밖에 없으니 나랑 데이트해야 된다고 생각한 건지. 그 런데 내가 친구를 집에 데려오면 내 양부는 인종차별주의자처럼 친구를 대했어요. 내 양부모가 어떤 사람인지 알아볼 수 있었죠. (해외입양인 1)

'심리적 문제, 정신적 건강문제로 인한 고통'은 해외입양인이 겉으로 보기에는 사회적 으로 성공한 것처럼 보여도 친생부모에게 버려졌다는 생각, 모국어와 문화적 정체성의 상실 등으로 고통받는 경험을 말한다. 해외입양인은 끊임없이 느끼는 무소속감이나 불 안, 자신과 생김새가 다른 사람 사이에서 어떻게든 소속해 보려는 지속적 부담. 고국에 오고픈 그리움으로 아린 마음, 입양가정에서의 학대 트라우마, 자살시도 등 다양한 내용 과 경중의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해외입양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겪는 어려 움으로 보인다.

나는 내가 더 나은 삶을 누렸다는 데 동의하지 않아요. 서류상으로는 그래 보일 수 있죠. 중산층 가족에서 경제적으로 뒷받침해줬지만, 정서적으로는 그렇지 않아 요. 먼저는 친생가족에게 버려지는 것이 있고, 그다음은 내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 을 잃고, 내가 누군지를 만화, 영화, 음악 같은 데서 내가 비롯한 곳에 관한 힌트를 얻어서 하나하나 맞춰 나가야 하고, 끊임없이 느끼는 무소속감, 불안감이 있고요. 다른 한국입양인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어디 안착한 곳 없이 둥둥 떠다니 는 느낌에 관해서. (해외입양인 18)

나는 완벽주의자로 자랐어요, 왜냐하면 '이 팀에서 내 자리를 벌어야 한다.'는 부 담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피상적으로는 입양의 성공적인 사례로 보일 수 있어요. (중략) 그렇지만 불안이 되게 많아요. 완벽주의자로서. 내 아들도 그래요, 7살인데. (해외입양인 4)

정신분석치료를 받을 때 말했어요, 사춘기가 진짜 빨리 올라오고 생리를 한 번에 3주 동안은 했어요. 생리할 때는 그 남자가 제 몸에 손대지 않았어요. (분석가 말 이) 내가 자기 몸을 보호할 수 있게 생리로 막은 거라는 거죠. (해외입양인 10)

물론 재정적으로도 부담이 많이 되죠. 심리학자, 치료사, 입양코치. 집중 치료를 받아왔어요. 친생부모를 만나고 난 다음에 너무 놀랐고. 너무 큰일이었어요. 이해 하기가 어려운. 십 년 동안 집중 치료를 받고야 좀 이해가 돼요. (환산액 1,500만 원 가량) 들었어요. 나 혼자 내야 했던 돈이고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해외 입양인 32)

근데 제가 (특정 지역) 양육시설에 있다가 온 오빠들 2명을 (특정 수령국)에서 만났 는데 큰오빠는 이름이 (이름)이었는데 작은오빠 이름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오빠들이 우리가 (특정 수령국)으로 입양오고 나서 왔어요. 그 집에 놀러 간 적이 있는데 작은오빠는 그 방에 같이 놀러 가면 가서 숨더라고요. 자기 몸을. 침대 밑 에 가서 누워서 그냥 죽은 사람처럼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빠 왜 그래?' 그러면 '나 한국 가고 싶어.' '응, 우리도 가고 싶어. 근데 우리 88년에 올림픽 때 가면 되 잖아.'라고 (해외입양인 10)

내 목숨을 끊으려고 두 번 시도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약 두 통을 먹었어요.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위를 펌프로 세척해내고...(해외입양인 8)

엄마에게는 어떤 (부정적인) 감정은 존재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자신을 침묵 속에 가둬요. 그러다가 분노로 폭발하죠. 몸을 어디엔가 가두고 스트레스를 많이 느껴요. 긴장하고요. 감정과 같이 사는 법을 안 배운 것처럼. 압력밥솥 같아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년쯤 전에 자살을 가끔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해외입양인 자녀)

'뿌리찿기에서 겪는 어려움'과 관련해서는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대부분은 뿌리 찾기 경험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자기 기록에 대한 접근 자체가 거부당하거나, 뿌리찾 기 노력에 대한 지원 부족,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도 계속 뿌리찾기를 시도하다가 계속되 는 실망 등을 겪는 것이 쉽지 않았는데, 이는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과도 직결되어 있을 것이다.

한국말도 하고 영어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야기했는데, 이 정도 두 께의 기록이 나오는 거예요. 정말 놀랐어요. 와~~ 많은 정보가 있네. 그런데 거기 서 종이 한 장을 꺼내더니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게 자기들이 나에 관해서 가진 정보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저거 보고 싶다'고 했더니 안 된대요. 언쟁이 좀 생겼 죠. (해외입양인 9)

내가 얼마나 정보를 찾느라 허탕을 쳤는지 모를 거예요. (중략) 우리 기본적인 권 리를 부인당한 거로 생각해요. 나는 혈통이랑 자신의 과거 삶과 연결되는 것을 그 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한국이 우리가 우리 역사를 찾으려고 하는 걸 이해 못 한 다는 것은 깊은 모순이라고 생각해요. (해외입양인 6)

'평생 계속되는 영향'은 해외입양인이 한평생 해외입양의 부정적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포함한다. 한국 정부에서는 한국 아이를 백인 가정에 보내면서 백인 사회의 인종차별 등의 문제를 경험하지 않을 거로 생각했는지 되묻는 입양인도 있었고, 입양가정에서 학대받은 해외입양인은 입양을 자신의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것에 비유하기도 했고, 다른 아동 대신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한평생 자신에 관해 아는 것이 아무것도 없이 산다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를 호소하였다. 또한,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의학적 정보나 가족병력을 모르는 것이 임신과 출산 등을 포함해 인생을 평범하게 살아가는 데 얼마나 큰 걸림돌이 되는지를 이야기한다.

내 인생을 쓰레기통에 집어넣은 거예요. 평생에서 몇 해를 빼고는 계속 영향을 받았어요. 다섯 살, 여섯 살, 그 이후로는 그냥 하락이에요. 양부모가 나를 2학년 마친 후 학교에 보내지 않았어요. 내 평생에, 지금까지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죠. 입양이 진행된 방식 때문에. (해외입양인 15)

끔찍해요. 상처를 지니고 사는데 절대 없어지지 않아요.(소리내어 우는 해외입양인). 다른 양부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다른 지원을 받았다면, 다르게 키워졌다면, 친절한 부모를 만났다면 어땠을까, 친절한 엄마를 만났다면..."~~였다면"이라는 질문이 많아요. (중략) 한국 정부에서 동양 아이를 백인 가정에 보내면서 어디에 애들을 보낸다고 생각한 건지 모르겠고, 백인 세상에서 그 아이가 영향받지 않을 거로 생각했단 말인가요? (해외입양인 9)

나에 관한 의학적 정보, 가족병력에 관한 정보가 거의 없어요. (중략) (아기의 임신을 계획할 때 산부인과 의사)에게 내 입양서류에 내가 30주에 태어났고 친생모에게 (특정 약)을 투입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게 생각나서 이야기했어요. 의사는 친생모에게 그 약을 투여한 이유를 추정하고, 매우 걱정스러워하면서 내가 고위험군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게 되죠.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 정보를 모르는 거냐. 사적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요. 내 입양서류에는 내가 어느 병원에서 태어났다고만 되어있는데, 기록이 더 있어야만 하잖아요. 그런데 나는 정보에 접근할 수 없는 거고. (해외입양인 14)

(바꿔치기 된 경우) 사십 년 이상 잘못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내 생일을 몰라요. 나에 관해 아무것도 몰라요. 쌍둥이 자매가 있었던 것 같은데 증명할 수는 없어요. 사망한 것 같은데, 확실하진 않아요. 한국에서 걸어 다니고 있는데 내가 모르고 있 을 수도 있고 (특정 수령국)에 살아있을 수도 있죠. 이게 나를 미치게 만들어요. (중략) 내가 얼마나 조사를 많이 했는지 모를 거예요. (해외입양인 6)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은 자신의 삶은 한국에서 출발했기 때문에 자신의 근원과 친생 가족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것이 당연한데 그것이 그 기록을 가지고 있는 입양 기관의 도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 때문에 힘들어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입양 부모와의 관계가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이 해외입양인 대부분이 공통으로 당면 한 과제였다. 그리고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자녀는 해외입양인 1세대가 겪는 이 런 정체성 찿기의 어려움과 고통은 그 세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해외입양인 2세에 게까지 이어지는 문제가 되고 있다고 하였다.

보니까 한국여자와 결혼한 백인이 한국말 배우러 와있고 다 한 교실에 있었어요. 한국말을 처음으로 배우려고 한 건데 너무 불행한 거예요. 그런데 왜 불행한지 모 르겠더라고요. 뭐라고 불러야 하는지도 모르겠고. 대도시에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나는 백인들하고만 동일시할 수 있더라고요. 뭔가 잘못됐는데, 그게 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해외입양인 9)

우린 다 어딘가에서부터 오잖아요. 정말 버려진 사람은 영원히 모를 수도 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스토리예요. 그게 진정한 자신의 출발점이에요. (중략) 불행히도 그 지점 이전의 것은 알 수 없지만, 거기부터는 다 내 것이에요. 문제는 우리 중 어떤 사람은 거기가 출발점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얘 기가 있을 수 있고, 버려지지 않았을 수도 있고.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 가족력, 파일 어딘가에 형제자매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사람들은 다 어 딘가에서부터 오고 어딘가에 속해 있어요. 하지만, 이 정보를 누군가가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건 극복하기 힘들어요. 다 털고 내 인생을 세워나가 보 려고 할 수 있는데, 여전히 그 질문이 남아있고 그 서류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 람의 도움 없이는 영원히 답할 수 없어요. (해외입양인 14)

아주 오랫동안 주변 사람, 백인 변두리 지역 문화에 어울려보려고 애썼어요. 아무 도 한국인으로서 나의 정체성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중략) 집 밖으로 나가면 그게 참 힘들었어요. (해외입양인 18)

양어머니와 꽤 가까워요. 사랑 많고 좋은 분이지만, 그것이 나의 어떤 갈망을 채워 주지는 못했거든요. 내가 누굴 닮았고, 기질이 어땠으며, 이런 질문에 대해서 여전 히 답해주지 못하죠. 특히 내가 아이를 낳을 무렵 내 병원력으로 인해 가족찾기를 시작했고 내가 어디서 왔고 내 배경이 어떤지 더 알고 싶은 욕구가 커졌어요. (해 외입양인 19)

한국의 유명한 대형병원에 친생부모일지도 모르는 분들과 함께 가서 DNA 검사를 했어요. 처음에 내라고 했던 돈의 세 배를 내라는 거예요. 실수했다면서 (중략) 그 분들이 친생부모가 맞는다고 연락받았어요. (중략) 친생부가 딸을 찾았으니 전화해 오고 가족모임에도 가고. (중략) 족보에 이름을 넣어야 한다고 그러시고, 족보에 들어가는 건 의미가 커요. (중략) 드디어 찾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많이 놓였더랬죠. (중략) 친구가 매우 어려워하면서 병원이 실수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내 가족이 아니었어요. 이 얘기를 20년 동안 꺼내지를 못했어요. 지난 치료 상담에서 야 처음으로 이야기했어요. (중략) 이 트라우마가 나를 안에서부터 잡아먹어요. 친 생부(라고 믿었던 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도 억장이 무너졌죠. (해외입양인 29)

내 외할아버지가 엄마를 학대했다는 이야기를 엄마가 나에게 해줬을 때 나는 엄마 를 지지하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정말 힘들었어요. 그래도 엄마를 지지했죠. 그런 데 다음에 내가 외할아버지를 만나면 할아버지한테 내가 다 알고 있다고 알려주고 이에 관해서 대화해야 한다고 그랬더니 엄마는 안 된다고 했어요. 내가 내 아빠를 만나고 싶어 하는데도 엄마는 역시 안 된다고 했고요. (중략) 어쩌면 어떤 패턴을 생산하고 있는지 몰라요. (엄마의 엄마처럼) 엄마도 비혼일 때 어려서 나를 임신했 고 아빠는 이후 떠났고, 엄마가 나를 혼자 키웠고, 엄마의 엄마에게 일어났던 일일 수 있죠. (해외입양인 29)

■ 입양사후서비스 관련문제

해외입양인은 입양 전후 상황 파악을 위해 서류나 정보를 요청하면 입양기관이 소지 한 원본을 그대로 제공하지 않고 고치거나 정보를 숨기는 경우가 많다고 증언하였다. 또한, 한국이나 입양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정신적 문제, 입양가정 내 학대 등 각종 문제에 대해 대응이 느리거나 아예 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고 이야기하였다.

나는 입양부모에게 장애인 친생자녀가 있는 그런 가정에 입양되었는데, 그 아이의 건강문제 때문에 나는 방임되었었거든요. 내 양부모는 이혼했는데 그것도 어떤 기 관에도 보고하지 않은 것 같고요. (중략) 뭐라도 변화가 생길 수 있다면 한국입양 기관이 아이가 다섯 살, 열 살, 열여덟 살, 스물한 살 그런 식으로 무조건 들여다보 도록 강제하면 좋겠어요. 양부모가 아이들에게 잘못한 게 아무것도 없는 것으로 보고하라고 쉽게 영향을 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사회복지사가 아동기와 청소년기 전체를 들여다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무슨 배상을 원하지 않아요. 이런 일이 다른 이들에게 생기는 것을 막고 싶을 뿐이에요. (해외입양인 27)

기관들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나는 모르지만, 다른 입양인들하고 얘기해보 면 입양 후 가정방문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사회복지사가 가정에 방문했다고. 나 는 한 번도 없었어요. (해외입양인 9)

내 친생부 쪽 가족이랑 아버지랑 2001년에 재회했고, 좀 친해졌을 즈음에 내가 친 생모 찿기를 도와달라고 다시 2018년에 (특정 입양기관)에 갔어요. 그 기관에서 미 팅했는데 그 여자분이 서류들을 보여줬어요. 그러고는 친생모에 관해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서류를 보긴 했지만,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는 걸로 끝났죠. (해 외입양인 12)

내가 문서를 요청했는데 많이 지워야 했기 때문에 (중략) 두 주 후에 (특정 입양기 관)에 다시 연락해서 '문서가 준비됐느냐, 언제 받을 수 있느냐?' 물으면 '시간이 좀 걸린다, 우리 기관 통해서 입양된 것이 확실하냐?'그러더라고요.'확실해요.' (중략) '몇 주 전에 내 양어머니도 같은 서류를 요청했다고 당신이 나한테 얘기했 잖아요?' 그러니까 나를 가스라이팅하려고 한 거죠. (해외입양인 2)

그 사람이 '한국 애들은 이해하는 게 폭력밖에 없다. 많이 때려야 이 고집을, 망아 지 같은 그 고집을 꺾을 수가 있다. 무조건 때려야 된다.'(중략) 그래서 (특정 연 도)에 제가 그 집에서 (특정 나이)에 나오고 사회복지사를 찾아가서 성폭행에 관해 이야기했어요. (중략) 남자더라고요. 여자 사회복지사는 없고 자기밖에 없다고 그 러더라고요. 그래서 '아...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이제 다시 돌아갈 수는 없는데 여기까지 왔으니까 앞으로 가야지 돌아가면 더 많이 맞을 거고 더 많은 지배를 당 할 것인데.'(중략) 저를 말 안 듣고 덕 모르는 2만 5천 원짜리라고 불렀어요. 물건 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그래, 그래 난 좋아. 그러면 나 추방해줘. 난 내 나라로 가고 싶어.' 그랬더니 자기가 살아있는 동안 절대로 한국에 다시는 보내주지 않겠 다고 그러더라고요. 구경하러도 안 보내주겠다고. (해외입양인 1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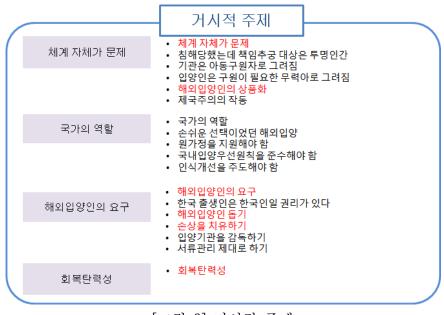
나중에 우리가 마침내 그 집을 떠날 거라고 얘기를 들었을 때 나는 나랑 내 동생이 다시 한국으로 가거나 뭐 그러는 줄 알았어요. 우리를 분리할 줄은 몰랐어요. (특 정 기관종사자)가 와서 나를 고속버스에 혼자 태워서. 내 세 살 어린 동생은 정말 고통스러워했어요. (해외입양인 8)

(한국의 특정 입양기관이) '내가 정신이 나갔나'라는 생각이 들게 했어요. 내가 거 기서 편지를 받았는데, 자기들이 내 친생모한테 연락했고, 내 친생모가 나를 만나 고 싶어 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걸 들고 찾아갔는데, 자기들이 보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네 파일에 정보가 없고, 네 친생모 찾고 싶었어도 못 찾았을 건데' 그러면 서. (중략) 기관과 정부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는 않는다고 믿으면서 오랫동안 그걸 받아들였어요. (해외입양인 14)

(내 어머니가) 2003년에 (한국의 특정 해외입양기관)에 찾아가서 나에 관해 물어봤 대요. 나한테 연락하겠다고 약속했다는데 (그때) 나한테 연락하지 않았어요. 내가 2006년에 이메일을 보내니까 그제야 어머니와 나한테 연락했죠. 그들의 변명은 무 슨 행정적 조직개편을 했고 내 파일을 잘못된 곳에 놔뒀고 내가 연락했다는 점을 잊어버렸다는 거였어요. 믿을 수 없어요. (해외입양인 32)

④ 거시적 주제

거시적 주제는 입양과정에서 시간의 흐름에 매이지 않는 주제, 즉 '체계의 문제,' '국 가의 역할, '회복탄력성,' '해외입양에 대한 견해' 등을 말한다. 결국 해외입양인이 입양 을 어떻게 바라보는지,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무엇을 요구하는 지, 이들이 얼마나 회복탄력적인지에 관한 이야기이다. 거시적인 주제가 포함하는 주제 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그림 8]과 같다. 앞서 제시한 코드구름에서 시각적으로 특히 부 각된 주제는 빨간색으로 표시했다. 큰 주제의 이름은 각 주제의 첫 번째 하위주제의 이 름으로 지정했다. 다음은 각 주제별로 살펴본 구체적 내용이다.



[그림 8] 거시적 주제

■ 체계 자체가 문제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은 분절해서 이 해할 수 없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거시적 체계가 존재하며, 그 체계를 구성하는 요소 간 유기적 관계의 맥락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 주제가 포함하는 하위주제는 '체계 자체가 문제(the system is the problem), '어른이익 최우선을 위한 체계(for the best interest of adults), '침해당했는데 책임추궁 대상은 투명인간(violated, don't know whom to blame),' '기관은 아동구원자로 그려짐(agencies portrayed as child saviors),'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한 무력아로 그려짐(kids portrayed as needing saving),' '해외 입양인의 상품화(commodification of adoptees),' '제국주의의 작동(colonialism in play)' 등 이다.

면접에 참여한 많은 해외입양인은 입양관련 '체계 자체가 문제'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고아가 아닌 아동이 고아호적을 통해 고아로 만들어지는 구조적 메커니즘이 작동하고 있고, 이는 정부가 제도화한 것이라는 점을 지적한다. 정부는 해외입양이라는 제도를 통해 경제적 이득을 얻었고, 많은 입양인과 친생가족은 그러한 유독한 체계의 피해자가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문서로서 이해되는 인간에 관한 건데, 나는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인권위가 고아호적을 더 들여다보기를 바라요. 왜냐하면 아이가 입양대상이 되려면, 우리 대부분이 보육원이나 시설 같은 사회복지 기관에 일반호적을 가지고 입소하고 그다음에 입양돼요. 그 과정에서 우리는 아무 가족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고아호적을 갖게 되고요. 그게 우리가 원가족과의 연결을 상실하게하는 정부의 프로세스예요. 이 지점이 국가로서, 통치 주체로서 한국 정부가 이 메커니즘을 제도화한 지점이고, 그 제도 안에서 내가 알기로 고아호적은 거의 모든 입양인이 가지고 있는 문서예요. 그러니까 아이들 신분세탁이 되는 구조적인 메커니즘이 있었던 거죠. 양육시설에 들어올 때는 가족이 있었는데, 떠날 때는 없고 갑자기 새로운 가족이 생기고. 내 생각에는 이것이 인권위에서 면밀히 들여다봐야하는 메커니즘이에요. 왜냐면, 이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든 바로잡고 싶으면 정부의역할을 살펴봐야 해요. A의 사례 하나만이 아니고 B만의 사례가 아니고 누구든 특정 1인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전체 체계거든요.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는지. 네, 우리 권리가 거부당한 그 메커니즘이요. (해외입양인 21)

우리가 자주 부인하지만 더러운 비즈니스가 많거든요. 입양기관만 비난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고 시스템, 전체 시스템이에요. 한국은 경제를 위해 애들을 돌보지 않기로 선택했고, 해외로 내보내면서 돈을 벌고, 벌기만 한 게 아니고 돈을 많이 아

꼈죠. 횡재죠, 그들 입장에서는. 하지만 헤이그 뭐더라, 그건 또 절대 서명하지 않 았고요. 자신이 옳지 않음을 알았으니, 악한 사업을 하고 있는 걸 알았으니 절대 서명을 원하지 않았던 거예요. (해외입양인 13)

나는 일 년 전까지만 해도 내 부모님이 나쁘다고 생각했었어요. 일 년 전에 이 이야 기(기지촌으로 인신매매, 납치당한 여성의 이야기)에 관해, 그리고 피해자들이 있다 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이고 한국 정부의 책임이에요. 내가 거짓말을 믿으면서 살았던 거죠. 이렇게 심각한 줄은 몰랐어요. (해외입양인 31)

내 외가 쪽 친척을 찾으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입양이라는 것을 낳는 전체 체 계, 구조를 알고 싶어서 이러는 거예요. (중략) (특정) 입양인이 쓴 자서전적인 책 을 읽었는데, 시골에서 자라고 양아버지가 학대하고 양어머니도 그 사실을 알고 (그런데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고) 매도 많이 맞고... 우리 엄마 이야기랑 똑같아서 읽으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중략) 친자식보다 입양자녀에게 성학대를 더 많이 하는 이유는 뭔지, 유럽은 인종차별적인데 동양인, 특히 동양 여자아이를 이 국적 물건이라 여기고, 이게 양부와의 관계를 독성으로 만들죠. 내 엄마뿐 아니라 많은 입양인이 그런 경험을 했다는 것은 참 안타깝지만 한편 마음이 놓이기도 해 요. 왜냐하면 (입양)의 이면에는 어떤 (체계)의 논리가 있거든요. 그 논리가 매우 독성이고 건강하지 않은 것임을 인식하는 게 나한테는 치료가 되었어요. 엄마한테 도 그럴 거로 생각해요. 엄마하테만 그런 일이 일어난 게 아니잖아요. 엄마가 이상 한 사람이라 그런 일이 벌어진 게 아니라. 엄마가 양부에게 이상하게 보였거나 엄 마가 부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버림받은 게 아니라... (해외입양인 자녀)

'어른 이익 최우선을 위한 체계'라는 하위주제는 입양을 작동하게 하는 체계가 아동 이익이 아닌 어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나는 입양의 궁극적 목적이 입양부모를 위한 것, 그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것이 지 아이들을 위한 것은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기반으로 한 그들의 선택이에요. (해외입양인 13)

'침해당했는데 책임추궁 대상은 투명인간'이라는 하위주제는 입양인의 인권은 침해당한 것이 분명한데 책임자는 찾기 어려울 수 있다는 문제를 적시한다.

그리고 나는 이게 되게 약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거쳐야 하는 과정을 많이 만들어놓고 누가 직접 책임져야 하는지를 모르게 만들어 놨거든요. 납치에 해당하는... 여기 넘기고 저기 넘기고 사람들 손에서 기관들로 옮겨지고. 다들 그럴 수 있어요, 나는 그냥 하나의 디딤돌이었을 뿐이라고. (해외입양인 4)

'기관은 아동구원자로 그려짐'의 하위주제에서는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이유 중 하나는 국내에서 해외입양기관은 아동의 구원자라는 매우 긍정적 이미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많은 불법적 실천이 그들 (입양기관)의 요구로 이루어진 거라고 믿거든요. 입양이 훨씬 쉽고 빨라요, 아이들을 고아라고 불러야...그들은 안 거죠. 그게 훨씬 편하다는걸. 이걸 (아이들이 고아가 아니라는 사실) 모르는 입양부모는 죄책감이나 어느날 친생부모가 와서 아이들을 되돌려 달라고 할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지 않아도 되고요. 관련된 모두에게 편하고 그들의 이미지를 선량한 크리스천으로, 세상의구원자로 강화할 수 있어요. 결국에는 국제 해외입양기관들이 비난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해외입양인 32)

기관책임이 큰데, 아주 반발이 심하고 강력해요. (중략) 입양의 구조, 그러니까 정부와 기관이 서로 통합/융합(integration)하는 것을 보면 대단해요. (중략) 입양기관은 아주 잘 그려져 있어요. (중략) (특정 입양기관)에서 자원봉사 하는 분을 우연히 만나 이야기했는데 내가 그 기관에 관해서 많이도 아니고 조금 이야기했더니나를 안 믿는다고 바로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더라고요. 나는 '그럴지도 모르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라고 하고 인사하고 헤어졌죠. 아주 강한 이미지가 있어요. (해외입양인 22)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한 무력아로 그려짐'은 인권침해의 책임자를 찾기 어려운 또

다른 이유 중 하나는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했던 '무력아'로 그려지기 때문이라는 점을 지적하다.

해외입양을, 한국입양을 홍보하는 자원봉사자가 있어요. 가서 무슨 슬라이드를 봤 대요. 그러니까 한국전쟁 후 60년대 그런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배고픈 애들 이 많다. 다들 기아다. 당신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이 애들은 다 죽을 것 이다 (중략) 아니 내가, 80년대에 배고파서 한국에서 죽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냐 고, 그랬더니 처음에는 안 믿더라고요. 그러고는 그 슬라이드를 두 번이나 보러 갔 다고 해요. (해외입양인 10)

인도주의적으로 아이들을 구하는 그런 거요. 좋아 보이잖아요. 국내입양을 하려고 했는데 안 됐대요. 한국이 제일 싸게 빨리 데려올 수 있는 곳이니까. (중략) 우리는 언제나 그들에게 맞춰야 해요, 그들이 우리를 구했으니까. (해외입양인 13)

'해외입양인의 상품화'는 연구에 참여한 많은 해외입양인이 자신들이 상품화되어 서 구로 팔려 갔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하위주제이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인구 감소와 경제적 이득, 외교 등을 위해 사회에서 '원치 않는 아동'을 대단위로 백인 사회에 수출하는 비즈니스를 했다고 고발했고, 심지어는 '노예 매매'에 비유하기도 하였다.

우리는 인구 감소를 위해 대단위로 수출됐어요. 서구와의 지정학적 교량을 만드는 데 우리를 이용한 거고 아기들 몸을 가지고 한국을 세운 거예요. (해외입양인 6)

시장에 물건 내다 팔듯이 입양시장에 아이를 내놓고 다 잘되기를 바라는…내 눈에 는 입양이 이런 걸로 보여요. (해외입양인 8)

이건 교환이죠. 내가 이거 주면 너는 이거 줘. 나는 돈 줄게 너는 아이들을 줘. 도와 주고 국가 역량을 키우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해외입양인 32)

공항에서 돌봐주던 사람에게서 버려지고, 비행기 타고 사회복지사한테 버려지고, 버려지고, 버려지고, 그러면서 아이들이 무슨 경험을 하는지는 신경도 쓰지 않아 요. 아이를 살만한 돈이 있는 백인에게 판매하는 비즈니스 과정으로 보는 거예요. 아이를 살 돈이 있는 사람이면 한국에 와서 한국 문화도 좀 체험하고 그럴 돈도 있을 텐데. (해외입양인 9)

아주 짧은 기간 안에 한국이 경제적으로 힘이 생겼어요. 우리를 발판으로 달러를 벌어들인 것으로 생각해요. 우리는 팔린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한국 정부가 '아 무도 원치 않는 아이'라고 가정하는 아이들을 희생시켜서, 경제에 도움이 되니까, 입 하나 줄이고 돈도 벌고. 그러면서 쓴맛은 좀 무시하고. 창피하게 생각해야 한다. 고 봐요. (해외입양인 5)

가족해체에 의존하는, 가족과 문화 분리에 의존하는 영리사업을 마치 아이들을 돌 보는 것인양...20세기 노예 매매예요. 아이가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는 묻지 않았어 요. 아이를 사려는 수요를 먼저 고려한 거고 이게 아이에게 좋을지를 생각 안 했어. 요. 그들의 생각은, 기꺼이 프리미엄을 지불할 수요가 존재한다는 점이었어요. (중 략) 우리 집에 입양기관에서 오는 잡지가 있었는데 그걸 걸어두고 '너희가 여기서 왔어'라고 상기시켰어요. 학용품, 연필 사는 것도 잡지 보고 주문하는데, '너희들은 잡지에 나오는 상품이야.' 가치를 떨어뜨리는 거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상품화된 정체성을 내려받는 것이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다른 집단에 기꺼이 팔려는 나라에서 버려진 부산물이 된 것 같은 느낌에 저항해서 싸워야 했 어요. (해외입양인 3)

내야 하는 비용이, 아이들을 살 때 양부모가, 오랜 기간에 걸쳐 정말 많이 지불해 요. 이런 게 사업으로 보여요. 이게 비즈니스, 매매이지 인도적인 게 아니에요. 인 도적 서비스의 반대에요 (해외입양인 18)

한국은 아주 짧은 기간에 재건했잖아요. 어떻게 그랬느냐고 묻지도 마세요. 한국은 손에 피를 묻혔어요. 네. 손에 피 묻힌 거예요. 나와 내 엄마의 피를. 이십만 명이 라는 아이들과 엄마의 피예요. 취약한 여성과 아이들을 착취해서. 몹시 가난한 사 람을. 창피한 방법으로, 인권침해 하면서... (해외입양인 31)

'제국주의의 작동'과 관련해서는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 자신들이 마치 식민지 의 피지배 아동처럼 서구의 '제국'에 보내져 동화하면서 살아야만 하는 경험을 했다고 하는 이들도 있었고, 자신들이 백인의 위안부였었다고 강하게 비판하는 이들도 있었다.

해외입양인은 대부분 백인 가정에 입양됐는데, 인종이 다른 가정에 입양되면 어려 운 상황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해요. 나는 다양한 형태의 학대를 당하고 안전하지 않은 가정에서 자란 입양인을 많이 만났는데, 학대를 떠나서요. 나는 이게 체계적 인 문제가 아닌가 해요. 모르긴 해도, 내가 자란 환경을 생각하면 내가 사회적으로 는 우리가 식민지의 피정복자(colonized subjects) 같은 느낌이거든요. 우리가요. 음. 미국과 한국, 주로 다른 서구 국가와의 지속적인 관계를 보면, 그리고 아이들 을 대단위로 주로 미국과 서구 국가로 떼어낸 걸 보면. 나는 식민지의 피정복자라 는 느낌이 강해요. 식민지 피지배 아동으로 미국 백인의 교육기관, 미국대학이든 뭐든 교육받고 백인 가족, 지역사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받아들이면서 자라고, 그 과정에서 어렵고...내 애기를 하면 '동화하라'는 압력이요, 그 압력의 여파랑 동화 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예를 들면 동양인인데 백인 가족 안에서 내 몸과 얼굴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파트너로 어떤 사람에게 끌리는지, 그런 모든 것에서 식민지 피지배자로 자란다는 조건의 여파가 있어요. 직접적인 학대는 아닐지 몰라도 전체 체계가 학대라고 생각해요. 나는 내 몸과 마음을 여기서 살아남으려고 뒤틀어야 했고 그것도 학대의 일종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특히 내 부모가 그걸 행사한 거고 입양이라는 체계가 그 학대를 행사한 거죠. (해외입양인 7)

위안부와 비슷해요. 백인의 위안부가 된 아이들이에요. 한국이 자존심이 있으면 멈 추고 안에서 해결책을 찾아야 해요. 한국이 완벽하기 때문이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원도 있고, 언어도, 구조를 먼저 만들어야죠. 정인이 사건처럼 말고. 입양이 나 쁘기만 한 건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왜냐하면 재기의 기회를 주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의 사후 점검이 중요해요. 그게 아주 중요해요. 그냥 배치하고 신경 쓰지 돼요. 이 제국주의, 어디에 아이들을 보내는지 생각해봐요. 미국, 캐나다, 벨 기에, 이런 곳과 사업하고 싶어서 애들을 보내는. 벨기에는 이제 거부하죠. 유럽의 많은 나라는 한국이 너무 부자라서 이제 (해외입양을) 원하지 않아요. 인종도 생각 해 보면, 백인우월주의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세요. (해외입양인 13)

식민정신이 아니면 애들을 보낼 수 없어요. 미국으로 많이 보내졌잖아요. 제국의 심장으로 보내는 거죠. (해외입양인 1)

■ 국가의 역할

이 주제는 국가가 해외입양 영역에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다는 비판적 시각에서 출발해 앞으로 국가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할 일에 대한 제안을 포함한다. '국가의 역할 (government's inaction),' '손쉬운 선택이었던 해외입양(adoption as an easy solution),' '원가정을 지원해야 함(support original family),' '국내입양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함(domestic adoption first),' '인식개선을 주도해야 함(change public mindset)' 등의 하위주제를 포함한다. 이 주제로 코딩한 많은 인용문은 '해외입양인의 요구'라는 주제로도 코딩되었다. 국가의 역할에 대한 관점과 해외입양인이 국가에 요구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과 같기 때문이다.

'국가의 역할,'이라는 하위주제는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한 체계에서 국가는 핵심 주체인데, 국가가 해외입양 관련해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해외입양기관을 관리·감독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세우지 않아 문제가 많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통제를 하나도 안 했죠. 풀어주었죠. (특정 입양기관)이 무슨 일을 하는데 정부가 감독해야 하잖아요. 전혀 그게 없었던 거예요. (중략) 정부는 내가 무슨 질문을 하면 '모른다, 입양기관에 가서 물어보라'라고 해요. 아니 지금 힘 있는데가 (특정 입양기관)인가요, 공무원들인가요? (중략) (특정 입양기관)이 (공무원)머리 위에서 아직도 춤을 추고 있나요?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중략) 진짜 강한 사람만 그래도 살아남고 약한 사람은 정신질환이나 자살이나, 저는 실패라고 표현해요. 왜 그 수많은 아동을 제공했나? 시장이 있었기 때문에. 아직도 한국은 해외입양에 대해서, 헤이그협약에 대해서 책임을 회피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당당한 나라라면 국가가 이 결정을 내려라. '도저히 나는 이 아이들을 여기서 키울 수가 없다.' OECD 국가인데 유일하게. 아니면 답을 피하거나, 아니면 '내 몫이 아니다.' 이러고 있는 거죠. 진짜 무책임하게 보여요. 제가 콜롬비아 입

양 모델하고 한국 입양 모델하고 비교를 해봤어요. 콜롬비아 그 GDP가, 한국이 돈을 다섯 배나 더 벌어요. 근데 이 콜롬비아 모델이 굉장히 엄해요. 아동 보호 안전망이 완벽해요. (해외입양인 10)

미국이나 서구의 많은 해외입양인은 가족과 재회하는 게 너무 어려워서 DNA 검사 를 하는데, 한국은 그게 매우 달라요. 폐쇄적이에요. 한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아주 실질적인 것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한국 사람 DNA 정보를 내도록 하는 것이요, 가족 찾는 입양인들 것 그리고 입양된 아이를 찾으려는 가족의 것과 매치해 보도 록 말이죠. (해외입양인 6)

'손쉬운 선택이었던 해외입양' 은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은 어려움을 겪는 친생가족이 아동을 양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보다는 해외입양을 손쉬운 선택지로 택하도록 방관하고 독려했다는 것이다. 심지어는 아동이 서구 국가로 입양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좋은 삶을 살 거라고 약속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도모했다는 비판적 시각이 많았다.

사람들이 미국을 모든 문제의 해결책으로 여긴 거죠, 디즈니랜드처럼… 사람들은 문제가 다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고 싶나 봐요. (해외입양인 8)

아이들이 입양 보내면 받을 거라고 생각한 것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하기가 쉽지 않죠. 친권을 포기하는 부모는 아이들이 더 좋은 삶을 살 거로 생각하거든요, 그럴 거로 약속받거든요. 다 그렇게 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해외입양인 5)

이상적인 사회였거나 지금 시대였다면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고 아이들이랑 엄마를 술에 취한 아빠로부터 피할 수 있게 쉼터로 보내고 그랬겠죠. 그런데 해결책은 '애 들을 보내라'였던 거예요. (해외입양인 1)

한국에서 우리를 다른 나라로 보낼 때 더 많은 사랑과 돌봄을 받을 거로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문제는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해외입양에 대 해 점점 더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관련된 돈이 얼마나 큰가를 들여다보. 면 말이지요. (해외입양인 20)

'원가정을 지원해야 함'이라는 하위주제에서는 해외입양인이 많은 이유는 한국 사회에 비혼부모에 대한 낙인이 있고, 한국 정부는 아동이 원가정에서 성장하도록 지원하지 않기 때문이므로, 국가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원가정을 지원하고 비혼부모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많은 입양인이 한국 정부와 사회에 화가 나 있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해외입양인 이 많은 이유는 싱글맘에 대한 사회적 낙인과 정부에서 원가정을 유지하고 지원하는 것을 충분히 강조하지 않기 때문이거든요. (중략) 인생의 어느 시점에서 싱글맘이었던 (특정 입양수령국) 사람을 많이 아는데, 애들을 입양 보낼지 고려할 필요도 없어요. 옵션이 아니에요. 보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해외입양보다 싱글맘, 비혼모, 취약한 사람을 도와야 해요. 경제적인 어려움은 한시적이니까요. 입양은 이 한시적인 문제를 영구적 해결방법으로 접근하는 거예요. 나는 가난한 싱글맘이었고, 정부에서 수급받다가, 지금은 자영업 하면서 경제적으로 아주 괜찮아요. 상황은 바뀐다고요. (해외입양인 5)

한국은 지금 저출산 위기를 겪고 있잖아요. 싱글맘을 지원해야죠. (중략) 싱글엄마, 싱글아빠, 한국에도 싱글아빠가 있으니,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변화가 있어야 해 요. 아이들을 보내는 대신 스스로 키우기로 할 수 있도록 싱글부모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늘어나야 해요 (해외입양인 17)

'국내입양 우선원칙을 준수해야 함,'은 아동에게 입양이 꼭 필요한 대안이라면 해외입양 보다는 국내입양을 통해 아동이 자기 문화와 언어 등의 유산을 유지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가족을 잃을 거라면 문화와 유산도 잃게 하지 말고 적어도 한국 사람에 둘러싸여 자라게 허락해 줘야죠. (해외입양인 5) 정부에서 언론사에 돈을 많이 내잖아요. 미디어를 활용해서 국내입양을 도모하는 걸 왜 못하는지 모르겠어요. 인식과 태도를 바꾸도록 가르치는걸요. (해외입양인 9)

'인식개선을 주도해야 함'은 정부가 한국 사회의 입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노력을 주도해, 친생부모도 당당하게 입양인을 만나러 나타날 수 있어야 하고, 입양관련 정보를 수치스러운 비밀로 다루지 않고 입양 삼자 모두에게 공개할 수 있어야 함을 지적하였다.

수치스럽고 창피스러워하는 태도가 있어요. 친생부모가 나타나지 않는 이유에는 요. 다른 한국 사람이 '애기를 포기했다고? 혼외로 애기를 가졌다고?' 수치만 가득 하면 나타나지 못하게 만들어요. 입양인은 친생부모를 찾을 수 없고요. 태도를 바 꾸는 것은 수 세기가 걸리지만, 세대마다 마음 있는 사람들이 (해 나가야죠), 내가 백 살쯤 되면 좀 바뀔까요? (해외입양인 9)

정부가 어떻게든 혼외로 태어난 아이들과 입양과 혈통에 대해서 인식을 개선해야 해요. 어렵다는 걸 알지만. (해외입양인 2)

정부가 입양에 대한 인식을 많이 바꿔야 해요.(중략) 2022년인데 왜 아직도 이렇게 입양과 관련해서 수치, 비밀, 트라우마가 많은 거죠? 개방적으로 친생가족, 입양가 족, 입양아동에게 서류를 줘야 해요. (해외입양인 18)

■ 해외입양인의 요구

이 주제는 '해외입양인의 요구.' '한국 출생인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다.' '해외입양인 돕기,''손상을 치유하기,''입양기관을 감독하기,''서류관리 제대로 하기' 등을 포함한 다. 한국에서 출생했다면 한국의 문화와 언어를 물려받아 한국 사람으로서 정체성을 가 지고 살아가는 것이 한국인에게 주어진 권리인데, 해외입양인의 경우에는 이를 박탈당 했다는 관점이다. 즉, 한국에서 출생한 사람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으므로. 해외입양인의 한국에 대한 요구는 바로 한국인일 권리를 박탈당한 이들의 요구이다.

나는 한국이 내가 한국에서 자랄 기회에 대한 내 권리를 보호하지 못했다고 생각해요. (해외입양인 30)

실제 자신의 정체성에 접근할 수 있는 게 인간, 개인의 핵심적인 요소예요, 누가 이야기해 주는 그대로가 아니라. 이름도 알 수 없고, 원가족이 누군지도 알 수 없고, 그들에게서 억지로 분리되고. (중략) 그래서 이름, 정체성, 궁극적으로는 우리(입양인) 모두 한국인 국적도 잃은 거예요. 나는 한국에서 태어났으면 한국 사람일 권리가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한국 사람일 권리를 박탈 당한 거구요. 이게 일반적 소속감을 의미하는 것이든, 정체성이나 안정감,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 좋든 싫든 내 언어와 문화가 무엇인지 아는 것을 의미하든 그 자체는 권리에요. 나는 나의 한국 사람일 권리가 잘려 나갔다는 느낌이에요. (해외입양인 21)

'해외입양인의 요구'에 속하는 기타 하위주제는 동시에 앞서 거론한 다른 주제에 해당하는 경향이 있다. 즉, 국가의 역할을 이야기하면서 특정 요구를 제시하고, 입양과정에서 겪은 어려움을 이야기하면서 그 경험을 바탕으로 개선점을 제안함으로써 이미 소개한 인용문이 동시에 코딩된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이 주제와 관련된 인용문은 일부만 선택해서 제시하고 나머지 해외입양인의 요구는 목록으로 나열하였다.

정말 수치스럽고 끔찍해요, 내가 태어난 나라가 나한테 한 일이.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내가 겪은 고통은 되돌릴 수 없어요. 나는 작은 한 가지만 원해요. 그건 정의예요. 말만 하지 말고, 약속하지 말고 그냥 행하라고요. 나는 정의를 원해요. 한국 정부로부터. 한국 이 일본에 그들의 범죄에 대한 정의를 요구하는 것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 정부에서 정의 를 원합니다. (해외입양인 31)

첫째는, 아주 중요하고 급한데요, 왜냐하면 우리가 젊어지지는 않잖아요. 모든 입양서류를 개방해야 해요. 입양기관을 강제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서류를 다 모아야 해요. 제일 두려운 것은 입양기관이 자기들 책임을 면피하려고 소장한 서류를 파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도 느끼거든요, 국제적으로 또는 국내에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중략) 친생가

족과 재회할 공간과 기회를 만들어줘야 해요. 친생부모가 아이 찾기를 부담 없이 시도하 게 도와줄 수 있는. 이 부분에서 할 일이 많아요. 예를 들면 대사관이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거든요, 친생부모를 위해서도 그렇고요. 아이 찾기를 비밀리에 착수할 수 있게 도울 수 있어요. 재혼했는데 그 배우자나 다른 자녀에게 과거에 결혼했었다거나 아이를 포기한 적이 있었다는 것을 알리고 싶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해외입양인 32)

가족이면 사랑과 유대, 의사소통 같은 게 있잖아요. 친생가족과 재회한다고 금방 관계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게 힘든 부분이죠. 만나는 자체는 그렇게 많은 것을 의미하지 않 아요. 그냥 사진 같은 거예요.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자원이 있어야 해요. 내 새로 운 한국 가족이 정신적 지원을 받았더라면 좋았을 거예요. (해외입양인 35)

기타 해외입양인의 요구

- ◆ 해외입양인의 이야기를 듣기 시작할 것
-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시 발생한 인권침해를 인정하고 사과할 것
- ◆ 한국 정부는 이러한 인권침해로 인해 해외입양인이 경험한 고통을 배상할 것 (이미 끼 친 피해는 돌이킬 수 없다는 언급도 있었음)
- ◆ 입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것
- ◆ 한 부모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것
- ◆ 입양이 장밋빛 해결책이 아님을 대중이 인식할 수 있게 캠페인을 벌일 것
- ◆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 입양부모의 자격을 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철저히 사전 조사할 것
- 입양은 국가가 관장할 것, 입양과정(사후서비스 포함)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국가가 책 임질 것, 철저히 조사할 것.
- 불법적인 실천에 관여한 기관이나 종사자를 처벌하고 다시 사회서비스, 아동서비스 분야에서 일할 수 없게 할 것
- ◆ 국내입양을 우선으로 할 것
- 입양인이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 ◆ 친권 포기 단계에서 친생부모에게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를 받을 것
- 송출국과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소장한 입양서류를 전부 압수해 보존할 것

-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락할 것 (출생증명서를 뗄 수 있게 하고 친생가 족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할 것)
- ◆ 입양인 송출국이나 수령국 모두 입양사후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것
- 한국에 와서 살고자 하는 입양인을 지원할 것
- ◆ 입양인이 한국시민권을 취득하려 할 때 비용 없이 가능하게 할 것
-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 ◆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것
- ◆ 심리적, 정신적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인을 위한 서비스 (예: 입양 전문치료상담)를 제공할 것
- ◆ DNA 검사를 보편화할 것
- ◆ (독일이 나치가 한 일을 잊지 않기 위해 해온 일들을 본받아) 입양관련 박물관을 세울 것
- ◆ 입양인 지원 단체를 지원할 것
- ◆ 친생가족과의 재회를 지원할 것 (서로의 문화 격차가 너무 큰 가운데 이루어지는 중 요한 만남이기에 입양인과 친생가족 모두 만남을 위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함)
- ◆ 친생가족과의 재회 이후에도 지원할 것
- ◆ 입양인의 한국문화 이해를 돕기 위해 시간 많은 어르신과 연결할 것

■ 회복탄력성

면접에 참여한 여러 해외입양인은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놀라운 강인 함과 회복탄력적인 기질을 보여주었다. 학대의 한복판에서 맞서고, 무력하게 머물기보다는 탈출해서 자신을 구하는 모습을 보였고, 입양관련 분야에서 실천가로 활동하거나연구자가 된 경우도 있었으며, 어린 동생을 돌보는 부모의 역할을 충실히 감당한 입양인도 눈에 띄었다. 또한, 입양은 자기 잘못이 아닌 외부요인으로 인한 트라우마이지만, 자신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를 거부하면서 스스로 서기 위해 애쓰는 모습도 보였다.

손님이 오기로 되어있었는데 양어머니가 나한테 카펫을 청소하라고 했어요. 내가 진공청소기가 망가졌다고 하니 욕을 하면서 그래도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겠

다고 하고, 그때 열세 살인가 열네 살이었는데, 망가진 청소기로 청소하고 있었어 요. 그랬더니 그만두라면서 청소기가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말했잖아 요, 망가졌다고' 했더니 나를 때렸어요. 주먹으로 얼굴을 올려 쳤어요. 얼굴을 맞 으니 너무 화가 나서, 나도 치려고 했는데 엄마가 뒤로 물러나면서 살짝 빗나갔어 요. (중략) 매우 놀란 것 같았어요. 방금 나를 치려고 한 거냐는 표정. '아무 이유 없이 또 때리면 나도 때릴 거야.' 그때부터 때리지 않았어요. (해외입양인 9)

걔는 애 중에서 제일 막내였고 정상적이었어요. 내가 꼭 그 아이의 엄마 같은 생각이 들었고요. 내가 많이 돌봐줬어요, 양어머니가 집에 잘 없었으니까 (해외입양인 13)

동생하고는 제가 연락을 끊지 않았어요. 근데 항상 내가 편지 보내주고 선물 보내 주고. (중략) 자기 공고 간다고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내가 공고 가면 안 된다.' 답이 없어요. '시험 다시 보고 점수 올려서 일반고로 들어가라.' 그 집에다 제가 전화를 했어요. '당신들 고작 공고를 보내려면 왜 데리고 왔어? 우리가 왜 막노동 하면서 살아야 해? 이건 믿을 수가 없는 일이야. 나는 동생이 당신들보다 더 잘 살았으면 좋겠어. 그게 제대로 된 부모의 상식이고. 근데 전혀 그런 게 없는 것 같 아. 공고 절대로 보내지 마. 아니면 내가 데리고 갈 거야. 그랬더니 그래도 보냈어 요.' (나중에)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싶다고. '근데 공고 나와서 어떡할 거야?' '누나가 나 도와줘야 해.' '그럼 내가 시키는 공부 해라'. '자기가 진짜 빡세게 공부 할 거, 10시간 동안 할 수 있어?' 하겠대요. 그래서 9급 공무원 시험은 누구나 볼 수가 있어요. 가장 잘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대학을 나왔건 중학교를 나왔 건 초등학교를 나왔건 상관없이 가장 잘하는 사람만 올라가는 거예요. (중략) '그 러니까 너는 3년 동안 안 한 공부 석 달 만에 바로 해야 해. 10시간 동안 매일. 처음에는 문 닫고 못 나가게 하고. 그랬더니 열흘 안에 짐 싸서 나간다고 그러더라 고요. 자기 시골로 다시 내려가겠대요. '너 나가면 나 안 잡아, 잘 생각해봐. 평생, 뭐 지금은 신문 배달을 하고 있다고? 미래가 보이니? 잘 생각해봐. 너 가면 나는 너 안 잡는다?' 그랬더니 다시 시작하겠대요. 나도 '그래 다시 시작하자.' 그러고 나서 석 달 만에 시험 보는데 혹시라도 길 잃어버릴까 봐 거기에 데려다줬어요. (중략) 3주 뒤에 붙었다고 연락이 왔어요. '잘했다.' 그러고 그러면 이제 인터뷰. 한 달 동안 준비했죠. 아, 그랬더니 공부가 너무 지겹대요. 공무원 되고 싶은 마음 이 없대요. '어떻게 얻어낸 시험인데 이제 와서 할 소리야? 그냥 들어가. 일단 들어가서 나중에 다시 생각해봐.' 그러고 나서, 인터뷰는 굉장히 멀더라고요. 거의 공항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안 되겠네. (일하러) 못 가겠다고 연락하고, 얘 데리고 (인터뷰 장소)까지 가야 되겠다. (중략) 거기 도착하니까 사람들이 줄을 서 있는데한 100명이 있는 거예요. (중략) 한 4시간 정도 기다렸나? (중략) 20분 후에 나왔는데 자기 진짜 잘한 것 같다고. 김칫국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냐. 근데 진짜 잘했대요. (중략) 그러고 바로 붙었어요. (중략) 지금은 지방에 (특정 수령국의 도시명)에 살고 있는데 법원에 7급 공무원으로 있어요. 9급으로 있다가 시험 또 봐서올라간 거고. 법원에서 국선변호사? 그걸 신청하는 사람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이후 동생 자랑을 한참 했으나 생략함) (해외입양인 10)

(한국의 특정도시)에서 태어난 것 같고, 그러고 나서 (특정 도시)로 옮겨지고 다시 (특정 도시)로 옮겨진 다음 같은 해에 (입양수령국)으로 입양되어 왔는데, 갓난 아이에게 매우 가혹하다고 생각해요...(중략)...입양되어 이 나라에 도착했을 때 매우 아팠고 피부에도 뭐가 막 나 있었고 영양상태도 좋지 않았어요. 많이 못 먹어서 그랬는지 치아도 정말 좋지 않았고...(중략)..나는 복잡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나는 항상이렇게 말해요, 내가 경험한 모든 것은 내 잘못이 아니고 다른 사람의 잘못이라고. 그렇지만 나는 희생자(victim)로 보이기를 원하지 않고 다시 두 발로 설 수 있으려면 그건 내 몫이라고요. 어려워요. 정말, 정말, 정말 어려워요. (해외입양인 29)

(4)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의 경험을 조사하기 위해 해외입양인 39명과 입양인 자녀 1명을 개별적으로 또는 초점집단을 활용해 면접하였다. 면접자료 분석에서 발견한 내용은 크게 2개 주제, 즉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거시적 주제'로 분류하였다. 먼저 '해외입양과정에서 나타난 인권침해 양상'과 관련해서는 해외입양과정을 1)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이전인 제1시기, 2) 입양이 결정된 이후부터 입양가정에 실제배치되기 직전인 제2시기, 3)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인 제3시기로 나눈 후,면접 자료의 분석을 통해 떠오른 주제를 이 시기별로 분류하였다. 한편 '거시적 주제'와

관련해서는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체계와 국가의 역할 등 거시적 관점에 관련된 주 제를 별도로 정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발견한 점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이 가장 자주 언급한 주제는 '해외입양인의 상품화' 였고 그 외 집중적으로 언급한 주제는 제1시기와 제2시기보다는 제3시기, 즉 입양가정 에 배치된 이후 해외입양인으로서 겪은 어려움에 응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아직 입양이 결정되기 전인 제1시기에는 고아가 아니었고 기아인지도 확실하지 않았던 자신들의 해외입양이 원론적으로 타당하지 않았다는 '입양타당성 없음'이라는 주제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그런데도 해외입양이 진행될 수 있었던 것은 '시설에서 신분세탁'이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신분세탁 과정을 통해 친생가족과 연결지점이 끊 기고, 시설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된 채 물건처럼 취급되었다는 증언이 있었다. 연구 참여자는 시설에서 한 생활을 주로 학대, 방임, 착취, 열악한 환경으로 묘사하였다. 제1 시기의 이러한 인권침해 경험은 해외입양인 자신뿐 아니라 그 친생가족의 인권침해이기 도 하다는 관점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일례로, 살아있는 신생아가 사망했다고 친생부모 에게 허위보고한 후 해외로 입양보낸 경우, 입양될 아동을 되찾으려고 즉시 찾아간 친생 부모에게 아동이 아직 국내에 있는데도 이미 입양되었다며 포기할 것을 종용한 경우, 병원에서 '또 딸'을 낳아서 또는 의료비가 부담스러워 고민하는 친생부모에게 입양을 권 유해 동의했으나, 바로 다음 날 후회하고 입양 결정을 취소하겠다고 했지만, 이미 늦었 다고 아동을 되돌려주지 않은 경우 등이다.

셋째, 입양결정 후 해외입양가정에 배치되기 전에 해당하는 제2시기에도 인권침해 경 험이 다수 발견되었다. 일반적으로 제2시기에는 입양 타당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친권포기, 즉 친생부모의 입양동의가 진행되는데,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의미를 충분히 설명하지 않았거나 입양기관이 그 의미를 축소해 동의를 조장한 경우, 입양기관이 친생 부모가 아닌 조부모나 친인척 등 대리인의 동의를 채택한 경우 등을 보고하였다. 친생부 모의 친권포기 관련 문제는 언급빈도가 높은 주제 중 하나였다. 이처럼 무리하게 해외입 양을 진행하면서 입양서류를 조작하거나 많은 정보를 누락했다는 '서류의 문제' 역시 언 급빈도가 높았다. 정보가 남아있더라도 해외입양인은 이 정보에 접근이 불가능한 경우 가 많다. 한편, 입양 시 친생 형제자매를 함께 배치하려고 노력했다는 증거가 없었다는 증언도 있었다. 아동의 해외이동 과정에서도 훈련받지 않은 무연고의 동반자가 아동을 이동하다가 각종 문제가 발생했다는 이야기, 다수의 아동을 한 사람이 이송하다가 아동이 뒤바뀐 정황을 파악했다는 이야기, 이동이 터무니없이 오래 걸렸다는 증언 등이 있었다. 수령국의 공항에 도착한 직후 원래 예정된 가정으로 가지 않고 다른 가정에 갑작스럽게 배치된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입양가정이 기대했던 것보다 장애가 심하다고 아이를 그냥 공항에 방치하고 간 경우도 있었다.

넷째, 입양가정에서 생활하기 시작한 이후에는 '부적절한 입양가정', '어려움/고통,' '입양사후서비스 관련 문제' 등의 주제가 부각되었고, 특히 '부적절한 입양가정'과 '어려 움/고통'이라는 주제는 많은 하위주제로 이어졌다. 입양가정에 배치된 이후의 삶에서 해 외입양인이 직면해야 했던 환경과 이들이 겪은 어려움은 해외입양의 타당성에 대해 근본 적 질문을 던지게 한다. 먼저 '부적절한 입양가정'은 '입양가정의 금전문제', '학대와 방 임', '정신적으로 아픈 양부모', '(입양부모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기준 이하의 양부 모', '관계의 어려움과 갈등' 등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 특히 학대와 방임은 해외입양인 면접자료 중에서 두드러진 주제 중 하나였고. 이는 면접조사 참여자와 양적조사 참여자 가운데 발견된 높은 학대율과도 일관된 결과이다. '어려움/고통'의 경우에는 '법적지위 없음/집 없음/방황', '인종차별과 편견', '심리적 문제,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고통', '뿌 리찾기에서 겪는 어려움', '평생 계속되는 영향',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 등의 하위주제가 발견되었고, 이 하위주제 중 대부분은 코드구름화를 통해 해외입양인이 집중적으로 언급 한 주제로 부각되었다. 인종차별과 편견은 북미와 유럽에서 지역에 무관하게 해외입양인 이 보편적으로 경험한 것으로 보인다. 소속감의 부재나 불안, 고국에 오고픈 그리움으로 아린 마음, 학대 트라우마, 자살시도 등 다양한 내용과 경중의 심리적 문제와 정신건강 문제는 입양이라는 특수 상황에서 겪은 어려움으로 보인다. 참여자 대부분은 뿌리찾기 경험이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자기 기록에 대한 접근이 거부당하거나 부족한 정보를 가지고 뿌리찾기를 시도하다가 계속되는 실망 등을 겪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했다. 인종차 별과 뿌리찾기의 어려움은 정체성 찾기의 어려움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주제이다. 이 시기에 어려움/고통을 중심으로 다수의 주제가 응집한 이유 중 하나로 입양사후서비스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입양가정에서 벌어진 학대와 방임을 관련기관이 감지하지 못한 채 방치했거나 아동이 학대를 보고했어도 적절한 조치가 없었고, 이는 입양인의 입장에서는 버려짐의 연속이었다. 한편 해외입양인이 겪은 이러한 어려움/고통은 일시적인 것이 아 니고 이들의 일평생 현재 진행형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과정의 세 시기별로 나타난 다양한 인 권침해 경험은 해외입양을 작동하게 하는 거시적 체계의 산물이라고 보았다. 즉, 인권을 침해하는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원인은 해외입양을 구동하는 거시적 체계 그 자체에 있다는 것이다. 한국 정부, 국내 해외입양기관, 국내 아동양육시설, 입양수령 국의 정부, 입양수령국의 입양기관으로 구성된 체계 안에서 아동이 친생부모에서 입양 부모로 옮겨지는데,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권침해 양상은 관련 주체를 분절적으로 접 근해서는 이해할 수가 없고, 체계를 구성하는 주체의 유기적 협력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고 한다. 아동 이익이 아닌 어른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전체 체계가 문제이기에 입양 인의 인권이 침해당한 것이 분명한데도 그에 대한 책임자는 지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한편, 이 체계의 중요한 일원인 입양기관은 아동의 구원자라는 긍정적 이미지로 인식되고, 입양인은 구원이 필요했던 '무력아'로 그려지곤 하였다. 입양에 대한 이런 긍 정적 이미지는 자신들이 서구의 '제국'으로 팔려 간 상품이었다는 해외입양인의 인식과 는 어긋난다.

여섯째, 해외입양을 가능하게 한 체계 내에서 국가는 핵심 주체인데, 입양기관을 관리 감독하지 못하고 관련 규정을 적절히 세우지 않아 해외입양의 과잉을 방관했다는 비판 적 시각이 있었다.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입양과 관련한 국가의 기능 보완이 필요 하다고 제언했고, 이러한 제언과 요구의 바탕에는 '한국 출생인은 한국인일 권리가 있 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이는 해외입양인에게는 한국인으로 자기 정체성을 가질 권리, 박탈당한 한국시민권을 되찾을 권리가 있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해외입양인의 구 체적 요구는 해외입양인에 대한 지원, 손상치유, 입양기관에 대한 철저한 감독, 입양 관 련 서류관리 강화 등으로 범주화할 수 있다. 이들은 입양 동의 단계에서 친생부모에게 입양에 관해 제대로 설명하고 동의받을 것, 입양인이 정보에 접근할 수 있게 허락할 것, 원가족에 대한 지원을 충분히 할 것, 입양으로 돈을 벌지 못하게 할 것, 입양인이 수령국에서 법적 지위를 확보하도록 지원할 것, 입양이 아동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지 감독할 것, 서류의 날조를 방지할 것, 문서를 제대로 보관할 것, DNA검사를 보편화할 것 등을 요구하였다.

일곱째,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서사에는 각종 트라우마와 어려움뿐 아니라 피해와 분노 중에도 강인함과 회복탄력적인 기질을 보여주는 대목이 많았다. 학대에 적극적으로 맞서고, 자기 안전을 위해 입양가정에서 말 그대로 탈출한 이들도 있었고, 동생을 돌보는 부모 역할을 해낸 입양인도 있었으며, 입양 관련 분야의 실천가로 활동하거나연구자가 된 경우도 눈에 띄었다.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질적 연구결과를 보면 해외입양인 다수가 국가와 한국 입양기관은 물론 해외 입양기관이 자신들의 인권을 다양한 차원에서 침해했다는 사실을 고발하고, 앞으로 만들어 나가야 할 변화가 무엇인지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한국정부는 원가정에서 자랄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입양기관은 아동 이익보다는 기관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서류를 날조하고, 아동인수를 위해 병원과 아동양육시설과 협력관계를 맺고 친생부모를 속이거나, 입양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지 않은 채 해외입양을 권유하는 등의 인권침해 행태를 자행했다.

한편 해외의 입양기관은 입양부모의 적격성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입양해서는 안 되는 사람도 입양하게 하고 배치 후 사후관리를 하지 않음으로써 많은 아동이 입양부모나 친척의 신체적 학대, 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로 한평생 고통받게 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아동을 만나보고 한국 법원에서 입양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입양할 수 있게 한 대리입양제도가 있었기에 더욱 쉽게 이루어질 수 있었다.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 해외입양제도와 실천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데는 관심이 없고, 한 명이라도 더 빨리 더 쉽게 입양 보내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제도 안에서 그래도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은 참 운이 좋은 경우처럼 느껴지기까지 한다. 그러나 아무리 좋은

입양부모를 만나 잘 성장한 입양인도 대다수가 성장 과정에서 인종차별 문제로 고통을 받았고, 같은 문제를 경험하지 못한 입양부모의 공감과 도움을 받지 못하였다. 또한 해 외입양인의 대다수는 입양기록의 위조와 기록에 대한 접근의 제한으로 자기 뿌리와 정 체성을 알 권리를 침해당해 고통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하루빨리 입양기록에 대한 접 근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2) 해외입양 친생부모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에 대한 개별면접은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와 관련 인권침해 양 상, 인권 개선방안 등을 직접 친생부모 당사자의 목소리를 통해 파악하기 위해 진행하였 다. 해외입양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 원칙을 보장했는지를 해외입양 당시 아동이었 던 해외입양인의 입장에서 충분히 확인하기 힘든 당시 상황을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경 험을 통해 다각도로 살핌으로써 해외입양인 인권 보장을 위한 기초자료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개별면접 연구참여자 모집 방법은 친생부모 모임을 통해 요청하 는 방법과 가족을 재회한 해외입양인을 통해서 개별면접을 요청하는 방법을 통해서였 다. 개별면접을 수락한 경우에는 사전에 준비된 해외입양 친생부모 대상 질문지를 미리 보내어 충분히 면접과 답변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한 후에 지정된 동의 절차를 거쳐 면접 을 진행하였다.

개별면접은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한 1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자가 직접 친생부모 거주지역으로 방문하거나, 친생부모가 안정적으로 면접에 임할 수 있는 제3 의 공간을 확보해 대면 면접을 진행하였다. 개별면접 소요 시간은 대개 1시간 30분부터 3시간 정도였다. 개별면접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배경과 목적, 연구 참여대상, 연구 방 법과 참여 기간, 연구 참여 도중 언제든지 그만둘 수 있다는 중도탈락에 관한 정보 등 에 관한 내용은 물론 연구 참여에 따른 이익과 연구에 참여하지 않을 권리, 개인정보 보호와 비밀보장에 관한 내용을 안내하고 설명하였다. 설명 이후에 면접조사 참여 의사 를 확인한 후 동의서를 작성한 다음 실제 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 이후에는 면접에 참여한 연구자 간 면접 진행과 질문방식, 답변 내용, 소감을 공유하였으며, 전사 이후 결과분석에도 함께 참여해 연구 결과 분석의 타당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였다.

(1) 연구참여자 특성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조사는 자녀를 해외입양 보낸 적이 있는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면접조사에는 친생모 2명, 친생부 3명으로 총 5명의 친생부모가 참여하였 고, 참여한 5명의 친생부모가 해외로 입양 보낸 자녀의 수는 총 9명이었다. 기간은 2022 년 7월 21일부터 9월 16일까지였으며,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진 행하였다. 다음 [표 15]는 조사에 참여한 친생부모의 특성과 해외입양 자녀의 특성을 간 단히 정리한 것이다.

본 연구의 친생부모 면접조사에는 친생모 2명, 친생부 3명이 참여하였다. 친생부모 연령대를 보면, 40대가 1명, 60대가 2명, 70대가 1명, 80대가 1명이었으며, 입양보낸 자녀는 총 9명으로 친생부 1명을 제외한 모두가 두 명의 자녀를 함께 또는 각각 입양 보냈다. 자녀가 해외로 입양된 시기는 총 9명 입양자녀 가운데 1970년대가 2명(친생부모 5의 쌍둥이 자녀), 1980년대 6명(친생부모 1, 친생부모 2, 친생부모 4의 자녀), 2000년대에 1명(친생부모 3의 딸)이 각각 입양되었다.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조사에 참여한 친생부모 5명은 모두 입양자녀를 찾은 경험이 있으며, 친생부모 3은 자녀를 찾았지만 아직 만나지는 못하였고, 친생부모 1은 자녀 2명을 1년 간격으로 따로 해외입양 보냈는데, 아직 두 번째 보낸 자녀에 관해서는 연락을 받지 못하였으며, 친생부모 4는 함께 프랑스로 입양 보낸 자녀 가운데 둘째인 아들과 연락은 닿았지만 재회는 못 한 상태이다. 그 외 두 친생부모는 해외입양 자녀를 모두 찾고 재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5] 해외입양 친생부모와 해외입양 자녀의 특성

해외입양 친생부모			해외입양 자녀			
친생	성 별	출생	해외입양	성별 (당시 나이)		해외입양 자녀
부모		년도	연도		수령국	자녀찾기와
번호		(연령대)	(출생연도)			재회 여부
1	여	1961	1986(1982)	딸(5세)	미국	찾음/재회
		(60대)	1987(1983)	아들(5세)	프랑스	못 찾음/재회 못함
2	여	1960	1987(1979)	아들(9세)	프랑스	찾음/재회
		(60대)	1987(1982)	아들(6세)	프랑스	찾음/재회
3	남	1979	2001(2001)	딸(출생 직후)	캐나다	찾음/재회 못함
		(40대)				
4	남	1943	1984(1972)	딸(13세)	프랑스	찾음/재회
		(70대)	1984(1974)	아들(11세)	프랑스	찾음/재회 못함
5	납	1940	1973(1973)	딸 쌍둥이	미국	찾음/재회
		(80대)		(출생 직후)		

(2) 주요 질문

해외입양 친생부모 면접조사의 질문은 크게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하여 구성하였 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 경험에 관한 기본 정보; 둘째, 해외입양을 고 려하게 된 이유; 셋째, 해외입양 결정 이전까지의 상담 과정과 영향 요인; 넷째, 해 외입양 결정과 입양동의 과정; 다섯째, 자녀와 헤어진 이후 심리적 상태와 입양결정 철회 의사 여부; 여섯째, 해외입양 자녀와의 재회, 입양기록의 적절성, 자녀 찾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일곱째, 해외입양 친생부모 인권 실태와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을 각각 질문하였다. 특히 해외입양인의 인권실태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입양결정 과 동의, 헤어짐과 재회, 입양기록과 관련하여 전반적 요소에 중점을 두었다. 아래 의 [표 16]는 친생부모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의 구성 항목을 정리한 것이다.

[표 16] 친생부모 대상 면접조사 질문지 구성 항목

구분	주요 질문
해외입양	- 현재 나이가 몇 살인가요? (출생연도)
친생부모의 입양	- 원가족의 가족 관계는 어떠한가요? (원가족 구성)
경험에 관한 기본	- 해외입양을 보낸 자녀 수와 당시 자녀의 나이는 어떻게 되나요?
정보	- 해외입양 후 본인의 혼인, 출산 등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해외입양을	- 언제 처음 해외입양을 알게 되셨나요?
고려하게 된 이유	- 해외입양을 고려하게 된 계기(상황, 이유)는 무엇인가요?
고려야게 된 이유	- 해외입양이 최선의 결정이라고 생각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 해외입양을 결정한 사람은 누구였나요?
	- 해외입양을 결정한 장소 혹은 기관은 어디인가요?
	(입양기관, 병원, 아동양육시설, 기타)
	- 해외입양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 사람은 누구인가요?
	- 해외입양에 대해 충분히 숙고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나요?
	- 해외입양의 과정과 의미에 대해 충분히 설명을 듣고 이해한 이후
	에 결정을 하셨나요?
	- 해외입양 외 다른 대안(양육, 일시 보호, 양육 지원 등)에 관해서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해외입양 결정	- 해외입양 상담 당시 입양에 관한 충분한 정보(입양의 법적 의미,
이전의 상담	입양 절차, 입양 동의와 철회, 입양의 법률적 효력, 친생부모 정
과정과 영향 요인	보공개, 친생자녀 정보청구 등)를 설명을 통해 이해했나요?
	- 해외입양이 아동과 친생부모 자신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는지
	에 대한 안내를 받았나요?
	- 친생부모의 입양 최종 결정 후 입양 전까지 아동의 안전·권익 보
	호에 대한 안내를 받았나요?
	- 해외입양을 전제로 금품/지원 등을 제안 받은 적이 있나요?
	 - 해외입양 결정을 번복하고, 입양 동의를 철회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받았나요?
	 - 해외입양 간 자녀가 성장해서 친생부모를 찾거나 정보공개 신청
	여부와 가능성에 관해 실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았나요?
	- 해외입양 결정에 따른 입양동의 문서(친권포기각서)에 서명하기 이전
해외입양 결정과	에 서명이 갖는 의미, 동의 철회 가능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들었나
입양동의 과정	요?
1007 40	· ·· - 입양동의 문서에 서명하는 과정(절차, 소요 시간, 동행한 사람
	1007 EAM AOME 40(EA, TH AE, 66E AE

구분	주요 질문
	등)은 어떠했나요? - 입양동의 문서에 서명했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 입양을 결정한 당시 미래에 자녀와의 재회(자녀의 입양정보공개 청구)에 관해 어떤 생각이나 준비, 기대를 하였나요? - 입양 진행 과정에서 자녀에게 친생부모가 준비한 물품·편지 등을 전달하고자 했었거나, 전달할 수 있었나요?
자녀와 헤어진 이후 심리적 상태와 입양결정 철회 의사 여부	 해외입양으로 자녀와 헤어진 이후 겪은 어려움이 있었나요? 자녀와 헤어진 이후 자녀와 분리와 관련해 심리적·정서적 지원을 받은 적이 있나요? 받았다면 누구에게 어떤 지원을 받았나요? 해외입양 입양 결정을 후회하거나 번복하고 싶은 생각이나 마음의 변화가 있었나요? 만약 그랬다면 어떤 이유에서였나요? 해외입양을 철회하고자 하는 마음을 먹은 적이 있나요? 실제로철회 의사를 말하였을 때 입양을 진행했던 기관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해외입양 자녀와의 재회, 입양기록의 적절성, 자녀찾기 과정에서의 어려움	 해외입양 관련 문서에 자신의 기록이 충분히 잘 남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관련 문서의 기록과 정보가 자녀에게 충분히 잘 남겨졌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관련 문서의 기록과 정보가 자녀와의 재회에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자녀와 재회는 하셨나요? 해외입양 자녀와 연락을 처음 받은 것은 언제인가요? 자녀를 찾고 재회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은 무엇이었나요? 자녀와의 재회는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졌고, 재회 당시 감정은 어떠셨고, 혹시 어려움은 없었나요? 자녀와의 재회가 더 잘 이루어지려면 어떤 준비와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자녀와 재회한 다음에는 어떤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나요? 재회 과정에서 무엇이(언론, 정부기관, 입양기관, 관련 지원단체 등), 누가 가장 도움이 되었나요? 자녀와의 재회에 관해 알린 사람은 누구누구였나요? 그중에 현재의 배우자 나 가족, 자녀가 포함되어 있나요? 만약 자녀와 배우자에게 알렸다면 어떤 반응을 보였으며, 또 알

구분	주요 질문
	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 자녀와 재회 이후의 관계는 어떻게 유지하고 있으신가요?
	- 자녀와의 재회 과정과 이후의 관계 유지와 관련하여 입양기관이
	나 관련 단체, 정부로부터 어떤 도움을 받으셨나요? 이에 대해
	어떤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친생부모의 기본적 권리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외입양기관이 친생부모의 인권을 존중했다고 생각하시나요?
케이이아 뒤새버드	- 해외입양기관의 입양절차 중에서 인권침해적인 요소가 있었다면
해외입양 친생부모	무엇인가요? 어떤 측면이 인권침해라고 생각하시나요?
인권 실태와	- 한국 정부는 입양과정에서 당신의 인권을 어느 정도로 잘 보호했
해외입양에 대한	다고 생각하시나요?
의견	- 해외입양에서 한국 정부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 한국은 해외입양을 계속 진행하는 것이 좋을까요? 제한된 경우에
	만 해외입양을 허용해야 한다면 어떤 경우라고 생각하시나요?

(3) 조사 결과

해외입양 친생부모를 대상으로 한 개별면접 녹음파일의 전사 작업을 통해 내용을 재확인한 후 질문지 항목에 따라 최종 분석을 진행하였다. 친생부모의 답변 내용은 본 연구의 핵심 과제인 해외입양인의 인권 실태와 인권침해 현황, 인권 개선을 위한 과제 도출이라는 목적을 중심으로 친생부모가 겪은 해외입양 절차와 재회 과정 전반에서의 경험과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등을 주제별로 분류해 분석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분석한 해외입양 친생부모에 대한 질적연구 분석 결과를 입양결정, 입양동의에서 헤어짐, 재회와 이후의 과정까지를 순차적으로 살펴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양육 위기에서 입양결정 이전까지

■ 입양결정 이전 양육 위기 상황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체로 자녀 양육 과정에서 일시적 또는 장기 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부딪히게 됨으로써 자녀를 입양 보내는 결정을 하게 되었다. 자녀

양육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 요인은 각자 달랐다. 먼저 친생모는 경제적 상황 악화,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생계 지원 부족으로 인한 가족부양의 한계, 자녀 돌봄과 가족 부양 병행의 어려움, 배우자와의 불화와 신뢰 손상, 원가족의 지원 부재 등이 복합적으 로 작용해 혼자 힘으로는 자녀 양육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생활이 나아지지도 않았고 아이 아빠라는 사람 자체가 뭐라고 얘기를 해야 할까? 앞날을 내다볼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가정적으로 가장 역할을 못 하는 그런 사 람이었고. 더는 저도 아이를 데리고 있으면서 제가 잘 키워낼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없었고. 그때 생활이 어쨌든 그럴 수밖에 없는 저로서는 그렇게밖에 선택할 수 없 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중략) 물론 이제 뭐 무슨 짓을 해서라도 어떻게 해서라도 살아야겠다고 생각을 하고 살면 아이를 안 보내고 데리고 살 수도 있기는 하겠지 만, 그때 상황으로서는 모든 게 그냥 절망적이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을 했습니다. (친생부모 1)

남편이 싸움을 해서 다쳤다고 여기 어디 한강 옆에 무슨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저는 애 둘 데리고 직장을 다니고 있는데. 회사에서 방 하나 얻어 가지고. 회사에 서 방 하나, 골방 하나 줘서 그러고 있는데. (중략) 자꾸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니 까 이제 회사에서 나가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빠네에 애들을 맡기고 제가 병원 에 가보려고 했더니 없더라고요. 오빠하고 시누이에게 애들을 놔두고 제가 편지를 썼어요. 일주일 동안만 봐달라고. 당장 갈 곳이 없으니까. (중략) 근데 이제 오빠와 시누이가 애들을 밤에 보낸 거예요. 제가 있던 OO동으로. 그 저는 지금도 감사한 게 그 아이들이 길을 안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8살하고 게네들이 뭘 알겠어요. 근 데 몇 정거장을 걸어가야 되거든요? 근데 거기를 찿아왔어요. 그다음 날 이제 제가 회사에다 연락을 하니까 애들이 있다는 거예요. 언니하고 전화를 하니까 "니 자식 니가 길러야지 왜 여기다 두냐." 뭐 그냥 그렇게 실랑이를 하다가 뭐 애들을 택시 를 보내든지 일단은 여기 병원 쪽으로 보내 달라고 그러면서 병원에서 한 달을 기 거했어요. 애들 데리고. 그러니까는 병원에서는 맨날 나가라 그러죠. 애들 데리고 있을 곳이 안 되니까. (친생부모 2)

친생모와 달리 친생부는 직접 자녀를 양육하는 어려움은 상대적으로 덜 경험했으며, 혼인 상태의 변화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양육의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상태로 동거하다가 동거녀가 임신 중일 때 관계가 나빠져 출산 이후 자녀 양육에 어려움을 겪게 된 사례도 있었고, 이혼 후 어린 두 자녀를 직접 돌보려 했지만 포기하고 부모에게 부탁했다가, 그곳에서도 사정이 생겨 아이들이 외가로 보내진 후 연락이 끊긴 사례도 있었다. 한편 기혼 상태에 있던 친생부 사례도 있었는데, 시골에서 소도시로 이사한 후얼마 되지 않아 출산한 아내가 출산 과정에서 큰 수술을 받게 돼 수술비 마련에 어려움을 겪자 병원의 권유로 아이들을 포기하게 된 것이다.

안양에 가 가지고 아무래도 배가 좀 아프고 안 좋다 이거라. 아기가 나올 날짜가 됐는데 아기가 안 나온다. 그리고 몸도 이게 너무 안 좋아서 도저히 내가 못 견디 겠다. 그래가지고 안양 부인병원에 가서 의논을 했지. 입원을 해야 되겠다. 입원해 진찰을 해보더니 "지금 이렇게나 되도록 놔뒀나? 산모고 뭐고 다 죽게 생겼다." 이거라. 왜 그랬나? 안에 탯물이 다 마른 지가 너무 오래됐다고. (중략) 병원 측에서 나보고 하는 말이. "아기하고 산모까지 죽게 생겼는데 지금 수술을 해가지고 어느 쪽이라도 한쪽이라도 살려야 안 되나?" 하는 거라. 다 살릴 수 있으면 다 살리고 그래서 하여튼 살릴 수 있는 데까지 살려달라고. 해달라고. (중략) 병원 측에서 보니까, 키울 사내에 세 놈이 있지, 살기 어렵지, 병원비도 못 내고 있지. 이래가지고 갇혀 있게 된 거라. (친생부모 5)

■ 해외입양에 대한 부적절한 유인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과정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불안정한 상황에서 위기감을 느낄 때, 아이를 대신 보호해 줄 대안을 주변 사람이나 병원에서 권유받고 쉽게 수용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들 중에는 해외입양이라는 제도 자체를 모르는 상태에서 당장 자신들이 처한 경제적 어려움을 대신 해결해 주는 대가로 자녀를 포기한 경우도 있었고, 자녀와의 헤어짐이 일시적이고 해외에서 훌륭한 교육을 받은 후 다시 만날 수 있을 거라는 부적절한 설명을 듣고 해외입양을 고려한 경우도 있었다.

- 훌륭한 교육 기회와 성장 후 재회에 대한 기대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부모에게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여러 기회를 제 공받을 수 있고, 자녀가 성인이 되면 부모를 찾으러 올 거라면서 해외입양의 긍정적인 측면만을 과장해서 설명하면서 해외입양을 권유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외입양이 자녀에게 친생부모 자신은 줄 수 없는 좋은 기회를 제공할 뿐 아니라 미래에 자녀와 재 회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함으로써 친생부모의 입양결정을 유인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로 해외입양 이후 자녀가 친생부모를 찾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이를 당연한 것으로 설명한 것은 친생부모와 아동 간 관계의 완전한 단절로 이어지는 완전입양의 특성과는 다른 설명이었다.

아이를 외국으로 입양을 보내면 거기서 아이들이 뭐 공부도 하고, 아이들이 클 수 있고, 나중에 이제 성인이 되면 찾아오고, 엄마를 만나러 올 수 있다. 내가 만날 수 있냐 했더니 저는 연락을 할 수는 없대요. "그쪽에서 연락을 하면 저는 받을 수 있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큰 애가 19세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제가 무지하게 기다렸던 거죠. 그때는 찾아올 거로 생각했죠. 왜냐하면 애가 9살이었으 니까 내년에 간다 해도 10살이잖아요. 그러면 10년 안에는 제가 만날 거라는 생각 을 했었죠. (친생부모 2)

그분을 만나고서 얘기를 듣고, 제가 병원에서 있는 것까지 보고, 이 모든 사항을 보고서는 그냥 가는 게 좋은데, 큰 애 나이는 못 간다 하더라고요. 근데 작은 애 나이가 있어서 프랑스로 갈 것이고, 한 집으로 둘이 간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혼 을 해야 되고, 포기 각서를 써야 되고, (중략) 이혼한다고 애기 아빠 허리 아파 못 간다는 사람 제가 끌고 병원에 가서 이혼을 했어요. 그래야 애가 간다니까. (중략) 그래서 이혼을 하고, 제가 여기 마포에 있는 OO동, 거기 OO를 가서 아이들을 거 기서 보내주고, 그리고 제가 왔으니까. (친생부모 2)

- 경제적 지원 약속 또는 비용 대리 납부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나이가 어려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지 못한 상황이거나, 가족의 생계가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 양육이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러한 가족에 대한 정부의 경제적 지원이 없거나 극히 부족한 상태에서, 친생부모는 해외입양 을 통해 의료비나 출산비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물질적 지원을 조건으로 한 자녀의 포기는 불법 입양의 한 형태였지만, 당시 경제적으로 불안정 한 빈곤 가정이나 어린 나이에 부모가 된 가정에는 해외입양 결정을 유인하는 한 형태로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 친생부는 일단 산부인과에서 큰 수술을 통해 딸 쌍둥이를 출산했지만, 늘어가는 병원비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때 병원이 자녀를 대신 돌봐 줄 곳이 있다고 제안했고, 자녀를 포기하자 병원비를 하나도 내지 않고 퇴원할 수 있었 다. 이는 그 당시 해외입양기관이 병원 등에 분만 보조비나 의료비를 제공하면서 서로 더 많은 아동을 인수하려고 경쟁한 정황을 드러내 준다. 이러한 아동인수를 위한 해외입 양기관 간 경쟁 행태는 1988년 6월 정부가 4개 해외입양기관에 입양사업개선 지침 시달 을 통해 아동인수를 위해 병·의원, 조산소, 미혼모시설, 아동 양육시설 등의 기관방문, 분만보조비와 의료비 지급, 각종 향응의 제공 등의 행위를 입양특례법 제15조에 따라 처벌할 것을 주지시킬 정도로 심했던 것으로 보인다.5). 1989년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해 외입양기관들은 입양아동 확보를 위해 병원 등 의료기관에 사례비 명목으로 막대한 자 금을 제공했는데, 이는 오히려 1년 전인 1988년에 해외입양기관 간 경쟁을 막기 위해 내린 조처 후 더 많이 증가한 것으로 보도하였다6). 이처럼 해외입양기관에서 입양대상 아동을 의뢰한 의료기관에 후원금이나 친생부모의 병원비를 지급했던 관행은 여러 차례 의 금지 조처에도 중단되지 않았던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동거를 하다가 임신을 해서 이제 낳고 키우자 했어요. 다 동의를 얻고 저희 부모님 집에 들어가 있었어요. 부모님 집에 들어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방을 나왔어요. 자취방을 얻어서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잖아요. (중략) 그래서 자기가 인터넷으로 이렇게 알아보다가 병원비를 지원해준다.

⁵⁾ 국가기록원 "입양사업지침 1978-1988" 생산기관: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생산년 도: 1978, 관리번호: DA0872941.

⁶⁾ 한겨레 1989. 9. 27 "입양아 확보위해 '뒷돈' - 홀트 아동복지회 등 고아원·병원마다 '연고권' 다 져". 조선일보 1989. 9. 27 "해외입양아 입도선매(立稻先賣) - 홀트아동복지 등 4개 사회기관 고 아원 등 돈 주고 연고권".

그리고 뭐 입양이다. 얘기는 했어요. 얘기는 했는데 막상 가서 설명을 들어보지는 못했어요. 제가 거의 못 들었어요. (중략) 저는 그때 당시에 해외입양이라는 걸 들 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런 사이트가 있는지도 몰랐었고. 제가 알기로 제가 기억하는 건 그 친구가 다 검색을 해서 하고 병원비도 지원해준다니까. 병원비를 지원해 준 다니까. 일단은. (중략) 전액 지원인데 저도 이제 우리 애를 낳았잖아요. 그 전액 지원이 정말 미비하더라고요. 왜냐? 보험이 되다 보니까 더군다나 얘는 자연분만 이었어요. 자연분만이다 보니까 돈이 들어갈 게 없는 거였어요. 저는 병원비 많이 나오는 줄 알았거든요. (친생부모 3)

하루는 병원에서 애기엄마가 애를 못 키우겠다 이거라. "왜 못 키우겠나?" 그러면 "어떻게 하겠나? 병원비도 줘야 되고, 이런 형편에 애도 못 키운다. 내가 몸이 아 파서 못 키운다." 그런다고 내가 키우는 것도 아니고 애기엄마가 못 키운다고. 그 래 딱 잘라 이야기하더라고. 내가 가만히 들어보니까 간호사들이 왔다 갔다 해. 너 무 가깝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 그래서 간호사들이 아마 소개를 한 모양이라. (중 략) 나로서는 이것도 못 하고 저것도 못 하는 상황이지. 나는 아무 데라도 따라가 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내 주장대로 할 것 같으면 병원비도 우리가 내고 집에 와서 어떻게 먹고 지낼 수만 있으면 애를 데리고 집에 오면 되는데, 집에 와도 형 편이 안 좋고, 먹고 살기도 어렵고, 직장도 옳은 직장도 없이 남의 일하러 다니는 데, 그 며칠에서 며칠씩 일하면서 나가고 했는데 이게 도저히 나로서도 이래라 저 래라 할 도리가 안 되는 것이지. (중략) 말 한마디도 안 했어요. "뭐 기재를 해라.", "어디서 왔나?" 하고 하는 게 상책인데. 그때는 그런 기관이고 그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내가 물어볼 수가 없는 거라. '어디로 연락했길래 차가 와서 애를 데려갔 느냐?'고. 그걸 바로 못 물어보는 게 병원비가 밀려 있기 때문에. 병원비를 한 푼도 못 줬어. 지금 돈으로 따지면 한 500만 원인가 뭐 그 정도인데. 결국, 돈 한 푼도 자기들도 받을 생각지도 안 하고. 도저히 이거 이래가지고는 안 된다. 그대로 "퇴 원해라"하더라고. 그래 돈도 못 주고 퇴원을 한 거라. (친생부모 5)

- ② 입양결정에서 자녀와 헤어지기 이전까지
- 해외입양을 인지조차 못 한 상태에서 이루어진 입양결정 친생부모는 대부분 해외입양에 관해 이미 잘 알지 못했고, 몇몇 친생부모는 자녀를

기관 실무자에게 인계하면서도 자신의 자녀가 해외로 입양 간다는 것을 알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 입양기관이 자녀를 맡기는 친생부모에게 해외입양이 무엇이고, 그것이 자신과 자녀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인지를 설명해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친생부모 중에는 자녀를 아동양육시설에서 일정 기간 맡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나, 국내 가정으로입양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도 있었고, 심지어는 자녀의 해외입양이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결정된 경우도 있었다.

- 자녀가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함

친생부모에게서 자녀를 인수하러 온 입양기관 실무자는 대부분 자신이 어떤 일을 어떤 기관에서 하는 사람인지, 자녀는 그 이후 어디서 어떻게 성장할 것인지를 설명하지 않았다. 따라서 해외입양이라는 개념조차 인지하지 못한 친생부모는 아이가 당연히 양육시설에서 성장할 것으로 생각하고, 훗날 찾아가면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였다. 경우에 따라 친생부모가 형편이 좀 나아져서 양육시설을 찾아다니는 과정에서 매스콤을 통해 해외입양이라는 단어를 듣고서야 자신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됐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경우도 있었다.

병원 측에서 이야기하는 대로 "차가 여기 온다. 그래가지고 실어주면 된다." 이래가지고 나는 각본이 제대로 짜인 줄 알고, 물어봐도 병원에서 물어봐야 할 일이지. 그리고 가면서도 혹시나 무슨 인적 사항이라도 부르는가 했더니, 그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는 거 보니까, "병원에서 다 해놓고 애들 데리고 가는 모양이다". 이런 생각을 그 당시에는 했지. 해외입양이니 이런 이야기는 전혀 없었고. 입양이라는 거는 그 글자는 그때서야 입양이라는 소리만 있었지. 이게 "그냥 부근의 고아원에 안 갔겠나?" 나는 고아원만 생각하고 있었을 따름이지. 그 이상으로까지도 머리를 써본 적이 없어. (중략) 우리 애가 1973년도 5월 11일 생이니까. 그 애들을 보낼때 가슴에다가 생년월일을 써줬어요. (중략) 그래가지고 그 생년월일을 가슴에 쪼가리를 써서 넣어줬어요. (중략) 나중에 아내랑 가서 "여기 몇 호실에서 배를 저 개복 수술해가지고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애를 드러내는데 겨우 살려가지고. 어디고아원인가 여기서 이야기가 되어가지고 보냈는데, 어느 고아원인지 알고 싶어서

왔다." 이야기를 했지. 나도 그렇게 덧붙여서 이야기를 했고, 집 식구도 어디 보냈 는지는 모르고 그렇게 허락을 해주긴 해준 거라. (친생부모 5)

보낸 날에 어디서 차가 와가지고 우리 엄마가 애 하나 안고, 장모님이 애기 안고 따라 나가는 사람은 나밖에 없는 거라. 아기 엄마는 몸이 아프니까 못 나가고. 그 래서 어떤 봉고차인지 조그마한 차가 와가지고 애를 싣고 가면서 그러면 이게 부 모가 어떤 분이냐? 질의 문답이 하나도 없는 거라. 그래서 나는 집사람하고 병원 쪽에서 다 해결이 된 줄 알았지. (중략) 병원비를 내놓고 나가야 되는데 "지금 애가 어디로 갔니?" 하고 따지고 할 거 없고. 며칠 있다가 봐서 내가 이야기를 하면 되 겠다. 그때는 나는 국내 고아원에 안 보냈겠나. 나는 그렇게 지금까지도 생각을 했 어. (친생부모 5)

- 자녀가 국내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함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직접 입양기관에 찾아가 자녀를 입양 보낸 것이 아니라 다 른 가족이 자기 의사는 묻지도 않고 기관에 입양을 의뢰한 경우도 있었다. 딸을 잠시만 돌봐달라고 친정 식구에게 맡긴 한 친생모는 얼마 후 국내 한 가정이 딸을 예쁘게 키워 주겠다고 해서 입양 보냈다는 말을 들었는데, 이후 입양기관을 통해 딸의 해외입양 가정 에서 편지가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나서야 자녀가 해외로 입양된 사실을 알게 되었다. 한 친생부도 친생모의 임신 기간에 병원비를 지원해준다는 것을 알고 자신이 입양기관 에 미리 연락했었으므로 아이가 입양 갈 것은 알고 있었지만, 국내 '잘 사는 집'에서 자 라는 것으로 생각했지, 해외로 입양 갔을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다.

첫째 아이가 제 친정 가족에 이제 잠시 동반하려고 맡긴 상태에서 그냥 입양되어. 버렸고, 그걸 일 년 후에 알게 됐어요. 일 년 한두 달 후에 알게 됐는데 그때는 해 외에 입양이라는 거는 몰랐고, 그냥 한국의 어느 부잣집에서 아이를 잘 키우고 싶 다고. 이거를 얘기를 해서 저 모르게 한국 가정에 보냈는데, 그거를 알고 그 아이 를 찾으려고 했지만 찾을 수가 없어서, 찾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어서, 그냥 그렇 게 한국 가정으로 입양이 됐다고 알고 그냥 포기한 상태였는데. 일 년 후에 해외입 양이 됐다고, 해외 양부모한테서 연락이 와서 그래서 해외입양이 된 걸 알게 됐습

니다. (친생부모 1)

해외입양 간다 생각지도 못했어요. 입양이라면 진짜 말 그대로 "부잣집에 우리가 TV에서 흔히 말하는 부잣집에 들어가서 진짜 내가 능력이 없으니 너라도 잘 살아라."하고 보내는 그런 건 줄 알았지. 만약에 해외입양이었다. 제가 그때 당시에 그걸 알았다. 그럼 전 반대했을걸요. 왜 반대했냐? "왜 내 자식을 해외로 보내요?" 전 그거예요. 저는 지금도 변함없지만, 그때는 제가 무지해서 이건 당한 거예요. 무지해서 당한 거지. 근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게 해외입양이다." 그러면 저는 아무리 능력이 없어도 데리고 왔죠. 무조건. (친생부모 3)

■ 해외입양의 의미나 친생부모의 권리를 알지 못한 채 내린 입양결정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자녀가 해외로 입양될 것으로 인지한 상태에서 입양결정을 내린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해외입양 후 자녀와 자기 삶이 어떻게 변화할지, 친생부모로서 자신에게는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한 채 입양을 결정하였다. 즉 자녀가 해외입양이 된다는 것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입양 결정 후 자신과 자녀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하게 될지, 입양결정 후 취소는 할 수 있는지, 그러려면 어디서 상담받아야 하는지, 입양 후 재회는 가능한지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이나 상담을통해 이해하고 입양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었다.

- 해외입양을 통해 자신과 자녀가 경험할 삶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했음

해외입양 친생부모 대부분은 해외입양이 자신과 자녀의 삶에 어떤 변화를 초래할지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거나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녀의 입양을 결정하였다. 이는 입양기관에서 해외입양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며, 어떤 절차를 거치게 되는지, 입양 철회 등 해외입양 관련 친생부모의 권리를 무엇인지, 자녀를 위해서는 어떤 기록을 남겨야 하는지, 재회를 위해서는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 자녀의 입양결정을 고심하는 친생부모가 반드시 받아야 할 상담과 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OO에 있는 OO에 찾아가서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인데 "이 아이를 키울 수가 없다. 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줄 수 있느냐?"했더니 "아이 거기다 두고 가라." 그냥 그러 더라고요. 저도 아마 아이를 입양 보내겠다고 데리고 들어가서 창피했는지 어쨌는 지, 그런 뭐 설명 들었던 그런 거는 전혀 기억이 없고요. 그냥 뭔가 서류를 주긴 줬었던 것 같아요. 서류에 사인했는지 그것도 잘 사실은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냥 가서 뭐 10분도 안 돼서 그냥 입양 동의서에, 그냥 그 입양 동의서였던 거 같아요. 뭔지는 모르고, 그냥 서류를 "여기다 그냥 서명하고 가시라."고 해서. 그냥 거기 가서 한 10분도 안 된 사이에 그냥 서명하고. 뭐 주는 서류에 서명하고. 그러고 그냥 아이 두고, 그냥 나온 게 그게 끝이에요. (친생부모 1)

한 친생부는 친생모와 함께 분만실 앞에서 아이를 보여 달라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했 다. 임신 상태에서 미리 입양에 동의하고, 출산지원비를 받고, 지정된 병원에서 자녀를 출산하면, 출생 직후 자녀를 한 번도 보지 못하고 입양 보내야만 했다. 해외입양이 병원 이나 아동양육시설 등 입양기관의 외부에서 이루어졌을 때는 입양 관련 설명 절차가 더 간소화되거나 생략되는 경우가 더 빈번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 결과 해외입양 상담은 단순히 입양동의서에 서명하고 아이를 두고 나오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실제로는 입양기관과 친생부모가 작성한 입양동의 문서가 법적 효력이 없는 문서 로 입양이 법적으로 결정되기 전까지는 번복 가능성이 있었지만, 친생부모는 이에 대한 이해가 없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저는 출산 때 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애를 데리고 간다. 뭐 이렇게 쓴다고 쓰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쓴 기억이 없어요. 쓴 기억이 없고 (중략) 입양 가는 거 는 기정 사실이었으니까. 그런데 이게 해외입양인지, 국내입양인지 말도 없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그거 딱 그 상태였어요. (중략) 이쪽 병원에서도 애를 보고 싶다. 이게 아무래도 보면 조금 더 마음이 바뀔 수가 있어선지. "왜 보려하냐?"하 고 안 보여줬어요. 그냥 딱 차단을 쳤어요. (중략) 제가 진통 과정에는 같이 있었어 요. 제가 근데 의사만 왔다 갔다 했고, 근데 이제 애가 출산을 했고, 그 나오는 과 정에 전 앞에 기다리고 있었잖아요. 그냥 휙 가더라고요. 그래서 보여 달라니까. 그 유리벽에 가서 보잖아요. 그것도 못 보게 했어요. (친생부모 3)

- 친생부모의 권리를 알지 못했음

입양결정 과정에서 대부분의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신에게 어떠한 권리가 있는지 설 명을 듣지 못하였다. 그래서 자녀가 해외입양이 된 이후 자신을 찾아올 수 있는지, 그럴 때를 위해 기록은 어떻게 남겨두어야 하는지 등을 이해하지 못한 채 입양 결정을 하였 다. 때로는 친생부모 스스로 자녀와의 재회를 위해 정확한 기록을 남기고, 자녀의 사진 과 물건을 함께 보내려고 하면 오히려 제지당하곤 하였다.

무지해서 갔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당연히 나는 그런 수순이라는 걸 로 받아들였지. 뭐 "이게 부당하다."라는 걸 못 느꼈어요. 왜냐하면. 모르니까. 모 르는 사람한테 "이게 정당한 거야." 하면 정당화가 되잖아요. 근데 아는 사람한테 는 "이게 정당한 거야." 하면 거짓인 걸 아니까 반박을 하지만, 모르는 사람한테는 정말로 "이게 정당한 거야." 그러면 정당화가 되더라고요. (중략) 이게 분명히 거짓 이 있는데, 그걸 감추고 들어가면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친생부모 3)

출생신고도 안 돼 있다고 얘기를 했고, 다만 이제 혹시라도 이 아이가 나중에, 나 중에라도 저를 뭐 원망이라도 하게, 저를 찾겠다고 하면, 저를 찾게끔 제 주민등록 번호나 인적 사항을 정확하게 기재를 해놓고 왔어요.(친생부모 1)

살아있다는 것만 알아도 좋겠지만, 전혀 몰랐고. 전혀 연락도 안 해주고. 제가 볼 때는 그냥 끝인 것 같아요. 제가 느낄 때는 아이가 어떤 부모를 만나서 그 아이한 테 이거를 이제 정리를 딱 해서 아이를 보내고 나면, 그 일은 종결인 것 같아요. 더 이상의 그 사후 문제가 없고 그냥 종결. 나중에 애들이 와서 찾거나 할 때 다시 시작인 것뿐이에요. 그래서 사후처리가 없다는 거지. (중략) 아이의 짐을 쌀 때 사 진이라든지 이런 걸 넣지 말아야 하더라고요. 저는 넣고 싶었는데 사진이라든지. 아이하테 이렇게 중요한 거 넣고 싶었는데, 그런 거 다 넣지 말래요. 그냥 "옷 같은 것도 보내지 말고, 그냥 조그만 소지품은 전혀 주지 마라" 그러더라고. (중략) 제가 사진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했으니까 저는 아이가 엄마 생각이 날 때 보라고 사진을 넣고 싶었는데 그런 사진은 안 된다고. (친생부모 2)

■ 해외입양이 친생부·친생모의 동의도 없이 이루어짐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자녀의 해외입양 결정이 친생부모의 부모나 친지 또는 아 동양육시설 관계자에 의해 친생부모의 의사도 확인하지 않은 채 내려진 경우도 있었다. 해외입양 절차의 계시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친생부모의 동의 절차라는 점을 고려 할 때, 이러한 친생부모의 동의를 거치지 않거나 친생부모의 의사에 반하여 이루어진 경우에는 해외입양의 법적 효력에도 심각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 조부모나 친척의 동의만으로 이루어진 입양결정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자신의 친정에 잠시 키워달라고 맡겨둔 자녀를 자신의 동 의 없이 입양기관에 의뢰해서 해외로 입양 보낸 경우도 있었다. 이렇게 해외로 입양을 보낸 뒤에도 자녀를 찾는 친생부모에게 국내 가정으로 입양 보냈다고 해서 집이 어딘지 를 알려주면 사정해서 되찾아 오겠다고 했지만, 결국 알려주지 않아서 포기했는데, 나중 에서야 해외입양 간 것을 알게 되었다.

집에서 그냥 맨손으로 아이들 둘을 데리고 새벽에 나왔어요. 갈 데가 없어서 저희 친정 OO한테 갔고 친정 OO가 아이 둘을 봐줄 수는 없는데 딸은 봐주겠다. 작은 아이는 아들이니까 돈을 그 집에 보내놓고, 니가 돈을 벌어서 작은 방이라도 하나 마련할 수 있을 때 그러면은 아이를 데려가라. (중략) 그런데 친정 식구에게 감전 사고가 났다고 하더라고요. 병원에서 지금 치료 중이고 거의 뭐 생명이 위독하다 그래서 다급한 마음에 아이를 데리러 갔어요. 어떻게 됐든 간에 그냥 그 상황이 OO한테 아이를 맡겨놓는 게 아닌 것 같아서 아이를 데리러 시골로 내려갔는데 갔 더니 아이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아이는 어디에 있느냐? 누가 보고 있느냐?" 했더니, 그냥 다짜고짜 막 OO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아이를 자기가 맡아서 봐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서 제가 OO하테 아이를 맡겨놓고 온 지 며칠 되지도 않아서 아이를 바로 그냥 다른 데다가 입양을 보냈더라고요. 저한테만 얘기를 안 하고 그렇게 그냥 두 달이 지나버렸고, 그때 가 서 찾으려고 했는데,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그 아이를 데려간 집을 알려주지도 않 고. 또 식구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태에서 거기 간병을 해야 되는데, 그 00를

붙들고 아이를 찾아내라고 계속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중략) 그래서 그냥 그렇게 헤어졌습니다. (친생부모 1)

- 아동양육시설의 조작으로 이루어진 입양결정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이혼 후 여러 사정에 의해 양쪽 조부모가 아이를 돌보다가 친생모가 자신이 직원으로 일했었던 양육시설에 남매를 잠시 돌봐 달라고 맡긴 경우도 있는데, 친생부는 자녀가 시설에 맡겨진 사실을 아예 인지하지도 못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런데 그 양육시설에서는 친생모에게도 알리지 않은 채 남매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 해외입양 결정 과정에서 자신들에게는 부모가 있는데 왜 해외로 입양가야 하느냐고 거부하는 남매에게는 '부모님이 입양기관에 가서 해외입양에 동의하셨으니 가야 한다.'라고 하면서 원치 않는 해외입양을 강제하였다. 또한 남매가 해외로 입양 간 사실을 출국 후에야 알고 항의하는 친생모에게는 '아이들이 해외로 입양가고 싶어 해서 보냈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양육시설에서 남매와 친생부모에게 한 말이 거짓이었다는 사실은 성인이 된 딸이 친생부모와 재회한 후에야 알게 된 것이다.

외가에 있었는데 아이들 엄마가 애들을 데리고 나가서 무슨 모텔 같은데 좀 있다가, 데리고 못 있으니까, 어느 날 무슨 이유인지 예전에 일하던 보육원에 맡기고, "데리러 오겠다. 그리고 애들 잘 부탁한다." 이러고 가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연락했다네요. 그런데 아이들 엄마가 모르는 상태에서 애들한테는 "부모님이 친권포기했다." 이렇게 하고 보냈다고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시설에서도 보낼 생각이 없었다가 이제 프랑스에 '그런 나이 많은 애 원한다'라는 가정이 생기고 나서갑자기 결정된 거로. 그러고 나서 한 삼 개월 정도 후에 애들 엄마가 연락했는데 "내 애들이 갔다니 어떻게 된 거냐"했더니 "애들이 원해서 보냈다." 또 그렇게 얘기를 했다네요. 애들엄마 한테는. (친생부모 4)

- 친생부모가 작성하지 않은 입양동의서에 의한 입양결정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 중에는 재회 후 자녀의 해외입양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자기 것과는 다른 글씨체로 쓰인 입양동의서를 발견하고 문제를 제 기한 경우도 있다. 이는 해외입양 서류 중에는 위조되거나 거짓으로 만들어진 서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유추해 볼 수 있게 한다.

제가 입양동의서를 봤는데 제가 첫마디가 그랬을 거예요. "어, 이거 내 글씨체 아 닌데?"제 글씨체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저는 그거에 또 한 번 놀라서 그때 OO 가서 엄청 싸웠어요. 이게 내 글씨 아니다. 근데 주소, 주민등록번호까지 다 정확 해요. (중략) 저는 쓴 기억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내, 내 글씨체를 아 마 써줬을 거예요. "이게 내 글씨체냐?" "아니다". 그렇게 해서. (글씨를 써보이며) 저는 지금 이런 식으로 글씨를 쓰잖아요. 근데 전혀 뭐 한 중학생 정도의 수준의 글씨였어요. (친생부모 3)

③ 자녀와 헤어진 이후부터 재회 이전까지

■ 입양결정 이후 친생부모로 살아가는 고통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 양육을 제대로 할 수 없는 경제적 이유나 불안정한 상황에서 자녀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고 곧바로 자녀를 떠나보내는 경험을 했거 나, 자신이 인지하지도 못하고 동의하지도 하는 상황에서 자녀가 해외로 입양 보내진 것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부모로서 자녀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과 함께 어딘지도 알지 못하는 곳으로 자녀를 떠나보낸 상황에서 감당하기 힘든 슬픔과 고통의 시간을 겪게 하였다.

- 끊임없이 이어지는 후회와 걱정, 자책

해외입양으로 자녀와 헤어진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기 결정을 끊임없이 후회하고 자책 하면서 지냈다. 친생부모는 아무리 사정이 어려웠어도 아이를 보내지 말고 다른 방법을 찾아봤어야 했다며, 아이에게 제대로 설명도 않고 그냥 두고 나온 것이 아이에게 얼마나 상처가 되었지 염려하며, 또 당시에 경황이 없는 가운데 성급한 판단을 한 것이었다고 자신의 결정을 후회하였다. 그렇게 아이를 아무도 모르는 이국으로 보냈다는 후회는 아 이 소식을 전혀 들을 길이 없는 막막함 때문에 친생부모를 더욱더 힘들게 했다. 해외입

양 보낸 후 자녀의 생사조차 알지 못한 상태에서 아이가 잘 지내는지 걱정하면서 견디어 야만 하는 상황에서도 친생부모는 공식적인 상담을 받거나. 주위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 린 위로를 받을 수 없어 혼자서 모든 고통을 남모르게 감당하며 살아가야만 했다.

아이를 이제 이만 이만해서 이제 입양을 보내려고 한다고 했더니 "거기다 두고 가 세요." 물건 두고 가라는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했고, 어쨌든 그 아이를 거기다 두 고 나와서 전화를 다시 했는데, 굉장히 멀더라고요. 우는 소리가, 굉장히 크게 울 더라고요. 아마 그 아이는 그거를 기억할 거예요. (중략) 그 아이한테 그런 얘기를 전혀 안 했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더 충격을 받았을 거고, 그거를 분명히 그 아이 가 기억할 거예요. (중략) 후회는 많이 했죠. 후회 많이 하고, 뭐 죄책감도 많이 느 껴서 사람들하고 거의 뭐, 그러니까 제 생활 자체가 아이가 있었다는 거를 숨기고 살았어요. 그냥 그때부터 사회생활을 하면서는. 그래서 저는 항상 사람들한테 거짓 말을 하고 살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인관계가 편안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냥 성격 자체의 성격 자체도 좀 이상해지고. 왜냐면 친구를 사귈 수도 없고 모든 게 다 거짓말로 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런 식 으로 그냥 그렇게 저렇게 지내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냥 별 희망도 없고, 비전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중략) 그냥 그냥 혼자서 울어야지.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혼자서 울고 살았어요. 그냥 그러고. 혼자서 울고. 평생을 울고 살았어요. 평생을 울고 살았어요. 어릴 때는 어려서 울었고, 커서는 커서 울었고. 뭐 어쨌든 평생 울고 살았어요. (친생부모 1)

나는 기르고 싶었지. 내 형편이 안 닿아서 그렇지. 이게 사내애만 있는 게 아니고 딸도 있어야 되고, 실질적으로 보내놓고 집 식구하고 하는 말이 우리는 금덩어리 를 보냈다. 금덩어리를 남의 집을 보낸 기다. 이게 있어야 되는데, 이 딸이 있어야 되는데. (친생부모 5)

이제 지나간 얘기니까 그러지. 나는 항상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 하듯이 가슴에다 묻혀 놓고 누구한테 말도 못 하고 그렇게 살아왔지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아! 그러니까 자식 죽으면 가슴에 묻고, 부모가 죽으면 산에다 묻고, 그 런단 말이 딱 맞더라고요. 지금 그 아들놈이 얼마나 나를 오해를 할까? 딸이 남동 생에게 오해 없도록 얘기를 잘했다고는 그러더라고요. (친생부모 4)

제일 가까운 사람은 부모님이 돌보든지 아니면 형제가 돌봐야 되는데. 지금 같은 시대는 물론 지금도 보내는 엄마들한테는 제가 이런 말을 하면 뭐라고 할지 모르지 만, 지금은 여자들이 돈 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중략) 지금 같은 시대는 돈이라도 벌지만, 그 당시에는 여자가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돈 벌 수 있는 게. 그렇다고 술집 같은 데 일하면서, 내가 너희들 때문에. 그래도 애들이 잘못되면? 그게 애들을 위해서 사는 것일까? 저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지금에 와서는 그러니 까 제가 후회되는 게 왜? 내가 왜 술집 가서 일하면 되지. 그랬으면 안 보냈을 건데, 이런 게 후회된다 이거야. 내 자존심을 너무 내세웠나? 이런 게 후회된다는 거야. 보내고 나서 그때부터는 이제 막 그립고, 보고 싶고, 어떻게 사는지, 뭐 밥을 먹고 있는지, 학교는 다니는지 이제 온갖 그걸로 걱정이. 이제 그게 맘이 쓰이는 거지. (중략) 후회요? 후회하죠. 제가 돌이킬 수 있다. 그러면 내가 모든 거를 다 포기하고 라도 다시 그 시절로 가고 싶어요. 우리 애들 있었던 때로 가고 싶어요. 내가, 내가, 내 목숨을 내놓으라 하더라도 나는 내가 우리 아이들과 다시 그 시절로 간다면 나는 그것을 더 하고 싶어요. 저는 너무나 많이 후회했고. 너무나 아들을 그리워했고. 저는 하루도 잊은 날이 없어요. 하루도. (중략) 저는 내가 행복하면 안 되지. 우리 아이들이 내 행복을 다 줘야 되는데, 저는 기도해요. 저는 교회 가서 기도도 못 해 요. 뭔, 뭐가 저를 용서해 주세요. 소리를 못 해요. 그러니까는 안 가고. 마음속으로 항상 기도해요. 엄마 아빠 영혼이 살아있다면, 우리 애들 있는 데 가서 어루만져. 주라고. 나 대신. 나 대신 어루만져, 만져 주고. 게네들이 아프고 슬퍼하는 거는 다 내가 받을 테니까. 그제 그냥 우리 애들 잘 컸으면 좋겠다. 그냥 그렇게만 항상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랬었죠. 그냥 그렇게 살았어요. (친생부모 2)

- 분리의 슬픔과 고통, 고립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자녀와 분리된 이후 예상치 못한 심리적 충격 을 받았다. 또한 자녀와의 분리에 따른 공허함, 알코올 중독, 자살 충동, 자살 시도 등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상당한 수준의 정서적, 심리적 어려움에 직면하였다. 이러한 심리 적, 정서적 고통을 겪으면서도 친생부모 대부분은 자신이 자녀를 입양 보냈다는 사실을 주위에 알리지 조차 못한 채 혼자 슬픔과 고통을 감당해야 했다. 이러한 자녀와 헤어진 이후의 고통은 시간이 감에 따라 점차 줄어들었지만, 어떠한 외부 도움도 없이, 누구에 게도 알리지 못하고 힘든 상황을 혼자 감내하는 일상을 살아내어야 하였다.

갑자기 여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부산 있는데. 11시. 김포서 11시 비행로 프랑스 로 간다고 하니까. 뭔 소리 하냐 말이야. 못 가게 잡아라 말이야. 나 올라 갈 테니 늦게라도. 그러니까 뭐 11시니까 10시경에 연락 받아가지고 거기 갈 수가 없죠. 그러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난 그냥 그길로 이제 술이 폭주가 되는 거야 그냥. (중략) 내가 해외입양 가는 걸 알았으면 죽어도 못 보내지요. 같이 빌어먹었 더라도. (중략) 내가 그냥 술로 한 3년 그냥 살았다니까요. (중략) 말도 못 하죠. 그냥 술로 살았어, 그냥. 막 하열을 하니까 후배들이 일제(日製) 청심환 좋다고 갖 다 주고 그래도 그냥 그 이튿날 날 새면 술을 또 막 먹는 거예요. 그냥 괴로우니까. 어따 그냥 하소연할 때도 없고. (중략) 말을 못 하니 괴로우니까, 그냥 술로 살았 지. (친생부모 4)

제 심정이요? 그때 알았을 때 그 청천벽력 같았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나 는 절대 이런 삶을 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이가 그 어쨌든 처음에 저한테 자식이 없어서 고민을 하는 그 한국 사회에서, 한국 가정에서 입양, 그 아 이를 보고 너무 탐을 내서 (중략) "자기가 잘 키우겠다."라고 "자기한테 보내주면 잘 키우겠다." 자기가 낳은 아이로, 그러니까 자기가 낳지 않는 게 아니라 "자기가 낳은 아이로 그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는 데로 다시 이사를 가서 그렇게 키우겠다." 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너무너무 아이를 보고 우리 딸을 보고 너무너무 원해 서 그래서 자기가 그렇게 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략) 그런데 나중에 해외 입양을 보냈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평생 자신이 입양인이고 부모한테 버려졌다는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너무 화가 났고 물론 한국에서 남의 부모 밑에서 크다가 나중에 알게 돼서 저를 찾게 되더라도 이래저래 저래 죄 인은 마찬가지이기는 하지만, 해외입양을 보냈다는 거는 저한테는 그때 당시에는 좀 진짜 많이 안 좋았어요. 많이 안 좋았는데. 그래서 더 인생을, 제 인생을 좀 더 더 자포자기하게 됐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그냥 뭐 어찌 됐든 간에 나는 그런 사람이 돼버렸으니까" 하고 그냥 자포자기하 고 많이 살았어요. (친생부모 1)

아이들 보내고 나서는 "이제 내가 할 일 다 끝냈구나." 뭐 그리고 애기아빠까지 끝내고 나니까 이제는 뭐, 이제는 이게 막 조급했던 마음이 없어지잖아요. 근데 저 는 애들 보내놓고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전철을 타고 가야 되는 집이 00동이면 OO동으로 가야 되는데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어느 날 이렇게 가만히 보고, 이렇게 보면 반대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신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딱 보면 그리고 제가 가슴이 뚫렸다는 거? 가슴에 바람이 지나간다는 거, 저는 그걸 느꼈어요. 겨울에 너무 가슴이 시린 거야. (가슴에 주먹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이 만큼 떨어져 가지고, 여기 바람이 가슴을 지나가는 것 같았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제가 너무 가슴이 추운 거야. 그렇게 많이 외로웠던 거야. 그러니까 넋이 나갔어 요. 내가 갈 길을 몰라요. 무조건 걸어가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걸어갔던 것 같거 든요. 그래요. 그때 그러고 나서 그냥 "나도 이제 인생은 내가 할 일 다 했으니까, 그러자." 그래서 수면제를 먹었지만, 수면제가 죽지는 않더라고요. 술을 먹었어야 죽나? 술을 같이? 저는 술을 못 마시거든요. 술을 안 먹어서. 그러니까 살았는지 잠잤는지 2, 3일을 자고 나서 깼는데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3일을 잤대요. 그러니까 옆집 새댁이 막. 그 주인하고 막 이렇게 했고, 깨고 나서 미안하 다고. 살아있는 게 미안한 건지, 내가 뭔지 모르지만 미안하다고, 죄송하다고 그랬 죠. (친생부모 2)

- 입양기관과 병원에서 입양 동의 철회 방법을 알려주지 않거나 차단함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자녀를 보내고 난 뒤에 겪은 심리적 고통과 죄책감, 후회, 자녀 에 대한 걱정은 상상 이상으로 컸다. 이런 상황에서 친생부모는 자연히 자신의 입양결정 을 번복하고 자녀의 해외입양을 취소할 방법을 찾고자 입양기관이나 자신이 자녀를 입 양 보냈던 병원을 찾아 문의하곤 하였다. 그러나 입양기관에서는 친생부모에게 해외입 양 결정 취소 권한이 있음을 설명하지 않았고, 병원에서는 어떤 입양기관에서 자녀를 데리고 갔는지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해외입양 결정은 한번 내려지면 '번복할 수 없다' 라고 사실과 다른 말을 했고, 자녀를 포기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 아이가 분명히 국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미 해외로 입양되어 떠났으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함으로써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입양취소 요구를 거절하거나 어렵게 했다.

부모님은 이 친구가 임신했던 걸 다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우 리가 얘기할 때까지 내버려 둔 거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출산을 하고, 이제 애 는 놓고 저희끼리 내려오니 물어보더라고요. 어떻게 된 거냐고. 이만저만해서 이렇 게 했다. 그랬더니 (중략) 저희 아버지도 "웬만하면 데려와서 키워라." 어머니도 "키워라. 네 자식이지 않냐?" 그래서 제가 그쪽에다 그렇게 해서 의사를 밝힌 거 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제가 능력이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 도움이 절실했거든 요. 부모님 도움이 없으면 애하고 도저히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중략) 제가 내려와서 한 일주일도 안 돼서 연락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제가 데리고 가겠습 니다." 의사를 밝힌 게. (중략) 이제 전화를 하고 "내가 데리고 가겠습니다." 했지 만 실질적으로 현실에 부딪혀 있는 벽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시간도 더 끌었어요. 그 상황에 뭔 일이 터져서 제가 타이밍을 놓쳤어요. (중략) "입양기 관인 OO에 전화를 해볼 생각은 없었냐?" 하는데 그 이름은 제 딸을 찾고 나서 알 았어요. 거기가 OO이라는 걸. 그러니까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사회복지사를 병원 에서 만났고, 그 다음에 병원에서 사회복지사 이름만 알고, 그 다음에 퇴원을 해서 이 친구(친생모)가 전화 통화해서 내가 분명 다시 찾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밝혔는 데 그 후로는 연락이 이제 복잡한 과정에서 이제 끊기긴 했어요. 근데 저는 그 사 회복지사 연락처를 몰라요. 그러니까 찾아야 되는데, 찾아야 되는데, 연락처가 없 어. (중략)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러고 나서 고아원 가서 물어보고, 여기 물어보고, 저쪽 가서 물어보고. (중략) 여기 근처 00유아원에 아는 사람이 있었으니까. 그 당시에. 그때 당시에 아는 사람한테 부탁을 해놓고 연락이 오면 가고, 가고, 가고 계속 그랬던 거죠. 심지어 저는 섬까지 갔다 왔어요. (친생부모 3)

- 입양자녀를 찾을 자격이 없는 친생부모: 끝없는 기다림이란 형벌

해외입양 당시는 물론 지금도 친생부모에게는 입양자녀를 찾을 권리나 자격이 없으며, 자녀가 친생부모를 찾고자 할 때만 만날 수 있다. 어떤 친생부모는 아동의 입양을 결정할 당시 해외로 입양된 자녀가 성인이 되면 찾아올 거라는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자녀가 찾아올 날만 기다렸는데 막상 찾아오지 않자 우울을 겪었다. 또한 오랜 시간이지나서야 자기 자녀들이 해외로 입양 갔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해외입양인 가족 찾기 방송을 아침마다 챙겨보고 기다림의 나날을 견뎌야 했던 친생부모도 있었다. 친생

부모는 자녀와의 재회는 아니더라도 자녀가 잘 지내고 있는지 소식이라도 들을 수 있기 를 바라며, 연락처가 바뀔 때마다 입양기관을 방문해 자기 정보를 수정하면서 생사조차 알 수 없는 자식을 마냥 기다리는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애들이 찾아올 거라는 생각은 전혀 의심하지 않았으니까. 아이는 분명히 올 것이 고 엄마를 잊지 않을 거다. 엄마는 널 기다릴 거라고 그랬으니까 "엄마는 널 기다 릴 거야." 그랬거든요. (중략) 근데 이제 2005년도에 우리 애가, 그 당시에는 나이 가 이제 서른이 가까워지는데도 안 찾아오니까, 저는 10년 뒤면 찾아올 줄 알았어. 요 진짜로. 열아홉이면 찾아오지, 온다 하니까. 근데 안 찾아와. 아무리 기다려도 안 찾아와. 그래서 2002년도부터 제가 아팠어요. (중략) 이제 의욕이 없어지는 거 야. 만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는데. "아 이제는 나를 잊던지, 아니면 죽었든지 했겠다."하니까 제가 이제 아프더라고요 이제. 막 정신없이 살아왔는데, 그 기대 감이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아프고 막, 굉장히 수술도 몇 번 했어요. 그러니까 우 울증까지 오더라고요. (중략) 큰 애는 엄마를 너무 찾고, 너무 그리워, 자기 엄마를 그리워했고, 한국 음식이 그립고. 근데 이제 19살 때 찾으려고 했었대요. 엄마를. 근데 작은놈하고 싸웠대요. 작은놈이 형을 두드려 팼대요. "근데 왜?" 했더니 양부 모한테 의리를 버린다고. "너 성인 됐다고 네 엄마 바로 찾냐고?" 그러면 여기 계 신 부모한테는 너무 못하는 거라고 형한테 막 그랬대. 그래가지고 또 10년은 더 기다렸대. 19살 때만 찾았으면 얼마나 좋아. 작은놈이 의리라는 게 참 좋긴 하지만 "니가 안 찾으면 되지, 네 형까지 그냥 못 찾게 하냐구?" (중략) 아들이 OO로 연락 했을 때 그 복지사가,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들이 찾 는데 연락처를 줘도 되겠냐고. "아 당연히 주시라."고 너무 감사하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화 한 통화로 찾았어요. 아이를 저는 만나겠다는 의지를 남겼고. 제 주민등록번호를 남겼으니까. 그 전화번호를 제가 바꿨을 때 알려드렸거든요. 전화 번호가 바뀌었을 때는 늘 알려줬어요. (친생부모 2)

15년, 16년 정도 됐을 적에, 해외입양이니 이런 걸 이제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해외에도 갈 수가 있겠구나. 국내에만 있는 게 아니고. 해외라는 것은 미국도 있고 유럽의 프랑스, 네덜란드, 스위스, 이 각처에 우리 한국 애들이 가 있다는 거를 내 방송 뉴스 듣고. 그때 제일 내가 찾는다고 뉴스를 본 것은 KBS에서 '이산가족 찾 기.' 그 후에 프로가 이어진 것이 해외입양아들이 나와서 인터뷰하고, 저기 화상 통화를 하고 이러더라고. 그럴 적에 나는 KBS에다가 전화를 해가지고 오늘 나온 애가 우리 집 애 같다. 그 애를, 딸을 둘이나 보냈는데 이게 국내에 있는지, 해외에 갔는지 확실히 모르지만, 지금 방송에 이 프로가 나오니까. 애들이, 딸들 아들들이 많이 나오니까. 우리 애도 그게 안 나오겠나. 그래서 그 아침으로 9시 프로에 열심 히 봤지. 보면 "이 애는 아닙니다." 하고 답도 있고 어떤 데는 편지도 보내고 이랬 어요. 찾는다고. 그래서 그때까지도 확실히 해외로 갔는지, 국내에 있는지도 모르 면서 찾을 거라고는, 조그마한 구멍만 있으면 그걸 쳐다보고 의지를 하는 거야. "지금. 거기서 아이가 나타나는가." 싶어서 그게 부모의 마음이겠지. (중략) 애 엄 마가 더 힘이 들었지. 나는 낮으로 일 다니고 오고 저녁에 피곤하면 잠자기 바쁘지 만. 애를 한 번씩 이야기하는 게 "그 애가 그렇게나 많이 약하고 했는데 지금 살았 을까?" 하고 애들을 여러 해 동안에 자꾸 생각을 하다가. 결국 저 엄마도 지금 연 도로 따져보니까 한 20년 전에 죽었어. 결국은 찾아보지도 못하고, 소식도 못 들어 보고. (친생부모 5)

엄마가 보내거나, 이렇게 우리가 입양기관에서 아이를 데려와서 어쩔 수 없는 상 황에서 보낼 수밖에 없을 때가 있잖아요. 뭐 부모가 돌아가셨다든지 뭐 그러면은 적어도 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지 그런 거 같아. 책임이 있으면 친분관계잖 아요. 이게 서로가 입양한 사람하고, 복지사하고 이렇게 서로가 잘 지내는가? 애들 이 잘 크는가? 이런 것도 한 번씩은, 우리 한국 같은 데서도 그걸 했어야지. 외국으 로 간 사람들은 우리는 전혀 못 찾잖아요. 외국으로 입양 간 애들은. 그러면 한국 복지사, 한국 복지사들이 어디로 갔는지는 알잖아요. 그러면 사진이라든지 이런 걸 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시간이 나서 오시면 사진을 보여줄 수 있다든 지, 어떤 그런 거는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 너무 가면은 그쪽에서 연락 올 때까지 아무것도 몰라요. (친생부모 2)

그 혹시 제 연락처가 제 신상 정보가 제대로 돼 있는지 그런 걸 보기 위해서, 혹시 라도 그 아이가 나중에, 혹시라도 절 찾으면 정확하게 빨리 찾으라고, 고생하지 말 고 빨리 찾으라고. 제 신상 정보는 제대로 남겨져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하기 위해서 갔는데, 프랑스로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2012년도에 그러고 나서 또 그 지인으로부터 몇 번을 갔는데, 혹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또 추가로 연락이 온 게 있는지 갔는데 더 이상 추가 연락 온 거는 없어요. (친생부모 1)

④ 재회에서부터 관계의 지속까지

■ 원활하지 않은 친생부모-자녀 관계 확인 과정

친생부모는 오랫동안 입양자녀를 찾고 기다려왔다. 하지만 정작 입양자녀가 친생부모 를 찾고자 입양기관을 방문한 경우에도 원활하게 친생부모 찾기가 이루어 지지는 못하 였다. 이럴 때도 친생부모가 자기 기록을 정확하게 남기고 입양기관에 수시로 변동 상황 을 고지해 정보를 업데이트해 놓았거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가 이미 가족으로 기록된 적이 있었을 때에만 정보공개 청구 직후 바로 상봉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친생부모에게 재회의사를 확인하는 연락의 방식이 지나치게 간소해 친생부모가 지나쳐 버리거나, 친 생부모가 남긴 자녀의 이름과 다른 이름으로 연락해 와서 상봉이 되지 못할뻔한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친생부모가 연락처를 남겨두었더라도 입양기관의 착오로 연락하지 않아 연락이 되지 않았다가 다행히 DNA를 통한 가족찾기로 연락이 된 경우도 있었다.

경찰이 왔다고 그래요. 반장이. 경찰이 내가 뭔 죄라고 죄지은 것이 없는데 왜 경 찰이 와야 말이야. 재수 없이. 나 그 애들 보면 아주 싫은데. 그래서 오면은 내 전 화번호를 대주란 말이야. 내가 파출소가 멀길래 거기까지 나 못 간다 말이야. 그랬 더니 "그런 게 아니고 뭐 애들이 찾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그러더래요. 그 러더니 경찰이 전화 왔어요. 연결해 줘도 되겠냐고 그때 6일인가? 7일인가? 4월, 하여튼 그 정도 10일 거의 이짝저짝 될 겁니다. "연결해주란 말이야." 그랬더니 OO가 전화가 오더라고. 가족관계 증명서를 떼어보니까. 내가 나오니까, OO가 이 제 나를 찾은 거야. (친생부모 4)

OO에서 편지가 일반 편지봉투로 봤어요. 하얀 편지봉투. (중략) 솔직히 전화번호 만 보여서 "어, 이것도 장난 아닌가? 보이스피싱 아닌가?" 그래서 전화를 해본 거 예요. 전화를 해봤는데 이제 여기에서 저는 입양 보낸 사실이 있으니까. 명백하게 있으니까. 그거는 인정하지만 "나는 해외 입양 보낸 적이 없으니까, 아니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름 또한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 하고 제가 그거는 정 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그쪽에서 만약에 O나영이라는 이름을 얘기했으면, 저는 노(no)라고 했을 거예요. "왜냐? O은정이 내가 이 지어준 이름이니까. 성까지 바뀐 사람이 내 딸이라고?" 안 믿었었고 장난하는 줄 알았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이왔고, 사진이 왔을 때 보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와이프한테는 못 보여줬어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얘가 내 딸 맞는 거 맞냐 했더니 "네 얼굴이 있다. 어렸을 때." 그러냐. 그러면 일단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그 친구한테 먼저 편지가 왔어요. (친생부모 3)

김OO이란 중앙입양원의 담당이 미국에다가 인터넷에 올렸대요. OO도 아버지가 쌍둥이 딸을 찾는다고 올렸는데. 그게 2, 3개월이 됐는가? 딸이 하나 찾아온 거야. 미국에서. 미국에서 딸이 하나가 찾아왔는데 (중략) 파출소로 내가 찾아갔지. 찾아 가니까 파출소에는 그 직원들도 많이 있었던 데다가 시청에서 통역하는 사람, 또 뭐 사진기자인지 누구하고 몇몇이 왔더라고. (중략) 그것이 딸인지 아닌지 유전자를 검사를 해봐야 아는 거라. (중략) 서울에 유전자 검사를 두 군데를 한 거야. 그게 한 4, 5일 걸렸는가.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유전자 검사가 친딸이면 뭐 90 몇이나 100이 나와야 되는데 오십몇이 나와. (중략) 두 번째로 애한테 유전자 채취하고 내 것 또 채취하고 OO도에서도 채취를 완료해가지고 이걸 가지고 미국으로 들어간 거야. (중략) 미국에 입양아들을 하고 이래가지고 뒤적거린 거라. 그래서 28일인가 30일도 안 돼서 찾았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유전자가 딱 맞대. (친생부모 5)

■ 재회 이후 관계를 지속해 나가기까지

해외입양인 친생부모는 자녀와 상봉하면서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가족찾기 과정을 거쳐 자녀를 상봉한 것에 기쁨이 컸다. 하지만 재회의 자리에서는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해외입양인 자녀가 한국 문화에만 익숙한 친생부모 사이의 문화적, 언어적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한편 친생부모는 자녀를 입양보낸 이후 다른 배우자와 새롭게 가정을 이룬 경우에 입양자녀의 존재를 알려야할지를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만약 입양자녀를 알릴 경우 배우자와 가족이 자신을 어떻게 바라볼지, 또 입양자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 줄지를 걱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입양자녀와 재회는 오랜 기다림의 끝으로 여겨지지만, 실제로 많은 친생부모는 재회란 서로의 지난 시간 동안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함께 나누고 조금씩 이해해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에 가깝다고 했다.

- 언어 소통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서로 오랜 시간 보지 못했어도 사진을 통해서든 직접 만 남을 통해서든 서로를 보는 순간 알아볼 수 있었다. 이후 재회의 과정에서 친생부모는 통역을 통해 자녀와 입양 과정이나 이후의 자신의 삶, 현재의 감정에 대해 전달하는 것 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았다. 통역이 제공되는 경우라도 자신의 의사나 감정이 충분 히 전해지지 못한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았고, 해외입양에 대한 이해가 있으며 통역까지 정확히 해줄 수 있는 좋은 통역사를 찾거나 만나는 것 또한 쉽지 않았다. 친생부모는 처음 연락이 되고 난 이후에는 서로 SNS 등을 통해 연락을 주고받으며 입양자녀는 한국 어를 공부하고, 친생부모는 영어를 공부해가며 재회 이후 의사소통을 위해 노력하였다. 하지만, 노령의 친생부모가 영어를 익히기에는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고, 재회의 자리에 서 나눌 이야기를 전달할 만큼의 한국어를 구사하는 해외입양인 또한 거의 없다. 최근에 는 번역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의 도움을 받아 각각의 언어로 번역해서 의사소통하 는 것이 가능하지만, 서로가 가진 여러 질문이나 감정을 번역 기기의 번역기능으로 주고 받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대부분 친생부모는 재회 이후에도 서로에 관해 알고 싶은 것을 다 묻고 답하지 못한 채 묵혀두고 지낼 수밖에 없었다.

내가 영어가 너무 부족하고 하다 보니까 영어책 두 권을 샀어. 처음에는 한 권을 사서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머리에 단어가 안 들어가. 이건 말 자체가 거의 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단어라도 암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이 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 그래서 또 책방 가서 책을 하나 샀어. 이것도 보다가, 보다가 이제 안 봐. 왜? 너무 머리에 단어가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남은 단어가 하나밖에 없어 솔트 (Salt). 소금. 그거 단어 하나만 이 머리에 들어가 있지. 그다음에는 여기로 들어가 면 여기로 싹 빠져나가. 그래서 그게 걱정이라. 걱정이라서 지금은 어떤 게 있냐면 카톡은 한글로 내가 다 치면, 저쪽에 가서는 영어로 번역이 되는 모양이야. (친생 부모 5)

그때 기억은 첫 순간에, 그냥 그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저 아이가 저기 서 있고 내가 나가는데 그냥 첫 순간에 딱 봤을 때 "아 저 아이가 내 딸이구나, 아 저 아이 가 내 딸 맞구나." (중략) 바로 알아보고 첫 순간에 딱 보면서 드는 생각은 그 아이 한테 첫 마디 딱 하는 게 "너는 키가 작지 않아서 좋다. 다행이다." (중략) "카톡을 설치를 해라." 내가 이제 카톡을 이제 앱을 내려받으라고 자꾸 얘기해서 톡을 다운 받아서 이제 카톡으로 이제 하다가 (중략) 파파고 이후로 해서 이제 좀 연락을 하 다가, 최근 한 2년 전부터는 한국어 공부를 제법 했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거는 저도 이제 파파고 통역을 하고 해서 한글로 이제 저한테 보내요. 문자를. (친생부 모 1)

아들하고 나하고 뭘 해줬다 하면은 몇 사람만, 딱 다섯 사람만 전담했으면 좋겠어요. 전담을 해주면 좋지만, 어제까지 얘기가 진행됐다가 오늘은 이 사람, 내일은 또 저 사람으로 바뀌면서 항상 초보처럼 거기서만 맴돌아요. 우리의 이야기가 구구절절하잖아요. 말로서 이걸 표현을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보고 싶다. 사랑한다. 너를 너무너무 그리워하고, 너무 보고 싶었고." 막 그랬을 거 아니야. 우리 엄마들은. (중략) 이게 참 저는 통역을 제가 많이는 안 받아봤는데, 통역을 하는 것도, 제가 통역하는 거를 이제 김〇〇 교수님이 통역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우리 애들하고 한 게 아니라 입양한 애들하고 같이 있을 때. 너무너무 잘하시는 거야. "통역은이렇게 해야 해." 이걸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통역하는 사람들은 얘가어쩌고저쩌고 뭐가 어땠는데, 뭐 애들하고 이렇게 됐어. 이거를 그대로 기억을 해서 그 상대한테 말하는 걸 못 했던 거죠. 대신 간단하게 집어서 통역을 하는 거지. (중략) 얘기를 할 때 "엄마는 너무 그리웠어." 이걸 좀 간절하게 통역해주길 원하는데 표현을 그게 너무 간결하게 해버리니까. (친생부모 2)

- 또 하나의 과제: 현재 가족에게 입양 자녀의 존재 알리기

해외입양 친생모나 친생부는 대부분 자녀를 입양보낸 뒤 다른 배우자와 결혼해서 가족을 이루고 산다. 이러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인 자녀와 재회한다는 사실을 현재 배우자와 가족에게 알리는 것은 친생부모가 공통으로 안고 있는 힘든 과제이자 고민거리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 중 자녀의 친모와 결혼해서 살거나, 혼자 살고 있는 친생부

모의 경우는 해외입양인 자녀의 존재를 알릴 필요가 없었지만, 나머지는 모두 배우자에 게 알리는 것을 선택하였다. 그리고 배우자가 자신에게 약속한 것과는 달리 친밀하게 대해 주지 않았을 때 상처받기도 하였으며, 배우자에게 입양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신이 위축되는 경험을 하기도 하였다.

애들이 아빠라고 그러니까 너 '유(You)'라고 불러라 했대요. '아빠(Father)'라 하지 말고. 당신이라고 불러라 했대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부터 우리 아들에게 거리를 두 더라고요. 2006년도에. 그래갖고 제가 꿍했지. 남이라면 그럴 수 있어요. 이해할 수 있어요. 내가 그랬어요. 너 치사한 인간이라고 "너 내 자식같이 해준다."라며 그러 더니. "사람 마음이 이렇게 간사한 거라고." 그 얘기 하더라고. (친생부모 4)

사진이 왔을 때 보고 나서 제가 부모님한테도 보여주고 와이프한테는 못 보여줬어 요. 그 당시에는. 부모님께 얘가 내 딸 맞는 거 맞냐 했더니 "네 얼굴이 있다. 어렸 을 때." 그러냐. 그러면 일단 한번 받아보겠다 해서 그 친구한테 먼저 편지가 왔어. 요. (중략) 입양에 대해서는 알고 있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저보다는 그 친구가 더 챙기려고 하고 지금 와이프가. 언제든 오면은 뭐 좋게 받아들일 수 있다고. (중략) 저희 집은 다 알아요. 전부 다. 저는 저희 와이프도 알고 제 지금 아이들도 알고. "너희들 누나가 있다." 근데 이제 아직은 어리니까 이제 누나라는 존재도 알고 있 고 근데 얘기를 하면 "어, 누나는 있어 근데 하지만 외국에 멀리 있어 정도?" (중 략) 와이프가 "음식 같은 거 보내줘라", "사진 보내줘라"하고 자기가 먼저 더 챙겨 요. (중략) 일단 집에서의 위축성. 그러니까 그전에는 얘가 정말 나타나기 전에 설 마라는 그런 게 있었잖아요. 근데 실제로 나타났어요! 나타났을 때 이제 부모님이 야 당연히 좋아하죠. 근데 저희 와이프는 아무래도 그거 갖고 이제 사람을 이제 찌르게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집안에서 내 입지가 이만큼이었으면 한동안 은 점점 줄어든다는 느낌이 들었죠. (친생부모 3)

- 서로의 차이와 트라우마를 조금씩 알아가기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오랜 기다림 끝에 이룬 자녀와의 재회를 '행복의 시작'으로 기대 했지만, 실제로는 서로 거리를 조금씩 좁혀가는 '새로운 시작'에 가까운 경험이었음을

알아가게 된다. 이들은 서로 조심스럽게 지난 아픔과 어려움을 말하고, 듣고 조금씩 알 아가는 기나긴 여정을 함께하면서 서로를 이해하고. 차이를 인정해가는 과정을 밟아가 게 된다. 실제로 입양자녀와 친생부모 모두 재회 이후 상당 기간 동안, 과거 입양 과정에 서의 트라우마를 재경험하면서 심리적 우울과 무기력, 자살충동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해외입양인들의 경우 수령국에서 입양인을 대상으로 한 심리치료가 가능하지만 국내의 친생부모는 자신의 감정을 편하게 나눌 수 있는 자리나 전문적 상담을 받을 곳도. 없이 외롭고 힘겹게 재회 이후의 트라우마를 감당하고 있었다.

저는 만났을 때 "어머 이제는 불행 끝 행복 시작이야." 얼마나 단순해요. 너무 단 순한 거야. 만나고 나니까 언어가 안 통해. 애한테 수도 없이 질문에 답을 했는데 지금도 질문을 해요. 엄마는 답을 했는데 그러니까 아이들도 이해는 되지만, 머리 로는 되겠죠. 가슴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중략) 아이들은 머리는 이해해요. 그래도 지식이라고 (가슴을 가리키며) 여기에서는 이해 못 해요. "너 그냥 내일모 레 혼자 갈래?" 이걸 이해 못 해요. "버렸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아니, 공 항이, 혼자 지네들, 맨날 지네들끼리 놀고, 지네들끼리 홍대 가고, 맨날 낄낄대고, 나하고 얘기도 안 하는데. 저가 여기서 2, 3일에 있어도 얘기할 시간도 없이, 그냥 운전만 하고 다녔는데. "내가 아프니까 너 그냥 혼자 가라." 이걸 갖고 버렸다고 이해하는 거예요. 게네들은, 게네들은 트라우마라는 게 있잖아요. 버려졌다는 그 트라우마. 그러니까 '버리다'의 '버'자만 나와도 얘네들은 기겁을 하는 거야. 우리 애도 이런 데는 기겁을 해요. (중략) 입양하는 엄마, 보낸 엄마들, 부모도 똑같이 트라우마를 갖고 살았어요. 마음의 아픈 상처를 치유할 수가 없어요. 치유를 못 하 고 살았어. 지금까지. 치유를 어떻게 해요? 약이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아이들 도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해외입양인인 우리 며느리는 한국의 엄마한테 왔다. 가면은 1년을 아팠대요. 1년을. (친생부모 2)

제일 큰 거는 일단 언어 문제 그리고 이제 얘를 재회했을 때 언어 문제도 있을 것이. 고, 그다음에 얘하고 나하고 언어 문제를 극복하면, 또 다른 문제는 습관, 여기에 대한 예의범절, 한국은 예의범절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그 나라(캐나다)는 뭐 자유 로운 방식이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부딪힐 것 같아요. 저도. 저 역시 마찬가지로,

아이가 오면 아마 별의별 소리를 다 할 거예요. 실제로 부딪히면. (친생부모 3)

중요한 거는 제가 엄마들을, 엄마나 아빠를 많이 만났지만, 아이들이 그런 말을 많 이 한다고 해요. 자기네도 트라우마 때문에 정신적인 심리 치료를 한다고. 정신적 인 상담을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엄마, 아빠들도 굉장히 받아야 돼. 제 가 볼 때는 문제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아이들을 보내놓고서 왜 그 갈등이라든가 아픔을 자기 자신하고 싸워야 하잖아요. 아무도 이해 못 해줘요. 친구라고 해도 마 음은 아플지 몰라도 이해는 안 돼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는 순간부터 자기 자신하 고 싸움이에요. 이겨내는 것도 나 자신을 내가 이겨내야 하니까. 어쨌든 자기 자신 하고 싸우는 거야. 그리워하는 거, 이 복합적인 마음이야. 그립고, 미안하고, 막 후 회하고. 뭐 이런 복합적인 감정을 자기 자신하고 자기가 그걸 다스려야 돼요. 이건 누구도 다스려줄 사람이 없어요. 이건 내가 다스려야 되는데 거기서 막 이렇게 자 포자기 심정으로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 "내가 자식을 버렸는데 내가 응?" 하고 술 먹고 그냥 되는 대로 살기도 쉬워요. 제가 이렇게 몇몇 친생부모를 보면서 우리 친 생부모도 어떤 그런 상담을 받아야 하겠다는 것을 느껴요. 왜냐하면 (입양은) 우리 친생부모에게도 저희 입양인들에게만큼 굉장히 트라우마예요. 자식을 버렸다는 거 에 대해서는 굉장히 트라우마를 갖고 사는 거죠. 어디 가서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말하고 나도 뒤통수가 따갑고. 아무튼 친할 때는 다 들어주죠. "어머, 어머," 하고 같이 울어도 줘요. 같이 울기도 하고 막 그래. "너무 안 됐어." 뭐 그런데 돌아서면 다 욕이고 다. 그 귀에 들어올 때는 "어머 쟤는 저렇게 해서 애 버렸대." 이렇게 되 는 건데. 그러니까 점점 그런 얘기는 안 하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하고 많이 하고. 어떤 아들이 우리 아이한테 그러더래요. "엄마를 만나러 한국에 왔는데 자기도 어 리지만, 우리 엄마는 더 정신 연령이 어린 것 같아."라구요. (친생부모 2)

⑤ 친생부모의 시각에서 본 해외입양과 해외입양인 인권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 친생부모에게 각자 자기 경험에 비추어 볼 때 한국 정부와 입양기관이 자신과 해외입양인 자녀의 인권을 어떻게 잘 보호하고 존중했다고 생각하는 지, 개선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해외입양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 질문 하였다.

■ 해외입양에 대한 친생부모의 생각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는 해외입양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만약 다시 자녀를 입양보낸 그때로 돌아간다면 어떤 결정을 내릴지를 묻자 모두 입양 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대답하였다. 이제는 한국 정부가 다양한 방안을 통해 우리 아이들을 원가족과 헤어지지않고 한국에서 성장하게 하고, 더는 해외로 입양 보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러한 답은 해외입양이 무조건 나쁜 면만 있는 것도 아니고, 해외입양을 간 자녀의 삶이한국에서 살았을 삶보다 못하기 때문에 나온 것이 아니었다. 다만 자신이 친생부모로서겪은 고통은 직접 겪어보지 않고는 알 수 없는 큰 고통이었고, 입양자녀가 훌륭히 자라줘서 고맙기도 하지만, 성장하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이겨 냈을지를 아는 부모의 마음에서 나온 응답으로 볼 수 있겠다.

- 해외입양 대신 미혼모가정 양육지원과 미혼 친생모 권리의 확대

한국의 해외입양은 경제적 취약성과 사회적 낙인 때문에 양육을 포기하는 미혼모와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다.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도 자신이 자녀를 입양보내야 했던 1980년대에 비하면 한국의 미혼모에 대한 인식과 관련 정책이 크게 나아졌다고 하면서 당시 미혼모로서 힘들었던 상황을 회상하였다. 또한 해외에서는 친생모가 직접 자기 자녀의 입양부모를 선택하고, 입양 보낸 후에도 계속 연락하고 만나는 개방입양 형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인지하고 부러워한 친생모도 있었다. 현재는 자신이 국내입양 부모이기도 한 그녀는 자기 입양자녀의 친생모가 지금은 만남을 거부하지만, 언젠가는 입양자녀와 이모처럼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예전에는 미혼모도 그런 말을 못 하고 살았어요. 미혼모 자체도 손가락질을 당하고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미혼모가 정부 차원에서도 인구 정책 때문에라도 미혼모를 살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미혼모가 어떻게 혼자서 저렇게 힘들게 자식을 키우나."라고 걱정하고, 그 미혼모는 대단한 경이로운 사람으로 여겨요. 근데 저희(친생가족)는 아니에요. 근데 저희는 아니에요. 그 옛날에 나는 그 아이들을 키우려고, 미혼모더라도 나는 키우려고 열심히 노력할 때, 그때도 미혼모는 손

가락질을 받았어야 했어요. 그래도 나는 그 아이를 키우려고 노력했는데 실패를 했지만, 요즘 미혼모들은 떳떳하게 그야말로 지원을 다 받아 가면서 그렇게 아이 를 키우고 있잖아요. (친생가족 1)

옛날에 제가 미혼모 카페를 했었어요. 입양 가는 애들 엄마들 카페에서 이렇게 들 어보면, 외국에 있는 애들, 보낸 애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거기는 부모를 선택 한대요. 입양을 내가 보냈는데, 그 부모들 보는데 내가, 엄마가 먼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으면 그 부모를 선택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런 거 보면서 굉장히 좋고 또 애기 생일날 초대받아서 가서 같이 지낸대요. 그거 얼 마나 좋아요. 그죠? 지금같이 공개하는 세상이라 그러면 그걸(친생모라는 걸) 숨 길 필요는 없잖아요. 저는 (국내입양한) 우리 딸도 엄마를 만나게 해주려고 노력 해요. 그쪽에서 안 만난다고 그래서 지금 그러는 거지. 저는 희연이가 중학교, 초 등학교 때 (친생모와) 연락을 해서 그냥 이모같이 이렇게 왔다 갔다 했으면 좋겠 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희는 나이가 있으니까 일찍 죽으면 우리 딸이 혼자 남잖 아요. 그러면 뭐 같이 이모, 엄마처럼, 언니처럼 뭐 그렇게 지내면 참 좋을 것 같 다는 생각을 해요. (친생가족 2)

- 해외입양 개선의 열쇠: 정부가 친생부모에게 하지 않은 일과 해야 할 일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정부나 입양기관이 자신과 자녀들의 인권을 잘 지켜주지 못했다. 고 인식하였다. 입양기관은 친생부모에게 입양절차에 대한 상세한 설명도 없이 얼마 안 되는 돈을 건네면서 애를 사 간 거나 마찬가지라고 강하게 비판하였다. 자신의 아이가 해외로 입양될 것이라는 사실만 알았더라도 어린 나이에 해외까지 가서 차별받게 하느 니 어떻게 해서라도 직접 키웠을 거라고 토로하였다. 그리고 한국에서는 이미 1970년대 부터도 먹고사는 데는 걱정이 없었는데 너무 많은 아이를 해외로 입양 보냈다고 하면서. 이제 더는 해외로 아이를 보내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개선보다는 아예 다 뜯어 고쳐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입양을 보내는 사람 중에는 정말 힘들고 무지한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지만. 근데 누가 가든, 내가 가든, 생모가 가든 정말로 얘가 어디로 가는지 "해외입양이다.", "국내입양이

다."라는 말을 해줬으면 부모들이 선택하기가 더 쉬웠을 거예요. 예를 들어 "여기 는 해외입양만 보냅니다." 그러면은 내 딸이 혹은 내 아들이 해외로 가서 그 핏덩 이가 가서 그 차별 받잖아요. 솔직히. 우리도 인종 차별이 있듯이. 그런 걸 당하는 데 굳이 해외로? 아니면 내가 좀 더 힘들더라도 끌어안지. (중략) 상세한 설명이 없이 그냥 "내가 돈 얼마 지원해 줄 테니까, 너는 애를 날 줘"라는 것밖에 안 됐잖 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의 상세 한 설명은 필요하다는 거죠. (중략) 입양기관 스스로가 정말로 투명하게 "이건 이 렇고, 저건 저렇고." 정말 상세하게 설명을 해준다면 과연 입양 보낼 수 있는 사람 들이, 내가 나도 지금 부모지만, 몇 명이나 될까? 100이면 한 90은 돌아오지 않을 까요? 다시 그냥 내 자식을 내가 키운다고 돌아올 것 같아요. 설명도 없이 하면 100이면 100 다 가지만, 자세한 설명이 있다 하면, 적어도 반 이상은 다시 내 자식 을 키우는 쪽으로 돌리지 않을까요. (중략) 잘 모르는 사람들을 상대로, 그냥 어떻 게 보면 자기네들 진짜 말 그대로, 떡값밖에 안 되는 그 돈 건네면서 애를 사 간 것밖에 안 되잖아요. 아무런 설명이 없었다니까요. 저한테도. 근데 자세한 설명이 있었다면. "어 그래?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서든 한 번 다시 해보지." 그럴 거죠. (친생부모 3)

제가 듣기로는 해외입양을 가면 돈을 받는다고 들었어요.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애들 장사해서 정부에서 이거를, 감사를 정확하게 철저하게 하고 진짜 말 그대로. 솔직히 털어서 먼지 안 나는 데 없잖아요. 그러면 정확하게 하고,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주고, 이틀 내에서 움직이고, 여기에서 벗어나면 얘네들을 자격 박 탈을 하고, 그렇게 하면 아주 간단한 문제예요. (중략) 검찰이나 정부에서 움직이면 세무조사 같은 것도 다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기존 틀도, 틀을 만들 어서 이렇게 그러면 입양기관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는데, 정부에서는 솔직히 난 "돈 주니까 너희가 알아서 해."그 정도밖에는 생각이 안 들어요.(친생부모 3)

70년대부터 한국에 먹고 사는 거는 걱정이 없었어요. 그러면은 이 애들을 해외로 보내는 게 아니고 국내에서 보냈으면 지금 26만 명이라고 내가 듣고 있는데, 한 30만 명이 국내에도 있는 거 하고 합하면 30만 명, 그 적은 숫자가 아니거든. 그러 면 국내 인원이 30만 명이라는 인원의 신생아를 자꾸 외국에 보내기보다는 그 애 들을 그대로 키워서 나이 20이 넘어가면 군에도 갈 수 있고, 사회 뭐든지 다 쓸 수가 있는데 (중략) 국내에서 얼마든지 키울 수 있어요. (친생부모 5)

■ 친생부모가 본 해외입양인 인권 현황과 과제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는 해외입양 결정에서 가족찾기와 재회 이후에 걸쳐 한국 해외입양 제도 안에서 친생부모와 입양인 자녀가 겪은 인권 현실에 대한 우려를 표하였 다. 이러한 현실을 개선하려면 지금까지 정부나 입양기관이 접근해 온 방식이 전면적으 로 달라져야 하는데, 특히 입양기관이 재회를 원하는 친생부모와 입양인을 보다 적극적 으로 연결시켜 주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친생부모를 무시하거나 죄인처럼 대하고, 침묵 을 강요하는 대신 최소한 인권과 존엄을 가진 사람으로 존중하는 관점의 전환이 시급하 다고 보았다.

-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바라는 변화: 가족찾기의 체계화와 상봉 지원

해외입양 친생부모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자녀와 재회하고 이후 적절한 관계를 맺고 유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들과 입양자녀의 기대나 예상과는 달리 가족찾기 과정은 절 대 순탄치 않은 과정이었다. 친생부모와 입양인이 각자 입양기관에 재회를 위한 기록을 남겼어도 서로 연결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재회를 향한 이들의 간절한 마음과는 달리 무심하고 소극적인 태도로 일하는 입양기관 실무자에 실망감을 표하였다.

우리 애들은 애들 나름대로 부모를 찾겠다고 OO(입양기관)에 갔답니다. (중략) 언 제 갔냐 하면 우리 강원도에 동계올림픽 했을 적에 그 해에 같이 와 가지고 OO를 찾아갔답니다. 내가 한국 사람이고 우리 부모가 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좀 찾아달 라고 한 거죠. 그때 기록을 보자고 했던 모양이라. (중략) 근데 못 찾은 거라. 기록 도 기록이지만, 정확한 답변을 안 해줬기 때문에 나하고 연결이 안 되었던 거라. 나도 OO로 찾는다고 접수가 되어있는데. 우리 애들도 OO에 가서 부모를 찾는다 고 이야기를 했으면 서로가 맞아야 되는데 접수가 빗나가 있는 거라. 연결을 안 시켜주는 거야. 그러다 보니 못 만났다고. (친생부모 5)

내가 물어보고 싶은 게 있어도,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거는 딱 하나 아닙니까? 우리

딸들이 OO로 갔는데, OO에 딸이 찾아왔는데 애비도 OO에 가서 딸 찾는다고 했는데, 그 "왜 연결을 못 시키고 응?" 안 그래요? 왔으면 미국에서 어디 사노? 부모를 찾아온 사람, 그 미국 주소까지 딱 적고, 전화번호 적고, 이런 기재를 제대로 안한다 그 말이에요. 안 해. 그 기재가 서로 찾는데 연락처가 되고, 그게 길인데. (친생부모 5)

- 친생부모를 바라보는 시선: 죄인에서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한국 사회에서 오랫동안 침묵하고 죄인처럼 자신을 숨기고 살아 온 존재 중 하나였다. 이들은 친생부모가 입양 보낸 자녀의 소식을 듣기 위해 입양기관을 찾을 때도 도움을 받기보다는 무시당하고 죄인으로 취급받는 경험을 하였다. 이런 경험을 통해 자신이 당당하게 목소리를 내려면 자신의 인권이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주장할 수 있어야 하고, 그러려면 함께 모여 배워야 한다는 것을 피력하는 친생부모도 있었다.

최소한도 그 아이들이 지금 현재 잘 안전하게 잘 지내고 있는지는 궁금하잖아요. 그랬을 때 알 수 있는 거는. 그 정도는 알려주고. 또 간혹 아이들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부모를 찾을 수 없다고. 그 찾는 거를 거기에 노력을 안 해주고. 그냥 아이들한테 모른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경우도 가끔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한 사후처리를 좀 잘 해줬으면 좋겠고. 제가 OO에 방문했을 때 느끼는 거는 정말 창피해서 그 문을 열고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이 저희를 대하는 태도가 정말 창피해서, 정말 창피해서, 얼굴을 들고 거기 들어가서, "저 원가족인데요. 혹시 아이한테서 온 소식은 있나요?" 이거 물어보러 들어가기, 정말 쥐구멍에 들어가는 거보다 더 정말 싫어요. 그렇게 사람을 취급을 해요. (친생부모 1)

확신을 가져야 목소리가 커지는 거잖아요. 확신이 없으면 "이게 맞나? 아닌가?" 눈치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보다는 알고서 떠들면 더 좋지 않을 까? 저번에도 복지부 장관 만나러 간다 어쩐다 하는데. 똑같은 얘기 백날 해봐야 소용없고, 알고서 얘기하는 것이, 우리가 어디 가서 뭐 하려고 그러면, "그런 거필요 없고요. 전문적인 얘기만 하세요." 이러잖아요. 구구절절 듣고 싶어 하지 않

잖아요. "핵심이 뭐예요?" 막 이렇게 물어볼 때 있어요. 얼마나 민망해요. 그러니 까 알고 떠들어야 되겠다는 것이고. 그래서 배워야지. 공부를 그래도 가르쳐주신다 고 했었어. 인권에 대해서. "어, 좀 배워야 하지 않겠나?" 김〇〇 교수님이 그래서 그래요 "배워요. 하면은 올게요."라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한 번, 엄마들 참여해 서 같이 배우고, 이게 지금도, 이게 박사님이나 우리 변호사님이 여쭤봐도 잊어버 리잖아. 그러니까 내가 막 그 순간에는 굉장히 막, 그렇게 했던 것도 절절하고, 막 절실했던 것들도 시간이 가면 옅어지잖아요. 마음에 닿지가 않아요. (친생부모 2)

어쨌든 우리 입양을 보낸 원부모 가족들은 항상 죄인이에요. 그런데 입양기관은 우리한테, 우리의 어려움을 이용해서, 그들은 영리사업을 하면서, 우리한테 우리 를, 그들도 낮은 인간 취급을 해요.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사후처 리를 제대로 해줬으면. 쉽게 말해서 영리사업을 했으면 사후 서비스를 해야 되잖 아요. 차후에 아이들이 찾아왔을 때는, 아니면 원가족이 가족을 만나고, 가족이 가 족 소식을 좀 알고 싶어 할 때, 죄인 취급하지 말고. 그런 부분을 정확히 좀 확인할 수 있는 건, 확인해서 알려줘야 되지 않나. 어쨌든 그들은 우리 때문에 돈을 벌어 서 자기네들이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우리를 죄인 취급하지 말고 우리를 그렇다고 손님으로 우대를 해달라 이거는 아 니잖아요. 최소한도 인간 대접은 해줘야죠. (중략) 저희는 이미 끝난 세대지만, 지 금 입양은 지금이라도 어쩔 수 없이 해외 입양을 보내는 그 친생 가족들, 원가족들 이라도 더 이상 손가락질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할 수 있게 좀 지원을 좀 해줬으 면 좋겠어요. (친생부모 1)

(4)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1973년부터 2001년 사이에 자녀를 입양 보낸 해외입양 친생부모 5명 에 대한 개별면접을 통해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과 침해 실태를 파악하였다. 해외입양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은 어려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입 양되었는지, 그 과정에서 인권침해가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알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더욱 중요하다.

개별면접에서는 구체적으로 친생부모가 1) 양육 위기에서 입양결정 이전까지, 2) 입양

결정에서 자녀와 헤어지기 이전까지, 3) 자녀와 헤어진 이후부터 재회 이전까지, 4) 재회에서부터 관계의 지속까지의 크게 네 시기에 걸쳐 해외입양 친생부모로서 어떤 경험했는지 질문하고 기록·분석하였다. 개별면접을 통해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어려움, 고민, 고통, 갈등 등 다양한 경험은 다음과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해외입양 친생부모들은 감당하기 어려운 자녀 양육의 위기를 경험하면서 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시작했는데, 해외입양을 통해 자녀에게 좋은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자 녀의 성장 후 재회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통한 회유와 분만 비용이나 의료비 지원 등의 부적절한 유인을 통해 해외입양을 결정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둘째, 해외입양 친생부 모 대부분은 해외입양에 관해 잘 알지 못하였다. 입양 결정 과정에서도 자녀가 해외로 입양이 된다는 사실은 물론 해외로 입양 보낸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친생부모로 서 자신에게는 어떤 권리가 있는지에 관해 설명을 듣거나 이해하게 돕는 과정은 전혀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해외입양 결정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 아동의 조부모나 친척의 동의만으로도 입양절차가 개시되기도 했고, 아동 양육 시설에서 친생부모의 입양동의 없이 임의로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낸 경우도 있었다. 또한 친생부모가 작성한 적이 없는 입양동의서로 해외입양을 진행한 것을 나중에 발견 하기도 하였다. 넷째,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녀를 입양 보낸 후 끊임없이 자기 결정을 후회하면서도 어떻게 입양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지 그 절차와 방법을 알지 못해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그 결과 친생부모는 자녀를 지키지 못한 자책감에 시달리면서도 살아있다는 소식조차 들을 길 없이 걱정과 그리움의 나날을 보내야 했다. 이러한 심리적 어려움은 자녀와의 분리 후 상당 기간 지속되지만 이러한 사실을 주위에 알리거나 도움 을 받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고, 대부분 혼자 외롭게 고통을 감내하며 살아야 했다. 다섯 째, 자녀와의 재회를 기다리던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부정확한 입양기록, 부실한 친생부 모 확인 방식, 가족찾기에 소극적인 입양기관의 태도 등으로 입양자녀와의 연락 과정에 서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이러한 어려움을 뚫고 자녀와 재회한 경우에도 오랫동안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 속에서 지내온 데 따른 차이를 확인할 수밖에 없었기에 상봉은 단순한 행복의 시작이라기보다는 서로의 트라우마를 알아가고 이해해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 작에 가까웠다. 여섯째, 해외입양 친생부모는 대부분 자신에게 다시 선택의 기회가 주어 진다면 입양을 택하지 않을 것이라고 답했으며, 한국 정부가 최대한 한국 아동이 원가족 과 헤어지지 않고 한국에서 성장하게 하고, 더는 해외로 아이를 입양 보내지 않기를 바

랐다. 또한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가족찾기와 재회 과정을 체계화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줄 것과 해외입양 친생부모를 죄인이 아닌 최소한의 권리를 가진 사람으로 인식 하는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기대하였다.

개별면접을 통해 해외입양 결정, 입양 후 자녀에 관한 정보 제공, 가족찾기와 재회 과 정에서 해외입양 친생부모가 경험하게 되는 인권침해 양상은 해외입양인이 경험하는 인 권침해 문제와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해외입양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친생부모의 인권보장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해외입양 친생부모의 인권 개선을 위한 제도적 변화의 속도는 상대적으로 느릴 뿐 아니라, 아직 친생부모 당사자가 조직적으로 목소리를 내어 개선을 요구하기 어려운 상 황임을 고려할 때, 전체 해외입양 제도와 실천의 개선을 위한 노력 가운데 친생부모의 인권 보장에 특별히 더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던 구조를 이해하기 위해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실무자와 해외입 양인 가족찾기 등 해외입양 관련 활동을 해왔던 실무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을 진행하 였다.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해외입양의 직접적인 당사자는 아니지만, 해외입양 구조 를 직·간접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위치에 있으며, 제삼자라는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입장 에서 해외입양의 구조에 접근해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이 절에서는 면접에 참여한 실무자의 특성과 주요 질문내용, 면접조사를 통해 확인한 해외입양상황 과 인권 문제를 살펴보았다.

(1) 연구참여자 특성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는 입양기관에 종사했던 실무자와 해외입양인 가족찾 기를 비롯한 입양인 지원 활동을 해왔던 실무자를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면접조사는 입 양기관 종사자 3명7), 입양인 가족찾기 등 입양인 지원단체 관계자 2명으로 5명이 참여 하였고, 2022년 7월에서 9월까지 반구조화된 질문을 중심으로 개별 심층면접을 진행하였다. 면접에 참여한 실무자는 대상자 추천과 함께 눈덩이 표집을 활용하여 접촉하였고, 수락할 경우 동의 과정을 거쳐 조사가 이루어졌다. 면접조사는 대면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비대면 온라인 조사를 병행하였다. 면접은 대체로 1시간 30분에서 3시간 소요되었으며, 연구배경과 목적을 숙지한 이후 진행하였다. 다음 [표 17]는 조사에 참여한 이들의 특성을 간단히 정리한 것이다.

기간 업무 소속 실무자 1 입양기관 5년 미만 해외입양담당 실무자 2 해외입양담당 입양기관 5년 미만 실무자 3 입양기관 5년 이상 해외입양담당 입양인 지원단체 실무자 4 5년 이상 입양인지원 실무자 5 입양인 지원단체 5년 이상 입양인사후서비스

[표 17]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특성

(2) 주요 질문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의 질문은 크게 7개 영역으로 범주화해 구성하였다. 첫째, 입양관련 업무를 시작한 배경; 둘째, 해외입양 업무의 흐름과 조직에 관한 부분; 셋째, 아동의 해외입양 의뢰과정에 관한 부분; 넷째, 해외입양부모와 결연되기 전 아동보호와 관련된 부분; 다섯째 해외입양부모와 결연 이후 사후관리에 관한 부분; 여섯째, 해외입양의 기록 관리와 가족찾기를 비롯한 입양정보공개청구와 관련한 부분; 일곱째, 해외입양제도와 절차상 전반적인 인권 보장이나 침해에 대한 의견을 질문하였다.

⁷⁾ 조사에 참여한 입양기관 실무자의 경우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중반까지 근무하였다. 현재 입양기관의 조직구성과 업무는 다른 상황일 수 있지만, 해외입양이 가장 급증했던 당시 시기를 감안하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해외입양의 전반적인 구조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을 것이다.

[표 18]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 주요 항목

구분	주요 질문
해외입양 관련 업무 시작 배경	- 해외입양 관련 업무를 한 시기와 기간은 어떠한가요? - 해외입양 관련 기관과 단체에서 일하게 된 계기나 이유는 무엇인가요?
업무 흐름과 근무조직	 당시 해외입양 업무의 전반적 흐름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당시 해외입양 기관(혹은 단체)의 부서와 주된 역할은 무엇이었나요? 당시 해외입양 기관(혹은 단체)에는 어떤 부서가 있었나요? 근무 당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소, 의료기관, 미혼모시설, 위탁모 등 협력관계를 맺고 일하셨나요?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의뢰 과정	 당시 해외입양으로 의뢰된 아동의 규모는 어느 정도였으며, 주로 어떤 경로를 통해 의뢰되었나요? 해외입양을 의뢰하는 친생부모를 직접 만난 경우도 있었나요? 친생부모가 자녀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게 된 주된 이유는 무 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당시 해외입양을 의뢰한 사람이 친생부모가 아닌(할머니, 고모, 이모 등) 사람이었을 때는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었나요? 해외입양을 의뢰한 친생부모에게 먼저 직접 양육하도록 권하고 지원하기도 하였나요? 아동의 해외입양을 결정하기 전에 국내입양을 먼저 시도하고 노력하였나요? 친생부모에 대한 상담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친생부모 중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절하지 않은 사람도 있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렇다면 그런 사람은 어떤 특징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아동의 입양 전 보호	 해외입양 대상 아동을 결정하는 절차와 기준은 무엇이었나요?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아동의 구분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특히 국내입양은 어떤 기준과 절차로 이루어졌는지 알고 있거나 경험한 것이 있으신가요? 아동이 해외 입양부모와 결연되는 절차와 기준은 어떠했나요? 해외입양 아동은 입양부모의 한국방문이나 에스코트 등 주

구분	주요 질문
	로 어떤 방식으로 해외입양 가정으로 갔나요?
	- 해외입양 과정에서 국가의 개입은 어떤 시점에서 어떤 방식
	으로 이루어졌나요?
해외입양 사후관리	- 해외입양 부모의 적격성에 관한 판단은 어디서, 어떻게 이루어 졌나요?
	- 해외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양육되고 있는지에 관한 확인과 사후관리는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 당시 해외입양 아동이 미국으로 입양된 이후 시민권 취득과
	관련해 한국 정부나 입양기관이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는지
	요? 만약 있었다면 절차가 있었음에도 시민권을 취득하지
	못해 추방되는 해외입양인의 사례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해외입양 기록관리와 가족찾기 (입양정보공개청구)	- 해외입양 아동의 기록은 누가 작성하고 관리하였나요?
	- 아동의 기록 중 해외입양부모에게 전달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 친생부모와 해외입양부모가 연락하고 있는 경우 입양기관에
	서 연락할 수 있도록 직접 개입한 적이 있었나요?
	- 해외입양인이 친생부모와 가족을 찾아 입양정보공개를 청구
	했을 때는 어떤 절차를 통해 제공하였나요?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의 재회 비율이 낮은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시나요?
	- 해외입양인과 친생가족 재회를 위해 입양기관에서는 어떤
	지원을 했나요?
해외입양 제도와 절차에 따른 인권 문제 등을 비롯한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 한국 해외입양제도나 절차는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을 잘 보
	장 했다고 생각하시나요?
	- 해외입양제도나 절차 중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을 잘 보장한
	부분과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부분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
	시나요?
	- 근무할 당시 해외입양 아동의 인권을 침해한 사례가 있었나요?
	- 한국의 해외입양제도와 절차는 어떤 부분을 개선해야 한다
	- 고 생각하시나요? 한국은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지속하
	- 안국은 해외합앙을 지속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다요? 지속하 - 거나 중단해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되 중단에야 한다던 그 이유는 무깃한기표!

(3) 조사 결과

면접조사 내용은 오디오 파일과 전사를 거친 녹취록을 토대로 검토하고 분석하였으며, 범주화한 주요 질문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입양기관 실무자는 주로 대학이나 대학원에서 사회복지를 전공하고 입양기관의 채용을 통해 입양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들은 공통으로 아동복지에 관심은 있었지만, 입양실천에 관해서는 잘 모르는 상태에서 공고를 통해 지원해 일하게 되었다. 입양인지원단체 실무자도 입양 문제를 인식하게 된 계기는 해외입양인과의 만남을 통해서였다.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해외입양 구조에서 입양 삼자(입양인, 친생부모, 입양부모)에 포함되지는 않지만, 입양 삼자의 삶에 매우 큰영향을 미치는 결정을 한다. 따라서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해외입양 구조를 충분히이해할 것이고, 면접을 통해 제삼자의 관점에서 해외입양 문제를 확인할 수 있을 거라는 판단에서 면접을 진행하였다. 하지만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자신이 입양기관이나 관련 단체에서 일한 기간이나 업무의 특성에 따라 해외입양인의 인권관련 상황을 잘 알지못하거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지점이 발생할 개연성이 있어 적극적인 입장을 견지하지 않을 때도 있었다.

① 해외입양 관련 업무와 활동

■ 해외입양에 대한 인식

먼저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비입양인이기 때문에 입양을 어떻게 인식하는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관련 업무나 활동을 시작하기 이전에는 입양을 자신과 무관한 것으로 생각해 관심이 크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이들은 모두 입양기관에 취업해 업무를 시작하면서 혹은 우연한 계기로 해외입양인과의 만남을 통해입양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입양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반적으로 낮은 현실에서 입양업무를 담당했건 지원활동을 했건 간에 실무자는 비슷하게 해외입양이 아동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입양에 대한 인식의 공백은 한국 사회의 오랜 관습에서 기인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다. 아동복지 정책의 한 부분으로 '현대적' 입양이 시작되기 오래전부터 가계 계승 차원에서 관행

적으로 이루어졌던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아니라 가계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 간주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현실에서는 입양으로 인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는 논외가될 수밖에 없고, 아동의 권리는 고려대상조차 되지 못하였다.

그런 채용의 기회가 있어서 제가 이제 들어가게 됐죠. 그러니까 입양 사업에 대해서 제가 무슨 뜻이 있어서 간다거나 또 입양 사업의 무슨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거같은 걸 생각해 보지 않았지만 아동복지에는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실무자 2)

■ 해외입양 업무의 전반적 흐름

입양기관의 업무는 대체로 아동이 의뢰되면 상담을 통해 시설 혹은 위탁가정에 배치하고 입양부모와 결연하는 과정으로 이어진다. 우선 아동인수를 담당하는 상담 부서에서는 아동이 입양대상으로 가능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하였다. 이때 친생부모의 친권포기와 관련해 상담하기도 했지만, 아동 대부분은 이미 친생부모와 분리된 경우가 많았다. 그 이후 아동은 입양 전까지 위탁가정이나 시설에서 보호받으며 관리 대상이 되었다. 그 과정에서 아동 보고서가 작성되고, 그 보고서를 통해 입양부모와의 결연이 이루어졌다. 국내입양과 함께 진행되는 경우도 있었지만, 국내입양 대상이 되는 아동은 소수였으므로 아동 대부분은 해외입양 부서로 이관되었다. 한국의 입양기관마다 담당했던해외입양아동 수령국이 있었고, 사회복지사는 자신이 담당했던 국가 이외 상황은 상세히 알 수 없는 구조였다.

상담부는 입양을 보내고자 하는, 친권을 포기하고자 하는 그런 친부모 상담하는 곳이었고요. 그리고 국내입양부, 해외입양부 그렇게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부설 기관으로 일시보호시설이라든가, 의료원이 있었어요.(실무자 1)

입양대상 아동을 해외입양 가정과 결연하는 절차와 기준은 입양기관마다 차이가 있었지만, 대체로 입양의뢰-건강 체크-대기-결연-수속의 단계를 거쳤다. 해당 국가의 입양기관과 접촉하면서 입양부모와 입양대상 아동의 정보를 토대로 결연하는 흐름이었다. 한국

입양기관 중에는 입양부모와 아동 간 결연 업무를 해외입양기관에서 보내온 예비 입양가 정조사서를 읽고 실무자가 직접 담당하게 하는 기관도 있었고, 한국 입양기관에서 아동보 고서를 해외입양기관에 보내고 그곳 실무자가 담당하게 하는 입양기관도 있었다.

기관마다 좀 약간의 절차가 달랐고요. (중략) 대표 입양 기관이랑 컨택을 하고요 (중 략) 양부모가 원하는 아동 자기가 키울 수 있는 아동에 대한 정보를 줘요. (중략) 양부모의 요구와 양부모의 역량이 다 계속 이렇게 자세하게 써서 와요.(실무자 1)

그 욕구에 따라서 제가 매칭을 시키는 게 아니라 그쪽 기관에다가 얘기를 하는 거 죠. (중략) 이 양부모에게 이 아동을 매칭을 시키고자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 니?(실무자 1)

의료 파트에서 사진을 찍고, 아 저기 건강 체크를 하고 (중략) 위탁 엄마하고 다 배정이 돼서 위탁 가정으로 (중략) 홈 스터디를 저희가 서류를 보내는 거예요. (중 략) 수속부는 어, 뭘 하냐면 (중략) 후견인으로 하는 호적이 만들어지고 그다음에 이제 해외 입양을 가기 위한 이제 수속 절차가 (중략) 수속 파트예요. 그래서 크게 세 파트(실무자 3)

■ 입양기관과 연계된 유관시설

입양기관은 아동 인수 과정에서 병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었다. 특히 미혼모가 발생하면 병원에서는 입양기관에 연락하였다. 아동양 육을 지원하는 미혼모 시설이 있었지만, 미혼모는 입양을 보내는 것이 낫다는 인식이 지배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게 인수한 아동은 입양기관이 관리하는 위탁모에게 맡겨 양육하였다.

병원에서 이제 이게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잖아. 인테이크(intake: 아동 인수)부터 시작되는 거잖아요. 병원에서 예를 들어서 미혼모가 아기를 낳았어. 병원하고 입양 기관하고 연결이 다 돼 있죠. (중략) 병원에서 키울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입양기 관에다 연락하겠죠. 그러면은 거기 인테이크 부서에 있는 워커들이(실무자 2)

인테이크가 되는 거죠. (중략) 위탁 가정에다가 연결해서 위탁모들이 이제 애를 키우게 되는 거죠. (중략) 출국하기 전까지 (중략) 그렇게 하는 것을 맡는 부서가 양육부 중에 위탁 양육 파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실무자 2)

각자 그 병원들이 다 관련이 좀 약간 지역적으로 좀 인근에 있는 지역들이 많겠 죠.(실무자 2)

미혼모가 와가지고 아기 낳는데 못 키우겠다고 하고 뭐 아 아무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러면 그럴 때는 그 사람들이 취할 수 있는 거는 입양 기관에 연락하는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실무자 2)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양육시설 담당자가 따로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여러 양육시설을 담당하였다. 양육시설에서 입양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아동을 입양대상 아동으로 인수하 면 고유번호를 배정하고 입양기관 담당자는 정기적으로 방문해 아동의 상태를 점검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업무를 하였다.

굉장히 많았겠죠. 제가 맡은 것만 해도 한 워커가 시설 몇 개를 맡았으니까(실무자 2)

양육부에 있는 워커는 일단 들어온 애들, 그게 이제 걔한테 넘버링이 주어져요. 그 아이의 이제 그 고유 번호, 케이스 번호가 되는 거잖아요. 케이스 번호가 주어진 애들만 파일이 그 워커한테 (중략) 시설에서 케어를 하는 거고 갓난쟁이 애들은 위탁모들이 그냥 하는 거고(실무자 2)

입양기관이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미혼모 시설을 운영했던 상황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입양이 아동복지의 목적을 넘어 이익 추구를 위한 도구로도 해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⁸⁾

입양 기관이 그 아이를 얻을 목적으로 미혼모의 집을 운영하느냐.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닌지 (중략) 옛날에는 고아원을 운영했지만(실무자 4)

■ 국내입양과 해외입양 아동의 구분

입양으로 의뢰된 아동을 국내가정으로 보낼지 해외가정으로 판단을 따로 구분하지는 않았지만, 국내입양이 성사되지 않으면 자동으로 해외입양으로 이어지는 구조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국내입양은 주로 가계 계승을 위해 건강한 신생아를 중심으로 비밀리에 이루어졌고, 그 외 모든 아동은 해외입양으로 진행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국내입양에서 예를 들어서 부모가 와서 어떤 애기를 하면 좋겠다. 남아 선호 선호 그다음에 대를 국내입양은 남자아이 그리고 비공개 입양 당연히 (중략) 국내입양은 그러니까 그 부모 입장에서는(실무자 2)

국내입양 아동은 미리 이미 선정돼서 국내 입양 아동으로 빼요. 국내입양 아동이라고 딱 선정을 해놓으면 이제 신생아고(실무자 3)

국내입양 신청 들어오면 갓 태어난 아이는 지금 홀딩을 한, 한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해외입양 수속을 안 하고 있어요. (중략) 얼마가 됐는데도 진행이 안 된다 그러면 이제 넘겨야 되겠죠.(실무자 3)

입양기관 실무자는 국내 입양부모가 요구하는 아동의 조건이 까다로워 맞추기 어려웠고, 해외입양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수입이 훨씬 많았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고 입양기관에서는 국내입양보다 해외입양을 선호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8) 2014}년 헌법재판소는 입양기관에서 '미혼모자가족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운영 중인 미혼모시설을 변경·폐지하도록 한 규정이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제기한 헌법소원 청구에 대해 기각 판결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입양기관이 시설을 운영할 경우 미혼모에게 자녀 양육보다 입양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근거로 판단하였다. 이러한 판단을 보더라도 입양기관은 아동의 확보를 위해 미혼모 시설을 운영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헌법재판소 2011헌마363 한부모가족지원법 제20조 제4항 등 위헌확인 결정문 참조.

국내입양의 경우는 양부모가 거절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기의 성별, 그다음에 아기의 건강 상태, 그다음에 아기의 용모, 왜냐하면 본인의 가족과 이제 닮은 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서(실무자 1)

아동이 건강하고 그리고 영아일 때는 국내입양부로 먼저 가요. 그 서류가, 영아가 아니라 유아 정도가 됐고 아기가 장애가 있거나 그럴 때는 해외입양부로 주로 왔고, 그러니까 건강한 영아 그러니까 출생한 지 얼마 안 된 영아들 1년 미만의 영아들은 국내입양부로 주로 갔죠.(실무자 1)

국내입양에도 심혈을 기울이지만 국내입양이 잘 안, 안 되니까 국내입양은 제한을 가지고 있는 게 되게 많잖아요. 신청자 자체가. 해외입양이 훨씬, 훨씬 수입은 많으니까(실무자 3)

② 아동의 입양 인수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

해외입양 대상 아동의 인수는 크게 아동 양육시설과 아동의 친생부모를 포함한 보호 자의 상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입양기관에서는 해외입양 대상 아동을 많이 확보하면 할수록 이익이 되므로 아동 인수 과정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은 뒷전이 되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입양기관의 이해관계에서만 비롯되었기보다는 매년 쿼터제를 통해 입양기관마다 입양아동 수를 할당했던 국가의 역할이 이면에서 작동한 결과라고 할수 있다.9)

■ 입양기관 간 경쟁

해외입양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던 시기에는 아동 인수를 위한 입양기관 간 경쟁이 심

^{9) 1976}년 입양특례법 제정 이후 '요보호 아동에 대한 입양 및 가정위탁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 내입양으로 전환을 도모하였고, 입양기관에 국내입양을 의무적으로 부과하고 국내입양수에 따른 쿼터제를 적용하였다. 쿼터제 실시로 입양 목표량이 지시되고 성과에 따라 해외입양 허가수가 좌 우되었다. 입양기관 로비에 따라 할당수가 달라지기도 하였고, 수량적인 성과에 치중하게 되면서 국내입양수를 높게 보고하고 해외입양수를 많이 할당받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였다. 1981년 '이민 확대 및 민간외교'의 차원에서 해외입양을 개방하는 것으로 정책이 전환되면서 쿼터제는 철회되 었다(원영희, 1990:40-48 참조). 이러한 일련의 흐름은 결국 해외입양은 국가 정책의 일환으로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한다. 즉 국가는 해외입양의 가장 주요한 행위자였던 것이다.

했다.10) 매년 보건사회부로부터 입양기관별로 해외로 입양 보낼 수 있는 아동 수를 할당 받았고, 더 많은 아동을 할당받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다. 이는 입양을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사회복지실천으로 여긴다는 입양기관의 주장과는 크게 모순이 되는 행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매년 쿼터가 바뀌었거든요. (중략) 어디에 뭐 몇백 명 그런 식으로 쿼터를 줬는데, 그것도 보건복지부의 결정이기 때문에 그 쿼터에 대해서는 아무도 알 수가 없었 죠.(실무자 1)

해마다 보건사회복지로부터 쿼터 같이 할당받는 거를 (중략) 더 배당을 받고 그래 서 치열했던 기억이 나요. 매년 그것에 대해서 치열했고(실무자 3)

입양기관은 최대한 해외입양을 많이 보낼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아동 인수 단계부터 기관 간 경쟁이 치열했던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입양기관 간 경쟁 시스템이 작동했고, 더 많은 아동을 확보하기 위해 조산원, 병원, 시설 등을 찾아다니며 마치 영업 하는 것처럼 일하고, 심지어는 거래가 이루어진 정황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이 어느 정도 치열했냐 하면 (중략) 인테이크 중에 (중략) 조산원도 있었고, 그 런 분들의 아이를 받고 그랬는데 (중략) 지금 말하면 영업 활동처럼 다니는 거예 요. (중략) 인테이크 받는 것을 그렇게 발굴해서 확대해 나가면서 (중략) 그런 사람 들이 이제 인테이크를(실무자 3)

촌지 받는 거랑 비슷해요. 시작엔 누가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의사들이나 그 의뢰하는 사람들 당연히 돈을 주려니 생각하고 안 주면 뭐라고 말을 당당하게 말

¹⁰⁾ 보건사회부는 입양기관에 아동인수를 위한 입양기관의 경쟁적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 우 처벌을 감수하겠다는 입양기관장의 각서를 제출하는 내용을 담은 '입양사업지침'을 하달하였 다. 이에 입양기관은 아동인수를 위한 섭외활동, 지원, 홍보활동 금지 등을 결의하는 확약서를 전 달하였다(국가기록원, '입양사업지침(1978-1988)'). 원영희에 따르면 보건사회부는 1988년 입양아 동의 경쟁인수를 하지 못하도록 공문을 시달하였고, 입양기관은 '아동확보를 위한 홍보 및 섭외 금지'를 결의(1990:49)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할 정도까지 왜 안 주냐? 라는 단계까지(실무자 3)

입양에 쿼터가 자꾸 올라가고 아이들이 입양이 막 많아질수록 그런 일이 더 많이 되어 졌고(실무자 3)

■ 친생가족의 상담 부재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의 상담은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과정이다. 그러나 해외입양 아동을 한 명이라도 더 인수하는 것이 입양기관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므로 친생부모나 친척에게 입양을 권유하는 방향으로 상담하도록 압력을 넣는 기관도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아동의 전 생애에 걸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결정을 체질상 기관 이익을 추구하는 민간 입양기관에서 전적으로 담당하게 했다는 사실 그 자체만으로도 아동의 인권 보장과는 거리가 먼 현실이었음을 알 수 있다. 친생가족에 대한 상담은 입양을 권유하는 방식이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택이 입양을 보내는 게 (중략) 아이를 어떻게 키우는 게 좋은지를 의논하는 상담이 아니라 선택이 딱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되게 이상했었어요. 당연히 그렇게 흘러가는 게(실무자 3)

아이를 우리 기관에 의뢰하겠다. 어느 정도 얘기가 오고 갔느냐가, 결과가 안 나와 있으면 약간 추궁 같은 거를 받는 거예요.(실무자 3)

■ 고아호적 창설의 문제

입양기관의 상담부서에서는 미혼모 자녀나 양육시설에서 의뢰한 아동의 이름을 가명으로 처리하고, 고아호적을 만드는 업무를 담당하였다. 입양기관 실무자 중에는 아동 인수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직접 일해 본 경험이 없어 자세한 내용은 모르지만, 친생부모를인지한 때도 고아호적을 만든 예도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으며, 기관 내 고아호적을 만드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은 전반적으로 부족했다고 하였다. 입양기관에서는 고아호적창설을 입양 결연을 위해 당연히 해야 하는 방안으로 여기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무자도 관련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상담부에서 했어요. 이름이 넘어온 거로 봐서는 이제 이미 고아 호적이 이제 발급 이 된 거죠.(실무자 1)

다시 이름을 만드는 그런 상태가 됐겠죠. 그러니까 원래 그 호적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또 새 호적이 만들어지는 경우도 있지 않겠어요?(실무자 2)

기·미아인 경우에 일정 기간이 지났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고아로 밖에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실무자 2)

그 아이 호적을 사용하는 그런 입양은 제 케이스에는 별로 없었어요.(실무자 3)

하지만,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 등을 지원하는 해외입양 지원단체 실무자는 고아호적 의 문제가 크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 고아호적은 친생부모의 기록이 있었음에도 입 양을 효율적으로 진행하려고 만든 것에 불과한 것으로 입양인의 자기 배경에 대한 혼란 을 가중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말이 고아 호적이지 (중략) 자기가 고아라고 생각하고 받은 사람은 제가 만난 사람 들 중엔 거의 없어요. (중략) 혼란스럽긴 하죠. 엄마, 아빠 성함이 이렇게 있는데 그럼 이 서류는 뭐지? 그럼 이 사람들은 이게 그냥 입양기관에서 찍어낸 서류인 거를 모르니까(실무자 5)

■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한 입양: 입양대상 아동의 배경

가부장적 전통과 남아선호라는 관습 때문에 여아라는 이유로 입양되는 경우가 존재했 는데, 이것은 입양기관의 문제를 넘어 사회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비슷한 맥락에서 당시 한 부모가 아이를 양육할 경제적인 능력이 없어서 입양을 보내거나, 기지촌 어머니 가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때문에 자신이 낳은 혼혈아동을 입양 보낼 수밖에 없었던 상황 도 사회적 문제였음을 알 수 있다.

딸은 입양 보내고 아들은 키우는 경우도 있어요. 많지는 않지만 입양 기관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이기도 한 거죠. (중략) 거기에 대해서 그런 거를 제한할 만한 그런 게 없죠.(실무자 3)

엄마가 미군 부대에서 말하자면 엔터테이닝 우먼(entertaining woman)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백인 남성하고 (중략) 결국 입양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사실 "한국 사회가 그 아이를 보호하는 시스템을 안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 있죠. (중략) 미군 부대에 보냈다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생각해서(실무자 4)

홀어머니, 사별한 엄마가 아이를 키우는데 아이가 화상을 입었어요. (중략) 아이를 치료할 비용이 하나도 없어. 그래서 이분들이 입양 기관에서 아이를 입양 보내면 치료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나이 들어서 입양을 (중략) 첫 가정으로부터는 소위 말해서 파양을 당하고 리호밍(rehoming)이 됐는데, 리호밍이 된 곳이 일종의 고 아원이에요. (중략) 집단 양육 시스템 안에서(실무자 4)

친생부모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가족구성원이 자기 자녀를 입양 보내 버리는 것은 아동뿐 아니라 친생부모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도 해석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당시 해외입양에 대한 긍정적인 사회적 인식은 친생부모가 자녀를 위한 일로 생각하고 해외입양을 선택하게 했고, 그 결과 한평생 한과 아픔을 겪으며 살아야만 하는 상황을 초래하였다.

일하러 나가서 며칠 지내는 동안에 자기 어머니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 아이를 입양을 보내고 그러고는 어떤 부잣집에 갔다. (중략) 인펀트(infant) 시절에 (중략) 본인의 동의 없이 보냈잖아요. 그게 일생의 한과 아픔으로 남아 있어요.(실무자 4)

입양 보내면은 다 뭐 좋아지는 것처럼 얘기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못 키울 것 같으면 보내자. (중략)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들 한이 많으세요.(실무자 5)

■ 미아에 대한 국가기관(경찰)의 공백

입양기관으로 의뢰되는 경로에서는 미아에도 주목해야 한다. 미아는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기아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사례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사례가 다수였다. 그러나 가족을 찾아주기 위한 국가의 노력은 형식적인 측면에 머물러 있었다. 경찰은 적극적으로 아이의 가족을 찾아주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가족찾기' 공고만 하고, 공고기간이 지나면 아동 양육시설로 보내고, 시설에서는 입양기관으로 의뢰하는 절차를 반복했다.11)

그냥 미아가 아니고 버릴 수도 있어요. (중략) 애들이 인지 못할 수도 있죠. 한 서너 살 뭐 이렇게 되면 그때 기억 못하죠. (중략) 경찰서에 있다가 그냥 시설, 시설로 가고 시설로 가고, 있다가 그다음에 입양하고(실무자 2)

경찰에서 막 적극적으로 찾으려는 노력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잖아요. (중략) 소홀히 해왔다는 거죠. 그거는 인정해야지. 한 인간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그냥 행정 위주의 그 일을 하면서 그냥 어떤 시간의 경과라든지 형식이라든지 그것에 따라서만 (중략) 나중에 다시 복원하려고 했을 때 그게 블랭크(blank)가 날 수밖에 없는 부분을 일단은 그 자체는 잘못이지만, 지금은 우리가 그걸 그동안 2-30년 동안 놓치고, 그런 사회 아니었을까요?(실무자 2)

■ 비합법적 경로를 통한 입양의뢰

해외입양은 국가에서 인가받은 입양기관 4개에서만 가능한 구조였다. 그러나 입양기관이 아닌 비합법적 경로를 통해서도 해외입양이 이루어졌다. 그런 방법 중 하나는 해외입양부모에게 아동 양육시설이 직접 아동을 결연하는 것이었다.

^{11) 1977}년 시행된 '보호시설에 있는 고아의 후견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의2의 근거하여 부양의무자를 확인하는 절차를 진행하였다. 이에 따르면 시설보호 아동의 경우 '보호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20일 내에 공고를 의뢰하고, 공고의뢰를 받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지체없이 15일간 공고'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에 근거하여 미아가 발생하면 가족찾기를 위한 확인공고를 해야 하는 절차가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실무자의 언급에서 알 수 있듯 제도는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있었던 상황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입양을 할 수가 없는데 아동 양육시설이 불법적으로 해외 양부모에게 입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불법적으로(실무자 1)

■ 입양기관의 산업화

입양기관은 아동을 최대한 많이 해외로 입양 보내는 것을 목적으로 입양사업을 진행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아동이 건전한 가정환경에서 성장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해외입양은 급증했고, 그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창출할 아동 위주로 입양을 결연하였다. 아동을 빨리 보낼수록 아동을 보호하는 비용이 덜 들었으므로 3개월 미만일 때 아동이 해외로 떠날 수 있도록 입양기관은 총력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판단이 가능하다. 표면상 아동이 어릴수록 입양가정에서 적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지만, 배후에는 입양기관의 비용을 절감하고 이익을 최대화하는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할 수 있다.

3개월 미만의 아이를 보내는 게 제일 수익이 많이 나요. (중략) 입원하거나 다른 변수가 생기면 그만큼 이제 위탁 양육비도 지체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니까 (실무자 3)

3개월 미만에 가는 게 제일 정상적이고 기관에서도 제일 원하는 거고, 그리고 아이도 제일 건강한 아이니까 좋은 거죠. (중략) 4, 5개월만 되면 난리가 나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실무자 3)

해외입양이 증가하면서 입양기관은 업무를 확장하였고 해외에 있는 입양기관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경우도 있었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부금을 준 입양기관에 기관차원에서 더 많은 입양 아동을 할당하는 식으로 기관 방침을 변경하면서 입양실무 담당자와 갈등이 발생하기도 하였다. 입양기관은 심지어 가족찾기를 원하는 해외입양인에게 후원을 요구한 사례도 있었다.

미혼모 시설, 장애인 시설, 뭐 이런 시설들을 막 사기 시작하면서 미국에 있는 기

관득한테 기부금을 받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입양비 외에 기부금을 받기 시작하 는 거예요 장애인을 위한 어떤 뭐를 설립한다. 미혼모 시설을 만든다. 그러면서 이 제 저희 사회복지사하고도 많이 이제 갈등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는 (중략) 불안정 한 기관인데도 기부금을 더 주는 기관에 아이를 더 할당하는 그런 이슈들이 생기. 기도 시작하고(실무자 3)

기관 중에서 쉽게 쉽게 다 되는 기관들은 돈도 더 많이 내고 더 빨리 애들도 데려 가고 (중략) 아마 기부금을 냈을 거예요. 그래서 쿼터도 많이 주고 (중략) 기관들은 또 한국에서 쿼터 많이 받으려고(실무자 3)

가족 찾기를 위해서 (중략) 입양인하고, 입양인 남편이 같이 왔어요. (중략) 후원을 하라 그러더라고요.(실무자 4)

- ③ 입양아동의 입양가족 인계 과정
- 대리입양제도: 유학생 등 비전문가를 활용한 에스코트

해외입양 아동의 인계 과정은 한 사람이 아동 2~3명을 에스코트해서 수령국 공항에 서 기다리는 입양가족에게 인계하는 시스템이었는데, 에스코트를 담당하는 부서도 따로 있었던 상황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입양실무자 중에는 이러한 대리입양제도가 불가피했 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실제로 대리입양제도가 없었다면 1980년대 당시 한 해 입양기관마다 아동 수천 명씩을 해외로 입양 보내는 상황은 가능하지가 않았을 것이다.

모집을 했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해외 유학생이 저렴하게 이제 에스 코트를 하면 이제 항공료가 무료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에게 이제 의뢰를 하는 거 죠. 그러면 그 에스코트할 그 사람들을 모으는 또 부서가 있었어요.(실무자 1)

에스코트는 사실은 애를 그냥 보내는데 할 수 없이 이렇게 보내니까. 제일 많은 에스코트는 유학생들이. 그냥 상관없는 자기 유학생들이 자기의 비행기 값을 덜기 위해서 그냥 애기들을 데리고 가는(실무자 2)

당시 외국의 교수로 외국에 공부하러 가는 사람들이 외국에 갈 때 조금만 기관에 돈 내고 그 애들을 돌보며 가면 비행기 요금을 적게 물고 가는 게 많이 했죠. 그일을 많이 했죠. 기관들이(실무자 3)

3명이고 영아인 경우는 뭐 2명(실무자 1)

이러한 에스코트 방식을 활용한 해외입양은 입양인 인권을 침해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였다. 대리입양제도는 입양기관과 해외입양부모에게는 무척 편리한 제도이지만, 아동에게는 무척 위험한 제도였다. 이 제도는 한국에서 직접 예비 해외입양부모가 입양부모로서 적격한지 보고 판단할 기회를 박탈했을 뿐 아니라, 최근 주목을 받은 추방입양인발생의 원인으로 지적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는 해외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가서아동을 만난 후 한국 가정법원에서 입양을 완료하고 미국에 입국했을 때만 아동의 시민권을 자동으로 받게 하는 IR3 비자를 발급해 준다. 하지만 아동이 대리인의 인도로 미국에 입국하게 되면, 미국에서 새롭게 입양절차를 밟아야 하는 IR4 비자를 받게 된다. IR4비자를 받고 입국한 아동은 입양부모가 입양절차를 밟은 다음 다시 시민권을 신청해야하는데, 이 절차가 복잡하고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든다. 또한, 이 절차를 입양부모가 모르거나, 아동이 학대 등의 이유로 이 가정 저 가정으로 이동하는 과정에 누락하기 때문에 입양아동이 시민권을 받지 못하게 되고, 더 나아가 해외입양인 추방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생기는 것이다. 다양한 차원에서 해외입양인을 만나고 돕는 해외입양인 지원 단체실무자는 이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해외입양인을 많이 보고 지원한 경험이 있어, 대리입양제도의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양 부모가 한국을 방문하지 않고 아이들을 에스코트해 준 제도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게 6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중략) 사실은 입양인들의 인권침해에 아주 중대한 원인 중의 하나였다. (중략) 에스코트가 결국은 추방의 원인이었잖아요. 왜냐하면 IR4를 가지고 갔으니까 IR3를 가지고 가면 추방될 수 없는, 추방될 수 없는 (중략) 에스코트가 모두 한국, 관계된 정부의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외교부도 그렇고, 법무부도 그렇고, 보건복지부도 그렇고 이 에스코트 제도를 용인하는,

가정법원의 판결 제도를 도입하지 않은 이 일은 사실상 그 이전에 모든 제도가 민 간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근원적인 토대였잖아요. (중략) 엄청난 재정적 이익을 만들어 가는 중요한 프로세스였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진정성을 가 지고 "아동 최선의 이익이 뭐냐?"라고 정말로 묻는다면, 이렇게 잔혹한 길은 가서 는 안 되고(실무자 4)

에스코트 시스템 자체가 굉장히 폭력적인, 아주 전형적인 폭력적 실천이었다고 생 각 (중략) 보호, 아동 보호에 아주 국가가 전혀 감수성이 100% 없는 그래서 아동의 삶을(실무자 4)

■ 대리입양제도: 기록의 뒤섞임

입양아동을 해외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데려가지 않고도 가능하게 했던 대리입 양제도는 아동이 해외로 쉽게 갈 수 있는 통로의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점 이 있다. 전문가의 강력한 비판을 받았던 대리입양제도는 한국에서 해외입양이 처음 시 작했던 시기인 1950년부터 미국 해외입양부모의 자국 정부를 향한 적극적인 로비와 한 국 정부의 승인으로 인해 가능해졌다. 대리입양제도는 아동의 인권을 크게 침해하는 제 도였지만, 때로는 아동을 직접 만나 보지도 않고 입양한 입양부모에게 예상치 못했던 아동의 문제로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심지어는 아동을 한 명 이상 동시에 에스코트하는 과정에서 서류가 뒤섞여 버리는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였다.

건강한 아이인 줄 알고 받았는데 준비가 안 돼 있는 부모이던 뭔가 그러면 두 사람 뿐만이, 두 가정의 이 아이도 그렇지만 저쪽 가정도 파괴가 되다시피 (중략) 그래서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굉장히 신중한 문제이기도 하고(실무자 3)

도착을 했는데 페이퍼가 다 섞여버린 거예요. 그 아이들끼리 (중략) 입양 기관에 서는 시설에서 올 때부터 섞였다. 그렇게 자료를 면피하기 위해서 그런데 서류 관리가 제대로 안 됐겠죠? 그래서 입양인들이 같이 도착한 사람들끼리 지금 모 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 사태를 밝혀가기 위해서 노력하는데(실무자 4)

■ 대리입양제도: 사후관리의 부재

대리입양제도 문제와 관련해서 발생했던 또 하나의 문제는 아동이 수령국에 도착한 후 입양가정으로 보내지기 전 먼저 그 나라의 새로운 문화와 언어를 습득한다는 명목으로 시설에서 일정 기간 생활하게 했던 한 수령국의 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아동의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일로 예비 해외입양부모가 직접 한국에 와서 아동과 일정 기간 애착관계 형성을 위한 시간을 보내고 난 후 한국 가정법원에서 입양허가를 받은 다음 함께 출국했다면 절대 가능하지 않은 일이었을 것이다.

고아원에 먼저 들어가요. 가정으로 가지 않고 (중략) 이제 아이들이 도착하면 바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아이를 고아원에서 보호를 해요. 고아원에서 보호를 하는데, 그럼 거기는 형제들도 같이 오고, 나이 든 아이들이 많이 와서, 5살 넘은 아이들이 주로 많이 와서 (중략) 한 4, 5개월 사는 (중략) 아이들이 기억하는 가장 중대한 건 한국말을 서로 못하게 했어요. (중략) 불어 가정으로 갈 사람들은 불어를 배우고, 독일 가정으로 가는 아이들은 독일어를 배우는데, 아주 강력한 억압을 통해서 (중략) 일종의 워싱 프로세스(washing process)죠. (중략) 입양인들이 다기억했죠. (중략) 한국말을 못하게 하는, 그렇게 해서 독일 말과 불어를 익혀서 가정에 들어가서 소통이 가능하도록 조금, 어떻게 프로세싱(processing)하는 거였죠 (실무자 4)

④ 사후관리 문제

■ 사후관리 책임의 불명료함

한국에서는 해외입양 절차가 아동이 입양가정과 결연된 후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면 완료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 절차상 입양부모에게 인계되는 순간 아동국적이 바뀌므로 사후관리의 책임은 수령국에 있다고 생각했고, 우리나라 입양기관에 사후관리 의무가 있다는 것조차 인식하지 못한 입양기관 실무자도 있었다. 한편 당시 입양기관에서는 아동을 입양 보내면 그것으로 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관리를 하지 않았지만, 당연히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인식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사후관리는 입양기관에서 전담하는 담당자도 필요하지만, 국가의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입양 절차나 사후 관리에 대해서는 전혀 국가가 뭐라 그럴까 서비스도 없었고 그 거에 대한 어떤 의무도 몰랐던 것 같아요. 정부가(실무자 1)

입양 부모에게 입양이 되는 순간 아동 국적이 바뀌어요. 저희가 사후 관리할 수 있는 책임이 있는 게 아니라(실무자 1)

감독을 해야 되는 게 있지 않을까요? 체크가 돼야 되고? (중략) 우리나라 그거 마 음먹고 하면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중략) 전적으로 우리나라의 책임인 거잖아 요. 그래서 그거는 확실하게, 그거는 확인이 돼야 될 것 같아요.(실무자 3)

그것을 전담하는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중략) 점검은 정부가 해야 되겠죠. (중략) 그거는 그게 문제인 거지 입양 가서, "입양 갔으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 같아 요.(실무자 3)

■ 파양과 재배치의 문제

해외로 입양간 아동 중에는 처음 배치된 입양가정에서 부적응의 문제, 입양부모가 예 상하지 못했던 아동의 건강 문제 등으로 양육이 어렵다고 해서 새 가정에 재배치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는 입양부모의 입양 적격성을 심사하는 과정과 자신이 입양한다고 결 정한 아동의 욕구를 충분히 이해하고 충족할 수 있게 준비하는 과정이 얼마나 잘 이루어 졌는지를 의심하게 하는 동시에 해외입양기관에서 아동 적응을 위한 사후관리를 얼마나 잘 진행하고 있는지를 우려하게 한다. 나이가 들어 영유아보다 삶의 경험이 더 많은 아 동은 당연히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는 데도 더 많은 어려움을 경험할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따라서 나이든 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은 좀 더 철저히 심사하고 준비해야 하고, 배 치 후에는 다른 가정보다 훨씬 더 집중적인 사후관리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애가 입양을 갔는데 거기서 적응이 잘 안 돼서 이 부모의 가정을 바꿔야 되는 경우 들이 있어요. 그 부모가 얘를 못 감당을 한다든지 건강한 아이를 원했는데 애가 자라면서 보니까 장애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 장애를 부모가 자기는 장애 아이를 컨트롤할 수 없다. 그러면 그 아이를 이렇게 다른 부모로 바꿔주는 그런 과정이불행히도 생겨요.(실무자 3)

자기 형하고 자기하고 둘이 이제 입양돼서 한 가정에서 (중략) "우리한테 감사해야 된다. 밥을 하나, 빵을 하나 받아도 감사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가정의 분위 기를 견디지 못하고(실무자 4)

"엄마라고 불러라, 아빠라고 불러라." 그럴 때마다 "아니 나는 엄마가 따로 있어" (중략) 따로 있다. 그러니까 이 관계성이 굉장히 깨진 거예요. (중략) 국제간의 입양 안에는 존재한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게(실무자 4)

좀 장성한 아이들, 아이들이 조금 자기 부모를 안다든지, 적어도 학교를 다녔다든지 그런 아이들의 경우는 자기가 입양 가는 거를 모르고 가요. (중략) 자기가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돌아올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양부모한테 정을 주지를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실무자 3)

■ 시민권 취득의 문제

최근 해외입양인에게 중요한 이슈로 부각된 시민권 취득 관련 문제는 입양기관의 사후관리 부재를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시민권 문제는 해외입양 업무를 담당했던 실무자도 그 중요성을 전혀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입양기관이 전문성 있는 아동복지 기관으로 인정받으려면 실무자가 입양실천에서 필요한 전문성과 실천역량을 갖추는 데 필요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면 실무자는 당연히입양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해서 실천하려면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려면 반드시 확인하고 사후관리해야 할 부분이 무엇인지를 숙지하고, 필요한 실천을 했을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전무했기에, 아동이 해외에 입양 간 후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외 입양기관을 통해 어떤 내용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지 못했고, 사후관리의 필요성도 인식하지 못했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불행히도 이러한 입

양기관의 무지와 태만에 따른 전문성의 부재는 결국 아무 책임이 없는 해외입양인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실 시민권 영주권이 뭔 소리인지도 (중략)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도 잘 몰랐고 근 데 기관 안에서도 그런 거를 듣지 못했고(실무자 3)

시민권 얘기는 뭐 들어본 적은 없는 것 같고(실무자 2)

우리는 그냥 보내면 끝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게 좀 강했던(실무자 2)

자기는 이제 그 집이 자기가 자기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결국 자기가 스위스 시민권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입양 프로세스를 진행을 안 한 거예요. (중략) 자유 롭게 성장을 했는데 보니까 자기는 스위스 시민이 아니고, 그래서 뿌리가 없는 사 람이 된 거예요. 모든 면에서. (스위스 정부가) 이 사람을 망명자(asylum seeker) 로 이렇게 법적 지위를 부여했어요.(실무자 4)

⑤ 기록관리 문제

■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

해외입양인이 정보공개를 요청할 때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는 점은 본인의 정보가 매우 부족하다는 것이다. 이것은 입양기관이 철저한 기록관리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데서 기인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한 입양기관에서는 해외입양 아동 수가 증가 하면서 축적된 기록의 양이 늘어나자 공간 부족을 이유로 기록을 폐기하려는 시도까지 있었다고 한다. 그 기관 실무자는 당시에는 해외로 입양된 아동이 성장하면 귀환할 것이 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서류작성에만 급급했던 상황을 지적하였다. 다행히 당시 입 양기록의 중요성을 알고 기록의 폐지를 온몸으로 막았던 한 기관 실무자의 의지와 동료 들의 공동 노력으로 기록을 온전히 보존할 수 있었다. 당시 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인에게 는 너무도 소중한 자기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실현하는 데 필수적인 기록을 폐기할 생각을 할 정도로 전문성이 부족했고, 교육 등을 통해 전문성을 향상하려는 노력에도 관심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입양 간 아이들이 뿌리 찾기를 그렇게 돌아올 거라는 건 그때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보내는 거에만 급급을 (중략) 오리엔테이션 받을 것도 없고(실무자 3)

아이들이 이 다음에 자라서 자기에 대한 어떤 뿌리를 찾기를 시작할 거다.(실무자 3)

파일들은 다 사과박스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중략) 한 5년이 지나면 그거 폐기했으면 (중략) 이거 서류 없어지면 안 된다고. 그거 우리 각자의 살림처럼 챙기고 그랬지. 기관이 관심도 없었죠.(실무자 3)

■ 기록의 왜곡

더 많은 아동을 해외로 입양 보내기 위해 입양기관이 서로 경쟁하는 시스템은 입양기록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족과 연결된다. 입양기관은 입양을 보내는 것에만 관심을 집중했기 때문에 입양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록에만 관심이 있었고, 기록이 잘못되더라도 입양이 성사되면 상관없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한 기관에서 실무자는 지방사무소에서 해외입양 대상으로 지정해 서울에 올린 아동이 아직 입양을 보내기에는 인수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되돌려 보냈는데, 얼마 후 같은 아이가 다른 이름으로 또 올라 온 것을 보고 놀란 경험을 언급하였다. 기록의 왜곡과 관련한 문제는 기록관리의 중요성도 모르고 관심도 없는 민간 입양기관에 기록 관리를 전적으로 맡겼기 때문에 나타난 문제로 해외입양의 궁극적인 책임 주체인 국가가 관리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

호적 사진을 만들기 위해서 딱 사진을 다 찍었는데 그리고 위탁 가정에다 보냈는데 제가 자세히 파일을 자세히 보니까 (중략) 똑같은 애예요. 근데 그 애가 이름이바뀌어서 왔더라고 딴 이름으로 왔어요. (중략)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어디까지가 진짜 기아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실무자 3)

나라에서 책임지고 관리하는 게 맞다고 봐요.(실무자 5)

■ 기록 보존과 제공 등 입양기관의 지원 부족

앞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입양기관은 해외입양인의 기록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지 못했기 때문에 기록 자체를 제대로 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한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의심할 수 있다. 이는 해외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상황과 관련 된다고 할 수 있다. 당시에는 가족찾기 담당 부서는 물론 없었고, 해외로 입양 간 아동이 성장해서 가족찾기를 위해 기록을 요청할 것이라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으로도 생 각할 수 있다.

근데 애초의 기록 자체가 별로 없는 게 허다해. (중략) 지금 같으면 애 앞날을 위해 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었을 텐데 우리 자체도 그러지 않았나? 그거 를 밀어붙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실무자 3)

(가족찾기) 담당하는 부서는 없었던 것 같아요(실무자 2)

입양기관이 그게 법제화되지 않고는 본인들이 그렇게 하려 할까 싶어요. (중략) 제 일 중요한 그 사람의, 혹시 서류 관계된 자기네 뭐 본적이라든지, 부모의 이름이라 든지 이런 거잖아요. 당연히 법적으로 제공하게 법이 마련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 요.(실무자 3)

입양인들이 이제 여러 욕구가 있는데 그중에 욕구 중에 하나가 자기 가족을 찾는 문제인데 (중략) 혹시 당신이 좀 도와줄 수 있느냐 그래서(실무자 4)

⑥ 해외입양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

■ 아동인권과 아동 '보호' 간 인식의 괴리

입양기관 실무자가 해외입양 업무를 하던 시기에는 모든 일을 서류상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결연 등의 업무를 할 때 아동이 좋은 가족을 만나 성장하길 바랐지. 만, 아동 인권을 충분히 고려한 선택을 했는지 판단하기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열악한 아동양육시설에서 성장하는 것보다는 좋을 것으로 생각하고 해외입양을 선택했지만, 사실 인권 보장의 방안이었는지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장애 아동이나 양육시설에서 생활하는 나이든 아동이 한국 사회에서 겪는 차별이 심하니까 해외입양을 보내 좀더 나은 삶을 살게 한다고 생각했지만, 과연 그 아이들이 언어도 안 되고 문화도 다른 가정과 사회에서 잘 성장할지에 대한 의문이 생기기도 하였다.

장애인 시설 그럴 때 이제 그 입양을 보냈는데, 그 입양부모가 그럼 장애인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였는지에 대한 판단은 사실은 저 같은 경우는 서류상으로만 (중략) 아동이 좋은 가정으로 가기를 바라지만 그게 정말 아동의 인권에 적절했는 가 그거는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유럽의 경우는 연장아도 많이 데려갔어요. 7세 이상의 연장아, 그럼 그 아이가 가서 그 나라에 가서 언어도 안 되고 그 적응하기도 어려운 나라에서 가서 있는 게 더 적절할까? 근데 그 당시에 우리나라 아동양육시설은 정말 열악해. 열악해서 이런 양육시설에서 그냥 연장아로 살아가는 게더 좋을까? 그런 고민을 했었죠.(실무자 1)

장애 아이들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그런 곳으로 가서 치료받고, 치료받고 오는 아이도 있었어요. (중략) 언청이조차도 우리가, 우리나라에서 감당을 못해서 보내는 거기에 무슨 인권이 있겠어요. (중략) "입양이 최선이에요."라고 상담하는 그 시기를 살아내는, 거기 인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그걸 인권이라고, 인권이라고 생각하면서 하지도 않았던 것 같고요.(실무자 3)

인권이라는 감히 생각도 못한 것 같고, 여기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시설 보다는 그게 더 낫다고 생각하고 이랬지 않았나 싶어요. 네. 인권의 사각지대가 아 니었나 싶은데요.(실무자 3)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입양이 그 특성상 아동에게는 선택권이 없고 부모의 선택으로 이루어지는 구조라고 하였다. 따라서 입양에서는 아동의 인권보다는 보호라는 개념이 우세했다. 또한 국제사회의 비판에 대응하면서 비로소 해외입양을 아동인권의 차원

에서 문제로 인식하기 시작했다고 하였다. 해외입양은 실제로 아동의 입장에서 이루어 지기보다는 복지비용의 절감 등을 위해 진행한 것이므로, 아동 인권을 논한다는 것 자체 가 모순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아동의 인권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선택할 수 있는 건 전혀 없죠. 그 부모가 선택 하는 거죠.(실무자 2)

인권이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보호 (중략) 얘를 얘가 살 수 있는 방법? 아동 보호? 보호의 아동 보호에 한 방법이라고 생각을 했죠.(실무자 2)

아동의 인권 그런 거에 대해서 정말 무지했던 그런 사회와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 문에 (중략) "안 돼지."라고 생각한 건 결국 외부인의 시각에서부터 그렇게 됐거든 요.(실무자 2)

애들이 뭐가 필요한지보다는 그러니까 되게 빠른 해결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 러니까 왜냐하면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상황인 사람을, 아이를 키울 수 있게, 길게 도와주려고 그러면 사회복지 비용이 많이 들잖아요. 사실은 근데 되게 정서적으로 는 그니까 합리화시켜도 되는 어떤 것, "더 좋은 나라에 보내준다." 이런 식으로 (중략) 그건 인권에 이제 존중을 해주지 않은 거니까. 그냥 내가 누구인지 알 권리 도 존중을 못 받은 거고, 그래서 나라 입장에서는 돈을 복지비용을 세이브(save)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인 거고, 방법인 거고. 그래서 애들 수출했다고 얘기를 하 잖아요. 사실 그게 거짓말은 아닌 거니까, 사실은(실무자 5)

■ 해외입양 절차의 개선 대 중단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중에는 해외입양을 중단하기보다는 가장 먼저 친생가족이 직접 아동을 양육할 수 있게, 국내입양을 위해 노력한 후 최후 방안으로만 해외입양을 고려해 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자가 있었다. 반면 지금처럼 출산율이 낮고 사회환경이 좋아졌 는데 해외입양을 중단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인지를 반문하거나 해외입양은 관련 모든 절차가 완벽하고도 정의롭게 이루어지는 이상적인 상황에서만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실무자도 있었다.

해외입양을 절대로 안 된다고는 생각하지 않아요. 그거는 할 수 있는 방법이 될수 있어요. 하지만 최후의 방법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전에 이제 어쨌든 우리 사회 안에서 케어하는 것이 아동의 그 건강한 성장을 위해서 가장 좋은 방법이 될텐데(실무자 2)

보호 체계를 마련해 줘야지 되는 것 같은데 (중략) 미혼모로부터 탄생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미혼모에 대한 인식 개선 이런 거 필요하고. 그리고 미혼모들이 양육을 할 수 있는 우리 사회적 조건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가장 가정과 유사한 형태의 보호 체계를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필요하기 때문에 (중략) 작은 규모의 가정, 유사 가정과 같은 그룹홈의 형태를 갖춘 그 보호 체계, 이런 것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실무자 2)

국내입양이 먼저 이제 고려가 돼야 되는 거는 확실히 저도 동의를 하고요. 근데 이제 국내입양이 진행되기 이전에 우선 친부모가 키울 수 있게 해주는 게 제일 중요한 거고 (중략) 해외입양은 진짜 가장 마지막 방법이긴 한데 근데 (중략) 또 너무 순서만 이제, 이렇게 뭐 솔직히 한국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이제 해외입양 안 보낸다. 국내입양으로 다 한다. 근데 그 안에 내실이 중요한 거잖아요.(실무자 5)

"스톱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중략) 교육받은 사람도 엄청 많은데 말 자체가 안 되잖아요? 인력이 없다. 출생률이 낮아져서 문제라고 하는데 그렇게 가정적으로 어렵게 태어난 아이는 한국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이 안 되나요? (중략) 해외입양을 하고 있는지 아직, 사람들이 몰라요.(실무자 3)

"해외입양을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메시지를 내보낸다는 거예요. 조건이 있다. 에이부터 제트까지 모든 절차가 이 모든 단계별 정의가 실현되는 걸 전제로 하고 반

대하지 않는다. (중략) (그러나) 이 절차가 실제로 안 된다는 거 자기가 안다. 그러 니까 자기는 "해외입양을 반대한다."라고 말을 해야 된다. 그런데 (중략) 입양인 사회로부터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 또 국제사회로부터도 동력을 받기가 어렵다. 왜 냐하면 국제사회의 주류사회 자체가 일단 해외입양을 전제로 하고, 헤이그협약 같 은 게 있으니까. 그래서 그 전제를 궁극적으로 하면 (중략) 궁극적인 어떤 길을 걸 어가기 위해서 "해외입양을 반대한다."라고 말하는 게 전략적으로 옳은지 아니면 찬성한다고 말함과 동시에 에이부터 제트까지 모든, 모든 절차가 원가정에게 있어 서나 입양 아동에게 있어서나 또 입양 부모 가정에게 있어서나 인권 훼손적인 요 소를 거의 제로에 가까울 정도로 끌어내릴 수 있다면 반대하지 않는다. 매우 이상 적인(실무자 4)

■ 해외입양과 국가의 역할

한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해외입양 체계에서 국가는 입양기관의 아동 수를 할당하 는 개입을 했음에도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관한 전반적인 책임을 회피하였다고 지적 하였다. 국가가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위해 사회 안전망 등 사회복지 기반을 강화하지 않고 해외입양을 선택해 아동 인권이 침해당하는 상황으로 내몬 것은 국가 책임의 방기 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국가의 소극적인 자세와 공백은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로 이어졌기 때문에 국가의 부작위는 그 자체로 작위의 한 형태였음을 강조하였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 쿼터제라고 하는 것도 가장 강력한 국가의 개입 수 단이잖아요. (중략) 연초에 그거를, 넘버를 받아가지고 사업 계획을 숫자 맞춰가지 고(실무자 4)

국가의 작위와 부작위를 나눠요. 나는 부작위도 작위라고 생각해요. (중략) 국가가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부작위 했지만 그러니까 노력해서 결과를 안 냈으니까 그거를 가지고 우리는 부작위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사실상은 그런 좋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과정에 국가도 오히려 그 좋은 제도를 만드는 일에 있어서 역주행하 는. 거꾸로 그게 안 되게 만드는 역할도 국가가 계속 했기 때문에 "부작위는 없 다."라고 까지 우리가 말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부작위 했다." 그러

면은 용서가 되는 거예요. (중략) 정황적으로도 겉으로 보면 부작위였기 때문에 지 금 제도가 이 모양이잖아요. 근데 그게 부작위냐 부작위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인 행동으로 작동했다고 보고 방치라고 그러지만 방치 자체도 내가 보기에는 작위예 요. 방치하는 것도 하나의 행동이잖아요.(실무자 4)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해외입양 체계에서 발생하는 제반 문제에 대한 최종 책임은 국가에 있고 국가의 역할은 해외입양인의 전 생애에 걸쳐 모니터하고 지원해 주는 제도 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주장하였다. 또한 국가는 입양수령국과 함께 해외입양에서 파생 한 인권문제를 공동으로 조사하고, 인권침해로 인한 아픔과 고통에 대해 해외입양인에 게 사과하고, 적절한 배상을 통해 그들과 함께 치유와 화해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고 피 력하였다.

국가의 개입이 우선은 (중략) 계속 모니터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입양을 가 고 나서는 (중략) 그 나라에서 어떻게 애들이 지내는지 (중략) 프로그램 계속 지원 해 주는 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 5)

입양된 아이들이 그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 되는 걸 고려를 해서 모든 제도가 만들 어졌으면 저는 좋겠어요. (중략) 뭐가 필요하고 그걸 다 고려를 하는 거니까 국내 입양을 하던 국외입양을 하던. (중략) 성인입양인이 되면은 또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거고 국내입양을 한다고 해도, 친가정을 찾고 나면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되게 많잖아요. 입양인이 살면서 나이 때 자기 사는 그 시기에 따라서 필요한 점이 뭔지 를 고려해서 모든 제도가 맞춰지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실무자 5)

한국이 입양을 가장 잘 되고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 신화, (중략) 탐욕으로부터 만 들어진 거예요. 수령국의 수요로부터 만들어진 건데 지배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자 기 정당화라는 그런 하나의 프레임이죠. (중략) 그런 지점에 대해서 진실에 직면할 용기를 입양 수령국가들도 가져야 되고, 그 진실에 직면할 용기를 위해서는 공동 조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국가가 사실은 모든 걸 내려놓고, 무엇이 실체였는 지, 실체를 알아가는 절차상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중략) 한국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중략) 그래서 한국과 공동 조사를 해서 나오는 결과에 대해서 (중략) 실 제로 70년 동안 국가 간의 아동 입양이라고 하는 것을 제도화했던 소위 우리 수령 국들이 새롭게 성찰하는 계기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국가 간의 아동 입양이 인류 역사에 있어서 (중략) 아동의 인권을 근원적으로 보호하기 어려 운 제도였다라고 하는 거를 사실은 좀 받아들이고 헤이그협약 같은 거를 전면적으 로 개정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역사의 길로 들어서는 데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그 리고 공동 조사가 그러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국 정부도 공동 조 사에 나설 용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실무자 4)

배상에 관한 문제는 나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의 고 백, 국가의 고백적 행위이기 때문에 그 배상을 돈의 문제로 치환하면 안 되고요. (중략) 제일 중요한 입양인의 담론 중에 하나가 피해자로 만들지 말라는 거거든요? (중략) 국가의 권력의 오남용 자체가 잘못됐다는 걸 인정하고 그 일로 인해서 사실 은 생애 경로 가운데에서 성공했더라도 그 사람들은 엄청난 성장 노동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 몇 백배, 몇 십배의 노동을 기울이고, 인생을 성공시켰다 하더라도 그 사람들의 삶에 가해진 우리 제도의 위해성 때문에 아파왔던 일들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사과하고, 그 사과에 따르는 어떤 배상의 문제는 아마 조금 더 실질적으로 (중략)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이제 국가의 자기 치유의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실무자 4)

(4) 요약과 시사점

지금까지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조사를 통해 해외입양의 절차상 발생했던 인권과 관련한 상황과 문제를 확인하였다. 해외입양절차를 중심으로 진행했던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면접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는 입양업무를 시작하면서 처음으로 해외입양과 관련한 상황을 인지하였다. 입양기관의 전반적 흐름은 입양의뢰-건강 상태 확인-대기-결연-수 속 단계를 거쳐 이루어졌으며, 해외입양으로 창출되는 입양기관의 이익에 따라 많은 아 동을 해외로 송출하는 과정으로 진행했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해외입양 아동 수를 할

당했던 쿼터제로 인해 더 많은 아동을 할당받기 위해 입양기관 간 경쟁은 치열하게 이루 어졌으며, 이러한 경쟁 시스템하에서 입양기관은 병원과 양육시설과 같은 유관기관을 통해 더 많은 아동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했다. 또한 기관의 이익 창출을 위해 비용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최대한 빨리 입양 결연이 이루어지게 할 방안을 모색했다. 따라서 고아호적 창설에 대해서도 문제의식 없이 입양 결연을 위한 하나의 행정 절차로 인식했 고, 입양인의 정체성에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인식은 부재하였다. 셋째, 입양 가족에 인계하는 방법으로 활용했던 대리입양제도는 많은 아동을 효율적으로 보내기 위 한 방법으로 인식하였다. 그런 인식과는 달리 대리입양제도는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침 해하는 주요 원인으로 작동하였음을 알 수 있다. 넷째, 아동이 입양가정으로 인계되면 입양절차는 종료하는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사후관리에 대한 이해는 부족했다. 이러 한 인식은 부실한 기록관리와도 연관되었다. 사후관리는 수령국의 책임으로 한국 입양 기관에서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으로 이해했고, 기록의 왜곡으로 발생할 문제에 대한 고민도 크지 않았다. 이렇듯 사후관리와 기록관리에 대한 인식 부족은 결과적으로 해외입양인의 겪는 정체성 혼란의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 장하는 방향으로 해외입양 절차를 개선하거나 중단하는 논의를 하려면 먼저 국가가 책 임 있는 역할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알 수 있었다. 현재까지 지속되는 해외입양 의 문제는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고 방임한 결과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문제의 논의를 출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입양 관련 실무자 조사 결과 해외입양절차는 아동의 입장에서 결정하고 진행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아동 최선의 이익 혹은 아동을 위한 복지 차원에서 불가피 하게 해외입양을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하지만, 결국 아동의 인권보다는 아동을 원하 는 입양부모와 입양기관의 이익을 추구하는 관점에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과정에서 국가는 해외입양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환경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인권 책 무자로서 역할을 방기해 수많은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인권을 침해한 결과를 낳았다.

2. 양적 연구결과

1) 일반적 특성

본 연구는 온라인 설문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658명을 표본으로 최종 분석하였다. 해 외입양인의 일반적 특성은 먼저 인구사회학적 특성[표 19 참조]과 입양과 관련된 일반 적 사항으로 구성하였다.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은 다시 입양기관명 등 한국에서 입양을 주도한 주체, 입양 이후 한국방문 횟수, 한국에 거주한 기간 등을 포함한 일반 적 사항 I [표 20 참조]과 연구참여자의 출생연도와 나이, 입양 당시 국가명, 현재 거주 하는 국가를 포함한 일반적 사항 II [표 21 참조]로 구분해 제시하였다.

(1) 인구사회학적 특성

[표 19] 인구사회학적 특성

n = 658

	구분	n	%
	남성	129	19.7
출생시 성별	여성	526	80.2
	밝히고 싶지 않음	1	0.2
	남성	124	18.8
	여성	510	77.5
형제 서벼	제3의 성	20	3.0
현재 성별 -	트랜스젠더	1	0.2
	밝히고 싶지 않음	2	0.3
-	기타	1	0.2
	고등학교 이하	11	1.7
	고등학교 졸업	48	7.3
최종 학력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	134	20.4
최중 약약 · ·	학사 졸업	203	30.9
	석사 졸업	214	32.5
	박사 졸업	48	7.3

	구분	n	%
	미혼	159	24.2
	기혼	285	43.3
	동거	93	14.1
현재 혼인 상태	사별	4	0.6
	이혼	80	12.2
-	별거	23	3.5
	기타	14	2.1
	매우 낮음	43	6.5
	낮음	105	16.0
현재 경제 상태 -	보통	243	36.9
	높음	226	34.3
	매우 높음	41	6.2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인구사회학적 특성을 정리하면 [표 19]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출생 시 성별은 여성이 526명(80.2%)으로 가장 많았고, 현재 성별도 여성(510명, 77.5%)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연구참여자의 최종학력은 석·박사 졸업이 262명(39.8%)으로 가장 많았고, 학사 졸업 203명(30.9%), 2년제 혹은 3년제 졸업 이하 193명(29.4%)순으로 나타났다. 현재 혼인상태는 기혼이나 동거가 378명(57.4%), 그 외 미혼, 사별, 이혼, 별거 기타 등은 280명(42.6%)으로 나타났고, 연구참여자가 인식하는 자신의 현재경제 상태는 보통 이하가 391명(59.4%), 높음 이상이 267명(40.5%)이었다.

(2)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I

한국에서 연구참여자의 입양을 주도한 주체를 파악한 결과, 홀트아동복지회가 가장 많았고(277명, 43.3%), 그다음으로 사회봉사회 142명(22.2%), 대한사회복지회 96명 (15%), 동방사회복지회 91명(14.2%), 모름 22명(3.4%), 개인입양 10명(1.6%) 기타 2명 (0.3%)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에서 해외입양을 할 수 있도록 허가받은 입양기관은 2010 년대까지 총 4개 기관이었는데,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 개인적으로 입양된 사람과 모르겠다고 응답한 사람이 총 32명(5.0%)이나 된다는 사실은 보건복지부에서 공식

적으로 발표하는 해외입양 수보다 훨씬 많은 수의 해외입양이 다양한 경로로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연구참여자가 입양 이후 한국에 방문한 횟수를 살펴본 결과, 한 번도 방문한 적이 없는 연구참여자는 120명(18.3%)이지만, 1회에서 5회 이상 방문한 해외입양인이 488명(74.4%)이나 되고, 현재 한국에서 거주하는 연구참여자도 49명 (7.5%)이나 되었다. 한국에 거주하는 해외입양인 중에는 5년 이상 장기 거주한 사람이 27명(4.1%)이었다.

[표 20]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I

n=658

	구분	n	%
	홀트아동복지회	277	43.3
•	사회봉사회	142	22.2
•	대한사회복지회	96	15.0
한국에서 입양을	동방사회복지회	91	14.2
주도한 주체	개인 입양	10	1.6
•	기타	2	0.3
•	모름	22	3.4
•	무응답	18	_
	방문한 적 없다	120	18.3
•	1회	139	21.2
입양 이후 한국방문	2회	101	15.4
· 횟수	3-4호	114	17.4
•	5회 이상	134	20.4
•	한국에 거주	49	7.5
•	응답하지 않음	1	_
	해당없음	587	89.2
현재 한국에 거주한	1년 미만	17	2.6
기간	1년 이상-5년 미만	25	3.8
•	5년 이상	27	4.1

(3)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Ⅱ

연구참여자의 실제 출생연도는 1970년대(313명, 47.6%)와 1980년대(216명, 32.8%)가

가장 많았고, 입양서류에 표기된 출생연도도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1970년대: 316 명, 48%, 1980년대: 214명, 32.5%). 하지만, 실제 나이와 출생연도의 차이를 계산했을 때는 차이가 없는 경우가 610명(92.7%)이었지만, 나머지 48명(7.3%)은 차이가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 특히 영유아기에는 1~2살 차이는 아동의 발달 상태를 평가하는 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특히 서류상 나이가 실제 나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표기되었을 때는 아동을 지적이나 신체적 지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어 문제가 된다. 실제로 질적 면접에 참여한 한 해외입양인은 입양가정에서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아동으로 여겨 많은 어려움을 겪었는데, 친생부모와 재결합한 후 자신의 나이가 서류상 2살이나 많게 기재된 것을 발견하였다. 당시에는 아동을 배치할 영아원이 없어 육아원에 보내기 위해 아동의 나이를 두 살이나 올렸다고 하는데, 이러한 단순한 편의에 의한 결정이 아동의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이다.

연구참여자의 실제 나이는 평균 45.2세(sd=8.2)이고, 입양서류 상 나이도 45.3세(sd=8.2) 로 거의 차이가 없었다. 연구참여자가 입양된 국가는 미국이 202명(33.2%)으로 가장 많았고, 덴마크 98명(16.1%), 스웨덴 65명(10.7%), 네덜란드 54명(8.9%), 노르웨이 50명(8.2%), 벨 기에 41명(6.7%), 독일 31명(5.1%), 프랑스 27명(4.4%), 기타 14명(2.3%), 오스트레일리아 17명(2.8%), 캐나다 5명(0.8%), 룩셈부르크 2명(0.3%), 이탈리아 2명(0.3%) 순으로 나타났 다. 또한 해외입양인이 현재 거주하는 국가도 입양 당시 국가와 큰 차이가 없었다.

[표 21] 입양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Ⅱ

n=658

구분	실제 출	실제 출생년도 입잉		E기된 출생년도
TE	n	%	n	%
1950년대	10	1.5	11	1.7
1960년대	74	11.2	72	10.9
1970년대	313	47.6	316	48.0
1980년대	216	32.8	214	32.5
1990년대	37	5.6	37	5.6
2000년대	8	1.2	8	1.2

	구분		n	%
		1=1 =101		·
-		하 차이	9	1.4
출생연도의 차이 -		차이	14	2.1
(실제-입양서류) -	차이	없음	610	92.7
(2/11/10/1/1/)	+1세	차이	19	2.9
	+2세 0	상 차이	6	0.9
구분	m	sd	min	max
연령(실제 출생나이)	45.2	8.2	19	69
연령(입양서류 나이)	45.3	8.2	19	68
국적	입양 당.	시 국가명	현재 거주	하는 국가
44	n	%	n	%
미국	202	33.2	222	33.7
덴마크	98	16.1	92	14.0
스웨덴	65	10.7	64	9.7
네덜란드	54	8.9	51	7.8
노르웨이	50	8.2	49	7.4
벨기에	41	6.7	36	5.5
독일	31	5.1	26	4.0
프랑스	27	4.4	19	2.9
오스트레일리아	17	2.8	14	2.1
캐나다	5	0.8	6	0.9
룩셈부르크	2	0.3	2	0.3
이탈리아	2	0.3	3	0.5
기타	14	2.3	69	10.5
무응답	50	_	_	_

(4)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연구참여자의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는 [표 2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7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다음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를 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 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입양된 가정에 입양되었거나 태어난 형제자매가 있는지와 관련 해서는 약 90% 이상이 알고 있었다(질문 5~6번). 또한 자신이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었는지에 관해서도 거의 80%가 알고 있었다(질문 2번). 하지만, 친생부모를 만났거나, 자신이 입양될 당시를 기억해야만 정확히 알 수 있는 질문(1번, 3번, 4번)과 관련해서는 약 5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입양서류에는 친생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가 적혀 있지 않거나, 있어도 연구참여자가 그 정보를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할 수도 있다.

[표 22] 형제자매에 관한 정보

n=658

문항		아니오	모름	total n
世8	n(%)	n(%)	n(%)	total n
1. 나의 친생부모에게는 나 이외 다른 자녀가 있다.	242 (37.1)	113 (17.3)	297 (45.6)	652
T. 다크 현공구도에게는 더 어되 다른 사더가 났다.	242 (68.2)	113 (31.8)		355
2. 나는 나의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	52 (8.2)	437 (69.1)	143 (22.6)	632
었다. 	52 (10.6)	437 (89.4)		489
3. 원가족에 친생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 형제자매가	163 (25.4)	198 (30.9)	280 (43.7)	641
있다.	163 (45.2)	198 (54.8)		361
4. 나의 친생 형제자매는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34 (5.3)	266 (41.6)	339 (53.1)	639
입양되었다.	34 (11.3)	266 (88.7)		300
5. 나의 입양가정에는 다른 한국 가정에서 입양된 형	252 (39.6)	319 (50.2)	65 (10.2)	636
제자매가 있다.	252 (44.1)	319 (55.9)		571
6. 나의 입양가정에는 다른 나라에서 입양된 형제	97 (15.5)	475 (75.9)	54 (8.6)	626
자매가 있다.	97 (17.0)	475 (83.0)		572
7. 나의 입양가정에서 태어난 입양 형제자매가 있다.	242 (38.4)	356 (56.5)	32 (5.1)	630
7. 니크 ᆸᆼ기경에서 대어린 ᆸᆼ 중세사매가 있다.	242 (40.5)	356 (59.5)		598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형제자매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연구참여자만의 응답을 분석해 보면 반수 이상(55.9%) 이 입양가정에서 다른 한국 해외입양인 형제자매가 같이 성장했고, 대다수(83.0%)는 다른 나라에서 입양 온 형제자매가 있었다. 역시 반수 이상(59.5%)은 입양가정에서 태어난 입양 형제자매도 있었다. 이는 다수의 입양가정이 한 명 이상의 입양아동을 입양하고, 입양 후 친생자녀를 낳기도 하는 현상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연구참여자 10명 중 약 7명(68.2%)이 친생부모에게 자신 이외 다른 자녀가 있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약 9명이 자신의 친생 형제자매와 같은 집으로 입양되지 않았고(89.4%),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88.7%)고 응답했다. 아울러 반수 이상(54.8%)이 자신의 원가족에 친생부모와 함께 사는 형제자매가 있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친생형제자매를 최대한 같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주는데, 이는 본 연구의 질적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지적한 사항이었다.

2) 주요 변수 분석 결과

(1) 인권 보호

① 한국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

한국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은 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을 '동의'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은 '비동의'로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23]에 제시한 바와 같다. 모든 문항에서 연구참여자의 약 70% 이상(68.7%~96.1%)이한국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6개 문항 중 한국 입양기관이 자신이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한 문항에 거의 모든 응답자인 96.1%(343명)가 동의하지 않았고,해외 입양을 고려하기 전 자신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한 문항에도 대부분인 95.0%(325명)가 동의하지 않았다. 반면 한국입양기관은 자신의 출생과 원가족에 관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했다고 한 문항(동의: 136명, 31.3%, 비동의: 298명, 68.7%)과 한

국입양기관은 자신의 출생과 원가족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고 한 문항(동의: 153명, 29.5%, 비동의: 365명, 70.5%)에 동의하는 비율은 약 30% 이내로 여전히 낮지만, 다른 문항보다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23] 한국입양기관의 인권보호 충분성

n=658

(한국 입양기관은)		비동의 n(%)
1. 나의 해외입양 절차 과정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96 (21.5)	350 (78.5)
2. 내가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기울였다.	14 (3.9)	343 (96.1)
3. 입양 배치과정에서 나와 내 형제의 분리를 막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7 (17.1)	180 (82.9)
4.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 나의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17 (5.0)	325 (95.0)
5. 나의 출생과 원가족에 관한 기록을 적절하게 보관했다.	136 (31.3)	298 (68.7)
6. 내가 나의 출생과 원가족 기록에 접근할 권한을 주었다.	153 (29.5)	365 (70.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은 4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을 '동의'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은 '비동의'로 구분한 기술통계결과는 [표 24]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참여자 대부분(91%~98.1%)은 모든 문항에서한국 정부가 자신의 인권을 충분히 보호하지 않았다고 응답하였다.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인 98.1%(474명)는 한국 정부가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보았고, 97.5%(395명)는 자신의 해외입양에 앞서서 친생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하지 않았다고 인식하였다. 아울러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 과정에서 자신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고(437명, 92.6%), 해외입양절차에서 자신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하지 않았다(436명, 91.0%)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연구참여자가 해외입양인의 인권보호에 대한 책임이 입양기관보다 한국 정부에 더 있다고 인식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표 24] 한국 정부의 인권보호 충분성

n = 658

(한국 정부는)		비동의 n(%)
1. 나의 해외입양절차에서 나의 최선의 이익을 고려했다.	43 (9.0)	436 (91.0)
2. 나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나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	35 (7.4)	437 (92.6)
3. 나의 해외입양에 앞서서 친생부모를 적절하게 지원했다.	10 (2.5)	395 (97.5)
4.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기 위한 체계를 가지고 있었다.	9 (1.9)	474 (98.1)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입양인이 입양 전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실

①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연구참여자의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은 [표 25]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0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 인하였다. 그다음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에 관해 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 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는 고아호적과 관련한 2개 문항을 제외한 모든 문항에서 반수 이상 (52.3%~78.5%)이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이는 많은 입양서류가 고아호적이나 기아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지만, 친생부모에 관한 정보는 대체로 내용이 매우 빈약하기 때문에 직접 친생부모와 재결합한 경우가 아니면 친권포기와 관련된 정확한 정보를 알지 못할 것이다. 또한 최근에는 많은 해외입양인이 SNS를 통해 활발히 교류하면서 자신들이 가

Note 2. '매우 동의'와 '동의'로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으로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해 분석함.

지고 있는 입양서류에 종종 허위 사실이 기재돼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입양서류에 적혀있는 정보를 믿지 않을 수도 있다.

[표 25]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n=658

문항	ଜା n(%)	아니오 n(%)	모름 n(%)	total n
1. 내 친생부모는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	82 (13.1)	53 (8.4)	493 (78.5)	628
된 정보를 전달받았다.	82 (60.7)	53 (39.3)		135
2. 나의 친생부모는 입양을 위해 친권을 포기하라	76 (12.1)	98 (15.6)	455 (72.3)	
는 강압을 받았다.	76 (43.7)	98 (56.3)		174
3. 나는 친생모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90 (14.2)	167 (26.3)	378 (59.5)	635
3. 나는 신청모가 모드게 합성되었다.	90 (35.0)	167 (65.0)		257
4. 나는 친생부가 모르게 입양되었다.	111 (17.8)	115 (18.4)	398 (63.8)	624
4. 나는 선생두가 모드게 합성되었다.	111 (49.1)	115 (50.9)		226
	83 (13.1)	105 (16.6)	444 (70.3)	632
5. 나는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83 (44.1)	105 (55.9)		188
	57 (9.4)	101 (16.6)	450 (74.0)	608
6. 나는 친생부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	57 (36.1)	101 (63.9)		158
7. 나의 친생부모는 나의 입양절차를 중단하고 싶	46 (7.5)	102 (16.6)	465 (75.9)	613
어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46 (31.1)	102 (68.9)		148
0 115 1131 031E104E13 M3F=1E1	54 (8.8)	240 (39.0)	322 (52.3)	616
8. 나는 내가 유괴되었다고 생각한다.	54 (18.4)	240 (81.6)		294
9.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233 (37.9)	173 (28.1)	209 (34.0)	615
고아/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	233 (57.4)	173 (42.6)		406
10.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	134 (21.9)	191 (31.2)	287 (46.9)	612
만, 고아/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	134 (41.2)	191 (58.8)		325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먼저 고아호적과 관련해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한 사람 중 57.4%(233명)는 자신이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지만, 고아나 기아라는 것을 증명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응답하였고, 41.2%(134명)는 고아호적을 가지고 있거나 기아로 보고되었 지만, 고아/기아라는 것에 반하는 증거가 있다고 응답해 고아호적과 입양서류에 대한 불신을 표명하였다. 한편 자신이 유괴되었다고 생각하는 해외입양인도 18.4%(54명)로 나타나 해외입양절차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음을 암시하였다.

친생부모의 친권포기와 관련해서 '예'나 '아니오'로 응답한 사람 중 60.7%(82명)가 자 신의 친생부모는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다고 응답하였다. 친권포기와 관련된 내용을 알고 있는 연구참여자 중 35%(90명)은 자신이 친생모가 모르 게 입양되었고, 44.1%(83명)는 자신이 친생모의 의사에 반해 입양되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 중 친생부가 모르게 입양된 경우는 49.1%(111명)로 더 많았고, 친생부의 의 사에 반해 입양된 경우도 36.1%(57명)나 되었다. 자신의 친생부모가 입양을 위해 친권 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다고 한 연구참여자도 43.7%(76명)에 달했고, 자신의 친생부 모가 입양절차를 중단하고 싶어 했지만, 이미 늦었다는 답변을 받은 경우도 31.1%(46 명)나 되었다. 친권포기와 관련된 모든 문항은 본 연구의 질적 면접에서도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가 종종 언급한 내용이었다.

② 한국 시설(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연구참여자가 한국 시설(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 점은 [표 26]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 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다음 한국 시설에서 어떤 경험을 했는지 실제로 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 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 10명 6명 이상은 한국의 양육시설 등에서 신체적 학대와 성적 학대가 있 었는지를 묻는 문항과 양육시설의 환경에 관한 문항에 모른다고 응답했지만, 양육시설 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했는지, 노동해야 했는지, 입양 배치 전에 학대로 의심 되는 흉터가 있었는지와 관련해서는 좀 더 적은 비율(25.5%~37.1%)이 모른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대다수의 해외입양인이 영유기에 입양되었기 때문에 학대나 양육시설의 환경에 관해서는 알기 어렵고, 양육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는지나 흉터와 관련해서는 입양부모나 입양기관을 통해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고 영유아에게 노동을 시키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일 것이다.

[표 26] 한국 시설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n=658

문항	예	아니오	모름	total n
正8	n(%)	n(%)	n(%)	total II
1. 한국 양육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235 (37.1)	162 (25.6)	237 (37.4)	634
부여받았다. 	235 (59.2)	162 (40.8)		397
2. 한국 양육시설에 있을 때 노동을 해야만	16 (2.8)	418 (72.1)	146 (25.2)	580
했다. (청소, 아동 돌봄, 과도한 허드렛일)	16 (3.7)	418 (96.3)		434
3. 한국 양육시설에서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	34 (5.5)	178 (28.6)	410 (65.9)	622
0. 연속 중작시골에서 전체도 학대를 중했다.	34 (16.0)	178 (84.0)		212
4. 한국 양육시설에서 성적 학대를 당했다.	13 (2.1)	196 (31.6)	412 (66.3)	621
4. 연속 중작시골에서 중국 흑대골 중했다.	13 (6.2)	196 (93.8)		209
5. 입양 배치 전에 학대받았던 것으로 의심되	77 (12.4)	367 (59.1)	177 (28.5)	621
는 흉터가 몸에 있다	77 (17.3)	367 (82.7)		444
6. 한국 양육시설은 옷과 음식, 교육이 부족했고, 위생불량, 영양 실조, 그리고/또는	121 (19.5)	90 (14.5)	409 (66.0)	620
있고, 귀성불당, 당당 철조, 그러고/또는 인원 과밀이 있었다.	121 (57.3)	90 (42.7)		211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한국의 양육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한 문항에 '예'나 '아니오'로 응 답한 사람 중 59.2%(235명)는 양육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다고 하였 다. 연구참여자 중 양육시설에서 노동해야만 했던 사람은 3.7%(16명)이었고, 신체적 학 대를 당한 해외입양인은 16.0%(34명), 성적 학대를 당한 해외입양인은 6.2%(13명), 입 양 배치 전에 학대받았던 것으로 의심되는 흉터가 몸에 있었던 경우는 12.4%(77명)였 다. 한편 한국 양육시설의 옷, 음식 등이 열악한 상황이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는 57.3%(121명)로 양육시설이 아동양육에 적합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시사하였다.

③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연구참여자가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은 [표 27] 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 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다음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 과 문제점을 실제로 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반수 이상(55.6%) 의 연구참여자가 모른다고 응답했는데, 이는 이들 대다수가 영유아기에 입양되었기에 당시 경험을 기억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자신을 인도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 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는지에 관해서는 20.7%(129명)만이 모른다고 대답했 는데, 만약 그러한 일이 실제로 있었다면 입양가정에서 큰 문제가 됐을 것이므로 모르 고 넘어가기 어려웠을 것이다.

'예'나 '아니오'로 응답한 연구참여자 중 약 90%는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없었고, 자신의 입양부모에게 인도되었다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30명(10.7%)에 이르 는 연구참여자가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고, 37명(7.5%)이 자신을 인도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고 응답했다는 것은 매우 우려스러운 사건이다. 아주 어린 나이에 영문도 모른 채 함께 살던 사람과 익숙한 곳을 떠나 호송 인 역할을 하는 난생처음 보는 사람과 오랜 시간 항공기를 타고 낯선 국가의 공항에 도착해서 적어도 대면으로는 처음 한국 사람과 모습도 냄새도 다른 입양가족을 만나는 대리입양제도 자체만도 충격적인 경험이었을 텐데. 추가적인 어려움을 겪고 심지어는 자신의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되어 혼란을 겪은 연구참여자가 각각 약 10%가 된다는 사실은 해외입양절차가 얼마나 아동 최선의 이익과는 무관하게 이루어 졌는지를 알게 한다. 이러한 문제는 본 연구의 질적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언급한 바 있다.

[표 27] 해외입양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n=658

아니오 모름 예 문항 total n n(%) n(%) n(%) 30 251 352 633 1.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다. (39.7)(55.6)(4.7)251 30 (예: 이동하는 동안 적절한 아동보호가 없었다.) 281 (89.3)(10.7)37 458 129 624 2. 나를 인도해준 사람은 나를 입양부모가 아닌 (5.9)(73.4)(20.7)458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였다. 37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7.5)

(92.5)

495

(3) 입양서류에 관한 이슈

①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연구참여자가 가지고 있는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과 관련해서는 [표 28]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13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다음 자신의 입양서류 정보가 얼마나 정확하고 포괄적인지를 실제로 아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일관되게 입양서류 정보의 포괄성보다는 정확성에 관련된 문항에서

모른다는 응답을 더 많이 하였다. 아동발달 보고서의 정확성에 관한 문항에서 가장 많은 61.3%(389명)가 모른다고 응답했고, 의료정보의 정확성에 관한 문항에는 55.8%(361명)가, 아동인수 보고서의 정확성에 관한 문항에는 54.8%(351명)가 모른다 는 응답으로 그 뒤를 이었다. 이는 입양서류에 정보가 기재되어 있지만, 많은 입양인 이 그 내용이 정확한지에 관해서는 신뢰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에 '예'나 '아니오'로 응답한 연구참여자만을 대상으 로 분석해 본 결과 입양서류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았다는 응답이 대다 수를 이루고 있다. 그나마 출생일과 같은 기본 인적 사항이 정확했다고 응답한 경우가 60.7%(221명)로 가장 큰 비율을 차지했고, 의료정보는 55.9%(160명), 아동발달 보고 서는 46.7%(115명), 아동인수 보고서는 30.7%(89명), 자신의 배경정보는 27.8%(95명) 만이 정확했다고 응답했다. 심지어는 자신의 아동인수 보고서에 배경정보가 적혀있지 않은 경우도 72.4%(302명)나 되었고, 입양서류에 있는 원가족에 관한 기록이 잘못되었 다고 한 경우도 46.7%(168명)나 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보면 해외입양인이 자신의 입 양서류를 왜 신뢰하지 못하는지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입양서류의 포괄성과 관련해서는 더 적은 비율의 연구참여자가 긍정적인 응답을 하 였다. 연구참여자의 30.0%(112명)만이 입양서류에 있는 의료정보가 충분하다고 하였 고, 아동발달 보고서가 포괄적이라고 한 입양인은 28.8%(105명)에 지나지 않았다. 더 나아가 연구참여자 중 16명(5.1%)은 자신이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아동 대신 입양가정에 배치되었다고 응답해 본 연구의 질적 면접 결과에서도 나타난 '바꿔치기' 사례가 드물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이처럼 부정확하거나 위조된 정보를 담고 있거나 불충분한 정보로 고통받는 해외입양인의 경험은 본 연구의 질적 면접결과에서 도 매우 자주 거론된 문제였다. 같은 맥락에서 [표 28]에도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참여 자의 64.3%(321명)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감정적/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0%(52명)는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 양기관에서입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 의 삶과 정신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표 28]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

n=658

문항		아니오	모름	4-4-1 -
는 문항	n(%)	n(%)	n(%)	total n
1. 기본 인적 사항이 정확하였다. (예: 출생일)	221 (34.2)	143 (22.1)	283 (43.7)	647
T. 기는 근국 제공이 공국에였다. (예· 글공글)	221 (60.7)	143 (39.3)		364
2. 입양서류에 있는 나의 배경정보는 정확했다.	95 (15.1)	247 (39.3)	287 (45.6)	629
(예: 친생부모의 사회적 정보, 나를 포기한 사유 등)	95 (27.8)	247 (72.2)		342
3.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에는 나의 배경정보가 적혀	302 (46.8)	115 (17.8)	228 (35.3)	645
있지 않았다	302 (72.4)	115 (27.6)		417
4.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89 (13.9)	201 (31.4)	351 (54.8)	641
4. 나의 아동인구 보고서는 성복이었다.	89 (30.7)	201 (69.3)		290
5. 나의 아동인수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75 (11.6)	343 (53.0)	229 (35.4)	647
(필요한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75 (17.9)	343 (82.1)		418
6.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정확하였다.	115 (18.1)	131 (20.6)	389 (61.3)	635
0. 다킈 아동글글 포고시는 당복아갔다.	115 (46.7)	131 (53.3)		246
7. 나의 아동발달 보고서는 포괄적이었다.	105 (16.4)	259 (40.5)	275 (43.0)	639
7. 다의 아동털털 모고지는 모털적이었다.	105 (28.8)	259 (71.2)		364
이 나이 이근저버트 저하되었다.	160 (24.7)	126 (19.5)	361 (55.8)	647
8. 나의 의료정보는 정확하였다.	160 (55.9)	126 (44.1)		286
이 나이 이르저너는 표관전이었다	112 (17.4)	261 (40.5)	271 (42.1)	644
9. 나의 의료정보는 포괄적이었다.	112 (30.0)	261 (70.0)		373

문항	ଖ n(%)	아니오 n(%)	모름 n(%)	total n
10. 나의 입양서류에 있는 원가족에 관한 기록은 잘	168 (27.0)	192 (30.8)	263 (42.2)	623
못되었다.	168 (46.7)	192 (53.3)		360
11. 나는 다른 아이가 바뀌었다. (예: 나는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아동	16 (2.5)	300 (47.0)	322 (50.5)	638
(예: 나는 다른 아이의 정보를 가지고 그 아동 대신 입양가정에 배치되었다.)	16 (5.1)	300 (94.9)		316
12.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321 (55.3)	178 (30.7)	81 (14.0)	580
인해 감정적/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했다.	321 (64.3)	178 (35.7)		499
13. 나는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52 (9.0)	467 (80.5)	61 (10.5)	580
인해 나는 법적문제를 겪었다. (예: 시민권)	52 (10.0)	467 (90.0)		519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4) 해외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

①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연구참여자 중 입양가정 내 어떤 형태로든지 아동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해외입양인은 217명(33.5%)으로 나타나, 10명 중 3명 이상이 학대나 방임에 노출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2021년 말 현재 한국의 아동인 구 백 명당 학대피해아동 발견율이 0.5%인 것(통계청, 2022)을 고려하면 대단히 높은 수치임이 분명하고, 아동에게 원가정보다 더 나은 가정을 제공하기 위해 이루어진 해외 입양이 오히려 위해를 가하는 환경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표 29] 입양가정 내 아동학대 경험

ОІ		Oŀ	니오
n	%	n	%
217	33.5	431	65.5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표 30] 주요 아동학대 가해자

문항	전체	입양부 n(%)	입양모 n(%)	입양 형제 자매 n(%)	입양 가족의 친척 n(%)	입양 가족 중 다른 사람 n(%)	위탁 가정 n(%)
	n				11(76)	5	2
1. 나를 신체적으로 학대한 사람	142	68 (47.9)	99 (69.7)	32 (22,5)	(7.7)	(3.5)	(1.4)
2. 나를 정서적 심리적으로 학	190	97	156	41	27	16	2
대한 사람 	100	(51.1)	(82.1)	(21.6)	(14.2)	(8.4)	(1.1)
3. 나를 성적으로 학대한 사람	89	37	6	28	23	10	3
		(41.6)	(6.7)	(31.5)	(25.8)	(11.2)	(3.4)
4. 나를 방임한 사람	113	79	102	10	12	6	2
	110	(69.9)	(90.3)	(8.8)	(10.6)	(5.3)	(1.8)
5. 내 형제자매를 신체적으로	73	44	50	8	2	3	1
학대한 사람 		(60.3)	(68.5)	(11.0)	(2.7)	(4.1)	(1.4)
6. 내 형제자매를 정서적 심리	102	60	82	10	7	5	-
적으로 학대한 사람	102	(58.8)	(80.4)	(9.8)	(6.9)	(4.9)	(-)
7. 내 형제자매를 성적으로 학	29	14	2	7	6	2	1
대한 사람 	25	(48.3)	(6.9)	(24.1)	(20.7)	(6.9)	(3.4)
8. 내 형제자매를 방임한 사람	63	50	56	2	5	3	1
아, 네 중세지메르 어디던 시티	00	(79.4)	(88.9)	(3.2)	(7.9)	(4.8)	(1.6)

Note. 복수응답

③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은 [표 31]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5개 문항으 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 다. 그다음 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을 실제로 기억하는 사람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 다시 빈도를 기술 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지금까지 살펴 본 내용과는 달리 연구참여자 중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 려움에 관해 모른다고 응답한 비율은 약 10% 내외에 머물렀다. 5개 문항에 '예'나 '아니 오'로 응답한 연구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33.9%(168명)의 해외입양인은 자신의 첫 번째 입양부모가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아동학대나 방임을 경험한 연구참여자의 비율(33.5%, 217명)과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다. 첫 번째 입양 배 치가 파양으로 끝난 경험을 한 연구참여자는 38명(7.4%)이었고,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 정에서 학대받은 연구참여자도 12명(3.6%), 파양 후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한 연구참여자도 15명(4.0%)이었고, 파양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긴 연구 참여자도 13명(3.0%)이나 되었다. 입양실천은 원래 원가족이 집중적인 지원을 해도 아 동을 적절히 양육할 수 없다는 것이 확실할 때 엄격한 심사와 교육을 거쳐 원가족보다 아동의 욕구를 더 잘 충족할 능력이 있어 입양하기에 적격하다고 판단된 가정에 아동의 양육을 의뢰하는 것이다. 하지만 위 연구결과는 연구참여자 3명 중 1명은 입양하기에 부적격한 가정에 입양되어. 파양을 경험하기도 하고.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조차 다시 학대받거나 다른 아동의 학대를 목격하며 살게 됨으로써 입양실천의 원래 목적과 는 거리가 먼 상황에 노출되었던 현실을 보여준다.

[표 31] 해외입양가정의 파양으로 경험한 어려움

n = 658

문항	ଜା n(%)	아니오 n(%)	모름 n(%)	total n
1. 나의 첫 번째 입양부모는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168 (30.2)	327 (58.8)	61 (11.0)	556
않다.	168 (33.9)	327 (66.1)		495
2. 나의 첫 번째 입양 배치는 파양으로 끝났다.	38 (7.1)	477 (89.2)	20 (3.7)	535
(예: 나는 첫 번째 입양가정에서 다른 곳으로 이동 되었다.)	38 (7.4)	477 (92.6)		515
3.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나는 학대를 받았다.	12 (3.2)	322 (84.7)	46 (12.1)	380
3. 파장 우 배시전 귀탁가장에서 나는 역대를 받았다.	12 (3.6)	322 (96.4)		334
4. 파양 후 위탁가정에서 아동학대를 목격했다.	15 (3.6)	358 (85.2)	47 (11.2)	420
4. 파양 후 귀락가장에서 아동막대들 녹색였다.	15 (4.0)	358 (96.0)		373
5. 파양으로 인해 내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겼다.	13 (2.9)	419 (93.5)	16 (3.6)	448
5. 핑ㅡ포 전에 네 ᆸᆨ 지カ에 눈세가 정였다.	13 (3.0)	419 (97.0)		432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④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은 [표 32]에 제시한 바와 같이 총 2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예'와 '아니오', '모름'으로 나타난 응답의 각 빈도를 먼저 확인하였다. 그다음 한국 입양기관과 수령국 입양기관의 입양사후서비스가 적절했는지를 알고 응답한 연구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하기 위해 '모름'을 제외하고 '예'와 '아니오'로 응답한 경우에만다시 빈도를 기술통계 분석으로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반수 이상(51.4%, 321명)은 한국 입양기관에서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를 확인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고, 39.1%(243명)는 수령국의 입양기관이 적절한 사후서비스를 제공했는지 모른다고 응답했다. 2개 문항에 '예'나 '아니오'로

응답한 연구참여자만을 대상으로 분석해 본 결과, 대다수인 85.1%(258명)가 한국 입양 기관은 시민권 취득의 확인과 같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가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조금 더 적은 비율이지만, 여전히 대다수인 76.3%(289)가 수령국 의 입양기관도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다고 응답해 한국과 수령국의 입양기관 모두 입양사후서비스에 소홀했음을 시사하였다. 이는 본 연구의 질적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종종 언급한 문제로, 해외입양가정에 배치된 후 수령국 입양기관 의 실무자가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한 해외입양인이 여러 명이었다.

[표 32]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

n=658

문항	બા	아니오	모름	total n
世 8	n(%)	n(%)	n(%)	total n
1. 한국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가	45 (7.2)	258 (41.3)	321 (51.4)	624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다. (예: 내가 시민권	45	258	(= ,	
을 취득했는지 확인하였다.)	(14.9)	(85.1)		303
2. 수령국의 입양기관은 적절한 입양사후서비스	90 (14.5)	289 (46.5)	243 (39.1)	622
를 제공하였다.	90 (23.7)	289 (76.3)		379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 을 수 있음.

(5)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

①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은 총 6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을 '동의'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은 '비동의'로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3]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참여자 중 반수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고(50.1%), 소속감을 느꼈다(52.9%) 고 응답하였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중 30.2%(186명)만이 입양가정 안에서 자신의 민족

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36.7%(228명)가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 감을 느꼈다. 나아가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낀 연구참여 자는 18.0%(111명)에 지나지 않았고, 대다수인 72.2%(445명)가 입양된 나라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33] 지역사회 소속감과 민족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

n=658

문항	동의	비동의
亡8	n(%)	n(%)
1. 나는 입양가정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였다.	310 (50.1)	309 (49.9)
2. 나는 입양가정 안에서 나의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다.	186 (30.2)	429 (69.8)
3. 나는 나의 입양가정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325 (52.9)	289 (47.1)
4. 나는 내가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228 (36.7)	393 (63.3)
5. 나는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는 동안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꼈다.	111 (18.0)	506 (82.0)
6. 나는 입양된 나라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였다.	445 (72.2)	171 (27.8)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② 입양가정의 지역 특징

연구참여자가 성장한 입양가정이 위치한 지역사회의 특성은 [표 34]에 제시한 바와 같이 대도시(11%, 70명)보다 대도시 부근의 교외(28.5%, 182명)나 소도시(42.3%, 270명), 시골 지역(18.2%, 116명)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구참여자의 대다수인 78.6%(500명)는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소수 인종집단을, 91.6%(579명)는 비입양인한국인을, 81.5%(519명)는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을 보기 어려웠다고 응답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대부분이 주로 백인만 모여 사는교외나 소도시에서 몇 안 되는 소수 인종집단의 사람으로 성장하면서 종종 인종차별에 노출되었을 것을 유추하게 한다.

[표 34] 입양가정의 지역 특성

n=658

	구분	n	%
	대도시	70	11.0
입양가정이 위치한	대도시 부근의 교외	182	28.5
지역사회의 특성	소도시	270	42.3
	시골지역	116	18.2
	매우 보기 어려움	283	44.5
성장한 지역 내	보기 어려움	217	34.1
소수 인종집단의 존재	자주 보았음	97	15.3
	매우 자주 보았음	39	6.1
성장한 지역 내	매우 보기 어려움	510	80.7
	보기 어려움	69	10.9
비입양인 한국인의	자주 보았음	27	4.3
존재	매우 자주 보았음	26	4.1
성장한 지역 내	매우 보기 어려움	340	53.4
한국인 입양인 혹은	보기 어려움	179	28.1
다른 국가 입양인의	자주 보았음	85	13.3
<u>존재</u>	매우 자주 보았음	33	5.2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6) 정보 요청과 원가족 찾기

① 원가족 찾기 경험

원가족 찾기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의 81.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했다. 이는 기존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에서 연구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이 뿌리찾기 를 시도한 결과(박인선, 1993)보다 높은 수치였다.

[표 35] 원가족 찾기 경험

있음		없	.음
n	%	n	%
492	81.7	110	18.3

Note. 무응답과 '기타'는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원가족과의 재회

원가족과의 재회는 총 4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그 결과는 [표 36]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참여자 중 44.1%(226명)는 최소 1명의 친생부모를 찾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2016년과 2021년 사이에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7,551명 중 5.7%(434명)만이 가족과 상봉한 실태¹²⁾ 와 비교할 때 매우 높은 비율이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참여자가 주로 해외입양인 커뮤니티와 해외입양인 권인 옹호 단체 등을 통해 본 연구를알게 되어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들 커뮤니티와단체에는 원래 뿌리찾기 등에 관심이 있어 커뮤니티나 단체 활동에 관여하는 해외입양인이 많기 때문이다.

[표 36] 원가족과의 재회

n = 658

문항	ଖ n(%)	아니오 n(%)
1. 나는 최소 1명의 친생부모를 찾았다.	226 (44.1)	287 (55.9)
2. 나는 친생 형제(자매)를 찾았다.	166 (34.5)	315 (65.5)
3. 나는 확대 원가족/친척을 찾았다.	172 (37.4)	288 (62.6)
4. 내 인생과 관여한 다른 개인을 찾았다.	102 (21.3)	377 (78.7)

Note.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③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또는 기관)과 도움의 충분성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또는 기관)과 도움의 충분성은 총 11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다. 일단 해당 사람이나 기관이 원가족을 찾는 데 도움이 됐는지를 물은 결과를 기술 통계로 분석하고, 도움이 됐다고 한 사람이나 기관이 원가족을 찾는 데 얼마나 도움 되

^{12)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었는지를 4점 척도로 파악하였다. 구체적인 조사 결과는 [표 37]에 제시한 바와 같다.

[표 37]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기관/사람과 도움 정도

n = 658

		예 도움정도		아니오	
	n	n (%)	m	sd	n (%)
1. 수령국의 입양기관	520	344 (66.2)	2.27	0.88	176 (33.8)
2. 수령국의 한국 대사관	449	105 (23.4)	2.09	0.76	344 (76.6)
3. 한국의 입양기관	546	447 (81.9)	2.32	0.91	99 (18.1)
4. 아동권리보장원	460	181 (39.3)	2.29	0.81	279 (60.7)
5. 한국의 시설 (예: 양육시설, 아동보호시설 등)	474	182 (38.4)	2.14	0.91	292 (61.6)
6. 한국 경찰	469	175 (37.3)	2.45	0.96	294 (62.7)
7. 한국 DNA 검사	449	159 (35.4)	2.51	0.93	290 (64.6)
8. 해외 DNA 검사 (예: 23andMe, My Heritage)	493	307 (62.3)	2.49	0.93	186 (37.7)
9. 다른 해외입양인	490	325 (66.3)	3.07	0.92	165 (33.7)
10. 해외입양인 단체	490	323 (65.9)	3.05	0.94	167 (34.1)
11. 다른 비영리단체	449	160 (35.6)	2.86	0.89	289 (64.4)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연구참여자는 원가족 찾기에 도움 준 사람(또는 기관)으로 한국의 입양기관(81.9%, 447명)을 가장 많이 언급하였고, 그다음 거의 비슷한 비율로 다른 입양인(66.3%, 325 명), 수령국의 입양기관(66.2%, 344명), 입양인 단체(65.9%, 323명), 해외 DNA 검사 (62.3%, 307명)가 도움을 줬다고 하였다. 하지만 원가족 찾기에 도움 된 정도에서는 한

Note 2. 도움정도는 '전혀 도움 안됨'(1), '도움 안됨'(2), '도움됨'(3), '매우 도움됨'(4)로 구분하 여 파악하였음. 점수가 높을수록 도움된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국의 입양기관이 (m=2.32, sd=0.91)에 머물러 해외입양인이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 입양기관의 도움을 가장 많이 구하지만, 실제로 도움은 별로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원가족을 찾는 데 가장 도움 된 것은 자신과 같은 당사자인 다른 해외입양인 (m=3.07, sd=0.92)으로 나타났고, 해외입양인 단체(m=3.05, sd=0.94)가 그 뒤를 이었다. 본 연구참여자 중 현재 원가족 찾기에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공공기관인 아동권리보장원에서 도움을 받은 비율은 39.3%(181명)에 지나지 않고, 도움을 받은 수준도 (m=2.29, sd=0.81)도 낮아 관련 서비스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7) 해외입양에 대한 의견

①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연구참여자의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은 총 7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동의함' 과 '동의함'을 '동의'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은 '비동의'로 구분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38]에 제시한 바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반수 이상인 55.6%(272명)는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은 정당한 조치라고 생각했지만, 그 외 모든 문항에서는 대다수가 해외입양을 반대하는 의견을 표명하였다. 거의 모든 연구참여자가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하고(94.7%, 566명),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94.0%, 553명)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은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하고(85.4%, 469명), 오늘날까지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83.5%, 456명)고 하였다. 나아가 연구참여자의 43.5%(192명)만 한국 아동의 해외입양은 오로지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만 할 수 있어야 한다는 데 동의하였다.

[표 38] 해외입양에 대한 생각

n=658

문항	동의 n(%)	비동의 n(%)
1. 한국전쟁 직후 해외입양은 정당한 조치였다.	272 (55.6)	217 (44.4)
2. 1980년대에도 해외입양은 여전히 정당한 조치였다.	66 (12.6)	456 (87.4)
3.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 야 한다.	568 (94.7)	32 (5.3)
4.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에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봐야 한다.	553 (94.0)	35 (6.0)
5. 한국이 오늘날까지 해외입양을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	455 (83.5)	90 (16.5)
6. 한국은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	469 (85.4)	80 (14.6)
7. 해외에 거주하는 한국인만 한국 아동을 입양할 수 있게 해야한다.	192 (43.0)	255 (57.0)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8) 삶의 만족도

① 삶의 만족도

삶의 만족도는 총 5개 문항으로 이루어진 표준화된 7점 척도로 '전혀 동의하지 않 음'(1),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하지 않음'(3), '보통'(4), '약간 동의함'(5), '동의 함'(6), '매우 동의함'(7)으로 이뤄져 있고, 점수가 높을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 을 의미한다(Diener et al, 1985).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참여자 삶의 만족도는 (m=3.95, sd=1.68)로 보통 수준으로 나 타났는데, 세부 문항 중에는 '다시 태어난다면, 내 삶을 별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라는 문항에서 가장 낮은 점수(m=3.07, sd=1.68)를 보였고, 그다음으로 '내 삶은 여러모로

Note 2. 연구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와 '동의하 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내가 바라던 삶과 비슷하다'라는 문항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m=3.73, sd=1.68)를 보여 자기 삶이 자신이 실제 원하는 것과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표 39] 삶의 만족도

n=658

문항	m	sd
1. 내 삶은 여러모로 내가 바라던 삶과 비슷하다.	3.73	1.93
2. 내 삶의 상황은 훌륭하다.	4.15	1.88
3. 내 삶에 만족한다.	4.43	1.87
4. 이제까지 나는 삶에서 원하는 중요한 것을 얻었다.	4.36	1.92
5. 다시 태어난다면, 내 삶을 별로 바꾸지 않을 것이다.	3.07	1.94
 총 평균	3.95	1.68

Note 1.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Cronbach's α =.926

Note 3. 1-7점 척도이며, '전혀 동의하지 않음'(1), '동의하지 않음'(2), '약간 동의하지 않음'(3), '보통'(4), '약간 동의함'(5), '동의함'(6), '매우 동의함'(7)으로 이뤄져 있음. 점수가 높을 수록 삶의 만족도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함.

삶의 만족도의 총점을 바탕으로 7개 구간으로 구분해서 살펴보면, 매우 불만족한 상태에서 약간 불만족한 상태까지에 속하는 연구참여자가 297명(47.0%)이며, 약간 만족한 상태에서 매우 만족한 상태까지에 속하는 연구참여자가 300명(47.5%)으로 거의 같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0 참조].

[표 40] 삶의 만족도 결절점

n=658

삶의 만족도 수준	범위(합점수)의 결절점	n	%
매우 불만족	9점 이하	94	14.9
불만족	10- 14	98	15.5
약간 불만족	15 – 19	105	16.6
보통	20	35	5.5
약간 만족	21 - 25	120	19.0
만족	26 - 30	127	20.1
매우 만족	31점 이상	53	8.4

(9) 사회적 지지

사회적 지지는 Kovalevent et al.(2018)이 개발한 표준화된 척도로 4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문항은 서로 다른 범주와 범위로 이뤄져 있는데, 자세한 설명은 [표 41] 하단에 기재한 Note 4에 제시한 바와 같다.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사회적 지지 수준을 비교적 긍정적 (m=3.16, sd=0.88)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자신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흥미와 관심을 보이는지를 묻는 문항(m= 3.86, sd=1.12)과 자신이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원가족/입양가족/현재 가족에게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m=3.21, sd=1.41)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보였지만,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이웃에게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m=2.79, sd=1.18)과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몇 명 정도 있는지를 묻는 문항'(m=2.84, sd=0.88)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점수를 보였다.

[표 41] 사회적 지지

n = 658

문항		sd
1.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때 의지할 수 있는 가까운 사람이 몇 명	2.84	0.88
정도 있습니까?	2.04	0.00
2. 당신이 하는 일에 다른 사람이 어느 정도의 흥미와 관심을 보이나요?	3.86	1.12
3.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원가족/입양가족/현재 가족에게서 실제		1 41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3.21 1.41	
4. 도움이 필요할 때 쉽게 이웃에게서 실제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2.79	1.18
총 평균		0.84

- Note 1.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Note 2. 사회적 지지 3번 문항은 본 연구진이 개발한 문항으로 합점수(총 평균 점수)와 Cronbach's α 산출에서 제외하였음
- Note 3. Cronbach's α =.694
- Note 4. 사회적 지지 척도 합점수에 활용한 3개 문항 모두 다른 범주와 범위로 이뤄져 있으며, 각 문항의 범위와 범주는 아래와 같음.
 - 1번 문항 범주: '아무도 없음'(1), '1-2명'(2), '3-5명'(3), '5명 초과'(4),
 - 2번 문항 범주: '전혀없다'(1), '거의없다'(2), '보통이다'(3), '조금있다'(4), '많이 있다'(5)
 - 3번, 4번 문항 범주: '매우 어렵다'(1), '어렵다'(2), '가능하다'(3), '쉽다'(4), '매우 쉽다(5) 점수가 높을수록 사회적 지지 수준이 놓은 것을 의미함.

사회적 지지의 총점¹³⁾을 3개 구간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연구참여자의 사회적 지지 수준은 중간 수준의 비율이 42.0%(265명)로 가장 높았고, 약한 수준의 비율이 34.1%(215 명)로 강한 수준의 비율인 23.9%(151명)보다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표 42 참조].

[표 42] 사회적 지지 결절점

사회적 지지 수준	범위(합점수)의 결절점	n	%
약함	3–8	215	34.1
중간	9–11	265	42.0
강함	12–14	151	23.9

(10) 정신 건강

연구참여자의 전반적인 정신건강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Ware, Snow, Kosinski, & Keller(1994)가 개발한 SF-36 정신건강 하위척도(SF36 Mental Health Subscales)를 사용하였는데, 이는 다음 두 가지 척도로 구성되었다.

①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 관련 문제 수준

연구참여자가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과 관련해서 겪는 문제의 수준을 알아보기 위해 총 5개의 문항을 500점 만점(문항 당 100점)으로 환산해 합점수를 산출하였다.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해 직업과 기타 일상활동과 관련해서 겪는 문제의 수준은 269.9점으로 나타나 중간 점수인 250점보다 약간높았다.

¹³⁾ 사회적 지지의 합산에서 3번 문항을 제외하였음.

[표 43] 우울감이나 불안으로 인한 직업과 기타 일상 활동 관련 문제 수준 n = 658

(지난 4주간 나는)		예		아니오	
		%	n	%	
1-1. 직업 혹은 다른 활동을 하는 시간을 줄였다.	299	47.3	333	52.7	
1-2. 원하는 것보다 적게 성취하였다.	373	59.2	257	40.8	
1-3. 직업이나 다른 활동을 수행할 때 평소만큼 주의	306	48.6	323	51.4	
를 기울이지 못했다.	306	40.0	323	31.4	
(지난 4주간 나의)	m sd		d		
2. 신체적 건강 혹은 정서적 문제가 가족/친구/이웃/ 집단과 정상	2.5 1.3		1.0		
적인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1.3		
3. 신체적 혹은 정서적 문제가 친구/친척을 만나는 것과 같은	2.5 1.2		1 0		
사회적 활동을 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습니까?			1.2		
평균 점수	269.9 174.8		4.8		

Note 1.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정신적 건강 척도의 개별 문항 배점은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합산함.

Note 3. 2번과 3번 문항 범주: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1), '아주 가끔 영향을 미쳤음'(2),

'가끔 영향을 미쳤음'(3), '종종 영향을 미쳤음'(4), '대부분 영향을 미쳤음'(5)

'항상 영향을 미쳤음'(6) 점수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을 미친 것을 의미함.

② 우울감

전체적으로 볼 때 연구참여자는 [표 4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자신의 우울감을 보통 수준(m=3.49, sd=1.05)으로 평가하였다. 세부 문항을 살펴보면, 연구참여자는 피곤한 지 묻는 문항 (m=4.30, sd=1.40)과 역 문항인 에너지가 많다고 느끼는지를 묻는 문항 (m=3.97, sd=1.25), 활력이 넘치는지를 묻는 문항 (m=3.91, sd=1.20), 안정되고 평화로 운 기분인지를 묻는 문항 (m=3.84, sd=1.24)에서 약간 우울한 수준에 근접하는 점수를 보였다.

[표 44] 우울감

n=658

(지난 4주간 얼마나 자주)	m	sd
1. 활력이 넘쳤나요?*	3.91	1.20
2. 매우 긴장했나요?	2.98	1.46
3. 매우 우울해서 도무지 기운을 낼 수 없다고 느꼈나요?	2.45	1.34
4. 안정되고 평화로운 기분이었나요?*	3.84	1.24
5. 에너지가 많다고 느꼈나요?*	3.97	1.25
6. 낙담하고 우울했나요?	3.03	1.37
7. 지친 기분이었나요?	3.59	1.47
8. 행복했나요?*	3.58	1.21
9. 피곤했나요?	4.03	1.40
총 평균	3.49	1.05

Note 1.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역산문항은 별표(*)로 표시하였으며, Cronbach's α도 역산문항을 반영해 산출함. (Cronbach's α=.923)

Note 3. 본 척도는 6점 척도이며, '전혀 없다'(1), '별로 없다'(2), '보통이다'(3), '약간 있다'(4), '대부분 있다'(5), '항상 있다'(6) 점수가 높을수록 우울감이 높은 것을 의미함.

(11) 배상

①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표 4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연구참여자의 대다수인 72.8%(479명) 한국 정부가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있다고 가 필요가 있다고 응답하였다.

[표 45]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한국 정부의 배상 필요성

ОІ		아니오		
n	%	n	%	
479	72.8%	156	23.7%	

Note. 무응답은 결측값으로 처리함.

②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연구참여자가 정부에 바라는 배상의 필요성은 총 7개 문항으로 이뤄져 있으며. '매우 동의함'과 '동의함'을 '동의'로, '매우 동의하지 않음'과 '동의하지 않음'은 '비동의'로 구 분한 기술통계 결과는 [표 46]에 나타난 바와 같다.

연구참여자의 90% 이상은 모든 문항에서 제시하는 배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는 데, 가장 많은 465명(97.3%)가 해외입양인이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가 필 요하다는 데 동의했고,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히 조사할 필요성(459명, 96.8%), 그 다음은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의 필요성(452명, 96.2%), 해외입양 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의 필요 성(448명, 95.5%) 순으로 동의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입양인의 가장 큰 관심이 자 기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표 46] 한국 정부에 바라는 배상

n = 658

배상 종류		비동의 n(%)
1. 해외입양인이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		13
	(97.3)	(2.7)
2. 해외입양인이 한국에서 모일 수 있는 센터	431	28
	(93.9)	(6.1)
3. 해외입양인이 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게 재정적 지원	421	22
	(95.0)	(5.0)
4. 해외입양인이 원가족을 찾기 위해 한국을 방문할 때 드는 여행	442	23
비용		(4.9)
5. 인권침해가 의심될 때 철저한 조사		15
		(3.2)
	452	18
6.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		(3.8)
7.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	448	21
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	(95.5)	(4.5)

Note 1. 무응답과 해당없음'(N/A), '모르겠음'은 결측값으로 처리해 문항별 총 사례 수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

Note 2. 연구참여자가 '매우 동의'와 '동의'에 답한 내용은 '동의', '매우 동의하지 않음'와 '동의 하지 않음'에 답한 내용은 '비동의'로 recoding하여 구분함.

3) 요약과 시사점

본 연구는 조사 참여에 동의한 만 18세 이상 성인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조사한 후, 연구목적에 맞게 선별하고 가공한 658 사례를 분석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일반적 특성을 살펴보면 여성이 가장 많았으며, 대다수가 2년제 또는 3년제 대학 졸업 이상의 고학력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수의 연구참여자는 자신의 현재 혼인상태를 기혼이나 동거라고 했고, 현재 경제 상태는 보통수준 이상으로 평가하였다. 연구참여자는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가장 많이 해외로 입양되었고, 한국사회봉사회, 대한사회복지회, 동방아동복지회가 그 뒤를 이었다. 거의 모든연구참여자는 한국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의 평균 나이는 45.2세로, 입양 서류상 나이와 큰 차이는 없었으며, 미국 입양인이 가장 많았고, 덴마크 입양인과 스웨덴 입양인이 뒤를 이었다. 연구참여자의 절반 정도는 자신의 친생 형제에 관한정보(친생 형제 존재 여부, 친생 형제가 입양된 사실 등)를 알지 못한다고 응답하였다.연구참여자의 절반 이상은 입양 형제가 있었고, 주로 한국에서 입양된 형제가 있었다.한편 형제자매와 관련된 정보를 아는 연구참여자의 대다수는 친생부모에게 자신 이외다른 자녀가 있고, 자신과 친생 형제자매가 각자 다른 입양가정으로 입양되었다고 해친생형제자매를 최대한 같은 가정에 입양 보내려는 노력이 매우 미흡했음을 보여준다.

둘째, 연구참여자는 한국입양기관과 한국 정부가 자신들의 인권을 매우 낮은 수준으로 보호했다고 평가하였다. 이들은 한국입양기관이 자신을 원가족에서 분리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고,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전 국내입양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에 앞서 자신의 친생부모를 적절히 지원하지 못했고, 불필요한 해외입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고 하였다.

셋째,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입양 전에 경험했던 인권침해 사실과 관련해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 한국 시설(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 시설 등)에서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려움과 문제점에 관해 모르겠다고 응답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해외입양인이 주로 영유기 때 입양되었으므로 친생부모와 재회하 지 않았다면 정확히 알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하지만, 많은 입양인이 입양서류에 담긴 내 용을 믿지 못한다는 현실을 반영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넷째, 친생부모의 친권포기와 관련된 사실과 경험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중 다수는 친생부모가 입양의 의미와 영향에 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받았거나 친생부 모가 친권을 포기하라는 강압을 받았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한국 시설 경험을 기억하고 응답한 연구참여자 중 반수 이상은 시설에서 새로운 이름과 나이를 부여받았고, 시설에 옷과 음식 등이 부족하고, 위생이 불량하고 인원이 과밀했다고 응답해 한국 시설이 아동 양육에 적절하지 않은 환경이었음을 시사하였다. 수령국으로 이동하는 동안 경험한 어 려움과 문제점을 기억하는 연구참여자 중 약 10%는 이동하는 동안 문제가 있었고, 자신 을 인도해준 사람이 자신을 입양부모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인도했다고 응답해 대리입 양제도의 문제점을 드러냈다.

다섯째, 입양서류 정보의 정확성과 포괄성을 묻는 문항에 대해 연구참여자의 약 35%~60%가 모른다고 응답하였다. 다만 자신의 입양서류에 담긴 정보를 알고 있는 연 구참여자 중 다수는 자신의 배경정보의 정확성, 아동인수 보고서의 정확성과 포괄성, 아 동발달 보고서의 정확성과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평가하였다. 또한 연구참여자 10명 중 6명 이상은 누락되거나 정확하지 않은 입양서류 정보로 인해 감정적, 신체적 어려움을 경험했고, 10명 중 1명은 법적 문제를 겪었다. 이는 고아호적 관행과 같이 입양기관에서 입양절차의 편의를 위해 별 생각 없이 한 기록의 위조가 해외입양인 당사자의 삶과 정신 건강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인지를 절감하게 한다.

여섯째, 해외 입양 후 경험한 인권침해 경험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가정 내에서 학대(신체학대, 성적 학대, 정서학대, 방임)받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 연구참여자는 신체적 학대, 정서적□심리적 학대, 방임의 가해자로 입양모를 가장 많이 지목했고, 입양부가 그 뒤를 이었다. 한편 성적 학대 가해자로는 입양부를 가 장 많이 지목하였고, 그다음으로 입양형제자매, 입양가족의 친척순으로 나타났다. 연구 참여자 중 10명 중 3명 이상은 자신의 첫 번째 입양부모가 입양하기에 적절하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10명 중 거의 1명이 첫 번째 입양 배치가 파양으로 끝난 경험을 했고, 소수이지만, 파양 후 배치된 위탁가정에서 학대받거나 아동학대를 목격하거나 파양으로 인해 자신의 법적 지위에 문제가 생긴 연구참여자도 있었다. 그 외에도 한국 입양기관과수령국의 입양사후서비스의 적절성과 관련하여, 다수의 응답자는 모르거나, 적절하지못했다고 평가하였다.

일곱째, 연구참여자의 지역사회 소속감, 민족적 정체성, 인종차별에 관한 경험과 관련 해서는 연구참여자 중 반수 정도는 입양가정에서 자신의 민족적 배경을 이해하고 소속 감을 느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연구참여자 10명 중 3명 정도만이입양가정 안에서 자기 민족적 배경에 대해 좋은 느낌을 받았고, 자신이 성장한 지역사회에서 소속감을 느꼈다. 또한 입양가정에서 성장하면서 한국인임에 자긍심을 느낀 연구참여자는 10명 중 2명도 되지 않았고, 10명 중 7명 이상이 수령국에서 인종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구참여자는 주로 소도시나 대도시 부근 교외에서 성장했고, 대다수가 자신이 성장한 지역에서 소수인종집단의 일원이나 비입양인 한국인, 한국인 입양인 혹은 다른 국가 입양인을 거의 보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주로 백인만 사는 지역사회에서 종종 인종차별을 경험하면서 성장했을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여덟째, 연구참여자 대다수는 원가족 찾기 경험이 있었다. 또한 연구참여자 10명 중 4명 이상이 친생부모 중 최소 1명과 재회한 경험이 있었는데 이는 아동권리보장원에서 최근 5년간 입양정보공개 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와 재회한 비율이 5.7%에 지나지 않았다¹⁴⁾는 것과 비교해 보면 매우 높은 수치로 해외입양인 커뮤니티나 단체를 통해 본 연구를 인지하고 참여한 연구참여자의 고유한 특성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연구결과는 원가족을 찾기 위해 연구참여자가 가장 많이 찾은 곳은 한국 입양기관이지만, 실제 도움은 별로 받지 못했다는 사실과 원가족을 찾는 데는 자신과 같은 다른해외입양인과 해외입양인 당사자 단체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홉째, 대다수 연구참여자는 해외입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특히 한국 정

^{14)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하며, 다른 모든 가능성을 타진해야 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은 오래 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하고 , 오늘날까 지 지속할 정당한 이유가 없다고 하였다.

열째, 연구참여자 삶의 만족도는 보통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지지 수준과 우울 수준도 중간 수준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사회적 지지 문항의 합점수를 결절점으로 구분하면 연구참여자 다수의 사회적 지지 수준이 중간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열한 번째, 해외 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한 배상과 관련해서는 연구참여자 10명 중 7명 이상이 배상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였다. 연구참여자의 다수는 특히 해외입양인의 입양서류와 신원 정보를 확인할 통로,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 해 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와의 매칭 작업 이 필요하다고 밝혀 그들의 가장 큰 관심이 자기 뿌리와 정체성을 찾는 데 집중되고 있 음을 시사하였다.

지금까지 살펴본 해외입양인의 양적 연구결과는 본 연구의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해외입양관련 단체 실무자의 질적 면접 결과와 거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대다수는 영유아기에 입양되었으므로 친생가족과 재회하지 않았다면, 친생가족에 관한 내용이나, 친생부모의 친권포기 관련 내용, 입양 전 생활에서 있었던 문제, 입양서류의 정확성 등을 정확히 알 수 없다. 하지만, 기존 연구결과와는 달리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 입양인 10명 중 4명은 적어도 1명 이상의 친생부모와 재회한 경험이 있었고, 위 내용에 대답한 연구참여자는 거의 모든 문항에서 자신이나 친생부모의 인권이 보호받지 못했다 고 응답한 경우가 더 많았다. 또한 10명 중 9명 이상이 국가가 해외입양절차에서 자신들 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대답해 본 연구의 질적 분석결과와 일치하였다. 입양기관 도 거의 모든 항목에서 연구참여자 10명 중 7명이 자신들의 인권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응답해, 해외입양 절차에서 이루어진 인권침해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는 것을 암시하였 다. 다수의 해외입양인은 입양서류의 정확성은 물론 포괄성이 부족하다고 대답해 해외 입양인의 정체성을 알 권리에 가장 중요한 기록의 문제가 매우 소홀히 다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0명 중 3명 이상이 입양부모와 형제자매, 친인척의 학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자신들의 자녀가 해외입양을 통해 한국에서보다 훨씬 더 행복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것을 기대하고 보낸 친생부모는 물론 한국 국민 모두에게 큰 충격을 주는결과이지만, 아무런 선택권이 없이 해외로 입양 보내졌던 입양인 당사자에게는 한평생안고 살아야 할 트라우마로 남아 어떤 형태로든 충분히 보상하기 어려운 결과이다.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10명 중 8명 이상은 한국이 이제 더는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할이유가 없고, 이미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해야 한다고 응답했고, 7명 이상은 해외입양으로 입은 피해에 대해 한국 정부가 배상한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결과는 특히 2021년 말 현재 합계출산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0.8^{15} 로 내려간 현시점에서 해외입양을 지속하는 것이 과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 심각하게 숙고하고, 조만간 적어도해외입양 모라토리엄을 선언하고 입양제도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 도모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할 필요성을 시사한다.

¹⁵⁾ 통계청. (2021). e-나라지표. 합계출산율. https://www.index.go.kr/u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8

정책 제언

- 1. 해외입양 관련 법·제도의 개선방안 2.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본 연구는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상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그들의 인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루어졌다. 이를 위해 한국의 해외입양 관련 제도와 규범, 정책, 입양절차 규정, 비공식적 입양절차 관행 등을 시기별로 정리하고 입양아동 인권보장에 대한 국가의 책임성 수준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문헌조사를 통해 파악하였다. 또한해외 입양아동 수령국인 덴마크, 네덜란드, 벨기에, 스위스와 해외 입양아동 송출국인 칠레 정부에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에 관해 조사·작성한 보고서를 살펴보았다. 아울러문헌 연구, 질적 조사, 양적 조사를 통해 해외입양 인권침해의 실태와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였다. 이러한 종합적인 연구결과를 토대로 해외입양인의 인권 보장 방안을 크게 두축으로 나누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는 해외입양 관련법과 제도의 개선에 관한 정책제언이고, 둘째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책임에 관한 정책 제언이다.

1. 해외입양 관련 법 제도의 개선방안

1)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입양특례법 개정과 입양절차 개선

본 연구에서 이루어진 해외입양인에 대한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결과는 물론 해외입양인 친생부모와 입양기관과 단체 실무자의 질적 조사결과는 해외입양 절차에서 한국해외입양인의 인권이 다양한 차원에서 심각하게 침해되었다는 사실을 명백히 보여준다. 이러한 인권침해는 한국의 입양관련 법과 제도가 아동 최선의 이익보다는 입양기관과입양부모 중심으로 마련되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해외입양인의 인권을 보장하고, 입양제도와 서비스를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면 입양특례법을 개정하고 입양절차와 실천을 개선해야 하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같다.

첫째, 아동에 대한 전체 입양 절차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관장'하에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입양특례법을 개정해야 한다. 본 연구의 질적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은 해외입양 절차상 입양정보의 조작과 왜곡, 해외입양인의 상품화, 해외입양인의 학대 피해 등을 핵심 문제로 지적하였다. 특히 이들 중 60% 이상이 학대를 경험하였고, 본 연구의 양적 조사에서도 전체 연구참여자 658명 중 30% 이상이 학대를 경험했다고 응답하였다. 친생부모에 대한 질적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해외입양 절차상 인권침해는 해외입양인뿐만 아니라 친생부모를 대상으로도 이루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해외입양절차를 진행했거나, 입양의 내용과효과에 관한 정확한 정보 제공 없이 친생부모의 동의를 종용하였거나, 경제적으로 궁박한 상황을 이용해 동의를 강요한 사례도 있었다. 이러한 입양아동과 친생부모의 인권을침해하는 불법적인 입양 관행을 근절하려면 무엇보다 입양의 전 절차를 권한 있는 공적 당국이 관장하도록 해 공적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법원의 입양 허가를 받아야 입양이 최종적으로 성립하도록 입양절차가 변경되었고, 2021년 6월 30일부터는 입양을 고려하는 친생부모의상담을 지방자치단체의 아동보호전담요원이 담당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외 예비 입양부모의 입양 적격성 판단을 위한 상담과 교육, 입양대상아동과 예비 입양부모의 결연, 입양 이후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은 여전히 민간 입양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¹⁾과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²⁾은 권한 있는 공적 당국에서 입양을 관장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호아동의 입양 적격성 심사, 입양아동의 보호, 입양부모의 자격 심사와 교육, 아동과 입양부모의 결연과 같은 주요한 입양절차를 담당하도록 입양특례법의 개정이 필요하다.³⁾

둘째,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입양절차를 '일원화'해 모든 아동에 대

¹⁾ 제21조 입양제도를 인정하거나 허용하는 당사국은 아동의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되도록 보장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국은,

⁽a) 아동의 입양은, 적용 가능한 법률과 절차에 따라서 그리고 적절하고 신빙성 있는 모든 정보에 기초하여, 입양이 부모·친척 및 후견인에 대한 아동의 신분에 비추어 허용될 수 있음을, 그리고 요구되는 경우 관계자들이 필요한 협의에 의하여 입양에 대한 분별 있는 승낙을 하였음을 결정하는 관계 당국에 의하여만 허가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²⁾ 헤이그협약 제4, 5, 6조.

^{3) 2022. 12. 9.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동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은 민간 입양기관 중심으로 진행해 온 입양절차를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중심으로 전환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담고 있다.

한 입양절차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도록 민법과 입양특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 현재 입양을 관장하는 법은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입양특례법 제2조 2호에서 규정하는 '요보호아동'⁴⁾의 입양에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하고, 친생부모와 예비양부모 사이에 직접 합의가 가능한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한다. 실무적으로는 친생부모가 민간입양기관을 찾아가 입양을 의뢰하는 경우에는 입양특례법을 적용하고, 친생부모가 직접 예비양부모와 입양절차를 진행하는 경우에는 민법을 적용한다. 본 연구의 질적 면접에 참여한 39명의 해외입양인 중에도 해외입양 기관을 통하지 않고 입양된 사람도 9명(23%)이나 되었고, 양적 조사에서도 5%가 넘었다. 이러한 사실은 해외입양인 한국 정부에서 허가한 입양기관 외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입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한국 정부에서 해외입양을 하도록 허가받은 입양기관뿐 아니라 다른 민법상에도 2012년 법원 허가제를 도입해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되었으나⁵⁾, 그 외 민법상 입양절차 관련 규정은 양자가 될 사람의 입양에 대한 의사 표시에 관한 규정⁶⁾과 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규정⁷⁾이 전부이다. 입양특례법

- ②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이 그를 갈음하여 입양을 승낙한다.
- ③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이 없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 1. 법정대리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동의 또는 승낙을 거부하는 경우. 다만, 법정대리인이 친권자 인 경우에는 제870조제2항의 사유가 있어야 한다.
- 2. 법정대리인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 또는 승낙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④ 제3항제1호의 경우 가정법원은 법정대리인을 심문하여야 한다.
- ⑤ 제1항에 따른 동의 또는 제2항에 따른 승낙은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 7) 제870조(미성년자 입양에 대한 부모의 동의) ① 양자가 될 미성년자는 부모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1. 부모가 제869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경우
 - 2. 부모가 친권상실의 선고를 받은 경우
 - 3. 부모의 소재를 알 수 없는 등의 사유로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
 - ② 가정법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모가 동의를 거부하

⁴⁾ 입양특례법 제2조 2. "요보호아동"이란 아동복지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을 말한다.

⁵⁾ 민법 제867조(미성년자의 입양에 대한 가정법원의 허가) ①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가정법원은 양자가 될 미성년자의 복리를 위하여 그 양육 상황, 입양의 동기, 양부모(養父母)의 양육능력,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⁶⁾ 제869조(입양의 의사표시) ① 양자가 될 사람이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 입양을 승낙한다.

에 규정되어 있는 친생부모에 대한 입양 전 상담⁸), 예비양부모에 대한 사전교육⁹), 입양후 아동의 입양가정 적응 관찰과 필요한 서비스 제공 등 사후서비스에 관한 규정¹⁰)은 민법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에 근거하여 입양절차를 진행한 입양아동과 그 가족에게는 적용할 수 없다. 두 가지 경우 모두 아동의 입장에서는 친생부모에 의한 양육이어려운 상황이라는 점에서 아동복지법상 '보호대상아동'¹¹)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입양기관의 개입 내지 중개 여부에 따라 각각 민법과 입양특례법으로 분리되어 입양절차가 적용되는 현재의 법체계는 아동 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반한다.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의 요건과 절차를 일원화하여 입양이 아동 인권 최우선의 관점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입양절차를 통일해서 규율해야 한다. 민법에서는 아동과 성인을 망라한 입양에 대한 일반적이고 공통적인 사항을 규정하되, 아동의 입양에 대해 특별법적 지위를 갖는 입양특례법에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적 책임하에 모든 '아동'에 대한 입양 절차를 아동보호체계와 연계된 상태에서 아동이익 최우선의 원칙에 따라 진행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 입양 절차에 아동의 의견을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원칙 규정을 도입하고 아동청취권 보장을 위한 구체적이고 상세한 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아동권리협약¹²⁾, 헤이그협약¹³⁾과 국가 간 불법 입양에 관한 공동성명서는 입양에서 아동의 의견을 존중할

더라도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정법원은 부모를 심문하여야 한다.

^{1.} 부모가 3년 이상 자녀에 대한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부모가 자녀를 학대 또는 유기(遺棄)하거나 그밖에 자녀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동의는 제867조제1항에 따른 입양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⁸⁾ 입양특례법 제13조 제3항

⁹⁾ 입양특례법 제10조 제3항

¹⁰⁾ 입양특례법 제25조

¹¹⁾ 아동복지법 제3조 4. "보호대상아동"이란 보호자가 없거나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아동 또는 보호 자가 아동을 학대하는 경우 등 그 보호자가 아동을 양육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거나 양육할 능력이 없는 경우의 아동을 말한다.

¹²⁾ 제12조 1. 당사국은 자신의 견해를 형성할 능력이 있는 아동에 대하여 본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에 있어서 자신의 견해를 자유스럽게 표시할 권리를 보장하며, 아동의 견해에 대하여 는 아동의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정당한 비중이 부여되어야 한다.

¹³⁾ 제4조 이 협약의 적용을 받는 입양은 출신국의 권한 있는 당국이 다음과 같이 행한 경우에만 이루어질 수 있다.

d. 아동의 연령과 성숙정도를 고려하여 아래와 같은 사실들을 확보했을 경우

⁽¹⁾ 아동이 상담을 받았고, 입양의 효력과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의 효력에 대

것을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아동은 입양절차와 관련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보장받아야 하며, 표명된 아동의 견해는 연령과 성숙도에 따라 입양과 관련된 모든 사법, 행정 절차에서 적절하게 반영해야 한다. 현행 입양특례법에서는 13세 이상의 아동을 입양하고자 할 때에만 입양될 아동의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¹⁴⁾, 13세 미만 아동에게도 의견표명의 기회를 보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 나아가 입양 절차 전반에서 아동의 의견을 제대로 청취하고 반영할 수 있도록 입양특례법 제4조에 원칙 규정의 추가가 필요하다¹⁵⁾. 아동의 의견청취권 보장을 위한 법 개정과 더불어 아동의 의견청취권과 입양절차에 대한 참여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판사, 변호사, 사회복지사, 담당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에게 실질적인 교육과 매뉴얼이 제공되어야 한다.

넷째, 입양이 아동 최선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공무원과 입양관련 기관종사자가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절하고 충분한 교육과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한다. 해외입양인의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 결과는 똑같이 한국 입양기관이 입양실천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야 할 원칙을 지키지 않았음을 지적하고 있다. 친생부모에게 입양의 정확한 의미를 전달하지도 않았고, 원가정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하지 않았고, 형제자매를 분리하지 않고 함께 입양보내려는 노력도 하지 않았고, 입양서류는 입양을 좀 더 편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위조하고, 입양인의 뿌리찾기와 정체성 형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입양이 진정한 의미에서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려면 입양절차에 관여하는 모든 공무원과 종사자가 입양실천의 기본 원칙을 철저히 숙지하고, 입양삼자 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입양부모 각자의 욕구와 특성을 이해하고 전문성 있는 실천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고 슈퍼비전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해 적절히 설명을 받았다는 것

⁽²⁾ 아동의 희망과 의견이 고려되었다는 것

⁽³⁾ 입양을 위해 아동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동의가 자유의사로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그리고 서면으로 표시되거나 입증되었다는 것

⁽⁴⁾ 그러한 동의는 어떠한 종류의 금전지급이나 대가에 의해 기인된 것이 아니라는 것

¹⁴⁾ 입양특례법 제13조 제4항

¹⁵⁾ 현행 입양특례법 제4조는 "이 법에 따른 입양은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는 아동 최우선의 이익 원칙만을 규정하고 있다.

2)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권과 뿌리찾기의 보장

해외입양인은 입양 이후 전 생애에 걸쳐 정체성에 대한 질문을 가슴에 품고 살아간다. 성인이 된 이후 한국을 방문한 해외입양인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자신의 입양기록을 찾는 것이다. 친생부모가 누구인지, 어떠한 배경과 이유에서 본인이 입양되었는지 확인했을 때 입양인은 비로소 자신의 과거와 화해하고 마음에 평화를 찾는다. 따라서 해외입양인에게 본인의 입양기록에 접근할 권리, 친생부모를 알 권리는 정체성에 관한 근원적인 불안을 해소하고 온전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이러한 이유에서유엔아동권리협약은 제7조에서 "아동은 (중략)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2019년 유엔아동권리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입양아동이 그들의 친생부모에 대한 정보를 찾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그에 따른 적절한 접근권을 보장할 것"을 권고하였다. 16)

하지만 현행 입양특례법 제36조에 따라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친생부모를 찾은 경우는 5.8%에 불과하다.¹⁷⁾ 친생부모의 인적 사항을 확인한 경우에도 부모의주소를 파악할 수 없거나 정보공개에 대한 의사를 확인하지 못해 가족찾기를 하지 못한경우가 절반에 다다른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중 413명(80.7%)이 가족찾기의경험이 있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자신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 자체를 거부당하거나, 부족한 지원과 부실한 입양기록으로 인하여 뿌리찾기에 실패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찾기를 위해 한국 입양기관과 아동권리보장원에 도움을 청하지만,제대로 도움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다른 입양인이 가장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2011년 입양특례법의 개정으로 입양인이 입양정보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¹⁸⁾가 도입

¹⁶⁾ 제5, 6차 유엔아동권리위원회 최종권고 33.(e).

^{17) 2021. 10. 19.} 식약일보,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상봉", http://www.kfdn.co.kr/54102.

¹⁸⁾ 제36조(입양정보의 공개 등) ①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은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 이 보유하고 있는 자신과 관련된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이 법에 따라 양자 가 된 사람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양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9. 1. 15.>

② 아동권리보장원 또는 입양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때 입양아동의 친생부모의 동의를 받아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친생부모가 정보의 공개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제외하고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15.>

되었으나,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과 가족찾기는 실효성 있게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할 수 있도록 시급히 관련 법령을 다음과 같이 개선하고 이를 지원할 인력과 예산을 확대하여야 한다.

첫째, 입양인뿐만 아니라 친생부모와 그 가족도 입양인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공 개 청구권의 주체를 확대하여야 하며, 친생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여야 한다. 입양정보의 공개를 규정하고 있는 현행 입양특례법 제36 조는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을 "이 법에 따라 양자가 된 사람"으로만 한정하고 있어 해외입양인의 친생부모나 형제자매는 동 규정에 근거하여 입양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없다. 친생부모나 형제자매 쪽에서도 입양된 가족을 찾을 수 있도록 입양정보 공개 청구권자의 확대가 필요하다. 또한 동법 제36조 제3항은 친생부모의 동의 없이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공개할 수 있는 경우를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고."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로 제한하고 있다.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 사자의 명예를 보호해야 할 실익보다 살아온 날들과 앞으로 살아갈 날들 사이에서 정체성을 알 권리의 침해로 고통 받을 해외입양인의 인간의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먼저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더 크다. 따라서 친생부모가 사망한 경우에는 별도의 부가적인 사유를 요구하지 않고 해외입양인에게 친생부모의 인적사항을 포함한 입양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둘째, 국가는 과거 입양기록의 왜곡· 훼손·분실 등으로 해외입양인의 입양정보공개 청구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유전자 검사 등 대안적 지원을 통해 가족찾기가 최대한 보장되도록 지원해야한다. 입양정보공개청구를 한 해외입양인 중 약 5%만이 친생부모를 만나게 된 데에는 과거 해외입양 절차에서 입양아동과 친생가족의 정보가 제대로 기록·보관되지 않았던 문제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해외입양기록이 왜곡·훼손·분실된 경우 해외입양인 친생가족과 재회할 유일한 가능성은 유전자(DNA) 검사를 통해 가족을 찾아 확

③ 제2항의 단서에도 불구하고 친생부모가 사망이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양자가 된 사람의 의료상 목적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친생부모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입양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정보공개의 청구대상이 되는 정보의 범위, 신청 방법과 절차,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대다수도 기록이 정확하지도 않고 포괄적이지 않다고 한다. 또한 본 연구의 양적 조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의 95% 이상이 한국정부에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에 대한 배상으로 해외입양인과 원가족을 위한 무료 DNA 검사와 해외입양인의 DNA 샘플과 한국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DNA 데이터베이스간 매칭 작업을 원해, 해외입양인에게 가족찾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시사해 준다.

셋째,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 원가족의 재회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전문적인 통역 서비스와 상담지원 등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해외입양인은 영유아기 이래 오랜 기간 다른 언어와 문화에서 성장하고 생활해온 만큼 한국인 친생가족과의 재회와 소통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기 어렵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도 친생부모에 대한 면접 결과 오랜 기다림과 어려운 가족찾기 과정을 거쳐 자녀를 상봉한 기쁨도 컸지만, 재회의 자리에서 오랫동안 다른 문화권에서 생활해 온 해외입양인 자녀와 친생부모 사이에 존재하는 문화적·언어적 간극을 확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어려움은 본 연구의질적 면접에 참여한 해외입양인도 똑같이 호소하였다. 가족의 재회는 서로의 지난 시간동안의 아픔과 차이, 트라우마와 상처를 나누고 이해해나가는 긴 여정의 새로운 시작이었다. 따라서 이러한 재회의 여정에 입양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통역 서비스와 상담서비스 등이 재회 전후로 이루어져야만 수십 년간 단절되었던 가족관계의 회복이가능할 것이다.

3) 원가정보호의 원칙 실현

본 연구에 참여한 친생부모는 경제적 상황의 악화, 주거 상황의 불안정, 배우자의 생계지원 부족, 자녀 돌봄과 가족부양 병행의 어려움, 원가족의 지원 부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입양결정을 하게 되었다고 응답했다. 자녀양육의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가족이나 친지 등 주변 사람으로부터 도움까지 받지 못하게 되어 불안과 위기감을 느낄 때 병원이나 친지로부터 해외입양을 권유받았고 해외입양의 내용과 효과에 대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하게 해외입양으로 유인되었다. 이러한 상황은 현재까지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2021년 기준 한국의 해외입양아동 중 99.5%가 미혼모 가정 출신이다. 19) 미혼모 가정에 대한 지원은 부족하고 차별적인 인식은 만연한 결과 미혼모 가정의 아동이 해외입양 대상 아동 중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통계는 입양 문제와 미혼모에 대한 차별의 문제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는 점을 드러낸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아동권리협약²⁰⁾과 헤이그협약²¹⁾은 모든 아동에게 출신가정과 출신국가에서 양육될 기회를 최우선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하지만 오랫동안 미혼모를 포함한 한부모 가족에 대한 지원 수준은 입양가정에 대한 지원보다 적은 수준이었다. 최근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됨에 따라 정부의 한부모 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 지원이 증가했으나²²⁾ 미혼모 홀로 가정에 대한 경제적 책임을 지며 동시에 아동을 양육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부족하다. 따라서 아동이 해외입양 이전에 출신국가와 출신가정에서 신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정부는 첫째 사회적·경제적으로 취약한 친생부모가 빈곤을 이유로 자녀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아동양육에 대한 지원과 예산을 증대하여야 한다. 둘째, 혼인 외 자녀와 그 가정에 대한 사회적·제도적 차별과 배제를 개선하여 혼인 외 임신과 출산, 양육에 대해 포용적이고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야 한다.

4) 헤이그협약의 비준

헤이그협약은 해외입양으로 국가를 이동하는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고 입양에 의한 유괴·인신매매 방지를 위한 국제입양의 절차와 요건을 규정하기 위해 1993. 5. 29. 헤이그

¹⁹⁾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국내외입양현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01&CONT_SEQ=372383&PAR_CONT_SEQ=356055

²⁰⁾ 유엔아동권리협약 제7조 1. 아동은 출생 후 즉시 등록되어야 하며, 출생시부터 성명권과 국적취 득권을 가지며, 가능한 한 자신의 부모를 알고 부모에 의하여 양육받을 권리를 가진다.

²¹⁾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전문 중 "각국은 우선적으로 아동이 그의 출신가정의 보호 아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함을 상기하고, 국제입양이 출신국에서 적당한 가정을 발견하지 못한 아 동에게 안정된 가정을 제공할 수 있음을 인식하며"

²²⁾ 한부모가정에 대한 아동양육비는 월 5만 원이었던 수준에서 7만 원, 2017년 12만 원, 2019년 20만 원으로, 청소년 한부모 가정은 2017년 18만 원, 2019년 19만 원, 2022년 35만 원으로 증액되어 왔다.

국제사법회의에서 채택하고 1995. 5. 1. 발효한 다자간 협약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헤이그협약은 입양은 아동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이루어져야 하며, 원가정보호가 원칙이며 원가정 보호가 불가능할 경우 국내에서 보호할 가정을 찾고, 해외입양은 최후에 추진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해외입양은 권한 있는 당국이 추진해야 하며 아동보호를 위해 국가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시한다.

한국은 2013년 5월 24일에 헤이그협약에 서명했으나 아직 국회비준을 마치지 못한 상태이다. 헤이그협약의 이행을 위하여 현재 국회에는 입양특례법 전부 개정안과, 국제 입양법 제정안이 다수 발의된 상태이다²³). 입양절차에서 어디까지를 민간 사회복지기관에 위임할지 이견이 존재하나, 민간에 일임되어 있던 기존 입양절차를 공적인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개선해야 하며, 아동 최선의 이익을 우선으로 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적인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회는 현재 국회 계류된 입양특례법 개정안과 국제입양법 제정안을 아동 최선의 이익의 원칙에 따라 검토하고 조속히 입법을 추진하여야 할 것이며 이를 바탕으로 헤이그협약에 대한 비준 동의 안도 처리하여야 한다.

2.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에 대한 국가의 책임

본 연구에서 진행한 문헌 조사와 질적 조사, 양적 조사 결과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 절차를 통해 한국 해외입양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침해되었음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해외입양인 인권침해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려면 국가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야 한다.

첫째, 해외입양인의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는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고, 조사결과 확인된 인권침해 사실에 대해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해외입양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 결과 과거 해외입양 절차상 고아

^{23) 2022. 12. 9. 『}입양특례법』전부개정안과『국제입양에 관한 법률안』제정안이 제400회 국회(정기회) 제1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하였다.

호적 창설, 입양대상 아동의 신분변경, 기록의 조작, 친부모 동의 없는 입양 등이 널리 이루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아동을 해외로 송출한 이후 국가와 입양기관 어느 곳에서도 입양아동이 입양가정에서 잘 적응하는지, 아동학대 피해는 없는지, 수령국의 시민권을 취득하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과 사후관리를 일절 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해외입양인 다수가 국가와 입양기관이 해외입양아동에 대한 보호책임을 방기한 결과 해외입양가정에서 신체적·정신적 폭력과 성적 학대 피해를 본 것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과거의 불법적인 해외입양을 조사하려면 국가 차워의 조사가 필요하다.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이 이루어진 데는 해외입양을 적극적으로 장려·촉진하고, 대리입양제 도를 통해 해외입양절차를 간이화하고, 해외입양 규제를 자율화해 해외입양의 산업화를 조장한 국가의 책임이 명백하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의 책임하에 불법적인 해외입양이 이루어진 이상 '진실과 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이하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 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2022년 8월 23일 "덴마크 한국인 진실규명 그룹 (DKRG, Danish Korean Rights Group)은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과거 권위주의 시기의 입양된 자신들의 해외입양 과정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에 대한 조 사를 신청하였다.24)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2022년 12월 8일 "친생부모가 있었음에도 유 괴 등 범죄피해나 친생부모 동의 없는 입양이 이루어졌고, 고아로 서류가 조작돼 본래의 신원 및 친생 가족에 대한 정보가 변동·유실되는 등 UN아동권리협약 상 '정체성을 알 권리' 등을 침해당했다"는 진실규명 신청에 대해 "신청 내용이 명백히 허위이거나 이유 없다고 인정되지 않는 등 각하 사유가 없으므로 조사개시를 결정함"이라고 밝히며 해외 입양인 조사 신청자 가운데 우선 34명에 대한 조사 개시를 공식 발표하였다.25) 앞으로 진실과 화해위원회는 과거 해외입양의 불법적인 문제를 조사하여 진실을 밝히고 이를 바탕으로 입양인과 가족에게 사과하고 피해에 대한 보상을 진행하여야 할 것이다.

²⁴⁾ 첫 신청에서 51명의 덴마크로 입양된 한국 해외입양인이 참여하였으나, 이후 다른 국가로 입양된 한국 해외입양인의 조사신청 요청에 따라 세 차례에 걸쳐 추가 신청이 이루어졌고, 12월 9일 최종 신청까지 총 9개국(덴마크, 노르웨이, 네덜란드, 벨기에, 미국, 독일, 프랑스, 스웨덴, 호주), 369명의 해외입양인이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5)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위원회 홈페이지 "진실화해위원회, 해외 입양 과정 인권침해사건 (I) 조사개시" 발표 자료 참조, 자료 출처: https://www.jinsil.go.kr/fnt/nac/selectNoticeDe tail.do?bbsId=BBSMSTR_000000000710#).

그러나 진실과 화해위원회에 조사를 신청한 해외입양인의 숫자는 피해를 본 해외입양인 중 극히 일부라는 한계를 고려할 때, 국가는 진실과 화해위원회의 조사와 별개로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의 진실규명과 해외입양인의 인권 회복을 위한 특별기구 또는 특별위원회를 정부 차원에서 설치하여 전 세계의 해외입양인 전수를 대상으로 조사할 것을 제안한다. 네덜란드와 덴마크, 스위스는 불법 해외입양에 대한 조사 요청을 받은 후국가 차원의 조사를 실시하여 해외입양 절차에서 인권침해가 발생하였고 국가와 입양중개기관이 인권침해 문제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였음을 확인한 바 있다.

둘째, 국가는 과거 불법적인 해외입양으로 인해 인권침해를 당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의 피해에 대하여 충분하고 적절하게 보상해야 하며, 해외입양으로 인한 단절과 상실의 피해와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국가기관을 설립해야 한다. 해외입양절차에서 발생한일련의 인권침해는 권위주의 정권의 적극적인 해외입양 부양 정책과 그에 따른 입양 관련법과 제도 아래에서 자행된 만큼 국가는 진상조사를 진행해 해외입양절차상 인권침해문제를 낱낱이 밝히고, 그로 인해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본 입양인과 그 가족에게 사과하고 배상해야 한다. 본 연구의 양적 조사에 응답한 해외입양인 4명 중 3명은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의 결과로 본 해외입양인의 피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했으며, 10명중 9명 이상이 입양정보찾기에 대한 지원, 심리 치료를 위한 지원, 가족찾기를 위한 유전자 검사 등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다.

셋째, 국가는 해외입양인의 입양기록에 대한 접근을 보장하고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외입양과 관련된 기록과 정보를 민간 입양기관과 아동 양육시설 등에서 이관받아 공적으로 영구 보관해야 한다. 해외입양인에게 정체성을 알 권리는 인격권과 행복추구권, 인간답게 살 권리의 실현을 위한 기본적인 권리이다. 불법·탈법적인 방식으로 입양된 해외입양인은 친생부모와 정체성을 찾을 권리를 중대하게 훼손당하였다. 입양기관은 현재도 입양인의 정보공개청구 요청에 비협조적 경우가 많다. 해외입양인은 본인의 입양에 대한 기록임에도 입양정보를 제공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며, 제공받더라도 매우 부실한 수준일 경우가 많다. 입양정보에 대한 접근권을 제대로 보장받지못한 상황에서 해외입양인은 근원적인 정체성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최근 해외입양 송출국으로서 과거 독재정권하에 진행된 불법입양에 관한 국가 차원의 조사를 진행하면서 해외입양인이 자기 정체성을 찾고, 친생부모가 읽어버린 자녀를 찾게 돕는 포괄적인 입양관련 자료와 DNA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칠레의 사례는 한국 정부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국회의 의뢰로 국가 차원의 조사를 담당한 판사는 과거 불법입양에 관여한 여러 종사자가 보관하고 있던 해외입양관련 자료를 압수하고, 스웨덴과같은 해외입양 수령국에서도 자료를 수집해 광범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였다. 그리고 법무부는 2022년 Nos Buscamos라는 민간기관과 함께 해외입양인과 친생부모가 서로를 찾는 시범사업을 시작했는데, 이미 7천 건 이상의 사례가 등록했다고 한다. 친생가족 찾기는 해외입양으로 인한 인권침해 피해자의 권리로 대두했고, 법무부 시범사업은 가족재결합을 돕기 위해 해외나 외딴 곳에 거주하는 개인의 DNA 샘플을 수집하는 절차등 가족찾기와 재회에 저해되는 문제를 줄이고, 가족찾기에 드는 비용과 가족찾기 과정을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²⁶⁾.

넷째, 과거 해외입양절차에서 해외입양인과 그 가족이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받은 사례가 다수 발견된 이상 정부는 해외입양 정책이 아동과 그가족의 인권을 침해하는 정책임을 인정하고 앞으로 더 이상 비슷한 비극을 반복하지 않도록 해외입양의 중단을 선언하여야 한다. 연구에 참여한 해외입양인 대다수는 해외입양을 부정적으로 인식했고 한국 정부는 해외입양을 고려하기 이전에 원가족 보호를 우선해야 한다고 답했다(95%). 나아가 해외입양을 지속해야 할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지않으며 오래전에 해외입양을 중단했어야 한다고 답변하였다(85%). 불법적인 해외입양을 조사하기 위해 2019년에 구성된 네덜란드의 조사위원회는 해외입양 절차상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인권침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 네덜란드 정부를 상대로 해외입양 관련 잘못의 인정, 해외입양의 중단 선언, 해외입양인을 지원하는 국립전문센터의 설립을 권고한 바 있다.

²⁶⁾ Nos Buscamos (2022). 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omanos anuncia Plan Piloto para egrentar casos de adopción e inscipción irregulares .https://nosbuscamos.org/ministerio-de-justicia-y-derechos-humanos-anuncia-plan-piloto-para-enfrentar-casos-de-adopcion-e-inscripcion-irregulares/

참고문헌

<학술논문>

- 고혜연·임영식. (2005). 해외입양인의 심리 사회적 적응. 미래청소년학회지, 2(2), 5-16.
- 고혜연·임영식. (2008). 해외입양 사후관리 서비스의 문제점과 그 개선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10(1), 185-213.
- 권지성·최슬기. (2021). 성인입양인의 정체성 형성과정에 대한 맥락-패턴 분석. 사회과학연구, 32(4). 283-311.
- 김상용. (2009). 입양촉진 및 절차에 관한 특례법의 개선 방향- 국내 입양을 중심으로. 가족법연구, 23(2). 217-256.
- 김상용. (2000). 부모의 권리와 아동 최선의 이익 (자녀의 복리). 아동과 권리, 4(2). 25-55.
- 김진. (1962). 고아입양특례법.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 4, 124-139.
- 김효진·이재연. (2011). 국내외 입양 관련 법률 체계와 내용에 관한 비교연구: 한국, 일본, 노르웨이, 스웨덴, 영국을 중심으로. 한국아동복지학, 34, 127-153.
- 노충래. (2012). 헤이그 입양협약과 관련된 아동복지의 과제. 아동과 권리, 16(2), 309-340.
- 민은경. (2021). 정체성을 보존할 권리와 애도할 권리: 해외입양아동을 중심으로 유엔아동권리협약 읽기. 여성문학연구, 2021(53), 10-41.
- 박미정·이미선·고혜연. (2011). 국외입양사후서비스 체계화를 위한 평가지표 개발 연구. 미래청소년학회지, 8(4), 197-224.
- 박미정·이숙영. (2007). 국외입양인의 아동기 성장환경에 관한 탐색적 연구. 임상 사회사업연구, 4(2), 87-118.
- 박인선. (1997).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과 입양실천현장의 과제. 한국아동복지학, 5(12), 147-168.
- 안문희. (2018). 입양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2018(3), 1-310.
- 안재진·권지성. (2010). 국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사회복지연구, 41(4), 369-393.

- 안재진. (2011). 국내법에 나타난 입양제도의 변천과정 분석: 아동권리의 관점에 서. 한국가족복지학, 16(4), 71-95.
- 안재진·권지성. (2012). 국외입양인의 삶의 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아 동복지학, 37, 7-35.
- 유혜량·임채완. (2016). 해외입양 한인의 정체성 정치: '뿌리찾기운동'을 중심으로. 한국동북아논총, 79, 149-169.
- 윤성승·허남순. (2014). 국제입양에 관한 헤이그 협약에 비추어 본 국제입양 관련 법의 개선방안. 법과 기업 연구, 4(2), 3-44.
- 이미선. (2002). 해외입양인의 자아정체감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14, 114-144.
- 임영언·임채완. (2012). 해외입양 한인 디아스포라: 한국 내 주요 신문보도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재외한인연구, 26, 77-104.
- 장윤수. (2008). 한인디아스포라와 해외입양. 세계지역연구논총, 26(3), 83-103.
- 허남순. (1997). 미국 가정에 입양된 한국 아동들의 민족적 정체감에 관한 연구. 한국아동복지학, 5, 121-146.
- Borczyskowski, A., Hjern, A., Lindblad, F., Vinnerljung, B. (2006). Suicidal behaviour in national and international adult adoptees.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41(2), 95-102.
- Cannon, P., Blackman, N., Kim, C., Kim, K, Rounds, L. (Eds.) (2020). Together at last: Stories of adoption and reunion in the age of DNA. Thomas & Wonsook Foundation.
- Diener, E., Emmons, R., Larsen, R., Griffin, S. (1985). The satisfaction with life scale. *Journal of Personality Assessment*, 49(1), 71-75.
- Hjern, A., Allebeck, P. (2002). Suicide in first-and second-generation immigrants in Sweden: A comparative study. *Social Psychiatry and Psychiatric Epidemiology*, *37*(9), 423-429.
- Hjern, A. (2004). Illicit drug abuse in second-generation immigrants: A register study in a national cohort of Swedish residents. *Scandinavian Journal of Public Health*, *32*(1), 40-46.
- Kocalevent, R. D., Berg, L., Beutel, M. E., Hinz, A., Zenger, M., Härter, M.,

- Nater, U., Brähler, E. (2018). Social support in the general population: Standardization of the Oslo social support scale (OSSS-3). BMC Psychology, 6(1), 1-8.
- Koo, Y. (2021). The question of adoption: "Divided" Korea, "neutral" Sweden, and cold war geopolitics, 1964-75.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80(3), 563-585.
- Lee, K. (2021). The global orphan adoption system: South Korea's impact on its origin and development. Koroot.Sarri, R. C., Baik, Y., Bombyk, M. (1998). Goal displacement and dependency in South Korean-United States intercountry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s Review.* 20(1-2), 87-114.
- Lindblad, F., Hjern, A. (2003). Intercountry adopted children as young adults: A Swedish cohort study.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3(2), 190-202.
- Sarri, R., Baik, Y., Bombyk, M. (1998). Goal displacement and dependency in South Korea: United States intercountry adoption. *Children and Youth Service Review, 20*, 87-114.
- Selman, P. (2014). Intercountry adoption of children from Asia in the twentieth-first century. *Children's Geographies*, 1-16.
- Schweizerischen Bundesrates. (1999). Botschaft betreffend das Haager Übereinkommen vom 29. Mai 1993 über den Schutz von Kindern und die Zusammenarbeit auf dem Gebiet der internationalen Adoption sowie das Bundesgesetz zum Haager Adoptionsübereinkommen und über Massnahmen zum Schutz des Kindes bei internationalen Adoptionen [Dispatch regarding the Hague Convention of 29 May 1993 on the Protection of Children and Cooperation in Respect of Intercountry Adoption and the Federal Act on the Hague Adoption Convention and Measures for the Protection of Children in Intercountry Adoption], 5795-5844 Fedlex-data-admin-ch-eli-fga-1999-1_5795_5129_4799-de-pdf-a.pdf
- Vinnerljung, B., Lindblad, F., Hjern, A., Rasmussen, F., Dalen, M. (2010). School performance at age 16 among international adoptees: A Swedish

national cohort study. *International Social Work, 53*(4), 510-527.

<학위논문>

- 김경옥. (2009). 국외입양인 사후관리 연구: 유럽지역 국외입양인을 중심으로. 석사학위 논문. 경북대학교 국제대학원.
- 김아람. (2009). 1950~1960년대 전반 한국의 혼혈인 문제: 입양과 교육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 김재민. (2016). 한국의 해외입양 정책 연구: 국가기록물과 언론보도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성공회대학교.
- 민병웅. (2022). 한미 해외입양체제와 혼혈인의 몸, 그리고 인종 과학. 석사학위논 문. 서울대학교.
- 박인선. (1993). 해외입양인의 뿌리찾기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신필식. (2020). 한국 해외입양과 친생모 모성, 1966~1992. 박사학위 논문. 서울 대학교.
- 원영희. (1990). 한국입양정책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 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이경은. (2017). 국제입양에 있어서 아동 권리의 국제법적 보호. 박사학위논문. 서울 대학교.
- 이미선. (2002). 해외입양인의 심리사회적 적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 논문. 서울여자대학교.
- 조가은. (2019). 박정희 정부 해외입양 정책의 형성과 체제화-근대화 구상과 해외입양 체제.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홍진향. (2009). 국외입양동포 사후관리 정책 연구: 한국어교육 정책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단행본>

- 김동수. (2015). 한국인의 시각에서 본 국제입양. 한국 해외입양. 서울: 뿌리의집. 김주수·김상용. (2019). 친족·상속법(제16판). 파주: 법문사.
- 김호수. (2015). 아이를 키우지 못한 엄마들: 한국전쟁 이후 한국의 생모들. 한국 의 해외입양. 서울: 뿌리의집.

- 이봉주. (2015). 한국의 아동복지와 입양의 최근 추세, 한국 해외입양. 서울: 뿌리의 집.
- 전홍기혜·이경은·제인 정(트렌카). (2019). 아이들 파는 나라: 한국의 국제입양 실 태에 관한 보고서. 파주: 오월의 봄.
- Cantwell, N. (2022). 국가 간 입양과 아동 최선의 이익 (뿌리의집, 역). 서울: 뿌리의 집, (원서출판 2014).
- Hong, J. (Ed.). (2006). Guide to Korea for Korean Adoptees: International Korean adoptees resource book. Seoul, Korea: Overseas Korean Foundation.
- Bergquist, K., Vonk, M., Kim, D., Feit, M. (2015). 국제입양의 기관화: 미국 내 한국인 입양의 역사적 기원. 한국 해외입양: 초국가적 아동 양육실험과 분투 하는 입양 서사 50년(유진월 역). 서울: 뿌리의집.(원서출판 2013).
- Oh, A.(2019). 왜 그 아이들은 한국을 떠나지 않을 수 없었나: 해외입양의 숨겨진 역사 (이은진, 역). 서울: 뿌리의집. (원서출판 2015).
- Pelton, L. (1988). The institution of adoption: Its courses and perpetuation. In D. Valentine (Ed.) Infertility and adoption: A guide for social work practice. New York: Haworth Press.
- Ware, J. E., Snow, K. K., Kosinski, M., Gandek, B. (1993). *Manual and interpretation guide*. Boston: The Health Institute, New England Medical Center.

<연구보고서>

- 구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2014). 헤이그비준준비팀, 필리핀 출장 결과보고서.
- 구 중앙입양원(현 아동권리보장원. (2015). 조사연구부 헤이그협약팀, 공무 출장 결과보고서-체코, 폴란드.
- 국회입법조사처. (2017). 「입양특례법」의 입법영향분석.
- 김미숙·김효진·전진아·안재진·김유경·신윤정·임성은. (2013). 국외입양인 실태조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
- 김유경·임성은. (2011). 해외입양 줄이기 종합대책 연구. 보건복지부·중앙입양정보

- 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진석. (2017). 입양제도 개선방안: 입양 절차상 공적 개입 강화 방안을 중심으로.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노혜련. (2017). 한국 입양실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아동권익보호를 위한 입양 및 학대 예방 제도 그리고 개선방안 토론회 자료집.
- 신윤정·백선희·임지영. (201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입양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엔아동권리위원회. (2019). 대한민국 제5·6차 국가보고서에 대한 최종견해. 헤이 그협약 제4, 5, 6조.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정책실 아동정책과. (1978). 입양사업지침 1978-1988. 국가기록원. 관리번호: DA0872941.
- 뿌리의집. (2021). 과거 해외입양절차 인권침해사례 보고서: 심층 인터뷰 -해외입 양인 당사자들의 목소리. 국가인권위원회 2021년 인권단체 공동협력사업. 국가 인권위원회.
- 신윤정·백선희·임지영. (2017). 헤이그국제아동입양협약 비준에 따른 입양 지원 체계 개편 방안.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유혜량. (2015). 개회사. 전남대학교 글로벌디아스포라연구소 국내학술회의. 118-118. 이상정·류정희·임정미·이주연·노혜련·변미희. (2018). 아동보호체계 강화방안 연구. 보건복지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전홍기혜. (2021). 우리나라 해외입양의 실태 및 문제점. '해외입양 이대로 좋은 가?'. 아동중심 입양TF 1차 포럼 자료집. 저출산고령화위원회.
- 정기원·김만지. (1993). 우리나라 입양의 실태 분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헤이그국제사법회의. (2015). 특별회의 발표자료.
- Ankestyrelsen. (2021a). Mistake om ulovlige forhold i adoptioner fra Chile til Danmark 1978-1988 [Suspicion about illegal matters in adoptions from Chile to Denmark between 1978 and 1988].
- Ankestyrelsen. (2021b). Mistanke om ulovlige forhold i adoptioner fra Chile til Danmark 1978-1988: Appendix [Suspicion of illegal matters in adoptions from Chile to Denmark 1978-1988].
- Carroza, M. (2018). Investigation in case Rol IC 1044-2018, Chilean adoptees

- worldwide.
- 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2021a). Dutch report, Appendix in Dutch
- 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2021b). Bijlagen: Commissie onderzoek interlandelijke adoptie.
- International Reference Center for the Rights of Children Deprived of their Family-ISS(2021). Monthly Review. No. 257 December, 2021.
- Hübinette, T. (2003). The Korean adoption issue: Images of adopted Koreans in Korean media and popular culture. Conference paper.
- Londoño, E. (2021). Time We Can't Get Back: Stolen at Birth, Chilean Adoptees Uncover Their Past. New York Times.
- Nos Buscamos (2022). Ministerio de Justicia y Derechos Homanos anuncia Plan Piloto para egrentar casos de adopción e inscipción irregulares. https://nosbuscamos.org/ministerio-de-justicia-y-derechos-humanos-a nuncia-plan-piloto-para-enfrentar-casos-de-adopcion-e-inscripcion-irr egulares/
- Sepúlveda, N. (2019). Adopciones ilegales: 141 madres ya se han reencontrado con los hijos que les arrebataron al nacer [Illegal adoptions: 141 mothers have already been reunited with the children aken from them at birth]. **CIPER**
- The Committee Investigating Intercountry Adoption. (2021a). Unofficial Translation: Report.
- The Committee Investigating Intercountry Adoption. (2021b). Summary: Consideration, Analysis, Conclusions, Recommendations and Summary.
- Villarrubia, G. (2014). Los niños dados por muertos que el cura Gerardo Joannon Entregó para adopción [The children left for dead that the priest Gerardo Joannon gave for adoption]. CIPER.

<인터넷 문서>

- 국민권익위원회. (2011. 2. 21). '가슴으로 낳은 아이도 가족입니다. 입양 그리고 대한민국', http://blog.daum.net/_blog/BlogTypeView.do/?blogid=0PEHG&articleno= 3571&categoryId=4®dt=20110221233100. 2022년 8월 12일 인출.
- 민법. 전자법률도서관. https://academynext.lawnb.com/Info/ContentView/?sid =L0002038D7206EF4. 2020년 4월 13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1). 2020년 입양통계. https://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2708. 2022년 8월 12일 인출.
- 보건복지부. (2022). 2021년 국내외입양현황. https://www.mohw.go.kr/react/gm/sgm0704vw.jsp?PAR_MENU_ID=13&MENU_ID=1304080101&CONT_SEQ=372383&PAR_CONT_SEQ=356055. 2022년 10월 30일 인출.
- 식약일보. (2021. 10. 19). 해외입양인, 입양정보공개 청구해도 5%만 가족 상봉. http://www.kfdn.co.kr/54102 2022년 12월 18일 인출.
- 이현미. (2016. 3. 30). 고아 수출국'오명 벗지 못한 한국. 세계일보. https://www.segye. com/newsView/20160330003518. 2022년 10월 10일 인출.
- 입양아 확보 위해 '뒷돈' 홀트 아동복지회 등 고아원·병원마다 '연고권' 다져. (1989. 9. 27). 한겨레.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index.naver?articleId =1989092700289110001&editNo=4&printCount=1&publishDate=1989-09-27 &officeId=00028&pageNo=10&printNo=423&publishType=00010. 2022년 11 월 5일 인출.
- 입양특례법. 법제처. 국가법령센터.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9E%85%EC%96%91%ED%8A%B9%EB%A1%80%EB%B2%95. 2022년 10월 11일 인출.
- 전홍기혜.(2017. 9. 8). 이승만 정권의 해외입양은 '혼혈아 청소'였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6089. 2022년 10월 10일 인출.
- 전홍기혜. (2017. 9. 12). 전두환 정권, '아동수출'로 한 해 200억 벌었다. 프레시안. https://www.pressian.com/pages/articles/167856?no=167856&ref=nav_se arch. 2022년 10월 10일 인출.
- 중앙입양원. (2016). 국가별 국외입양 통계(1958-2015). https://www.kadoption.or.kr/board/board_view.jsp?no=193&listSize=10&pageNo=2&bcode=06_1&

- category=%ED%86%B5%EA%B3%84. 2022년 10월 31일 인출.
- 홀트 인터내셔널. https://www.holtinternational.org/adoption/. 2022년 9월 6일 인출.
- 해외입양아 입도선매(立稻先賣) 홀트아동복지 등 4개 사회기관 고아원 등 돈 주고 연고권. (1989. 9. 27). 조선일보. https://newslibrary.naver.com/viewer/ index.naver?articleId=1989092700239115002&editNo=1&printCount=1&pub lishDate=1989-09-27&officeId=00023&pageNo=15&printNo=21071&publish Type=00010. 2022년 8월 10일 인출.
- 통계청. (2022). e-나라지표. 국내외입양현황(2016-2020).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o?orgId=117&tblId=DT_11770N001&vw_cd=MT_ZTITLE&list_id=G_1&scrId=&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2022년 4월 23일 인출.
- 통계청. (2022). e-나라지표. 국내외 입양현황. https://kosis.kr/statHtml/statHtml.d o?orgId=117&tblId=DT_11770N001&vw_cd=MT_ZTITLE&list_id=G_1&scrId= &seqNo=&lang_mode=ko&obj_var_id=&itm_id=&conn_path=E1.2022년 11월 8 일 인출
- 통계청. (2022). e-나라지표. 2021년 아동학대 주요통계. https://www.index.go.kr/u nity/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422. 2022년 12월 21일 인출.
- Adoptions Centrum. (2022a). Adoptions in Sweden [Adoptions from Sweden]. Adoptions in Sweden-Adoptionscentrum. 2022년 4월 24일 인출.
- Adoptions Centrum. (2022b). Antal förmedlade adoptioner per år 1970-2018 [Number of foreign adoptions per year 1970-2018] https://www.adoptionscentrum.se/contentassets/828f585ecc864b219766f 8520509fc1c/antal-adoptioner-per-ar.pdf. 2022년 4월 24일 인출.
- Adoptions Centrum. (2022c). Antal adoptioner/mån [Number of adoptions/months]. https://www.adoptionscentrum.se/sv/Adoption/Adoptionsstatistik/. 2022년 4월 24일 인출.
- Child Identity Protection. (2022a). https://www.child-identity.org/en/about -us/what-we-do.html. 2022년 11월 8일 인출.
- Child Identity Protection. (2022b). Policy brief 1: Child's right to identity in inter-country adoption. https://child-identity.org/images/files/CHIP-Policy

- -Brief-Ad option-EN-V2.pdf. 2022년 9월 9일 인출.
- Rothschild, M. (1988. 01). Babies for sale. South Koreans make them, Americans buy them. The Progressive. http://www.transracialabductees.org/politics/progressive.html. 2022년 10월 3일 인출.
- National Bureau of Statistics of China. (2018). https://www.populationpyramid. net/ja/中華人民共和國/2017/. 2019년 1월 31일 인출.
- Selman, P. (2022) Global statistics for intercountry adoption: Receiving states and states of origin: 2004-2020. https://assets.hcch.net/docs/a8fe9f19-23e6-40c2-855e-388e112bf1f5.pdf. 2022년 11월 8일 인출.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Treaty Bodies & United Nations Human Rights Special Procedures Special Rapporteurs, Independent Experts & Working Groups. (2022). joint%20statement%20on%20illegal%20intercountry%20adoptions%20-%202022. 2022년 10월 26일 인출.

SURVEY on HUMAN RIGHTS in the ADOPTION PROCESS

You are invited to participate in a survey which is part of a study led by a team of researchers in collaboration with the Korean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n the status of human rights with respect to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ICA) program.

The purpose of this survey is to

- Assess the status of human rights in ICA involving South Korean children
- Identify types of human rights issues in such ICA
- Examine adult adoptee attitudes towards ICA involving South Korean children
- Examine a potential correlation between human rights issues and the respondents' life satisfaction, social support, and mental health.

Several questions in the survey inquire into whether your human rights were protected and/or violated. Please answer the questions based on your personal understanding of human rights.

Please note that you must be 18 or older to participate in this survey.

Your information will be assigned a code number that is unique to this study. We will not collect any identifying information, such as your name,

phone number or email address. Your responses are voluntary and will remain anonymous. In accordance with "the Privacy Protection and Statistics Act" of Korea, Chapter 33, Article 1 and 2, your responses will be confidential. All responses will be compiled together and analyzed as a group and used for research purposes only. You may decline to participate or withdraw from the study at any time without any consequences.

Please note that all raw data belongs to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and that the research team will digitize and hand over all collected raw data upon completion of this specific study. This will allow the 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to conduct further analysis if deemed necessary. In accordance with the Public Records Management Act, all raw data will be stored as Public Records until the expiration date determined by this Act's Enforcement decree and will be permanently destroyed thereafter. Only the officer in charge and the officer responsible for managing public records will be allowed access to the data.

We would appreciate your taking the time to complete the following survey, which should take no more than 30 minutes.

There are no known risks associated with your participation in this research beyond those of everyday life. However, it is possible that some questions might remind you of difficult memories. Please note that you can stop participating at any time you wish. Although you will receive no direct benefits, this study may help the investigators understand to what extent human rights were protected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adoption from South

Korea and to develop ways to better safeguard these rights.

Please note that by completing this survey, you consent to participation in this study.

You may print or save a copy of this consent form for your records.

If there is anything about the survey or your participation that is unclear or you have questions or wish to report a research-related problem, you may contact us at kicastudy@gmail.com.

Principal Investigator Helen Noh, Ph.D. Dept. of Social Welfare College of Social Sciences Soongsil University

I hav	e read	the	above	and	understand	the	content.
I am	18 yea	rs o	ld or o	older.			

Section A - Basic Demographic Information

This section aims to gather some basic demographic information.

A-1.	What was your sex assigned at birth?
	1) Male
	2) Female
	3) Prefer not to say
	4) Other
A-2.	Which most clearly describes your gender?
	1) Male
	2) Female
	3) Transgender
	4) Non-binary/non-conforming
	5) Prefer not to respond
	6) Gender not listed
A-3.	What is your year of birth according to your adoption documents?
A-4.	To the best of your knowledge, what is your actual year of birth?
A-5.	What is the highest level of formal education you have completed?
	1) Less than high school
	2) High school

3) Some college or university education

4) Bachelor's degree

- 5) Master's degree
- 6) Ph.D. or other professional degree (e.g., law, medicine)

A-6. Tell us about your siblings.

	Yes	No	l don't know	N/A
A-6.1. I have (a) sibling(s) from my original family.				
A-6.2. I have (a) sibling(s) from my original family who				
was/were placed in an adoptive home with me.				
A-6.3. I have (a) sibling(s) from my original family who				
remained in the original family.				
A-6.4. I have (a) sibling(s) from my original family who was/were				
placed in an adoptive home different from mine.				
A-6.5. I have (an) adoptive sibling(s) who is/are from South				
Korea and not from my original family.				
A-6.6. I have (an) adoptive sibling(s) who is/are adopted from				
another country.				
A-6.7. I have (an) adoptive sibling(s) who is/are born to my				
adopted family.				

A-7. What is your current marital status (choose only one)?

- 1) Single, never married
- 2) Married or in a civil union
- 3) In a domestic partnership
- 4) Widowed
- 5) Divorced
- 6) Separated
- 7) Other (Please specify)

A-8. What would you say your current economic status is?
1) Much lower than average
2) Lower than average
3) About average
4) Above average
5) Much above average
A-9. What is your country of adoption? (To which country were you adopted
to?)
1) Luxembourg
2) the Netherlands
3) Norway
4) Sweden
5) United States
6) the US
7) other
A-9.2. If your response to the above question is 'other', please specify here.
A-10. What is your current country of residence?
1) Australia
2) Belgium
3) Canada
4) Denmark
5) England

	6) France
	7) Germany
	8) Italy
	9) Luxembourg
	10) the Netherlands
	11) Norway
	12) Sweden
	13) the US
	14) other
A-10.2	2 If your response to the above question is 'other', please specify here.
A-11.	Who in South Korea facilitated your adoption?
	1) Child Placement Service / Social Welfare Society / Korea Welfare
	Services
	2) Holt Children's Service (Holt)
	3) Korean Social Services (KSS)
	4) Eastern Social Welfare (Eastern)
	5) Private adoption (no adoption agency involved)
	6) Don't know
A-11.2	2. If your response to the above question is 'other', please specify here.
A-12.	Please name the non-South Korean partner adoption agency, if
	applicable.

- A-13. How many times did you visit South Korea since being adopted?
 - 1) Never
 - 2) Once
 - 3) Twice
 - 4) 3 or 4 times
 - 5) More than 5 times
 - 6) I relocated and currently live in Korea
- A-15. If you currently reside (or have resided) in South Korea, how long have you been in Korea?
 - 1) Not applicable
 - 2) Less than a year
 - 3) 1 to less than 5 years
 - 4) 5 to less than 10 years
 - 5) 10 to less than 20 years
 - 6) More than 20 years

Section B - Protection of Your Human Rights

**This section inquires into your view on how well the South Korean adoption agencies (i.e., SWS, Holt, KSS, Eastern)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branches such as National Children's Rights Center or its predecessors GAIPS, KCARE and KAS) have protected your human righ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l don't know	N/A
[B-1]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agr	ee or dis	agree wit	h each c	of the follo	owing sta	itements
regarding your South Korean	adoption	agency				
1. They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2. They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help my original family in order to						
prevent family separation.						
3. They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keep me and my siblings together						
in the process of the adoption						
placement						
4. They did everything they could to						
find a placement for me within						
Korea before they considered						
intercountry adoption.						
5. They properly stored the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6. They gave me access to records						
related to my birth and original						
family.						

1. They had my best interest in mind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2. They protected my human rights						
throughout the process of my						
intercountry adoption.						
3. They provided adequate support for						
my original family prior to my						
intercountry adoption.						
4. They had a proper system in place						
to prevent unnecessary intercountry						
adoption						
B-3. Please feel free to make an	ny addit	ional co	omment	s about	human	rights
protection with respect to	the Sc	outh Ko	rean ad	option	agency	or the
South Korean governmen	t.					

Section C - Possible Breach of Your Human Rights Prior to the Adoption Placement

This section inquires into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that may have occurred prior to the adoption placement. The following is a list of such potential human rights violations, based on the research team's interviews with adopted persons.

Please choose the response that best reflects your knowledge and experience.

	Yes	No	I don't know	N/A
C-1. Issues around relinquishment				
1. My original parent(s) was(were) misinformed about the				
meaning and ramifications of adoption.				
2. My original parents were coerced into relinquishing me for				
adoption.				
3.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mother.				
4. I was adopted without the knowledge of my original father.				
5.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mother.				
6. I was adopted against the will of my original father.				
7. My original parent(s) wanted to discontinue my adoption				
process but was/were told that it was too late.				
8. I know or suspect I was kidnapped.				
9. I had an orphan hojuk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even though there wasn't enough evidence to confirm				
abandonment.				
10. I had an orphan hojuk and/or was reported abandoned				
even though the evidence proved that I was not abandoned.				
C-2 leaves at the South Karson facility (i.e. arphanage child	l 00r0	inatitut		

C-2. Issues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i.e., orphanage, child care institution, or group home)

1. I was given a new name and/or age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2. I was asked to work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e.g. cleaning,		
taking care of younger children, excessive chores) prior		
to the adoption placement.		
3. I was physic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4. I was sexually abused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5. I had or have marks and scars which have made me suspect		
that I endured physical abuse before the adoption placement.		
6. At the South Korean facility, there was lack of clothes, food,		
and education; poor hygiene, malnutrition and/or		
overcrowded rooms.		
C-3. Issues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1. Issues were reported during travel to the adoptive country		
(e.g., no proper child care during travel).		
2. The person who escorted me handed me over to adults		
who were not assigned as my adoptive parents.		
C-4. Please feel free to make additional comment violations that occurred before you were plantage.		

Section D - Issues with your adoption file/ documents

This section aims to inquire about issues with your adoption papers

This section aims to inquire about issues with you	ır ado	ption	papers.	
	Yes	No	I don't know	N/A
[D-1] Please choose the response that best reflects you	ır knov	vledge.		
1. Basic identifying information was correct, e.g., date of				
birth, place of birth.				
2.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e.g., birth parents' social history, the history				
behind how I was conceived and relinquished, etc.				
3. Background information about me in my adoption file was				
missing from my intake report.				
4.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5. The intake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6.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7. The progress report in my adoption file was comprehensive.				
8. The medical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was accurate.				
9. The medical report was comprehensive.				
 I found false narratives about my original family in my adoption file. 				
11. I was switched (i.e., I was sent in place of another child				
and given that child's identity).				
12.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emotional/psychological difficulties.				
13.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legal problems (e.g., citizenship status).				
D-2.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 to your adoption file/documents.	ents al	oout is	ssues re	lated

Due to missing of m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emotional/psychological difficulties.				
Due to missing or inaccurate information in my adoption				
file, I experienced legal problems (e.g., citizenship status).				
-2.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to your adoption file/documents.	ents al	oout is	sues re	elated

Section E - Violation/Breaches of Your Human Rights after Intercountry Adoption Placement

This section inquires into your experiences after being placed in the adoptive home. The following is a list of such potential experiences based on the research team's interviews with adopted persons.

- E-1. There was child abuse in the home(s) where I was placed.
 - 1) Yes
 - 2) No
- E-2. The following is a list of potential experiences of abuse based on the research team's interviews with adopted persons. Please select all that applies. If you were placed in multiple homes, the questions below cover your experiences with all the adoptive families you have lived with.

	Adoptive father	Adoptive mother	Adoptive sibling (s)	extended	Others in the adoptive family	Someone in foster care
I was physically abused by						
I was emotionally/psychologically						
abused by						
I was sexually abused by						
I was neglected by						
My sibling(s) was/were physically						
abused by						
My sibling(s) was/were emotionally/						
psychologically abused by						
My sibling(s) was/were sexually						
abused by						
My sibling(s) was/were neglected						
by···						

	Yes	No	I don't know	N/A
E-3. Issues around adoption disruption.				
Please choose the response that best reflects	your kno	wledge	and exp	erience
My first adoptive parents were not fit to adopt.				
2. My first adoption placement was disrupted (e.g., I				
was removed from the first adoptive home).				
3. I was a victim of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4. I witnessed child abuse in my foster placement after				
adoption disruption.				
5. I have had issues with my legal status due to adoption				
disruption.				
			1 -1 14	
	Yes	No	l don't know	N/A
E-4. Issues regarding post-adoption services.				
1. The South Korean adoption agency followed up to				
verify delivery of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e.g.,				
ensured that I gained citizenship).				
2. The adoption agency in my adoptive country provided				
proper post-adoption services.				
E-5.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violations after you were placed in an a				n rights

Section F - Belonging to a Community,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This section inquires into your experiences with regard to belonging to a community, developing your ethnic identity, and racial discrimination.

F-1.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don't know	N/A
I understood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I felt good about my ethnic background						
in my adoptive home.						
I felt that I belonged to my adoptive						
family.						
I felt that I belonged to the community						
that I grew up in.						
I had a lot of pride in being Korean while						
growing up in my adoptive country.						
I often encountered racial discrimination						
in my adoptive country.						

- F-2. Which of the following best describes the area you grew up in in the adoptive country?
 - 1) Large city
 - 2) Suburb near a large city
 - 3) Small city or town
 - 4) Rural area

F-3.	How often did you come across racial minorities in your area growing up?
	1) Very often
	2) Often
	3) Not often
	4) Rarely
F-4.	How often did you come across non-adoptee Koreans in your area
	growing up?
	1) Very often
	2) Often
	3) Not often
	4) Rarely
F-5.	How often did you come across Korean adoptees and/or other
	intercountry adoptees in your area growing up?
	1) Very often
	2) Often
	3) Not often
	4) Rarely
F-6.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about your
	experience in regard to racial discrimination and ethnic identity.

Section G - Request for Access to Information and Search for Original Family

We would like to know where you have inquired about your background information and how helpful each agency/entity has been.

- G-1. Have you searched for your original family in Korea?
 - 1) Yes
 - 2) No
 - 3) Other
- G-1.2. Your response to the above question was 'other.' Please specify here.
- G-2. What was the result of your search?
 - 1) I found at least one original parent.
 - 2) I found my original sibling(s).
 - 3) I found my relative(s) from my original extended families.
 - 4) I found other individual(s) involved in my life.

G-3. Please select the entities you reached out to when searching and if 'yes' rate their level of helpfulness in your search.

	Yes	extrem- ely unhelp ful	unhelp ful	help ful	very help ful	NO, I did not get help from this entity
1. The adoption agency in the adopted						
country						
2. The South Korean Embassy in my						
adopted country						
3. The adoption agency in South Korea						
4. The National Center for the Rights of						
the Children, previously known as KAS,						
KCARE & GAIPS						
5. A South Korean facility (e.g., orphanage,						
child care institution)						
6. South Korean police						
7. DNA testing service in South Korea						
8. DNA testing service outside South Korea						
(e.g. 23andMe, My Heritage)						
9. Other individual adoptees						
10. Adoptee organizations						
11. Other non-government organizations						

G-4.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about the service
of the involved entities during your original family search.

Section H - Attitude toward/Opinion about Intercountry Adoption(ICA)

We are interested in knowing your opinion on intercountry adoption.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don't know	N/A
ICA was a justified measure right after						
the Korean war.						
ICA was still a justified measure in the						
1980s.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help						
preserve original families before						
considering ICA. considering intercountry						
adoptio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must						
exhaust all other options before						
considering ICA.						
There is no justification for South Korea						
to continue ICA today.						
South Korea should have stopped ICA						
a long time ago						
Only overseas South Koreans should						
be allowed to adopt from South Korea.						

H-2.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about your opinion
on Korea's intercountry ad	option policy.

Section I - Satisfaction with Life

Below are five statements with which you may agree or disagree. Using the 1-7 scale below, indicate your agreement with each item. Please be open and honest in your response.

	Strongly disagree	Slightly disagree	Neither Agree or Disagree	Slightly agree	Agree	Strongly Agree
In most ways my life is close						
to my ideal.						
The conditions of my life are						
excellent.						
I am satisfied with life.						
So far I have gotten the						
important things I want in life.						
If I could live my life over, I						
would change almost nothing.						

Section J - Social Support

- J-1. How many people are so close to you that you can count on them if you have great personal problems?
 - 1) None
 - 2) 1~2
 - 3) 3~5
 - 4) 5+

J-2. How much interest and concern do people show in what you do?
1) None
2) Little
3) Uncertain
4) Some
5) A lot
J-3. How easy is it to get practical help from your family (original and/or
adoptive) if you should need it?
1) Very difficult
2) Difficult
3) Possible
4) Easy
5) Very easy
J-4. How easy is it to get practical help from neighbors if you should need
it?
1) Very difficult
2) Difficult
3) Possible
4) Easy
5) Very easy

Section K - Mental Health

This section inquires into your mental health

- K-1. During the past 4 weeks, have you had any of the following problems with your work or other regular daily activities as a result of any emotional problems
- K-2. During the past 4 weeks, to what extent have your physical health or emotional problems interfered with your normal social activities with family, friends, neighbors, or groups?
 - 1) Not at all
 - 2) Slightly
 - 3) Moderately
 - 4) Quite a bit
 - 5) Extremely
- K-3. During the past 4 weeks, how much of the time have your physical health or emotional problems interfered with your social activities (like visiting with friends, relatives, etc.)?
 - 1) All of the time
 - 2) Most of the time
 - 3) Some of the time
 - 4) A little of the time
 - 5) None of the time

K-4. The following questions are about how you feel and how things have been with you during the past 4 weeks. For each question, please give the one answer that comes closest to the way you have been feeling.

How much of the time during the past 4 weeks...

	All of the time	Most of the time	A good bit of the time	Some of the time	A little of the time	None of the time
Did you feel full of pep? (what does pep						
mean? Like energy?)						
Have you been a very nervous person?						
Have you felt so down in the dumps that						
nothing could cheer you up?						
Have you felt calm and peaceful?						
Did you have a lot of energy? (same as						
Q1?)						
Have you felt downhearted and blue?						
Did you feel worn out?						
Have you been a happy person?						
Did you feel tired?						

Section L - Reparation

In this section, we'd like to know what you think about how the South Korean government can assist intercountry adoptees. Although we cannot make any promises, we at least want to learn what your thoughts are.

Reparation is defined as the making of amends for a wrong done, by paying money or otherwise helping those who have been wronged.

- L-1. I feel I am owed reparation from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s a result of my adoption.
 - 1) Yes
 - 2) No
- L-2. Please rate how strongly you agree or disagree with each of the following statements

I'd lik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offer…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I don't know	N/A
1. ways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access their adoption papers and						
identity information						
2. a hub/community center for intercountry						
adoptees to gather in South Korea						
3. monetary support for psychotherapy						
for intercountry adoptees						
4. travel expenses for intercountry adoptees						
when they visit South Korea to find their						
original families their original families.						
5. thorough investigations when breach						
of human rights is suspected						

I'd lik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to offer…	Strongly disagree	Disagree	Agree	Strongly agree	l don't know	N/A
6. free DNA testing for adoptees and						
original families						
7. to match DNA samples of adoptees						
against all existing DNA databases in						
Korea.						

L-3.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suggestions	for	the	South
	Korean	gove	ernm	ent.							

Section M - Any Additional Comments & Age when adopted

M-1.	Please feel free to make any additional comments about South Korea's
	intercountry adoption program and human rights.
M-2.	How old were you when you were adopted?

THANK YOU

